#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유재언 변수정 · 이소영 · 최인선 · 배은경 · 이지연



## 【책임연구자】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 저서】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 【공동연구진】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여성학협동과정 교수

이지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고서 2019-23

#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유재언

발행인 조흥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52-1 93330

# 발간사 〈〈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이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말에는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로드맵을 발표해서 2019년 현재 시행 중이고, 2021년부터 시행될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최근 몇년간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온·오프라인젠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결부된 현상과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이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분절적이었던 영역들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인 연대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9년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도 '성평등 구현'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설정한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체감, 동의, 동참할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저출생·고령사회를 비롯한 인구정책전반을 연구하고 참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젠더 감수성까지 갖춘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를 하고자 한다.

2020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장 래의 인구정책과 제더정책이 서로 교류·협력·접목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

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유재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의 최인선 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 변수정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회학·여성학협동과정 배은경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이지연 박사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아니지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자문에 응해 주신 원내의 우해봉 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 윤자영 교수, 그리고 소중한 검토 의견을 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 과정 중에 의미 있는 의견을 주신 전문가와 국민인식조사를 수행해 주신 한국리서치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관련 연구 분야의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고, 그 결과가 젠더 관점이 보완된 저출생·고 령사회 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고, 저자의 개인적 견해 임을 밝힌다.

>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 조 흥 식

# 목차

Abstract	1
요 약	7
THAT L 113	04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젠더 관점에서의 저출생·고령사회 분	석36
제3절 분석틀: 저출생·고령사회에서의 교차성	40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2
제2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47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과 제도	50
제2절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59
제3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89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	91
제2절 성평등 관련 국제 통계	102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	111
제4절 젠더 관점에서의 조사·통계 분석 및 보완 방안	123
제4장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149
제1절 조사 개요	151
제2절 일반 국민 인식조사 기술통계 결과	153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 순위로짓 분석	212

제4절 성별, 연령, 계층 교차성에 따른 정책 요구도	232
제5절 소결	262
제5장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267
제1절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	269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대책의 젠더 이슈	295
제6장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313
제1절 고령사회 주요 이슈 젠더 관점에서의 논의	315
제2절 노년기 젠더 이슈 제기	332
제3절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논의	35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57
제1절 요약	359
제2절 정책적 제언	385
제3절 한계점과 연구 의의	410
참고문헌	······ 413
부 록	······ 419

# 표 목차

⟨丑	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52
⟨₩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조문	53
⟨丑	2-3>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62
⟨₩	2-4>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조문	64
⟨⊞	2-5>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조문	74
⟨丑	2-6>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81
⟨丑	2-7>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추진 결과	85
⟨丑	2-8>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개선 권고 현황	86
⟨丑	3-1>	성불평등 지수의 지표 구성	03
⟨丑	3-2>	OECD 국가의 성불평등 지수(2017년)1	05
⟨丑	3-3>	성 격차 지수(GGI)의 지표 구성1	07
⟨丑	3-4>	2018년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1	80
⟨₩	3-5>	2008~2018년 성별 출생아 수 및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1	15
⟨丑	3-6>	2006~2017년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1	16
⟨丑	3-7>	가구 유형 및 행동 분류별 일 평균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시간 및	
		행위자 비율1	17
⟨丑	3-8>	2005~2017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및 비율1	18
〈丑	3-9>	2017년 성별 노인 가구 형태1	20
⟨丑	3-10	〉 2000~2017년 성별 노인인구 수 및 비율	20
⟨丑	3-11	〉 2017년 성별 노인 가구 형태	21
⟨丑	3-12	›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조사의 개요 ······1	26
⟨丑	3-13	›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조사의 개요·······1	29
⟨丑	3-14	> 국가통계포털의 단순 성별 분리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1	33
⟨丑	3-15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1	36
⟨₩	3-16	> 국가통계포털의 성별 분리가 없는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1	38
纽	3-17	> 국가통계포털의 단순 성별 분리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1	39

⟨표 3-18⟩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14	10
⟨표 3-19⟩ 국가통계포털의 성별 분리가 없는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14	13
⟨표 3-20⟩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14	15
(표 3-21)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14	16
(표 3-22) 보도자료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14	17
(표 3-23) 보도자료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14	18
⟨표 4-1⟩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15	52
〈표 4-2〉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	54
〈표 4-3〉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15	57
〈표 4-4〉한국의 전반적 성차별에 대한 심각성15	59
〈표 4-5〉미래 한국의 성별 갈등에 대한 전망	31
〈표 4-6〉미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한 전망	34
〈표 4-7〉미래 한국의 빈부 갈등에 대한 전망	6
〈표 4-8〉미래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전망 ······16	86
(표 4-9) 직접적인 성차별 피해 경험 정도17	70
〈표 4-10〉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성적 불평등17	72
〈표 4-11〉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17	75
〈표 4-12〉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17	77
〈표 4-13〉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17	79
〈표 4-14〉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18	31
<표 4-15〉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18	33
〈표 4-16〉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18	35
〈표 4-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18	37
〈표 4-18〉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18	39
〈표 4-19〉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19	<del>)</del> 1
〈표 4-20〉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19	33
〈표 4-21〉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	<b>)</b> 5
〈표 4-22〉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 ·······19	97

⟨∄ 4-23⟩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199
⟨∄ 4-24⟩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의 필요성201
⟨∄ 4-25⟩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203
⟨∄ 4-26⟩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205
⟨∄ 4-27⟩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207
⟨∄ 4-28⟩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209
⟨∄ 4-29⟩	성평등정책의 필요성211
⟨∄ 4-30⟩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전반적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순위로짓 $\cdot \cdot 214$
⟨∄ 4-31⟩	미래 한국 사회의 개선 전망에 대한 순위로짓
⟨∄ 4-32⟩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관련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219
⟨∄ 4-33⟩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관련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221
⟨∄ 4-34⟩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223
〈丑 4-35〉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225
⟨∄ 4-36⟩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Ⅲ227
⟨∄ 4-37⟩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mathbb{N}$ 229
⟨∄ 4-38⟩	계층, 성·연령대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전체 국민 대상 $\cdots$ 236
⟨∄ 4-39⟩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15~35$ 세 청년 여자 $\cdots 240$
⟨∄ 4-40⟩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15~35$ 세 청년 남자 $\cdots$ $244$
⟨∄ 4-41⟩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36~55$ 세 장년 여자 $\cdots 248$
⟨∄ 4-42⟩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36~55$ 세 장년 남자 $\cdots$ $252$
⟨∄ 4-43⟩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56$ 세 이상 중고령 여자 $\cdots$ 256
⟨₩ 4-44⟩	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56$ 세 이상 중고령 남자 $\cdots$ $260$
⟨± 6-1⟩ <del>-</del>	국가 및 성별 2017년 기대여명316
⟨∄ 6-2⟩ ′	1990~2018년 초혼 부부의 연령 차이318
⟨∄ 6-3⟩	1990~2018년 초혼 부부 연령 차이 비율320
⟨∄ 6-4⟩ ⅓	노인의 성별 차원 빈곤율322

〈표 6-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 기간	. 322
〈표 6-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및 소득 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 323
〈표 6-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소득 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 323
〈표 6-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323
〈표 6-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	. 325
〈표 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 325
〈표 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325
〈표 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종사 직종	. 326
〈표 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일의 내용	. 326
〈표 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 327
〈표 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여부	. 327
〈표 6-16〉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별 참여자 수	. 328
〈표 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 328
〈표 6-18〉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성별 연금수급자 현황	. 329
〈표 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식	. 329
〈표 6-20〉 사망자의 상속 비율, 상속 금액, 상속받은 경우 형제자매 비율	. 330
〈표 6-21〉 사망자와 자녀 특성에 따른 상속 배분율 분석 결과	. 331
〈표 6-22〉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진 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332
〈표 6-23〉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대상 성교육, 성상담 인식	. 333
〈표 6-24〉성매개감염병 연도별 신고 현황	. 334
(표 6-25) 2001~2018년 성매개감염병 성별 신고 현황	. 335
(표 6-26) 2018년 성매개감염병 성별 및 연령별 신고 현황······	. 337
(표 6-27)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 338
(표 6-28)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피해 건수 ······	. 339
(표 6-29) 2017년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돌봄 수혜 실태 ······	. 342
(표 6-30) 2008~2018년 노인장기요양인력 성별 비율······	. 344
〈표 6-31〉 노인의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345
〈표 6-32〉 2015~2017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346

〈표 6-33〉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개요······347
〈표 6-34〉 2017년 학대 피해 노인의 성별 학대 유형······349
〈표 6-35〉 2017년 노인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349
〈표 6-36〉 2017년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연령 현황······350
〈표 7-1〉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제 통계) ······363
〈표 7-2〉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내 통계) ······364
〈표 7-3〉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366
〈표 7-4〉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순위로짓 분석 주요 결과369
〈표 7-5〉 젠더 관점에서의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용어 논의·376
〈표 7-6〉 고령사회 젠더 이슈 주요 내용 ·······381
부록표 목차
〈부록표 4-1〉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전체 국민(2000명)429
〈부록표 4-2〉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여자(323명) 430
〈부록표 4-3〉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남자(318명) 431
〈부록표 4-4〉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여자(395명) 432
〈부록표 4-5〉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남자(377명) 433
〈부록표 4-6〉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여자(269명) … 434
/브로표 /L-7\ 저채 필이서 자재프리마인 부서 견과· 주고려(56세 이사) 난자(219며) /25

# 그림 목차

[그림 3-1] 1990, 2000, 2017년 또는 최근 연노 성별 평균 조혼 연령	92
[그림 3-2] 1970, 1995,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합계출산율	93
[그림 3-3] 2018년 성별, 연령별 고용률	94
[그림 3-4] 1990~2018년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96
[그림 3-5]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 성별 격차	97
[그림 3-6] 교육수준별 소득 성별 격차	97
[그림 3-7]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고용률의 성별 격차 ·····	98
[그림 3-8] 시간제(part-time) 고용률의 성별 격차	98
[그림 3-9]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율	99
[그림 3-10] 임시근로의 성별 격차	·· 100
[그림 3-11]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2016년 또는 최근 연도)	·· 101
[그림 3-12] 2017년 OECD 국가의 성불평등 지수	·· 106
[그림 3-13] 2018년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 109
[그림 3-14]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	·· 110
[그림 3-15] 2007, 2017, 2027년 인구피라미드 변화	·· 111
[그림 3-16] 2000~2017년 성별 1인 기구 비율	·· 112
[그림 3-17] 2017년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 113
[그림 3-18] 2008, 2017, 2018년 연령대별 혼인율	·· 114
[그림 3-19] 2008, 2018년 성별 평균 초혼 연령	·· 115
[그림 3-20] 2005~2017년 전년 대비 이혼 건수(전체, 외국인과의 이혼) 변화율	·· 119
[그림 3-21] 2018년 성별 사망자 수	·· 120
[그림 3-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원안과 수정안	·· 123
[그림 4-1]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전체 국민(2,000명)	·· 235
[그림 4-2]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여자(323명)	239
[그림 4-3]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남자(318명)	243

[그림 1-1]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교차성 ......41

[그림 4-4]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여자(395명)24
[그림 4-5]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남자(377명)25
[그림 4-6]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여자(269명) 25
[그림 4-7]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남자(318명) 25
[그림 5-1] 대한민국 출산지도27
[그림 5-2] 유튜브 대한민국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 예시28
[그림 6-1] 1970~2017년 기대여명 성별 격차 추세31
[그림 6-2] 1990~2018년 전체 초혼 부부에서 남자가 연상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31
[그림 6-3]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33
[그림 6-4] 2014~2018년 학대 행위자와 학대 노인과의 관계34
[그림 7-1] Generations & Gender Survey의 데이터 관리 구조39
부그림 목차
[부그림 2-1]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경제 참여와 기회42
[부그림 2-2]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교육 성취42
[부그림 2-3]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건강42
[부그림 2-4]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정치 권한42
「보그림 37 2019년 영구 이국노미스트이 오리처자 지스 영영병 수의

# Abstract <<

# A Critical Review on Korean Population Policie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Project Head: Yoo, Jaeeon

South Korea has experienced ultra-low fertility for more than a decade and the rate of aging has been accelerated. Since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cope with population changes, focusing on the first to third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It announced a roadmap that reconstructed the first to third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in December 2018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forth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established in 2020, in 2019. On the other hand, gender equality is a new trend shaking up Korean society in 2019 as hard as the low fertility and aging trend.

Numerous incidents related to gender and sexuality have happened recently and gender movements have been active on- and off-line. Consequently, a general consensus is formed that gender-related issues should be solved together with social members. Although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Act, and the Sexual Violence

Co-Researchers: Byoun, Soojung·Lee, Soyoung·Choi, Inseon·Bae, Eunkyung·Lee, Jiyeon

Prevention Act have been made, there are still many areas where Korean society has not achieved gender equality and gender conflicts have been amplified. It is highly necessary to gather wisdom and band together practically in order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Koreans on the major trends such as 'low fertility', 'aging society', and 'gender equality'. In these respects, we aim to analyze and discuss the phenomena and policies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especially the intersectionality emphasized in tertiary feminism.

First of all, Chapter 2 summarize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ging society, and gender equality.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need for linking and cooperating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ging society, and gender equality, which share the same goal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study proposes to specify the linkage with the Framework Act on Gender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the laws and policies of the two domains. Additionally, Equality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to meet the objective of the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for achiev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hould not divide males and females in a dichotomous way or exclude a specific gender and should emphasize intersectionality. In this context, women policy should emerge as a gender equality policy.

Chapter 3 identifies the low fertility, aging society, and gender equality of South Korea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analyzes the actual situation using existing statistics for closely examining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henomena in the future from the gender perspective. Particularly, international statistics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re presented by gender, and South Korea's relative gender equality levels extracted from international gender equality indices are also compared. In the next step, we examine distinctive gender trends from the annual statistics on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diagnose the level of intersectionality that could be identified in the announcement of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approved by the Statistics Korea and discuss supplementary measures.

In Chapter 4, a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for 2,000 men and women aged 15 and over from August 22, 2019, to September 6, 2019, to understand the public perception of ge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survey included the overall perception of ge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the prospects for future Korean society, and the necessity of policy interven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ender, age, residential area,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economic status, employment stability, political orientation, and subjective social class on the perception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ordered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t age groups and social classes had different perceptions in the severity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he prospects of improvement for them, and gender had a partial difference only in the prospects of improvement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Males had more negative perspectives.

Second, females had more negative perspectives about the severity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 improvement prospect of gender conflicts.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conflict are combined with marital and ideological inclinations. As such, marital and ideological inclinations must be considered along with gender to resolve associated issues. However, unlike this,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prospects of generational conflicts and the conflicts between rich and poor, age, income, and ideological inclination, an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Third, gender discrimination and gender conflict were considered as tasks to be solved, and women were more seriously aware of these issues. Thus, they should be improved by focusing on women.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severity and prospect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henomena and the improvement prospects of generational conflict and the conflicts between rich and poor. However, the differences due to age, income, and ideological inclination were

high. The prevailing opinion was that gender conflicts would be alleviated.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anticipated that generational conflicts and the conflicts between rich and poor will be worsened. For this reason, the precondition that gender equality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sever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henomena might receive low empathy from other members and the appropriateness as an objective should be examined. The improvement goal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should focus on age group, income, and political orientation, and combine genders based on intersectionality.

Fourth, a target total fertility rate was not set, most citizens, regardless of gender, recognized the need for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very high. Therefor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need to be promoted continuously.

Chapter 5 further discusses gender issues associated with low fertility, which have been serious social issues, to satisfy gender the gender sensitivity expectations and contribute to population policies and studies embracing the conditions of various members. Chapter 5 presents the overall major gender issues associated with low fertility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chapter points out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2018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from the gender perspectiv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is chapter pointed out specific details that presuppose women as the principal agents of childcare, assume

women depending on men, specify women as policy subjects unnecessarily, or overemphasize maternity protection. It also introduces the status and issues of using sexist terminologies and makes suggestions using nonsexist terminologies.

Chapter 6 views life expectancy, poverty, health, national pension, ag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care, the key issues of aging society phenomena, from the gender perspective. We also discover new policy topics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ity, although they are not directed related to low fertility discussion. It is a timely issue because low fertility issues have been improved after being pointed out using various gender statistics but aging society policies and phenomena have not been discussed much.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prepare gender and sexuality-related issues before they become social issue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gender gap was even larger in life expectancy, poverty, health, national pension, ag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 From the derived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at gender perspectives and life-course perspectives need to be combined and gender and sexuality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old age rather than improving policies causing gender inequality. Moreover,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icies should be pursued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without ignoring gender and sexuality.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06년부터 제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 으로 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로 드맵을 발표하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20년을 앞두고, 2019년에 이를 대비해야 함.
- □ 저출생·고령화 인구 현상 메가트렌드 못지않게 '성평등'은 2019년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변화임.
  -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온·오프라 인 젠더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제 젠더와 결부된 현상들은 사 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음.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폭력방지법 등 법·제도 적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한 영역도 많으며, 젠더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젠더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
- □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 하고 논의함.

## 나. 분석틀

- □ 교차성: 제3차 여성주의 관점을 적용
  -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젠더가 인종, 계층, 성 정체성, 연령, 종교, 국적, 장애 등 다양한 특성들과 결합되어 차별과 억압을 발 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설명.
  -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현상 사안별로 젠더와 결부된 여러 특성들을 세분화해서 중첩된 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젠더를 중심에 두고 교차성의 측면에서 정책 및 이슈별 세대, 계층이 결합된 구조를 분석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정책이 연계·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2. 연구 내용, 결과, 시사점

# 가. 제2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 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제 도의 주요 내용 정리.
  - 분석 내용: 제정·도입 배경, 연혁, 현황 등.
  - 한국 사회가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제시.

#### □ 본 과제의 차별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 통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 도출.
- 분석 대상: 다뤄지지 않았던 고령화 현상의 전반으로 확장.
- 관점: 젠더와 결합된 세대, 계층을 함께 분석·평가해 심화되지 않 았던 이슈 발굴.
- □ 의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에도 긴밀하지 않게 추진되어 온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가 서로 연계·협력되어 나가야 할 것임.

## □ 제2장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성평등정책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성평등 구현)에 부합하게 세부 추진 과제로 양성평등기본법과의 연동을 명시.

- 관련 정책·현상에 대한 정기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추가.
- 성별영향평가
  -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접근을 피하고 특정 젠더를 배제하지 않게 함.
  - 성별영향평가에도 교차성이 반영되어야 함.
- 여성정책 → 성평등정책으로 발돋움.
  - 대상자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주요 정책 대상자를 남성, 성소수자도 포함하여 확대.
- 현재의 정책·제도에서 조장하는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정책·제도에 성불평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책 시행의 결과가 젠더에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하면 발굴하여 개선 요구.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선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

# 나. 제3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 □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파악, 미래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젠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실태 분석.
  -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를 성별로 살펴봄.
  - 국제성평등지표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성평등 수준을 비교함.
  - 국내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의 연도별 추세에서 특징적인 성별 차이도 알아봄.

〈요약표 1〉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제 통계)

구분		내용
결혼	초혼 연령	-성별 차이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로 문제 되지 않음 -1990~2017년 한국의 초혼 연령 급격한 상승
출산	출산	-2017년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기록
일	연령대별 고 <del>용률</del>	-한국 여성 M자 곡선: 25~29세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출산 및 육아기인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낮아지고, 40대 후반에 다시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한국 남성: 20대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줄곧 낮음, 2017년 이후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도 낮아짐
(고용)	소득	-고학력에서의 중위소득 성별 격차(남자)여자) 심함
	근로 형태	-전일제 근무 여성 비율 낮고, 시간제 근무 여성 비율 높음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매우 낮음
수명	기대여명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자는 높고, 남자는 낮음
	성불평등 지수	-전반적으로 성불평등 낮게 평가됨 -2017년 189개국 중에서 10위로 상위권 -세부 지표 중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하지만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성불평등 수준은 중위권
성평등	성 격차 지수	-성 격차 심함 -종합순위: 2018년 149개국 중에서 115위로 하위권 -영역별 순위: 건강 87위, 정치 권한 92위, 교육 성취 100위, 경제 참여와 기회 124위
	유리천장 지수	-종합점수 OECD 29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성차별 심각 -영역 구분: 고등교육 비율, 노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관 리직 내 여성 비율, 간부직 내 여성 비율, 여성 경영대학원시험 응시자 수, 의회 내 여성 비율, 양육비용,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요약표 2〉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내 통계)

구분		내용
	인구피라미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 비율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 -80세 이상 성별 인구 규모 격차(여자)남자) 클 전망
인구	1인 가구	-여자 1인 가구 비율 〉 남자 1인 가구 비율 -여자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대 이후 변동 폭 작음 -남자 1인 가구 증가 폭 큼 -20~40대: 남자 〉 여자 -50~70대 이상: 여자 〉 남자
결혼	연령대별 혼인율	-2008년보다 2018년 남자: 20대 후반만 혼인율 감소 폭 큼 -2008년보다 2018년 여자: 20대 혼인율 감소, 30대 초중반 에는 증가
출산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2010년대 이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자연성비
일· 가정	육아휴직 수급자	-육아휴직 수급자의 여자 비율 87% 이상 -남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와 비율 증가 폭 상승 긍정적 -여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 감소로 전환
양립	가정관리· 돌봄시간	-성별 격차 큼(아내)남편): 맞벌이, 외벌이 모두 가정관리, 가 족 돌봄 행위 비율과 하루 평균 시간
	총 이혼 건수	-감소 추세이며, 변화율 작음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변화율 차이 큼 -한국 여자+외국 남자 이혼 건수 변화폭 큼
고령자	가구 형태	-여성 노인은 1인 가구 비율 높음
인구 및 가구	사망	-70대에 남자 사망자 수 많음 -80대 이후 여자 사망자 수가 많음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조사망률 성별 차이 감소 추세

〈요약표 3〉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의 교차성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	
성별 비교로만 구성된 통계 (9개)	-가족실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국 다문화실태조사(귀화자) -청년패널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젠더와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 (14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생활실태조사(일반 가구)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 조사 -생활시간조사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한국노동패널조사 -국민연금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작대 현황 -퇴직연금통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통계 (5개)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고령자 고용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본조사 조사표(16개): 성별, 서	l대, 계층, 혼인, 지역
5개 영역 변수 모두 포함한 통 계(14개)	-가족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보육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정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청년 종합 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노인실태조사
성별, 세대, 계층, 혼인, 지역과 관련 대체 변수(1개)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 단위 조사: 성별, 연령, 혼인 내용 파악 가능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구분	분석 결과		
보도자료(12개)			
성별 분리된 결과 제시(7개)	-가족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퇴직연금통계		
성별 결과 제시 안 함(5개)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 제3장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성별 격차는 익히 알려졌고 이를 완화하려는 대응이 요구됨.
-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성별 격차의 추세임.
  - 성별 격차의 완화 및 심화 추세 파악 필요.
  - 연령대, 코호트, 계층별 다양한 양상의 집단 구분.
- 젠더와 교차된 세부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를 간과하면 특정 하위 집단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적합성 낮은 정책 대안이 됨.
-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교한 통계 중요.
- 실태 파악 위한 통계 생산·관리·결과 공표도 교차성 관점 보완.
  -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결과 공표 각각에서 젠더뿐 아니라 맞물린 핵심 특성들이 세부 집단별로 구분되어야 함.
  - 연령, 코호트, 근로 형태 및 지위, 혼인 여부, 출산, 이혼, 가구 형태, 건강, 사망 등.

# 다. 제4장: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 □ 목적: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
- □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
  - 표본 추출 방법: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2019. 7.) 기 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로 무작위 추출.
- □ 방법: 전화 조사
  - 조사 기간: 2019년 8월 22일~2019년 9월 6일
  - 조사 수행 기관: 한국리서치
- □ 조사 내용
  -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
  -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젠더에 따른 불평등
  -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분석 방법
  - 교차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 차이
  - 분석: 기술통계와 순위로짓모형

# □ 조사 응답자 기술통계

〈요약표 4〉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セカ・/0, 6/
구분	비율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000)	<u></u> 학력		
성별			고졸 이하	44.3	(886)
남자	49.7	(995)	대졸 이상	55.2	(1,105)
여자	50.3	(1,005)	모름/무응답	0.5	(10)
연령			경제활동 상태		
15~19세	6.1	(121)	일함	65.1	(1,302)
20~29세	15.1	(303)	일하지 않음	34.9	(698)
30~39세	15.9	(318)	고용안정성		
40~49세	18.4	(368)	불안정	13.4	(269)
50~59세	19.1	(383)	보통	14.7	(294)
60세 이상	25.3	(507)	안정	36.9	(738)
지역			일하지 않음	34.9	(698)
서울	19.3	(385)	이념 성향		
광역시	24.9	(497)	진보	29.5	(589)
시 지역	49.3	(985)	중도	48.3	(966)
군 지역	6.6	(133)	보수	22.2	(445)
혼인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비혼	30.0	(600)	하층	25.6	(513)
기혼	64.1	(1,281)	중층	68.6	(1,372)
이혼/사별	5.7	(114)	상층	5.8	(116)
모름/무응답	0.2	(4)	_	-	

〈요약표 5〉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인식조사 순위로짓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	-40대 > 10대 -고용 불안정한 사람 > 일하지 않는 사람		
미래 한국 사회 개선 전망			
성차별의 심각성	-여자 〉 남자 -비혼자 〉 기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향후 성별 갈등의 개선 전망	-여자 〉 남자 -기혼자 〉 비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세대 갈등 개선 전망	-10대 〉 30대, 50대 이상 -소득 중상층 〉 하층 -진보적 성향 〉 중도		
빈부 갈등 개선 전망	-소득 중상층 〉 하층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개선 전망	-남자 〉 여자 -10대 -소득 중상층 〉 하층 -보수적 성향 〉 중도		
정책적 개입 필요성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	-여자 〉 남자 -고용 안정성 보통 〉 비고용 -진보적 성향 〉 중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 차 해소	-여자 〉남자 -10대 〉 20대 -불안정한 고용 〉비고용 -진보적 성향 〉중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 봄 해소	-여자 〉 남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	-여자 〉남자 -10대 〉 2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노인 대상 성폭력 해소	-여자 〉 남자 -60대 〉 10대 〉 50대, 70대 -기혼자 〉 비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필요성			

구분	분석 결과
청년 취업지원정책	-여자 〉 남자 -10대 〉 3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결혼장려정책	-남자 〉 여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 대학교 졸업 이상 -소득 하층 -50대, 60대 〉 10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20~60대 〉 10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대학교 졸업 이상 -진보적 성향 〉 중도
출산장려정책	-여자 〉 남자 -비고용 -진보적 성향 〉 중도
아 <u>동돌봄</u> 정책	-여자 〉 남자 -30대 〉 1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노인돌봄정책	-여자 〉 남자 -30대, 40대 〉 1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일·가정양립정책	-여자 〉남자 -30~50대 〉 10대 -진보적 성향 〉중도
성평등정책	-여자 〉 남자 -불안정한 고용 〉 비고용 -비혼자 〉 기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불안정한 고용 〉비고용 -비혼자 〉기혼자 -소득 하층 〉 중층 -진보적 성향 〉 중도
정년퇴직 연령 상향	-소득 상층 〉 하층
노후소득보장정책	-시 지역 〉서울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소득 하층 〉중층 -진보적 성향 〉중도
지방분권정책	-여자 〉 남자 -40대, 70대 이상 〉 10대 -소득 하층 〉 중층 -진보적 성향 〉 중도

- □ 제4장 기술통계와 순위로짓모형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사회현상 전망, 정책 선호에서 복잡한 인식 차이
    - 성별, 연령, 지역, 혼인, 학력, 경제활동,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
  - 사회현상에서 특성별 인식 차이 발생 원인 파악, 심층 분석 후 대 응 방안 모색.
  - 정책 필요성에 반대하는 구성원 특성도 파악해 이들을 배려한 보 완적 제도 설계.
  - 구체적인 현상, 이슈, 정책별 함의
    -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의 심각성과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개선 전망에서는 연령과 계층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었고, 젠더는 저출생·고령사회 개선 전망에서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음. 남성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전망함.
    - 성차별의 심각성, 성별 갈등의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성차별과 성별 갈등 은 혼인 여부, 이념 성향과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차별과 성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젠더와 함께 혼 인 여부, 이념적 성향이 고려되어야 함.
    - 합계출산율로 측정되는 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남녀 구분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어 출산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만, 여성을 대상화하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
    -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

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장남 중심 유산상속, 노인 대상 성폭력, 청년 취업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아동돌봄정책, 노인돌봄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성평등정책, 지방분권정책과 같이젠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별갈등의 완화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반면, 결혼장려정책에서는 남성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되어야 함.

-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정년퇴 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는 성별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중요함.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으로 이념 갈등이 41%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세대 갈등(13%)과 성별 갈등(11%)은 빈부 갈등(28%)에 이은 3~4순위이기도 함. 모든 정책에서 젠더를 중심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 있음.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10~20대에 집중되어 있어 성별 갈등 완화 대응은 젊은 세대에게 집중해야 함.
- 정책마다 고용안정성, 혼인 여부, 소득, 교육수준, 연령대 등 각기 다른 특성이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모든 정책에 일관적인 특성은 이념적 성향임. 진보적일수록 대부분의 정책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이들이 지닌 어려움을 살필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중도 또는 보수적 이념 성향의 사회 구성원이 정책적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이유도 파악해야 함.

□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유형화 및 성·연령·계층 차이: 잠재프로파일 및 다항로짓 분석 결과의 시사점

#### ○ 유형화 주요 결과

-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경우 적극 지지층이 가장 큰 비율, 약한 지지 또는 중도가 2순위 비율을 차지함.
- 제3~4순위 유형은 세부 정책별로 엇갈린 찬반 태도 가짐

###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

- 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는 청·장년 여자 대 반대하는 청년 남자.
- 장년기에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특히 돌봄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자 대 일부 젠더, 다문화,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남자.
- 저출생과 젠더 관련 정책에 뚜렷한 찬성 태도를 가진 중고령 여자 대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며 보수적인 태도도 엿 보이는 중고령 남자.

#### ○ 계층적 특성 차이

- 이념 성향은 성별 및 연령대와 무관하게 저출생·고령사회·젠 더 관련 정책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혼인상태, 학력, 고용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은 특정 성·연령대 에만 기밀하게 결합됨.

# 라. 제5장: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목적: 사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 기대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성원

의 상황까지 포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연구하는 데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회적 화두였던 저출생 관련 젠더 이 슈를 심층 논의.

#### □ 내용 및 방법

- 저출생 현상과 대응정책 비판적 논의: 이슈, 쟁점, 개선 방향 제 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의 젠더 이슈 논의.
- 성차별적 용어 현상과 쟁점, 성차별 언어 개선을 위한 제언.

### □ 저출생 현상과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뀌었지만 국가에 의한 인구 통제라는 정책 관행이 유지됨.
- 정책의 목표로 부적절했던 수치화된 합계출산율
  -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성격 약화.
  - 인구 위기의 해결이라는 환상.
  -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 훼손.
  -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불만과 반감.
- 저출산 대 저출생: 학술 용어와 정책 용어의 구분 필요성
  -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합계 출산율 등의 학술 용어로 저출산을 사용.
  - 아이가 덜 태어나고 노인이 많아지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 정책으로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의미를 공고히 하

기 위한 정책 용어로 저출생을 사용.

- 성인지적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향하여
  - 사람 중심 정책과 성평등의 관점: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인구정책에도 성평등을 강조 하는 제더 관점 반영, 포괄적 사회정책 성격 강화.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의의
  - 청년층의 젠더화되고 이질적인 생애전망에 대한 고려.
  - 저출산 대책인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4. 일·가 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네 가지 목표에서 한계점을 제4차 기본 계획에서 개선 필요.
    - 비혼, 한부모 등 비전통적 혼인 가족생활의 자율성 지원.
    - 저출생대책으로서 목표 정합성이 낮은 추진 과제 재검토.
    - 청소년, 남성을 포함한 보건·위생·생식건강으로 지원.
    - 남성의 돌봄 역할과 책임 강조.
    - 영유아 과정에서 전 생애로 돌봄의 대상과 시기를 확장.
- □ 시행계획과 용어 관련 분석 결과 및 개선안

#### 〈요약표 6〉 젠더 관점에서의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용어 논의

구분	내용
돌봄의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2)
주체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p. 416)
여성	·여성의 고용 확대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것
전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취업 중이라도 여성이 아이 돌봄

구분	내용
	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수가 설치 조건임 -개선안: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수로 조건 변경
	-사업명: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p. 293, p. 299, p. 309) · '엄마'를 특정함으로써 가족 내 성역할을 구분하고, 돌봄에 있어 엄마의 역할과 책임을 상징화 · 가족 내에 엄마가 있고, 그 엄마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전통 가족, 또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상정 -개선안: 사회적 돌봄 교실(가칭) 등 가정과 엄마가 일차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사업명 변경
남성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 가정	-돌봄에서 여성과 남성이 더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p. 424)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목표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으로 명시되지 않아야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남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움을 받아야 실현될 수 있거나 혹은 남성의 행동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 남성 의존적인 구조의 목표로 설정됨 -개선안: 남성의 육아 참여,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양육자와의 균형 있는 상호작 용 기회 확보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
불필요한 여성 특정	- 정책명, 내용에 여성을 특정해 임신·출산·양육에서 여성의 책임이 강조됨 -임신·출산은 여성이 하는 것임은 불변의 진리이므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는 '여성'을 구분지어 특정할 필요가 없음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확대'(p. 131)의 내용에서 '여성 장애인'을 특정 -개선안: 직접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사업명에는 여성 장애인을 특정하지 않음이 적절
	-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제도'(p. 301) - "부모 학생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 시 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p. 301) -개선안: '임신 또는 출산하는 대학(원)생,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시 부모 학생' 등의 표현으로 변경
	-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p. 385) 사업 내용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기간 동안 고용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근로 자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등 사업장의 위법행위 적발 강화"(p. 385) - 개선안: '임신근로자'라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여성을 특정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의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p. 412)
	사업의 대상

구분	내용
	-"대체인력 구인기업 및 구직자(특히, 사회 초년생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p. 412) -개선안: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구 직자'로 표현되어도 무방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영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pp. 385-388, p. 400, pp. 407-408, p. 420, p. 422, pp. 433-434, pp. 436-437, p. 439)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전제 -출산·육아에 있어서 책임 및 제도 사용이 더 이상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부성보호'에 대한 시각은 결여된 것 -개선안: 육아휴직 등 분야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책임 강조를 위해 '부성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등 부성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
성차별적 용어	-출산력 대 출생 ·영어 Fertility라는 인구학용어 해석의 문제 ·통계용어와 정책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안: 조사, 통계, 학문적으로는 출산력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인식에서 거부감이 적은 출생 사용 -직업인 표현 앞에 여(女)를 붙임 → 불필요한 '여'라는 접두어 삭제 - '처녀' → '첫'이라는 접두어로 대체 - '미망인' → 사용 안 함 - '유모차' → '유아차' -성차별적 용어와 표현들은 그 영향이 암묵적이고 은밀하여 이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부각시키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단지 관성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들까지 본 과제에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 -최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임. 혐오란 그 밑바탕에 혐오정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저변의 맥락들과 같이 논의되어야 함 -표면화된 용어를 넘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 대책임

## 마. 제6장: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배경: 저출생은 다양한 성별 통계와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이 있었지만, 고령사회 정책과 현상은 성별 통계자료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적었음 □ 목적: 저출생 영역과 논의의 차원이 다르지만, 고령사회 현상의 핵 심적인 이슈였던 수명, 빈곤, 건강, 국민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 등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젠더를 확장하여 섹슈얼리티라는 관 점에서도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

## □ 분석 결과

#### 〈요약표 7〉 고령사회 젠더 이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명	-한국 여자와 남자 간 기대여명 차이는 줄어듦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기대여명 순위는 상승 추세이지만 남자 의 기대여명 순위는 개선되지 않음 -의존수명(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 여자 〉 남자		
부부 연령 차이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인 부부가 다수인 결과가 노년기에 부각됨 -1990~2018년 남자가 여자보다 3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율이 정체 상태. 앞으 로도 이 추세는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빈곤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 짧은 여성 노인 빈곤율 높음 -재산소득과 공적연금을 보유한 비율: 남자 가구 〉여자 가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 여자 가구 〉남자 가구 -가구 단위보다 개인 단위에서의 성별 소득 원천 차이 큼		
경제활동	-노년기 일을 하는 비율: 남자 〉 여자 -일을 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남자〉 여자), 용돈 마련(여자〉 남자) 성별로 이분화된 직종,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가 노년기에도 지속 -단순노무자 비율: 여자 〉 남자 -일 내용: 운송·건설(남자〉 여자), 경비·수위·청소, 가사·조리·음식(여자〉 남자) -종사 지위: 상용근로자(남자〉 여자), 임시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여자〉 남자)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시장형·공익형(여자〉 남자), 시니어인턴십·재능나눔·인 력과건형(남자〉 여자) -노령연금 수급자 수(남자〉 여자), 장애연금 수급자 수(남자〉 여자), 가족연금 수 급자 수(여자〉 남자)		
상속	-상속에 대한 인식 성평등해짐 -상속 행태는 여전히 장남 중심. 차녀 이하는 상속 배분율 특히 낮음		
성생활	-인식: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85세이상 연령대, 무배우자, 기능상태 제한 있어도 10% 이상임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10%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을 경험한 비율 1.2%로 낮음 -성매개감염병: 2010년대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증가-클라미디아감염증과 성기단순포진 증가 폭: 여자 〉 남자 -2011~2018년 첨규콘딜롬 신고 건수 증가: 남자 〉 여자		

구분	내용		
	-성범죄자: 남자 〉 여자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 -50대 이상 강간,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 적지 않게 발생 공식적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인 노인 간 성추행 발생(예: 요양보호사) -정확한 통계는 없고, 성추행 예방과 발생 시 처벌 노력 미흡		
돌봄	-돌봄 수혜, 미수혜 비율: 여자 〉 남자 -사회적 돌봄 종사자의 성별 편차(여자〉 남자) 크고 심화되는 추세 -사회적 돌봄 남성 노인 배제 없어야 여성 노인이 전담하는 문제 감소 -이들, 남편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 다수		
성 정체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생애과정 관점 적용		
인종	-다문화가정의 이중 돌봄과 나이 듦		
생애과정	-생애주기에서 생애과정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 제6장 분석 결과의 시사점

- 고령사회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화 및 문제 예방, 대비
- 수명, 빈곤, 건강, 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
- 성 정체성과 인종 등 다른 특성과 젠더의 교차성 추가 논의
- 젠더 관점에도 생애과정 관점을 결합
  - 특성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의 결합
  - 생애주기 → 생애과정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
-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찾는 데 주력하기보다 젠더와 섹슈 얼리티가 노년기에서 중요한 특성임을 강조하고, 젠더, 섹슈얼리 티가 무시되지 않게 거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고령사회대책의 하위목표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4.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검토

- 노인의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와 감수성 보완
- 가정 내, 사회적 돌봄 제공자의 젠더화된 작동 방식 고려
- 여성 노동자 내부의 다양성을 감안, 여성의 독립적 노동생애 발전

## 바. 제7장: 총괄적인 정책 제언

원칙: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법률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방향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평등정책 간 연계와 협력
목표: 성평등을 포함 모든 구성원의 포용과 평등 구현으로 확대
대응 방안 마련의 전제조건: 성별 격차 실태 면밀한 분석 및 진단
사회현상·정책태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수립·시행
노년,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 여성의 '홀로 늙어감': 사망, 노동
○ 여성의 돌봄 기여와 전문성 인정
○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돌봄 제공자로서 남성의 역할 확대

- 가부장적인 상속 행태 개선
-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의 생애과정에 대한 관심 촉구

\*주요 용어: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젠더, 교차성, 인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젠더 관점에서의 저출생·고령사회

분석

제3절 분석틀: 저출생·고령사회에서의 교차성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한국 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제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건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과 같은 저출생 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는 추세가 2018년 더욱 심화되었다. 기대수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노령화지수 등의 고령화 관련 주요 지표가 심화되는 속도에비해, 노인의 빈곤율과 공적연금 가입률 등이 개선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2018년 12월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로드맵이 발표되어 시행 중이고, 이제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야할 때이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지속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 현상 메가트렌드 (Megatrend) 못지않게 2019년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변화는 '성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온·오프라인 젠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 임신중절, 성폭력, 일·가정 양립 등 젠더 이슈가 대두됐다.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미투(Me too) 운동', '82년생 김지영'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가라앉았던 젠더 논의와 운동이 다시 공론의 장으로 떠올라

이제는 젠더와 결부된 현상과 문제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젠더 형평성이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최근의 젠더 논의와 운동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20~30대 젊은 남성으로 대변되는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감을 보이고 있고, 결혼, 출산, 일·가정 양립의 생애과정을 지나간 고령자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젠더이론·논의·실천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으면서 억압적인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연대하는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젠더와 관련해서도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8~2022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 2019)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달성되지 못한 영역도 많이 있으며,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젠더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 이수율, 비즈니스 스쿨 여성 지원율,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격차, 여성 국회의원 비율, 임금 격차, 자녀돌봄 비용 지출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여성 육아휴직, 기업 내 이사진 여성 비율, 남성 육아휴직으로 측정되는 유리천장지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건강, 정치적 권한으로 측정되는 성 격차 지

수도 2018년 기준 세계 149개 국가 중에서 115위에 그쳤다(통계청, 2018). 한편으로는 생식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3개 영역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5개 지표로 측정하는 성불평등 지수가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상위)를 기록했어도 젠더 갈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이다(통계청, 2018).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스르기 쉽지 않은 거대한 조류 속에서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이제는 분절적이었던 영역들을 아우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2006년부터 시행되었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계획에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을 기회요인으로 보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여성·고용 인력 활용'이 핵심적인 추진 과제로 포함되어 그 토대는 갖추어졌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서 2019년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전면에 내걸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이처럼 그동안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도 성불평등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내세운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체감, 동의, 동참할 수있게 도약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가 가임기 여성을 기계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결혼·임신·보건·출산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본 연구원도 젠더 의식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

아 왔다. 저출생·고령사회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연구하고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젠더 감수성도 갖춘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변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 2. 연구의 목적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젠더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되었고 이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의 인구정책에서는 이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려면,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대응정책을 마련할 때도 젠더 관점을 반영해야만 한다. 2020년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장래의 인구정책과 젠더정책이 서로 교류·협력·접목하여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될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한다.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젠더 관점에서의 저출생·고령사회 분석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해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현상, 법, 제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한 양질의 선행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제3절에서는 젠더 관점에 서 저출생·고령사회 법과 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참고하여 이 보고서에서 추가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러 사회 분야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 주고 이를 철폐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와 결과표를 분석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해 왔다(주재선 외, 2016; 주재선 외, 2017; 주재선 외, 2018). 2014년 고용·임금, 물가·가계소 비, 2016년 보건과 복지, 2017년 교육과 문화, 2018년 안전·폭력, 정보·통신 분야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통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주재선 외, 2018).

저출생·고령사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고용·임금, 물가·가계소비, 보건과 복지, 교육과 문화, 안전·폭력, 정보·통신은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다. 그동안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 제3장의 취지와 분석 대상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 분석 대상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와 결과표를 분석한다는 분석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이 보고서의 제3장 제4절의 연구 내용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국가승인통계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아직저출생·고령사회 분야를 특정하여 교차성까지 반영한 성인지적 분석과개선 방안 논의는 이뤄진 바가 없어서 이를 이 보고서에서 하고자 한다.

저출생 대응 전략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홍승아, 최인희, 김난주, 김지미(2018)와 정재훈 외(2017)의 연구가 있 다. 홍승아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성평등 관 점에서 저출생 대응 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

해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와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25~44세 남성과 여 성을 대상으로 가족, 일, 삶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30대를 대상으 로 한 FGI를 하여 행복 결정요인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젠더 관점에 서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전략이 출산율 회복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해 삶의 질 제고, 성평등사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의 정책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여성의 취업에 소극적이었으며, 자녀 양육이 영유아에 집중되었고, 돌봄에서의 성별 역할 분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 계를 지적했다(홍승아 외. 2018).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고용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가족 내 성평등 한 역할분담.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평등지수 개발. 가족 구성의 다 양성과 선택권 보장,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노동시장 내 성 격 차 해소(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여성 고용환경 개선, 남성 표준노동자모델 에서 가족책임이 있는 노동자모델로 변화), 돌봄 연속성 강화(가족 내 평 등한 돌봄 분담, 정부-지역사회-학교-가족의 연계체계 구축)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도 홍승아 외(2018) 연구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과제를 그대로 계승한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홍승아 외(2018) 연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저출생·고령사회의 거시적인 현상, 시행계획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 단위의 제도,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이라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룬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관점도 세대와 계층의 교차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점이 있다.

주재선 외(2016)의 연구와 홍승아 외(2018)의 연구를 먼저 소개 및 정리했지만, 선행 참고자료로서 이 보고서에 가장 큰 시사점을 준 것은 정

재훈 외(2017)의 연구이다. 정재훈 외(2017)의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생 부문의 패러다임, 비전, 목표, 중점과제를 성별 욕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 조치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임신· 출산지원,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했으며, 출 산 주체로서 다양한 가족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저출생 관련 예산도 성인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예산 구조의 재편성과 이 를 할 수 있게 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을 비전과 목표에 명기, 합계출산율의 양적인 목표 설정 폐기, 젠더 관점에서의 세부 과제 재편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임신·출산에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의 전환, 모성건강을 넘어서여성 건강 증진체계 구축, 젠더 관점에서의 관련 연구 및 통계 생산 강화, 청소년기를 포함한 생애주기 여성 건강 지원 추진체계 구축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남녀의 공평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 고용 활성화, 성평등적 남녀 일·가정 양립, 노동시간 단축, 가족친화기업 문화 정착,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넘어선 포괄적 대책, 자녀 양육기에서 전 생애주기로일·생활 양립 지원의 패러다임 확대도 주장했다. 포용적 가족관 확산을위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으로분절적인 지원체계 개편,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 비전 제시를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관리 주체로 여성가족부와 저출산 위원회의 협업 구조를 제안하고, 저출생 예산 개념의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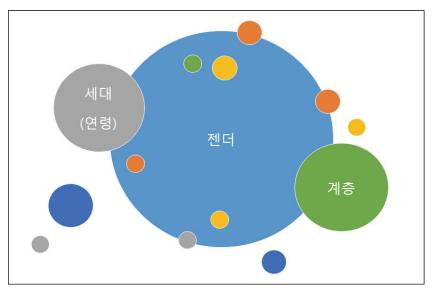
한편, 김영미(2018)의 연구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영미(2018)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생산권 보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생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적

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혼인 지위와 무관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재생산 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저출산 담론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 시했다.

저출생 영역의 기본계획으로 한정했을 때, 이 보고서도 정재훈 외 (2017), 김영미(2018)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 대부분 이견이 없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고령사회 영역까지 포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젠더정책과 연계·협력·융합하여 전체사회 구성원을 평등하게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분석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3절 분석틀: 저출생·고령사회에서의 교차성

특히 영어 'Intersectionality'를 번역하여 교차성(또는 상호교차성)이라고 부르는 제3차 여성주의(The third wave of feminism)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정책을 분석하려고 한다. 1989년 미국의 흑인 여성학자 킴벌리 윌리엄스 크렌쇼(Kimberlé Williams Crenshaw)가 강력히 주장한 후 교차성은 제2차 여성주의와 제3차 여성주의를 구별하는 핵심 이론으로 발전했다. 이 과제의 분석 대상인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도 교차성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유용한 관점이자 이론이다. 교차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으로 적합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이번 보고서의 주제에 맞춰서 변용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겠다.



[그림 1-1]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교차성

교차성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젠더가 인종, 계층, 성 정체성, 연령, 종교, 국적, 장애 등 다양한 특성들과 결합되고 교차되어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산층이상의 백인 여성과 비교해서 저소득층 흑인 여성(또는 성소수자)이 겪는 차별적 경험은 계층, 인종, 성 정체성이 중첩되어 가중된다.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젠더와 결부된 여러 특성들을 세분화해서 중첩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배제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이었지만 2018년 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는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젠더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적 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특성이 다양하고 욕구도 서로 달라 젠더 관점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더라도 이제

는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모두를 포용할 수 있게 세밀한 접근을 해 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상자와 기간을 확대하고, 규모가 큰 사업 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책이 확대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공공 영역,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부모가 주로 대상자가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민간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종사 하면서 직업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적은 부모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20~30대 젊은 남성들은 결 혼 시 주택 마련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권위를 누리던 이 전 세대의 남성들과 달리 성불평등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않았는데 역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도 한다. 이렇듯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 대상자 의 상황과 인식은 성별뿐만 아니라 계층별, 세대(연령, 코호트)별로도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젠더를 중심으로 하면서 교 차성의 측면에서 정책 및 이슈마다 세대, 계층이 결합된 구조를 분석하 고. 향후 저출생·고령사회와 성평등정책이 연계·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 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인종(출신 국가), 성 정체성, 지방 등 그 밖의 특성들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당 이슈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적용 하다.

##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광의로 정의한 인구정책의 범위에는 국가 간, 지역 간 및 지역 내 인구이동, 사망 등도 들어가지만, 이 보고서에서 교차성의 젠더 관점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는 대상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다. 하지만 단지 저출

생·고령사회 정책 그 자체로만 분석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저출생·고령 사회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현상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저출 생·고령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 전반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므로 제2~7장까지의 분석 대상은 법·제도, 국내외 통계, 시민들의 인식, 시행계획, 용어, 이슈까지 층위가 각각 다르다. 그동안 한국의 저출 생·고령사회 현상과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젠더 관점이 반영된 대응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보고서 각 장에서 연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바로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에 관련된 법, 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배경, 역사, 개요를 살펴본다. 나아가 젠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한편, 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배경, 경과, 현황, 내용 등 개요를 정리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과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저출생·고령사회 변화를 젠더 관점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현상을 보여 주는 기존 통계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를 성별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인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또한, 국내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의 연도별 변화도 성별로 구분해서 특징을 밝혀낸다. 그다음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분야 국가승인조사·통계를 교차성의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은 조사·통계의 경우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등록되어 있는 28개(저출생 영역 19개, 고령사회 영역 9개) 국가승인통계이다. 국가승인통계별로 조사 대상, 조사표, 결과 공표에서 젠더와 세대, 계층 간의 교차성을 진단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다. 조사 내용은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젠더에 따른 불평등,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흥을 위한 각 정책의 필요성이다. 조사 내용 각각에 대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 차이를 기술통계, 순위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19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어떻게 유형화되고, 성, 연령, 계층에 따라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잠재프로파일,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젠더 감수성 기대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성원의 상황까지 포용하는 인구정책과 연구를 하는 데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그동안 사회적 화두였던 저출생 현상과 정책에서의 젠더 이슈를 심층 논의한다. 일단 저출생 사회현상 전반에서의 핵심적인 젠더 이슈, 젠더 관점에서 문제가 된 역사적 배경, 쟁점, 개선 방향 제안을 한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의 젠더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생 영역의 성차별적인 용어 현상과 쟁점, 성차별적 언어 개선을 위한 제언도 한다.

제6장에서는 그동안 활발히 논의되어 온 저출생 정책에서의 젠더 이슈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고령사회 정책에서의 젠더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향후 사회적인 젠더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들을 대비

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개별 이슈마다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현황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한다. 그동안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이었던 수명, 빈곤, 건강, 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과 관련된 젠더 이슈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기존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새로운 정책의제도제시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제2~6장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한 다음 종합적 인 결론을 내린다.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제2절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과 제도

#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 법과 제도

제2장에서는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리한다. 이를 정리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세부 사업들이 이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도입되었고 시행 및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도 세부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개정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 목표, 과제, 추진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발전해 온 연혁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제1~2절에서는 단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혁과 내용만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제3절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해 온 선행연구들의 내용, 결과, 정책 제언을 고찰하고 이 연구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바를 알아본다.

##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과 제도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연혁

## 1) 연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표 2-1〉참조). 이후 총 5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이르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법제처, 2019. 6. 10. 검색). 이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계획에 이어 평가 등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2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개정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2010년 3월에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변경했다. 2012년 2월에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 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 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의 민간 참여도 유도하게 했다. 2012년 5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 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했다. 또한,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 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교육도 하게 했다.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 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령을 재정비했다(법제처, 2019. 6. 10. 검색). 2014년 3월에는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의 법령 항목을 변경했다. 개정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요 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였다. 여기에서 **'연령 단계별'을 '성별·연령별'로 변경**했다. 이는 국 민의 건강상의 특성과 건강 위험요인이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젠더 관점이 반영된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 가를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별과 연령 간의 교차성과도 맞 닿아 있다.

#### 2) 제더 관점에서의 비평

2014년 일부 개정에서 성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성평등을 주요한 목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이고 하위 조항에 속한 저출산 대책(제2장 제1절)들과 고 령사회 정책(제2장 제2절)들이 간접적으로는 성평등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낼 수는 있지만, 성평등 구현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들은 잘 드 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의 "국가 및 지장자치단 체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는 여성 노인은 곧 취약계층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관점이 투영되 어 있는데 이러한 문구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표 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개정 일시	시행 일시	제·개정	제·개정 내용
2005. 5. 18.	2005. 9. 1.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8. 2. 29.	2008. 2. 29.	일부 개정	<ul> <li>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 기능 수행</li> <li>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가족부 장관</li> </ul>
2010. 1. 18.	2010. 3. 19.	타법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2011. 8 .4.	2012. 2. 5.	일부 개정	•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2012. 5. 23.	2012. 11. 24.	일부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함.
2014. 3. 18.	2014. 3. 18.	일부 개정	•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연령 단계별→ <b>성별</b> ·연령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19. 6. 10. 검색.

##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조문

분류	조문		
I. 총칙	<ul> <li>목적</li> <li>기본이념</li> <li>정의</li> <li>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li> <li>다른 법률과의 관계</li> </ul>		
	저출산 대책	<ul> <li>인구정책</li> <li>인구교육</li> <li>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li> <li>모자보건의 증진 등</li> <li>경제적 부담의 경감</li> </ul>	
Ⅱ.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	고령사회 정책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제     취약계층노인 등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 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 친화적 산업의 육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업무의 협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국회보고	
Ⅲ. 보칙	전문인력의 양성     조사 및 연구     민간의 참여     인구의 날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원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19. 6. 10. 검색.

《표 2-2》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총칙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기본 방향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아울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3장은 전문인력의 양성, 조사 및 연구, 민간의 참여, 인구의 날,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보칙이다. 1~3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다.

## 1) 총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목적'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본이념'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정의'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의미한다. '국민의 책무'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 정부로 칭함)가 시행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게 해야 함을 말한다.

### 2)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

## 가)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은 (1) 인구정책 수립·시행, (2) 인구교육, (3) 자녀의 출산 과 보육 등, (4) 모자보건의 증진 등,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5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1) 정부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국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해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모자보건의 증진 등'을 위해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5)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을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 제9 조(모자보건의 증진 등)의 '모자보건'이라는 표현에 쟁점이 있다. 모자보건은 여성과 출산을 동일시하거나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따라서 이를 '생식건강' 또는 '생식보건'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생식에 초점을 맞추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은 '여성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모(母)인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고 부(父)인 남성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임신 전 단계의 난임부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고령사회 정책

고령사회 정책은 (1) 고용과 소득보장, (2)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5) 평생교육과 정보화. (6) 노후설계. (7) 취약계층노인 등. (8)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 증진, (9) 경제와 산업 등, (10) 고령 친화적 산업 육성까지 총 10개를 기 본 방향으로 정했다. (1)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 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 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 증진과 의료 제공'을 위해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강구하고,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 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을 위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 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재해와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 호하는 시책을 강구한다. (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를 위해 노 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5) '평생교육과 정보화'를 위해 모든 세대가 평 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정보의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국 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등 의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여성노인·장 애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지역 간 특수성을 반영한다. (8) 효행을 장려하여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에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9)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한다. (10) 또한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산업을 육성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자로서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한쪽 젠더에 편중된 관점이 투영된 것과 반 대로 고령사회대책에서는 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나마 2014년 개정으로 제12조 에 '성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그 외에는 제16조에 취약계층으로 '여성'노인을 규정한 것 외에 제더에 대한 고려가 발견되지 않는다.

#### 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작성한다. 내용으로는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두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서도 성평등 구현의 목표 나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로 작동하기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 추진체계의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대통령 등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는 것 외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없다.

#### 3) 보칙

보칙은 크게 (1) 전문인력의 양성, (2) 조사 및 연구, (3) 민간의 참여, (4) 인구의 날, (5) 국제교류의 활성화, (6) 지원의 6개 사항을 담고 있다. (1~2)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 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 적·사회적 파급 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생·고 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 로 정한다. (5)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석 하여 정보 교환, 공동 조사 등을 실시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6)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의 갂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보칙 전문인력의 양성(제28조), 조사 및 연구(제29조), 민간의 참여(제30조), 인구의 날(제30조의2)과 관련해서 도 시행령 수준으로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다.

# 제2절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에 이어서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다.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순으로 살펴본다.

#### 1. 양성평등기본법

### 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연혁

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인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변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 시행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근거 마련을위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게도 했다.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하고 공표하게 했다.

2015년 12월 23일 개정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성인 지 예산 실시에서 성평등지표를 활용하게 하고, 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 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 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성별 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했다. 대학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학교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은 국가기관 등에서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차별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제도 또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여성 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2018년 3월 2일 개정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하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할 때 직종·직급·고용 형태별로 남녀 고용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했다.

2018년 3월 23일에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결의안이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1325호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2018년 6월 19일에도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조치 결과는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부실기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더욱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여성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도 했다.

이와 같이 2014~2018년 9차례에 걸친 잦은 개정이 있었고, 경제활동 참여(제24조)에서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완 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기본계획과의 협력 강회를 위한 개정 사항은 부족했다. 개정된 제24조(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임신·출산·육아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의 육아 책임은 적고 부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3〉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개정	시행	제·	주요 제·개정 내용		
일시	일시	개정			
2014.	2015.	전부	<ul> <li>법률 제명을「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li> <li>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포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li> <li>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및 제10조).</li> <li>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li> <li>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li> <li>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함(제38조).</li> <li>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제39조).</li> </ul>		
5. 28.	7. 1.	개정			
2014. 11. 19.	2015. 7. 1.	타법 개정	안전행정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		
2015. 6. 22.	2015. 12. 23.	일부 개정	<ul> <li>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함(제7조 제4항 신설).</li> <li>여성가족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협의하여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2항).</li> <li>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제4항 신설).</li> <li>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관한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li> </ul>		

개정	시행	제·	주요 제·개정 내용
일시	일시	개정	
			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19조 제5항 신설).  •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 제6항 제5호 신설)
2016. 12. 20.	2016. 12. 20.	일부 개정	•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를 대상 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 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제24조 제1항)
2017.	2017.	타법	행정자치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7. 26.	7. 26.	개정	안전행정부 장관→인사혁신처장
2018.	2018.	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성별에 따른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용 목표 비율을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직원 현황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1조)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함
3. 2.	3. 2.	개정	
2017. 12. 12.	2018. 3. 13.	일부 개정	•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 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018.	2018.	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평가법
3. 27.	9. 28.	개정	
2018. 12. 18.	2019. 6. 19.	일부 개정	<ul>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제18조 제1항).</li> <li>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할 조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을 확대함(제31조 제1항).</li> <li>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1조 제3항 및 제7항).</li> <li>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 신설).</li> </ul>

자료: 법제처홈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 2019. 9. 23. 검색.

#### 나.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이념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장 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3장 양성평등계획 기본시책으로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성 주류화 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을 실 시하도록 한다. 양성평등 참여를 위해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 동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고. 모·부성의 권리와 일·가 정 양립을 지원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 게 지원하고, 여성 인적자원도 개발·관리·육성한다.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성차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성희 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을 하 거나 관련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날, 여성친화도시 등을 지정한다. 4장 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와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5장 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6장은 보칙이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표 2-4〉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조문

분류	조문			
I. 총칙	목적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등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수립 등       •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분류		조문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정책 촉진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등
Ⅲ. 양성평등계획 기본시책	참여	석극적 조치 등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참여     정치 참여     정치 참여     경제활동 참여     모·부성의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한 가족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여성진화도시     국제협력     평화·통일 과정 참여
IV. 양성평등기금	<ul><li>기금의</li><li>기금의</li><li>기금의</li></ul>	용도
V.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ul> <li>한국양성</li> <li>한국여성</li> <li>여성인력</li> <li>여성사보</li> <li>비영리법</li> </ul>	남물관  인·비영리민간단체
VI. 보칙	<ul><li>권한의</li><li>국회 보</li></ul>	고 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성평등기본법' 2019. 9. 23. 검색.

#### 1) 총칙

1장 총칙은 (1) 목적, (2) 기본이념,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국가 등의 책무, (5) 타법과의 관계로 나뉜다. (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4) '국가 등의 책무'로는 국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저출생·고령사회의 연계 강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9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제10조)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는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가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된다. 그러나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시행령 제8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장에 보건복지부 장관만 포함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은들어가 있지 않아 협조 요청을 하고 받아들일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제10조) 제1~2항에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내용·방법을 개정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양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 전문인력을 둔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저출생·고령사회와의 연계 강화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제11조)와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제12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시행령 제10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항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전담 전문인력을 두고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 3) 양성평등정책 기본시책

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은 가. 정책 촉진, 나. 참여, 다.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나뉜다. 우선, 가. 정책 촉진은 다시 (1) 성 주류화 조치, (2) 성별영향평가, (3) 성인지 예산, (4) 성인지 통계, (5) 성인지 교육, (6)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1) 성 주류화조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집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 '성인지 통계'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 '성인지교육'은 모든 사회 영역의 법령, 정책, 관습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6)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과문화, 여성의 인권과 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제3장)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의 성 주류화 조치(제14조),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제19조)이 모두 저출생·고령사회의 성평등 구현의 목표 달성에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양성평등 참여는 (1) 적극적 조치 등, (2) 정책결정 과정 참여, (3) 공직 참여, (4) 정치 참여, (5) 경제활동 참여, (6) 모·부성의 권리 보장, (7) 일·가정 양립지원, (8)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9)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2)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3) '공직 참여', (4) '정치 참여', (5) '경제활동 참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7)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 (8)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9) 여성인재를 관리 육성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의 내용 중에서 경제활동 참여(제24조) 제3항과 제4항은 2018년 3월 2일에 개정된 내용이지만 제25조(모·부성의 권리보장)와 충돌되는 사항이 있어 부성권 반영을 위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4항에서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이어지는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부성권을 모성권과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대상을 어머니로만 한정함으로써 아버지인 남성의 육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돌봄을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대가 영유아 또는 아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부모인 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은 명시되지 않아 육아를 돌봄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지원(제26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26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 생애주기 중에서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들만 나열되어 있고, 고령자를 돌보는 자녀세대를 위한 제도나 어린 자녀가 없는 중·고령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은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다.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은 (1) 성차별의 금지, (2) 성폭력·가정폭

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 치, (4) 성희롱 실태조사, (5) 복지증진으로 구성된다. (1)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고,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3)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활용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의료에 있어 양성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제29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제30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1조), 성희롱 실태조사(제32조), 복지증진(제33조), 건강 증진(제34조)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련 사건, 사고, 문제를 예방 및 교육하고 복지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대상의 범위 측면에서 포용적이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제29조에서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 만 제33조 복지증진에서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항).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 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여성으로 한정 하여 복지증진과 건강 증진의 대상에서 남성과 성소수자를 배제한다. 또 한, 제34조(건강 증진) 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함에도 제2항에서 "모성건 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고 하여 또다시 대상을 여성만으로 한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다고 했을 때 모성건강을 부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불필요한데도 이를 덧붙여여성의 임신·출산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다른 생애주기가 잘 드러나지 않게 한다.

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은 (1) 양성평등한 가족, (2) 양성평등 교육, (3) 양성평등 문화 조성, (4)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5) 여성친화도시, (6) 국제협력, (7) 평화·통일 과정 참여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1)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2) 가정, 학교, 국공립 연수기관 등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다. (3)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 (4)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5)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6)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고, (7)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야 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여성친화도시(제39조) 제1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한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라고 했음에도 바로 뒤이어 돌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의 명칭을 성평등친화도시와 같은 목표가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로 한정한다. 이는 마치 돌봄이 여성의 역할이고 지역 차원에서 여성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돌봄의 책임 측면에서 성불평등하다.

#### 4)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 사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한다. 기금의 회계업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 5)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사박물관도 그 설치 및 운영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아닌 여성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명명함으로써 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범위를 제한시키는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2. 성별영향평가법1)

# 가.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법은 총칙,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sup>1)</sup>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조항과 각 조항의 제·개정 시기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및 지원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1) 목적, (2)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2장인 성별 영향평가의 실시에서는 (1) 대상, (2) 고려 사항, (3) 시기, (4) 평가서의 작성 등, (5) 결과의 반영, (6) 특정성별영향평가, (7)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8)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9)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을 명시하고 있다. 3장인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에서는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4) 교육, 자문, 평가기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으로 구성된다.

(표 2-5)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조문

분류	조문		
I. 총칙	<ul> <li>목적</li> <li>정의</li> <li>국가 등의 책무</li> <li>다른 법률과의 관계</li> </ul>		
II.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ul> <li>대상</li> <li>고려 사항</li> <li>시기</li> <li>평가서의 작성 등</li> <li>결과의 반영</li> <li>특정성별영향평가</li> <li>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li> <li>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li> <li>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li> </ul>		
Ⅲ.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교육, 자문, 평가기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성별영향평가법' 2019. 9. 23. 검색.

#### 1) 총칙

성별영향평가법의 (1) '목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성별영향평가의 '정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국가의 책무'로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1)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 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고려 사항'으로는 ①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② 성별 수혜 분석, ③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④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3)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의 경우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4) '작성 방법'으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때에 제출받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출받은 평가서의 검토의견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다. (5)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① 시행 중인 법령, ②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7)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항목으로는 ① 시행 중인 조례·규칙, ②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지위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 (8)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하고 판단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어 ①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④ 성별영향평가 결과와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⑤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또한 '지방성별평가위원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

다. (3)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①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④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⑤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4)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정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공익법인 중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을 '성별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방인'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성별영향평가법은 법률명에서 성소수자를 확연하게 배제시키지는 않았고, 대상을 여성만으로 국한한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교차성 측면에서 보완될 부분들이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고려 사항(제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규정하여, 성별이 다양한 다른 특성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서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이라고 하

여 젠더와 중첩되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특성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나 성별영향평가는 단지 성별만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

#### 1) 배경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완료되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1)'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정·보완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성평등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경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위해 2016년 9~10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2017년 12월 양성평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sup>2)</sup>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1)을 참고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함.

#### 3) 현황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다.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다. 총 6개의 대과제, 22개의 중과제, 70개의 소과제로 진행되며 추진 기관은 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대과제별 수립 방향으로는 '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와 온라인상의 성차별 개선 및 남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를 강화하고, 대국민 접점에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자 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돌 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여성집중 직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정책 영역 을 확대하여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전문직 직능단체 등 의 여성 지위 강화를 위한 과제를 보완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남성 의 가사·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를 개선한다.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 분야별(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신종 여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성인지적 관점의 보건의료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 고, 부처별 성평등 목표 실현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성인지 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한다(여성가족부, 2018, p. 12).

대과제별 주요 핵심 과제로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에서는

(1)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을 위한 교원 교육 강화, (2)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3)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담고 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에서는 (1) 전 지방공기업으로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 확대, (2)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AA 부진 사업장에 성별 임금 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3)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담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에서는 (1)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공개 및 양성평등 경영 지원, (2)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및 실시, (3)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담고 있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에서는 (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 확대, (3)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 간 단계적 확대, (4)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담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에서는 (1)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2)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부·처·청' 관리·감독 강화 및 사업장 내 예방·대응장치 강화,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연구소 설치 등기념사업 추진, (4)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을 담고 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서는 (1)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3)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체계 마련을 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p. 16).

〈표 2-6〉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항목	내용				
비전	• 여성과 남성이	•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목표	<ul> <li>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li> <li>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li> <li>일과 생활의 균형</li> <li>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li> </ul>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ul> <li>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li> <li>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li> <li>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li> <li>양성평등 시민 교육의 실효성 제고</li> </ul>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ul> <li>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li> <li>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li> <li>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li> <li>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li> </ul>			
정책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 확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인지적 건강 증진 기반 강화			
	양성평등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정비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p. 13.

#### 4) 저출생·고령사회와 관련한 평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성평등이 수립 방향이고, 목표로 한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건강 증진 등과 관계된 정책과제 다수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어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두 기본계획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방안의 측면으로도 협업이 활발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짚어 보겠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그 자체의 비전, 목표, 분야별 추진 방향, 주요 핵심 과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여 이견이 없지만, 저출생·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목표, 추진 방향, 핵심 과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에는 평등과 더불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이가 들어 가는 생애과정,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서도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영역에 포함되거나 밀접한 핵심정책과제들은 많지만, 고령사회대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노년기 또는 중고령자의 젠더, 섹

수얼리티, 성평등이 공론의 장에서 의제화되지 못하고, 자칫 성평등이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인 것처럼 대상과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생애과정 관점과 중고령자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3)

#### 1) 배경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배경으로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수립됨에 따라 여성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채택되었다.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했다(국가기록원 2019. 9. 26. 검색).

#### 2) 경과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04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7년에는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됐다. 2008년에는 성별영향평가 자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16개 지역

<sup>3)</sup> 국가기록원의 성별영향평가와 여성가족부(2019)를 재구성했다.

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법적인 근거는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실시하면서 추진 근거 방안이 마련되었고,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를 통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3) 현황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전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운영의 총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한다. 2018년 성별영향평가추진 기관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305곳이다(여성가족부, 2019). 성별영향평가추진 과제는 총 3만 3195개로, 법령이 58.9%, 사업이 40.5%, 계획이 0.6%를 차지한다. 이 중 성차별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특별한 개선 없이 원안 그대로 동의한 과제가 1만 7231개(51.9%)이고, 개별기관이 분석평가 과정을 통해 자체 개선 방안을 제출한 과제가 6204개(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평가 결과에 대해별도의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한 과제는 3093개(9.3%)이고, 이 중 개선 의견을 수용한 사례는 85.1%인 26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 제외로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는 6667개 (20.1%)이다.

개선 사항 없음이 가장 많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비율이 79.0%(1475개)에 달했다. 자체적으로 개선안에 대한 동의가 가장 많은 대상은 광역 자치단체로 29.9%(1033개)였다. 여성가족부 혹은 성별영향 평가의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한 대상 또한 광역자치단체였고, 개선 의견수용률이 가장 좋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96.6%)이었다.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이 제외로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대상이 가장 많

은 곳은 시·도 교육청으로 46.9%(295개)에 달했다.

〈표 2-7〉 2018년 성별영향평가 대상별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	대상 과제 수 <sup>1)</sup>	개선 사항 없음 <sup>2)</sup>	자체 개선안 동의 <sup>3)</sup>	개선 의견 <sup>4)</sup>	개선 의견 수용률 <sup>5)</sup>	기타 <sup>6)</sup>
전체	33,195	17,231	6,204	3,093	2,631	6,667
	(100.0)	(51.9)	(18.7)	(9.3)	(85.1)	(20.1)
중앙	1,867	1,475	64	89	86	239
행정기관	(100.0)	(79.0)	(3.4)	(4.8)	(96.6)	(12.8)
광역	3,457	1,513	1,033	355	302	556
자치단체	(100.0)	(43.8)	(29.9)	(10.3)	(85.1)	(16.1)
기초	27,242	14,040	5,032	2,593	2,193	5,577
자치단체	(100.0)	(51.5)	(18.5)	(9.5)	(84.6)	(20.5)
시·도	629	203	75	56	50	295
교육청	(100.0)	(32.3)	(11.9)	(8.9)	(89.3)	(46.9)

- 주: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법령·계획·사업 중 성별영향평가(GIA) 시스템에 등록된 과제 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2)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성 차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3)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 개선 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4)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 개선 의견 을 제시한 과제
  - 5) 개선 의견 통보 과제 중 의 '수용' 및 '일부 수용' 과제(개선 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 수용)과제 수/개선 의견 과제 수 × 100)
- 6)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 7.

특정성별영향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에서 성평등이 취약한 정책 등을 개선 권고하고자 만든 평가이다. 2018년 현재 건강 증진 정책,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관련 제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정책, 법정 중장기 계획, 생활체감형정책 Ⅰ, 생활체감형정책 Ⅱ, 사회보장정책,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게임문화산업, 노인장기요양인력인 10개 정책 중 개선 권고 과제는 37개였고, 이 외에 5개의 정책에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나왔다.

⟨표 2-8⟩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개선 권고 현황

대상 정책명		개선 권고 과제 수	세부 내용			
건강 증진 정책		6	① 월경 장애 관련 전문 의료인 상담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추진, ② 산부인과 의료인력 양성 과정에 임신중절에 관한 교육 포함, ③ 성폭력·가정폭력 등 실태조사 조사 항목에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문항 구체화, ④ 생애주기별 여성 체육활동 지원 활성화,⑤ 성별 건강 지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공표,⑥ 성인지적 여성 건강 증진 정책 수립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관련 제도		5	① 근로자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고용과 관련된 공식 조사 및 행정통계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고용 형태 공시제, 고용보험 DB 등), ②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기업 인센티브 및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 ③ 시행계획서에 형식적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 등을 추가할 것(여성 고용 관련 특화사업·부서 운영 여부, 이사회·위원회 여성 비율 등), ④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자료와 시행계획서상 기준일을 통일할 것, 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시행 모형을 AA 시행계획 코칭서비스 또는 기업 자가진단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부단절 여성 업지원정책	1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			
법정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4	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남성 전용 다중이용 업소 현황,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의 성별 분리 통계 작성, ②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뿐만 아니라 이용자특성(성별 등) 고려, ③ 여성 전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소방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 안전점검자의 참여를 의무화, ④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			
중 장 기 계 획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5	①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여성이 참여 가능한 건설기능인 력 양성 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②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사업 추진 시 여성 훈련생 모집 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훈련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③ 여성 건설 기능인력 강사를 양성하고, 여성 강사 인력풀 (pool)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할 것, ④ 건설현장에서 성희롱·성차별·성폭력 등(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등을 활용하여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성평등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고용 개선전문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여성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			

대	상 정책명	개선 권고 과제 수	세부 내용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2	① 영화산업의 성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행정통계 및 실태조사에 서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 표할 것, ② 영화계 성평등 환경조성 업무의 전문적·체계 적·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성평등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		
LI.	자유학기제 활동	2	① 성평등한 진로체험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 ② 자유학기제 참여 주체의 성평등 의식을 높 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		
생활 체 감 형 정 책	배우자 유산·사산 특별휴가 도입	2	①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②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		
Ι	군인 한부모 근무지 신청제	1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한부모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부모 군인에 대하여 근무지 신청제도를 마련 하고, 기존 자녀 양육 지원 제도(당직근무 면제, 탄력근무 제 등)의 확대		
- 생 활 체 감	성불평등 법령 용어	9	① 가족 관련 분야 법령, ② 성범죄 분야, ③ 여성 건강 및 재생산권 분야, ④ 노동 관련 분야별로 나누어 개선 권 고 과제를 도출		
<sup>심</sup> 형 정 책 	납북관계 관련 법제 및 사업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예정		
사회보장정책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예정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예정		
게임문화산업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예정			
노인?	장기요양인력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예정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 21.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제 장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 제2절 성평등 관련 국제 통계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 제4절 젠더 관점에서 조사·통계 분석 및 보완 방안

# 3

#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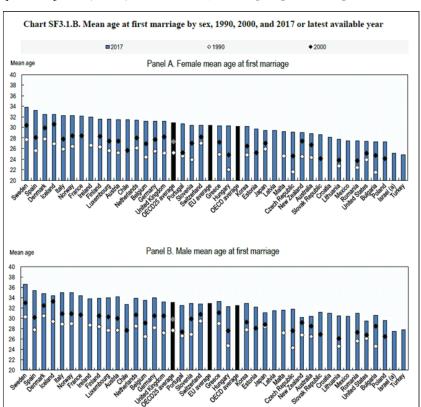
제3장에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젠더 관점에서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보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구정책통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등의 자료집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출산, 혼인·이혼, 사망 보도자료가 발표되고있지만 이러한 통계들이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를 성별 격차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제1절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제2절에서는 한국의 상대적인 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국제 통계자료를 비교한다. 제3절에서는 국내의 저출생·고령사회 관련통계의 연도별 추세를 성별로 구분하여 변화에서의 성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향후 국내 저출생·고령사회 분야 국가승인조사·통계가 교차성이 가미된 젠더 관점에서 산출, 관리, 공표될 수있게 각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

# 1. 결혼

국제 통계는 생애과정에 따라 결혼, 출산, 일·가정 양립(노동), 수명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그림 3-1]을 통해 초혼 연령을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2017년 한국 남성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성별 차이는 2.7세였다. 2017년 OECD 국가의 남성 평균은 32.5세, 여성은 30.2세, 성별 차이는 2.3세인 것과 비교하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한국 남성은 0.4세 높고, 한국 여성은 평균 수준이며, 성별 차이는 0.4세가 더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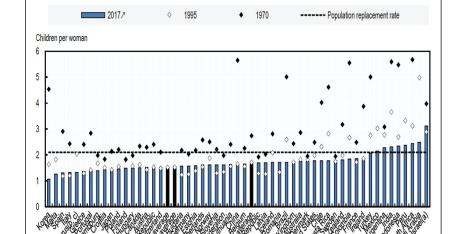


[그림 3-1] 1990, 2000,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자료: OECD Family database, Marriage and divorce rate p.3(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 2. 출산

이어서 [그림 3-2]에서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7년 한국이 1.05명으로 52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에는 9번째로 높았다가 1995년에는 28번째 순위로 하락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세에서의 감소 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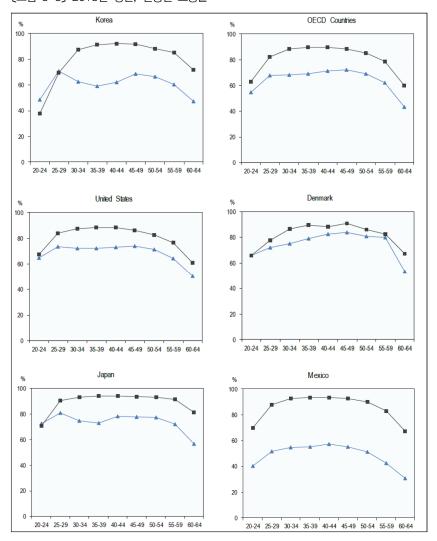


[그림 3-2] 1970, 1995,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합계출산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s p.2(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 3. 일(노동)

[그림 3-3] 2018년 성별, 연령별 고용률



주: 파랑색 세모가 여자, 검정색 네모가 남자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p.2(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위 [그림 3-3]은 2018년 한국, OECD 평균, 미국, 덴마크, 일본, 멕시코의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를 보여 준다. 한국 남성은 20~24세에고용률이 가장 낮고,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상승 후 40대 후반까지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다가 50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반면, M자 곡선이라 불리는 한국 여성은 25~29세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출산 및 육아기인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낮아지고, 다시 40대 후반에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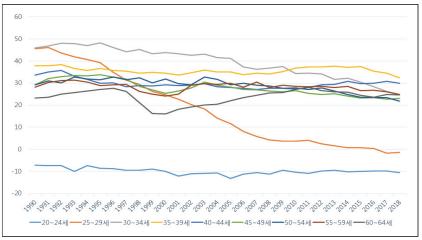
일본에서도 30대 여성 고용률이 소폭 감소하긴 하지만, OECD 평균, 미국, 덴마크,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한국 여성들과 같이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고용률 격차가 더 커지는 양상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덴마크, OECD 평균,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 여성들의고용률 수준이 낮고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도 큰 문제가 있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20대 초반에 여성이 남성보다고용률이 높은 특징도 발견된다.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남성 고용률 - 여성 고용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990~2018년 추세를 [그림 3-4]로 나타냈다. [그림 3-4]에서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1990년대 초반~2009년까지는 30~34세에서 가장 컸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35~39세에서 가장 커졌다. 이는 과거 30대 초반에서 최근 30대 후반으로 연령대가늦춰지는 변화는 있었지만 출산과 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 그 자체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40대 이상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20~30%대의 큰 차이로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20대 연령대에서의 고용률 성별 격차 변화도 눈에 띈다. 20~24세에서 는 1990년대 이후 줄곧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약 10%포인 트 낮았으나, 25~29세 연령대에서는 1990년 남성의 고용률이 46%포인 트나 높았다가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2014년 이후에는 차이가 1%포인트 이내였고, 2017년 이후에는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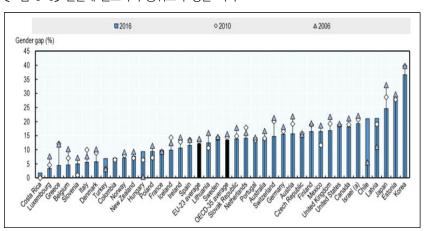
[그림 3-4] 1990~2018년 연령대별 고용률의 성별 격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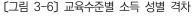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p. 2(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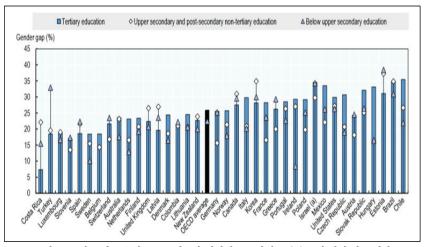
다음 [그림 3-5]는 중위소득의 성별 격차를 보여 준다. 2016년 한국은 36.7%로 가장 큰데 이는 OECD 35개국 평균 13.5%보다 2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2006년 39.8%와 비교했을 때도 3.2%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별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두 번째 [그림 3-6]은 2016년 중위소득의 성별 차이를 교육수준별로 구분한 것인데, 한국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그림 3-5]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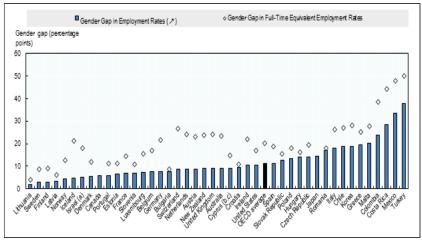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주: 2016년 또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전일제 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성별 임금 격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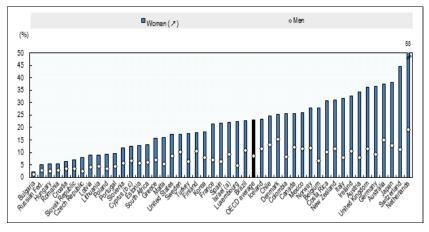
[그림 3-7] 고용률과 전일제(full-time) 고용률의 성별 격차



주: 2018년 15~64세의 고용률과 정규직 고용률의 성별 차이.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p.2 (www. 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8] 시간제(part-time) 고용률의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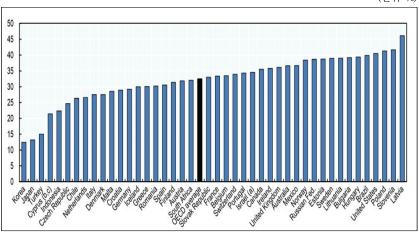
주: 전체 고용 대비 성별 시간제 고용.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p.3(www.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7]을 보면, 한국의 고용률 성별 격차도 전일제에서 28.3% (2018년 남성 84.2%, 여성 56.0%)로 크다(OECD 평균 남성 76.7%, 여성 56.5%). 반면 [그림 3-8]을 보면,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여성은 18.2%로 남성 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OECD 평균 여성 23.2%, 남성 8.7%). 또한 [그림 3-9]를 보면, 2017년 한국 여성은 관리직 비율도 12.5%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32.5%). 한편 [그림 3-10]을 보면, 임시직에 근로하는 한국 여성의 비율은 23.5%로 남성 19.4%보다 4.1%포인트 높은데, OECD 평균(여성 13.8%, 남성 12.2%)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9.7%포인트 크다.즉, 한국 여성은 고위직에서의 비율이 낮고 불안정한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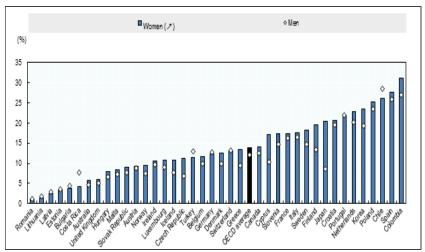
#### [그림 3-9] 여성의 관리직 고용 비율

(단위: %)



주: 2017년 여성관리자 비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p.6(www. 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10] 임시근로의 성별 격차

주: 2018년 임시고용직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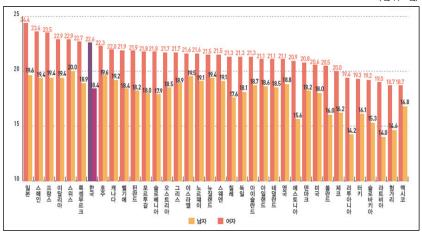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p.7(www. oecd.org/els/family/database에서 2019. 10. 18. 인출)

## 4. 수명

[그림 3-11]에서 OECD 국가 65세 기대여명(2016년 또는 최근 연도)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한국의 여성 기대여명은 22.6세이고, 남성 기대여명은 18.4세였다. 한국의 여성 기대여명은 OECD 국가 중에서 7번째로 높은 순위인 반면, 남성 기대여명은 중간 이하인 19번째를 차지했다. 한국의 65세 여자와 남자 간 기대여명 차이는 4.2세인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큰 편인 것이다. 남성의 기대여명이 짧은 것은 남편이 연상인 부부가 많은 한국의 상황에서 배우자인 여성 노인의 사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표 6-1〉 참조).

[그림 3-11]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2016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년)



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는 2015년, 뉴질랜드는 추정값(Estimated value)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에서 2019. 1. 4. 인출)

## 5. 성별로 구분한 저출생·고령사회 국제 통계의 시사점

국제 통계를 활용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저출생·고령사회 속 한국의 남녀 간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를 겪으며 초혼 연령은 급격히 상승하고 합계출산율은 하락 후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막상 초혼 연령의 성별 격차는 그다지 변동되지 않았다. 둘째, 일(노동) 영역에서 M자 곡선으로 불리는 한국 여성의 임신·출산·양육기 경력단절이 문제로 제기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는 2018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단지 연령대별 고용률뿐만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 교육수준별 소득, 전일제·시간제·임시근로 비율, 관리직 고용 비율에서 한국 여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20대 후반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던 고용률 격차가 빠

르게 줄어들다가 2017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진 것이 주목되지만,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의 고용률 성별 격차로 한정했을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변화라 무조건적인 문제로 볼 사항이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고용률 절 댓값도 함께 고려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대 여명의 성별 격차가 크고 남성의 기대여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라 남성의 기대여명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성평등 관련 국제 통계

각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통계에는 유엔 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세계경제포 럼의 성 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유리천장 지수(GCI: Glass-ceiling Index)가 있다. 제2 절에서는 이 세 개의 성평등지수를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대적인 성평등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겠다.

## 1.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성불평등 지수(GI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부터 각국의 성별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수로 여성의 인권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알기 위해 여성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고려했다. 지수의 지표 구성은 총 3개 영역 5개 지표로 이루어지며, 지수의 점수는 0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다른 성별 지표와 비교했을 때 특이점은 첫째, 통상 성평등 비교를 위해 남성과의 대등한 지표를 분석하나, 여성의 건강만 살펴봄으로써,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와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산은 건강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발 기회를 제한하여, 저임금 및 저숙련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둘째, 한 국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평가하므로 선진국이 높은점수를 받기에 유리하다(권혜련, 2017).

〈표 3-1〉 성불평등 지수의 지표 구성

영역	지표
אן אן בן בן.	• 모성사망비 <sup>1)</sup>
생식건강	• 청소년 출산율 <sup>2)</sup>
어서 기취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권한	• 남녀 중등교육 이상 취학 비율 <sup>3)</sup>
 노동 참여	• 남녀 경제활동 비율 <sup>4)</sup>

주: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2017): 임신출산 관련 합병으로 출생 10만 명당 사망 수.

- 2) 청소년 출산율(UNDESA, 2017):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
-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 4)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2018).
- 5) 지표별 17~18년까지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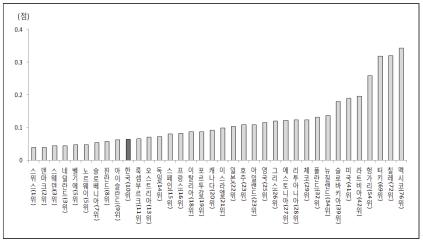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UNDP 2018년 성불평등 지수(GII) 발표', 정책뉴스. 2019. 2. 7. 검색.

국가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189개국 중 0.063점으로 10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인 수치를 보면, 모성사망비는 11명, 청소 년 출산율은 1.6명, 여성 의원 비율은 17.0%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 성은 89.8%(남성 95.6%)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이 52.2%(남성 73.2%) 였다. 한국이 10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모성 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생식건강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권혜련, 2017). 그런데 청소년 출산율은 조혼이나 교육 기회와 같은 불평등 문제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성 개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반드시 성평등지수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 지표를 제외한 정치·경제활동 면을 평가하는 여성 권한과 노동 참여 지표에서는 한국이 30위권으로 중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표 3-2〉OECD 국가의 성불평등 지수(2017년)

			생스	건강		여성 권힌	}	노동 참여		
국가명	순위	점수	모성	청소년	여성	중등교육	육 이상	경제	활동	
			시망비 시망비	출산율	의원 비율	받은 여성	인구 남성	참기 여성	i <del>듈</del> 남성	
스위스	1	0.039	5	3.0	29.3	96.4	97.2	62.9	74.1	
덴마크	2	0.040	6	4.1	37.4	90.1	91.3	59.2	67.2	
스웨덴	3	0.044	4	5.2	43.6	88.4	88.7	60.8	67.4	
네덜란드	3	0.044	7	4.0	35.6	86.4	90.4	58.0	69.2	
벨기에	5	0.048	5	5.6	41.4	96.3	95.1	60.8	67.6	
노르웨이	5	0.048	7	4.9	41.4	82.2	86.7	47.8	58.7	
슬로베니아	7	0.054	9	4.2	28.7	97.4	98.9	51.7	60.9	
핀란드	8	0.058	3	6.8	42.0	100.0	100.0	54.8	61.9	
아이슬란드	9	0.062	3	6.8	38.1	100.0	100.0	72.8	81.8	
한국	10	0.063	11	1.6	17.0	89.8	95.6	52.2	73.2	
룩셈부르크	11	0.066	10	5.2	28.3	100.0	100.0	52.3	63.5	
오스트리아	13	0.071	4	6.9	33.6	100.0	100.0	55.0	66.0	
독일	14	0.072	6	6.5	31.5	96.2	96.8	55.0	66.2	
스페인	15	0.080	5	8.6	38.6	72.2	77.6	52.2	63.8	
프랑스	16	0.083	8	8.6	35.4	80.6	85.6	50.6	60.1	
이탈리아	18	0.087	4	6.1	30.1	75.6	83.0	39.5	58.3	
포르투갈	19	0.088	10	9.4	34.8	52.1	53.4	53.3	63.8	
캐나다	20	0.092	7	9.4	30.1	100.0	100.0	60.7	69.8	
이스라엘	21	0.098	5	9.2	27.5	87.8	90.5	59.3	69.2	
일본	22	0.103	5	4.1	13.7	94.8	91.9	50.5	70.6	
호주	23	0.109	6	12.9	32.7	90.0	89.9	59.2	70.5	
아일랜드	23	0.109	8	9.7	24.3	90.2	86.3	53.0	67.3	
영국	25	0.116	9	12.5	28.5	82.4	85.2	56.8	68.1	
그리스	26	0.120	3	7.2	18.3	65.4	73.2	45.5	60.6	
에스토니아	27	0.122	9	12.6	26.7	100.0	100.0	56.4	70.3	
리투아니아	28	0.123	10	10.7	21.3	91.8	96.4	55.9	66.2	
체코	29	0.124	4	10.0	21.1	99.8	99.8	52.0	68.3	
폴란드	32	0.132	3	12.7	25.5	81.1	86.9	48.8	65.1	
뉴질랜드	34	0.136	11	20.0	38.3	99.0	98.8	63.9	74.9	
슬로바키아	39	0.180	6	22.0	20.0	99.1	100.0	52.5	67.7	
미국	41	0.189	14	18.8	19.7	95.5	95.2	55.7	68.3	
라트비아	42	0.196	18	13.5	16.0	99.4	99.1	55.2	67.3	
헝가리	54	0.259	17	19.7	10.1	95.7	98.0	47.9	64.2	
터키	69	0.317	16	25.8	14.6	44.9	66.0	32.4	71.9	
칠레	72	0.319	22	45.6	15.8	79.0	80.9	50.6	74.4	
멕시코	76	0.343	38	60.3	41.4	57.8	61.0	44.1	79.0	

자료: UNDP, Gender Inequality Index.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2019. 2. 7. 인출.



[그림 3-12] 2017년 OECD 국가의 성불평등 지수

자료: UNDP, Gender Inequality Index. http://hdr.undp.org/en/composite/GII. 2019. 2. 7. 인출.

# 2.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를 살펴본 지수이다. 이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점수로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 격차 지수(GGI)는 건강, 교육 성취, 경제 참여와 기회, 정치 참여의 4개 영역에 속하는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단순히 성별 격차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성의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녀 모두 경제 참여율이 비슷하게 낮은 후진국보다 전반적인 경제 참여율은 높으나 성별 차이가 큰 선진국의 순위가 더 낮게 나타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평등한 상태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에 있으면 순위가 올라가는 특징도 있다(조선일보, 2017. 10. 31.).

〈표 3-3〉성 격차 지수(GGI)의 지표 구성

영역	지표
	• 노동 참여율
	• 동일 업종에서의 여성과 남성 간 급여 평등 정도(설문조사)
경제 참여와 기회	• 추정 근로소득 비율
121	• 관리자 비율
	• 전문기술 종사자 비율
	• 문자해독률
그 0 원원	• 초등학급 등록률
교육 성취	• <del>중등</del> 학급 등록률
	• 상급학급 등록률
7]7]	• 출생 성비
건강	• 기대수명
	• 여성 의원 비율
정치 권한	• 여성 장관 비율
	• 지난 50년간 여성 원수 재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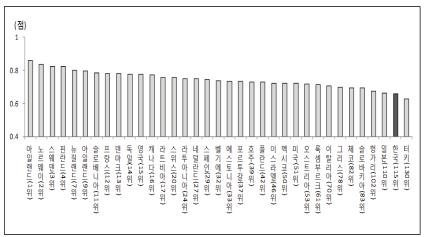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2018년 기준 성 격차 지수(GGI)를 적용하면 한국은 149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5위였다. 세부 영역별 순위를 보면,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에 서는 124위, 교육 성취 영역에서는 100위, 건강 영역에서는 87위, 정치권한에서는 92위였다. 4개의 영역 중 그나마 건강 영역만 중위권 수준이었고, 나머지 3개의 영역은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2018년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격차				세투	부 영역			
국가		수 :합)		참여와 ' 회	교육	교육 성취		건강	정치	권한
	순위	짬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아이슬란드	1	0.858	16	0.793	39	0.999	121	0.968	1	0.674
노르웨이	2	0.835	11	0.806	41	0.999	95	0.972	3	0.563
스웨덴	3	0.822	9	0.808	52	0.998	115	0.969	7	0.512
핀란드	4	0.821	17	0.786	1	1	60	0.977	6	0.519
뉴질랜드	7	0.801	23	0.761	1	1	107	0.97	9	0.472
아일랜드	9	0.796	43	0.725	57	0.996	111	0.97	8	0.493
슬로베니아	11	0.784	15	0.795	29	1	1	0.98	22	0.361
프랑스	12	0.779	63	0.685	1	1	78	0.974	10	0.458
덴마크	13	0.778	38	0.734	1	1	100	0.971	15	0.406
독일	14	0.776	36	0.734	97	0.976	85	0.973	12	0.418
영국	15	0.774	52	0.705	38	0.999	110	0.97	11	0.421
캐나다	16	0.771	27	0.748	1	1	104	0.971	21	0.365
라트비아	17	0.758	10	0.807	1	1	1	0.98	42	0.246
스위스	20	0.755	34	0.739	80	0.991	108	0.97	29	0.32
라투아니아	24	0.749	21	0.765	53	0.997	1	0.98	41	0.254
네덜란드	27	0.747	56	0.698	1	1	120	0.968	28	0.323
스페인	29	0.746	80	0.66	47	0.998	93	0.972	24	0.354
벨기에	32	0.738	49	0.714	34	1	85	0.973	39	0.264
에스토니아	33	0.734	42	0.729	1	1	42	0.979	51	0.228
포르투갈	37	0.732	44	0.721	82	0.991	54	0.978	46	0.24
호주	39	0.73	46	0.718	1	1	103	0.971	49	0.232
폴란드	42	0.728	51	0.706	50	0.998	1	0.98	50	0.23
이스라엘	46	0.722	66	0.684	1	1	97	0.971	48	0.232
멕시코	50	0.721	122	0.574	58	0.996	50	0.979	27	0.335
미국	51	0.72	19	0.782	46	0.998	71	0.976	98	0.125
오스트리아	53	0.718	81	0.658	1	1	81	0.974	44	0.242
룩셈부르크	61	0.712	60	0.693	1	1	91	0.972	67	0.184
이탈리아	70	0.706	118	0.592	61	0.995	116	0.969	38	0.267
그리스	78	0.696	64	0.684	73	0.992	99	0.971	88	0.138
체코	82	0.693	87	0.651	1	1	1	0.98	87	0.14
슬로바키아	83	0.693	83	0.657	1	1	1	0.98	91	0.135
형가리	102	0.674	68	0.68	66	0.994	42	0.979	142	0.045
일본	110	0.662	117	0.595	65	0.994	41	0.979	125	0.081
한국	115	0.657	124	0.549	100	0.973	87	0.973	92	0.134
터키	130	0.628	131	0.466	106	0.968	67	0.976	113	0.101
자료: World ed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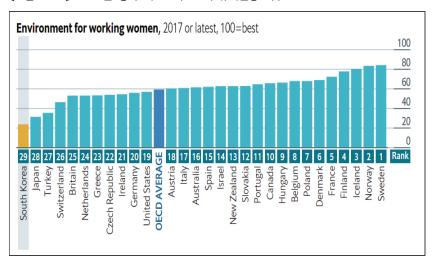


[그림 3-13] 2018년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3.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유리천장 지수(GCI: Glass-ceiling Index)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오는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는 OECD 29개 회원국들 간의 성평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10개의 영역을 지수화하여 만든 성평등지수이다. 0~100점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10개의 영역은 성별 간 고등교육비율, 노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관리직 내 여성 비율, 간부직 내 여성 비율, 여성 경영대학원 시험 응시자 수, 의회 내 여성 비율, 양육비용,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이다(세부영역별 순위는 [부그림 3] 참조).이 10개 영역의 유리천장 지수를 종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

자료: The Economist,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ling-index. 2019. 2. 8. 인출.

#### 4. 성평등 국제 통계의 시사점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 지수인 GII,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인 GGI,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인 GCI에서의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했다. 각 지표와 순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청소년 출산율과 모성사망비가 낮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은 한국이 이러한 생식건강 및 교육 성취 지표를 적용했을 때는 상위권 국가로 분류되지만, 정치, 경제, 노동지위, 자녀 양육 영역에서는 성불평등이 큰 국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정책은 정치, 경제, 노동지위, 자녀 양육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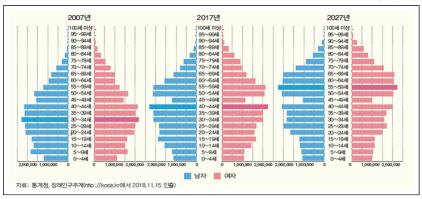
#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

국제 통계 비교에 이어서 이번 제3절에서는 그동안의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를 성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차이를 분석한다.

# 1. 인구

[그림 3-15] 2007, 2017, 2027년 인구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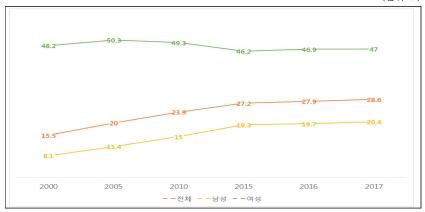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재인용.

전체적인 인구 구성의 변화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2007년, 2017년, 2027년 성별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부터 살펴보겠다([그림 3-15]). 2007년에는 10세 단위 연령대별 인구수 중에서 30~39세 연령 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다가, 2017년에는 50~59세 연령대로 높 아졌고, 2027년에도 인구수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59세가 될 전망이다. 성별로 보면, 2007년에는 0~49세 연령대에서는 남자 인구수 가 여자 인구수보다 많았다가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여자 인구수가 남자 인구수보다 많아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 비율 차이가 커지는 구 조였다.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는 2007년과 비슷하지만 여자 인구수가 남자 인구수보다 많아지는 연령대가 60세 이후로 늦춰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7년이 되면 연령대별 남녀 간 인구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70세 이상의 연령대 중에서도 8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여자인구수 초과가 여전히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6] 2000~2017년 성별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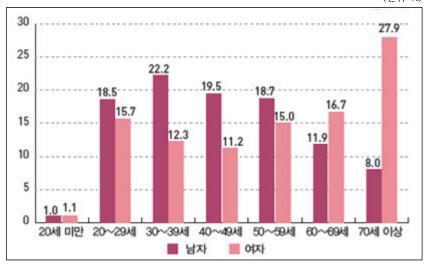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재인용.

[그림 3-16]을 보면,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7년 28.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전체와 다른 추세가 나타난다. 연도와 무관하게 1인 가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지만, 이러한 성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성은 2000년부터 48.2%가 1인 가구였다가 2005년 50.3%로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2017년에는 47%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한참 낮지만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8.1%부터 2017년 20.4%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17] 2017년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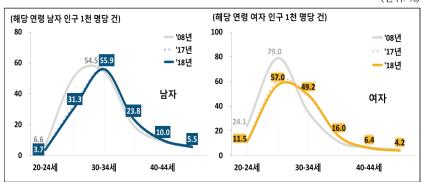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재인용.

[그림 3-17]에서 2017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을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30대에 가장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50대, 60대, 70대에서는 여성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커진다. 이처럼 1인 가구 비율도 성별과 함께 연령대가 결합되었을 때 세부적인 집단에서는 전체와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 2. 결혼

[그림 3-18] 2008, 2017, 2018년 연령대별 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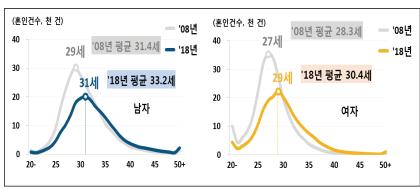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19). 2018년 혼인·이혼 통계.

[그림 3-18]에서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남성은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혼인율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30대 초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해당 10년간 변동이 적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다른 패턴을 보인다. 2008년에 비해 2018년 20대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20대 후반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 감소하다가, 30대 초중반 이후 연령대에는 오히려 2018년이 2008년보다 꽤 높은 상황이다.

[그림 3-19]를 보면, 2008년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4세에서 2018년 33.2세로 1.8세가 상승했다. 한편, 2008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8.3세에서 30.4세로 2.1세가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보다 2.8세가 높다.



[그림 3-19] 2008, 2018년 성별 평균 초혼 연령

자료: 통계청(2019). 2018년 혼인·이혼 통계.

#### 3. 출산

〈표 3-5〉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셋째 자녀 이상에서의 출생 성비가 불균형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자연성비로 회복했다.

(표 3-5) 2008~2018년 성별 출생아 수 및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단위: 천 명,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구	н						연도					
	ᆫ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ni	전체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9
출생 수	남자	240.1	229.4	242.9	242.1	249.0	223.9	223.4	224.9	208.1	184.3	167.8
'	여자	225.8	215.5	227.3	229.1	235.6	212.6	212.1	213.5	198.2	173.5	159.1
	전체*	106.4	106.4	106.9	105.7	105.7	105.3	105.3	105.3	105.0	106.3	105.4
출생	첫째	104.9	105.1	106.4	105.0	105.3	105.4	105.6	106.0	104.4	106.5	105.2
ᆯ o 성비	둘째	105.6	105.8	105.8	105.3	104.9	104.5	104.6	104.5	105.2	106.1	105.8
	셋째 이상	116.6	114.3	110.9	109.5	109.2	108.0	106.7	105.5	107.4	106.4	105.8

주: 전체는 출산 순위 미상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재인용.

### 4. 일·가정 양립

〈표 3-6〉에서 2006~2017년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06년 1만 3672명에서 2017년 9만 12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연도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남성 비율도 2006~2009년까지 1%대에 머물렀다가 2010년 2%에서 2017년 13.4%까지 상승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7년 들어 급격하게 4.9%포인트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성별 내에서 전년 대비 성장률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6~2017년 남자 육아휴직 수급자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14.5~71.2%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여자 육아휴직 수급자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06~2015년엔 8.1~55.3%로 성장 추세였다가 남자의 육아휴직 수급자가 급증한 2016~2017년에는 감소로 전환됐다.

〈표 3-6〉 2006~2017년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단위: 명)

		유아휴직 님	<b>낚자</b>	유	아휴직 여	자	
연도	수급자 수	성비	전년 대비 성장률	수급자 수	성비	전년 대비 성장률	전체
2017	12,042	13.4	58.1	78,080	86.6	-5.0	90,122
2016	7,616	8.5	56.3	82,179	91.5	-0.4	89,795
2015	4,874	5.6	42.5	82,498	94.4	12.4	87,372
2014	3,421	4.5	49.2	73,410	95.5	9.0	76,831
2013	2,293	3.3	28.1	67,325	96.7	8.1	69,618
2012	1,790	2.8	27.7	62,281	97.2	9.8	64,071
2011	1,402	2.4	71.2	56,734	97.6	38.7	58,136
2010	819	2.0	63.1	40,914	98.0	17.2	41,733
2009	502	1.4	41.4	34,898	98.6	21.2	35,400
2008	355	1.2	14.5	28,790	98.8	37.9	29,145
2007	310	1.5	34.8	20,875	98.5	55.3	21,185
2006	230	1.7	-	13,442	98.3	-	13,6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3-7〉을 보면, 가구 유형이 맞벌이인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보다 가 정관리와 가족 돌봄 행위를 하는 시간이 길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는 97.1%가 가정관리 행위를 하는 반면, 남편은 46.0%만 가정관리를 했고, 시간도 아내가 남편보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길었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는 40.8%가 가족 돌봄 행위를 했고, 남편은 19.9%만 가족 돌봄 행위 를 했으며, 하루 평균 시간도 아내가 남편보다 22분 더 길었다. 남편 외벌 이 가구는 이러한 차이가 맞벌이 가구보다 더 컸다. 남편 외벌이 가구에 서 아내는 99.3%가 가정관리 행위를 했지만, 남편은 41.4%만 했고, 하루 평균 시간도 3시간 56분 차이가 났다. 남편 외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63.4%가 가족 돌봄 행위를 하지만 남편은 26.5%만 했고, 하루 평균 시간 은 1시간 28분 차이가 났다. 아내 외벌이 가구에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가 정관리와 가족 돌봄 행위를 더 많이 했다. 아내 외벌이 가구에서 아내는 94.0%가 가정관리 행위를 했고, 남편은 78.6%가 했으며, 아내와 남편 간 하루 평균 시간 차이는 59분이었다. 아내 외벌이 가구에서 가족 돌봄 행 위는 아내의 22.2%가 했고, 남편은 15.9%만 했으며, 다른 유형들과 달리 하루 평균 시간에서의 성별 차이가 없었다.

〈표 3-7〉 가구 유형 및 행동 분류별 일 평균 가정관리와 기족 돌봄 시간 및 행위자 비율 (단위: 분, %)

가구 유형	행동 분류 -	하루 평균	균 시간(분)	하루 평균 행	위자 비율(%)
71Τ πδ	80 Em -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맞벌이 가구	가정관리	0:28	2:38	46.0	97.1
	가족 돌봄	0:13	0:35	19.9	40.8
외벌이(남편) 가구	가정관리	0:27	4:13	41.4	99.3
퍼틸이(함편) 기구	가족 돌봄	0:19	1:47	26.5	63.4
외벌이(아내) 가구	가정관리	1:26	2:25	78.6	94.0
	가족 돌봄	0:13	0:14	15.9	22.2

자료: 통계청(2015).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 5. 이혼

2005~2017년 총 이혼 건수는 2005년 12만 8000건에서 2017년 10만 6000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변화율의 차이는 작다(〈표 3-8〉참조). 총 이혼 건수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2013년 약 10~11%에서 2017년 7.1%로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에서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가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 건수보다 많다. 그렇기는 하지만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다만, 총 이혼 건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 차이가 작았던 것과 달리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그 차이가 크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 전년 대비 변화율 차이보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 건수 전년 대비 변화율 차이보다

(표 3-8) 2005~2017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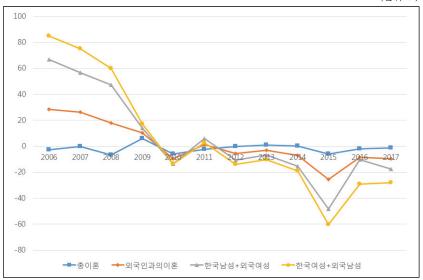
(단위: 천 건, %)

								( - 1	1 L L, 707	
	총	T 11 -1			2	य <b>न</b> ्य	0혼			
연도	이혼	전년 대비	총	전년	총 이혼	한국남자	<b> +외국여자</b>	한국여자	한국여자+ 외국남자	
عدن	건수 (천건)	비율	건수 대비 (천건) 비율		총 이혼 중 배율	- 총간 (참)	전대 율	총간 (참)	전년 대비율	
2017	106.0	-1.2	7.1	-8.5	6.7	5.2	-7.7	1.9	-10.5	
2016	107.3	-1.8	7.7	-6.5	7.1	5.6	-1.8	21	-19.0	
2015	109.2	-5.8	8.2	-19.5	7.5	5.7	-228	25	-120	
2014	115.5	0.2	9.8	-7.1	8.4	7.0	-8.6	2.8	-3.6	
2013	115.3	0.9	10.5	-3.8	9.1	7.6	-3.9	2.9	-3.4	
2012	114.3	0.0	10.9	-5.5	9.5	7.9	-5.1	3	-3.3	
2011	114.3	-2.3	11.5	3.5	10	8.3	4.8	3.1	-3.2	
2010	116.9	-6.1	11.1	-3.6	9.5	7.9	-3.8	3.2	0.0	
2009	124.0	6.0	11.5	4.3	9.3	8.2	3.7	3.2	3.1	
2008	116.5	-6.5	11.0	24.5	9.4	7.9	29.1	3.1	12.9	
2007	124.1	-0.3	8.3	26.5	6.7	5.6	30.4	2.7	18.5	
2006	124.5	-2.8	6.1	31.1	4.9	3.9	38.5	2.2	18.2	
2005	128.0	-	4.2	-	3.3	2.4	-	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20] 2005~2017년 전년 대비 이혼 건수(전체, 외국인과의 이혼) 변화율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 6. 고령자 인구 및 가구

《표 3-10》을 보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2000년 61.8%에서 2017년 57.4%로 느리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에서의 성비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3-9〉에서 알 수 있듯 성별에 따른 노인 가구형태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노인 부부 가구 64.5%, 자녀 동거 가구 20.3%, 노인 독거 가구 10.8%, 기타 가구 4.5% 순의 비율이었지만, 여성은 노인 부부 가구 36.5%, 노인 독거 가구 33.0%, 자녀 동거 가구 26.3%, 기타 가구 4.3% 순의 비율을 차지했다.

#### 120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표 3-9〉 2017년 성별 노인 가구 형태

(단위: %)

가구 형태	남자	여자	전체
노인독거 가구	10.8	33.0	23.6
노인부부 가구	64.5	36.5	48.4
자녀동거 가구	20.3	26.3	23.7
기타 가구	4.5	4.3	4.4
계	100.0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표 3-10〉 2000~2017년 성별 노인인구 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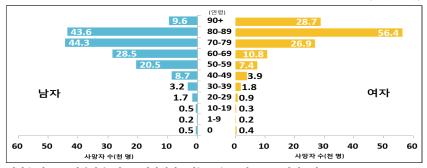
(단위: 천명, %)

		전체 인구 -	Ļ	자	0=	자
연도	노인인구 (천 명)	전세 전투 대비 비율(%)	인구수 (천 명)	노인인구 대비 비율(%)	인구수 (천 명)	노인인구 대비 비율(%)
2017	7,115	14.2	3,028	42.6	4,087	57.4
2015	6,569	13.2	2,763	42.1	3,806	57.9
2010	5,360	11.0	2,181	40.5	3,179	59.5
2005	4,365	9.3	1,736	39.8	2,629	60.2
2000	3,372	7.3	1,287	38.2	2,084	6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21] 2018년 성별 사망자 수

(단위: 천명)



재인용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표 3-11〉 2017년 성별 노인 가구 형태

(단위: 년, 인구 십만 명당 명)

연도		기대수	경		65세 기대	여명		조사망	<u> </u>
인도	여자	남자	성차	여자	남자	성차	여자	남자	성차
2017	85.7	79.7	6.0	22.7	18.6	4.1	603.4	511.4	92.0
2016	85.4	79.3	6.1	22.6	18.4	4.2	597.5	501.5	96.0
2015	85.2	79.0	6.2	22.4	18.2	4.2	591.0	492.1	98.9
2014	85.0	78.6	6.4	22.3	17.9	4.4	580.6	474.1	106.5
2013	84.6	78.1	6.5	21.9	17.6	4.3	579.8	473.4	106.4
2012	84.2	77.6	6.6	21.5	17.2	4.3	585.1	476.4	108.7
2011	84.0	77.3	6.7	21.5	17.1	4.4	571.1	456.0	115.1
2010	83.6	76.8	6.8	21.2	16.8	4.4	570.0	454.0	116.0
2009	83.4	76.7	6.7	21.1	16.7	4.4	553.7	440.7	113.0
2008	83.0	76.2	6.8	20.7	16.3	4.4	553.1	443.0	110.1
2007	82.5	75.9	6.6	20.2	16.0	4.2	550.9	452.2	98.7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

[그림 3-21]에서 연령대별 사망자 수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70대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80대, 9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조사망률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표 3-11〉참조). 기대수명은 2017년 여자 85.7년, 남자 79.7년으로 성차는 6.0세이다. 65세 기대여명은 2017년 여자 22.7년, 남자 18.6년으로 성차는 4.1년이다. 조사망률은 여자 603.4명, 남자 511.4명, 성차는 92.0명이다.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조사망률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지만 이러한 성차는 2010년대 이후 느리지만 감소하는 추세이다.

## 7. 성별로 구분한 저출생·고령사회 국내 통계의 시사점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의 시계열적인 추세에서 성별 격차가 확대되는지. 유지되는지, 감소하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 흥미롭고 다양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 인구구조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 그 자체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전망이지만, 1인 가구를 성 별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전혀 다른 경향성이 새롭게 나타난다. 여성은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대 이후 46~50%의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만, 남성은 2000년대 초반 8%의 낮은 수준에서 2017년 20%로 빠르게 증 가해서, 전체적인 1인 가구 비율 증가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 성 1인 가구 비율은 20~5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 높아 이 가구 형태가 달라 지지 않는다면 고연령대에서도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남성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맞물린 현상으로 2008~2018년 연령대별 혼인율 추세에서도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급감한 대신 30대 연령 대에서 증가한 여성과 다르게, 20대 후반에서 급감한 후 30대에서 회복되지 않는 남성들의 혼인 감소 패턴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이혼은 소폭 감소 추 세이고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비율도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 여성과 외국 남 성 간의 이혼 건수와 비율 변화폭이 커서 향후 추세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여성이 2006~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그 이후 감소로 돌아섰지만, 남성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그 증가 폭이 최근 더 높아지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후속적인 심층 규명이 요구된다. 육아휴직과 달리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서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수명이 긴 여성들이 노년기에 1인 가구로 사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 남성들의 기대여명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제4절 젠더 관점에서의 조사·통계 분석 및 보완 방안

#### 1. 분석의 필요성

지속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8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구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는 2018년 12월 재구조화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원안과 재구조화된 기본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비전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 변경되고, 목표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 변화 적극 대비'의 3가지 목표로 수정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원안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

대조발전 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인구변화 적극 대비

[그림 3-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원안과 수정안

자료: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로 '성평등 구현'이 추가된 것은 젠더 관점에서의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정부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젠더 관점이 반영된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생·고령사회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관련 기초자료들이 어느 정도까지 젠더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젠더와의 교차성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좀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의 기초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젠더와의 교차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세대, 계층, 혼인, 지역 등이 제시되어 왔다(배은경, 2009: 김유선, 2018; 김영미, 2010: 김재민, 2015). 대표적으로 취업자수를 젠더와 세대 간의 교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취업자수를 성별로나누었을 때, 남성은 저연령 신규 취업집단에서의 감소 폭이 컸고, 여성의 취업 감소는 주로 30대에서 발생했다(배은경, 2009). 이는 30대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M자 곡선의 취업자수 감소로 나타난것이다. 한편, 젠더와 계층 간의 교차성 예로는 성별임금 격차가 있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남성 비정규직 임금은 58.7이고,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9.1로서(김유선, 2018), 고용 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1차 차별에 이어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성별에따라 2차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차성은 단순하게 성별에서 비롯된 차별을 넘어 연령, 계층 등 주요 사회적 범주 간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불균등한 권력구조와 사회적 지위 차이가 발생하고 불평등이심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김재민, 2015).

이에 본 절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성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교차성 측면 에서 살펴본다. 또한 젠더와 결합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적 억압 기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하고자 한다.

## 2. 분석 대상

## 가. 자료 수집 절차 및 기준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보여 줄 수 있거나 저출생·고령사회 사회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가승인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의자료를 수집했다.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 후,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단위의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단, 사업체혹은 가구 단위의 조사지만 개인 단위의 결과 값을 보여 줄 수 있는 경우엔 포함했다. 예를 들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는 조사단위가 사업체지만 근로자의 개인 단위 정보가 있어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둘째, 표본조사는 성별 분리가 가능한 통계만 선별했다. 셋째, 표본조사 중 여러 조사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성별 분리가 가능한 개인 단위의 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육실태조사는 어린이집 조사와 가구원 조사로 나뉘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가구원 조사만을 살펴봤다.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고 저출생 영역과 고령사회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 나. 기본 현황(조사 개요)

〈표 3-12〉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조사의 개요

			최근	X	1료 여	쿠
통계명	조사 대상	조사 형태	최년 조사 연도	국가 통계 포털	조사 표	보도 자료
가족실태조사	표본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족 구성원	표본 조사	2015년	0	0	0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의 수를 표준오차로 설정하여 지역별 조사구 층화표본추출	표본 조사	2017년	0	0	0
고용보험통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행정 통계	2017년	Δ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현황	국민기초수급자	행정 통계	2017년	0	×	×
국민생활실태조사 (일반 가구)	가구 일반조사: 조사지역 전체 대상	표본 조사	2015년	0	0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공공부문 및 상장기업 (표본 1500개)	표본 조사	2015년	0	0	×
대졸자직업 이동경로 조사	전국 2~3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졸업자	표본 조사	2016년	Δ	0	0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표본 조사	2015년	0	0	0
생활시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800개 조사구 내 1만 2000 가구 10세 이상 가구원 조사	표본 조사	2014년	0	0	0
이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	행정 통계	2017년	0	×	×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전국 어린이집 수, 전체 보육 교직원,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행정 통계	2018년	0	×	×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보호 대상 아동	행정 통계	2017년	0	×	×

통계명	조사 대상	조사 형태	최근 조사 연도	자료 여부		
				국가 통계 포털	조사 표	보도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미혼 남녀)	미혼 남녀: 20~44세 미혼 남 녀	표본 조사	2015년	0	0	0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귀화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그 배우 자 자녀(만9~24세 이하)	표본 조사	2015년	0	0	0
청년패널조사	청년(만15~29세) 거주 가구	표본 조사	2016년	Δ	0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양육자)	9~24세 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의 청소년과 주양육자	표본 조사	2017년	0	0	×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 황	학대 피해 아동	행정 통계	2016년	0	×	0
한국노동패널조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의 가구와 가구원	표본 조사	2016년	Δ	0	×
한부모 가족실태조사	전국 한부모 가구주	표본 조사	2018년	0	0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먼저 저출생 영역에서의 관련 조사를 살펴보았다. 저출생 영역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KOSIS) 등록된 총 19개의 조사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개별 통계의 목적에 따라 다양했다. 조사 형태로는 크게 13개의 표본조사와 6개의 행정통계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조사 연도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로 차이가 있었다. 2014년 또는 2015년 자료가 가장 최근인 까닭은 이 자료의 조사 주기가 3~5년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실시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와 2018년에 수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가 1년 이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19개의 조사 모두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되어 있지만, 보고서 형태로만 등록되어 원자료 분석이 어려운 경우 '△'로 표기했다. 조사표는 표본

조사이면 모두 공개되어 있었고,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만드는 행정통계는 별도의 조사표가 공개되지 않는다. 의무사항이 아닌 보도자료는 19개조사 중에서 9개만 있었다.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9개의 조사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는 통계 목적에 따라 다양했다. 조사 형태로는 3개의 표본조사와 6개의 행정통계가 있었다. 이 9개의 조사 모두 가장 최근의 조사 연도가 2016~2018년이라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생영역과 마찬가지로 9개의 모든 조사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만 보고서 형태로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어서,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바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조사표는 표본조사면 모두 공개되었으며, 행정통계는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된 조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조사는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퇴직연금 통계 총 3개이다.

〈표 3-13〉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조사의 개요

	조사 대상	조사 형태	최근 조사 연도	자료 여부		
통계명				국가 통계 포털	조사 표	보도 자료
고령자 고용 현황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행정 통계	2017년	0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62년 이전 생)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	표본 조사	2016년	Δ	0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	표본 조사	2017년	0	0	×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가입자 전수	행정 통계	2017년	0	×	×
노인복지시설 현황	전국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	행정 통계	2018년	0	×	×
노인실태조사	17개 시도의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표본 조사	2017년	0	0	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전수	행정 통계	2017년	0	×	0
노인학대 현황	전국 31개 지역 노인	행정 통계	2017년	0	×	×
퇴직연금통계	퇴직연금 가입자	행정 통계	2017년	0	×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3. 분석 결과

한국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젠더와 결부된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현재 국가통계포털의 국가승인통계분석 결과에서 어느 정도의 젠더 및 관련 특성간 교차성이 파악되는지를확인했다.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앞서 기술한 저출생 영역 19개 통계와고령사회 영역 9개의 통계를 중심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교차성을 어느정도 반영했는지를 살펴봤다. 먼저 28개의 통계가 국가통계포털에서 데이터를 구현할 때, 어느 정도 교차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두 번째로 표본조사에 한하여, 조사표가 공개된 경우 젠더와의 교차성을 함께볼 수 있는 변수들인 세대, 계층, 혼인상태, 지역 등을 대표하거나 설명할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가 있는 경우 각통계 결과를 반영한 보도자료가 어느 정도 젠더와 교차성을 반영하여 설명하는지 알아봤다.

# 가.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의 기초자료 분석이 젠더와의 교차성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출생 영역과 고령사회 영역을 나누고, 성별 혹은 교차성에 따라 단순 성별 비교로 구성된 통계, 다양한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 성별 분리가 없는 통계로 나누어 살펴봤다. 연구자들은 원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 통계 생산을 직접 할 수 있지만 국민은 궁금한 통계가 있을 때 가공되어서 제공되는 통계만 활용할수 있다. 그럴 때 국가통계포털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이

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원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1) 저출생 영역

### 가) 단순 성별 비교로 구성된 통계

'가족실태조사'는 성별로 분리된 결과를 주로 제시했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단위의 조사이지만, 가구원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여 성별 분리된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를 성별로만 비교하여 다른 특성들과의 교차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결과는 적어 통계별로주요한 특성과의 교차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초고령 노인인 경우 돌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별로 세분화한다면 하위 집단별로 다른 행태를 보여 줄수있을 것이다. 돌봄서비스에서도 경제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성별에 소득분위별 정보를 추가한다면 성별 간 차이점과 함께 성별 내 차이점을 구분하고, 성별 간 차이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님과의 만족도' 역시 현재는 성별 분리만 되어 있지만, 연령에 따른 변화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성별과 함께 연령별 분석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적정자녀 수', '향후 출산계획'은 연령만 구분하여 성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연령과 함께 성별 구분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는 기업 단위의 조사로 진행되었으나 소속된 고용인의 정보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경우, 성별에 따른 결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관리자급 여성 근로자 수',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출생 영역의 주요 내용인 일·가정양립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현황이다. 하지만 단순 성별 분리로

만 구분되어 있어, 향후 성별/연령별 관리자급 근로자 수나 성별/직급별 육아휴직 이용률 등도 추가한다면 교차성까지 반영한 정책 제언을 얻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주 로 성별로만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의 귀 화자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연령차, 농촌의 다문화 가구 등 성 별과 함께 연령과 지역에 대한 현황까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청년패널 조사'의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성별 및 가구소득별, 성별 및 전공과목별 결과도 제시한다면 '휴학 사유 및 기간' 혹은 '아르바이트 종류 및 기간', '취업 스펙 경험 분포' 등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청년지원정책안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양육자에 대한 정보가 주로 청소년을 양육하는 환경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서 양 육자의 성별 분리 정보가 청소년 정책의 직접적인 기초자료가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학대피해아동' 통계는 학대의 유형이나 서비스 제공 현 황, 피해 아동 현황만 제시되고 있는데, 피해 아동의 성별과 연령별 현황, 성별 학대 유형 등도 보완하여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실태 조사'는 개인 단위의 조사가 아닌 가구 단위의 조사로 성별 분리 형태를 부자 가구 혹은 모자 가구로 대체하여 분석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모든 조사 결과를 성별 분리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자 혹은 모자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 돌봄이나 사회적 지지망 을 제시하는 등 연령과 가구소득의 영향력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3-14〉 국가통계포털의 단순 성별 분리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가족실태조사 <sup>1)</sup>	상태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가구원 특성별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별 가구원 특성별 가장 의 지가 되는 사람 가구원 성별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성별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만을 이야기한다 성별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 고 있다. 성별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성별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성별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sup>2)</sup>	연령별/학교 유형별/성별 졸업자 분포 혼인상태별/학교 유형별/성별 졸업자 분포 성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및 가구주와 의 관계 성별 고용률 성별 입직 경로 성별 특성별 사업체 규모 성별 종사상 지위 성별/산업별 정규직 비율 성별/시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성별/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성별/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성별/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비율 성별/왕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성별/산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성별/직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성별/사업체 규모별 평균 근로시간 성별/중사상 지위별 월평균 근로소득 성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소득 성별/직업별 월평균 근로소득 성별/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성별/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소득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성별 일자리 만족도 성별 현재 일자리 업무-교육수준 일치도 성별 현재 일자리 업무-건공수 일치도 성별 현재 일자리 업무-건공 일치도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sup>1)</sup> (귀화자)	성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일반적 성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혼인성 성별 유배우 결혼 이민자/귀화자 등의 성별 유배우 결혼 이민자/귀화자 부	r태 의 현재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				

통계명	제더아이 7					
8,110						
	성별 유배우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결혼 지속 기간					
	성별 대학교 계열별 분포					
	성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공	· - <del>-</del> -				
	성별 대학생의 전반적 학교 성적	분포				
청년패널조사 <sup>2)</sup>	성별 아르바이트 종류/기간					
	성별 휴학 사유 및 기간					
	성별 취업 사교육 경험 과목 분포					
	성별 진로지도 상담 목적					
	성별 대학·대학원 취업준비생의 추	H업준비 스펙 경험 분포				
	성별 도움 경험	성별 동거/비동거 자녀 및 피양육자 수				
	성별 양육 관련 만족도	성별 교육 정도				
	성별 미디어 사용 제한 정도	성별 경제활동 여부 및 근로시간				
청소년 종합	성별 스트레스	성별 외국 출신 여부				
실태조사	성별 주택의 유형	성별 혼인상태				
(양육자)	성별 주택의 위치	성별 배우자 교육 정도				
	성별 주택의 점유 형태	성별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근로				
		시간				
	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성별 배우자의 외국 출신 여부				
학대피해 아동보호 현황	성별 피해아동					
	가구 구성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구 구성별 자녀돌봄					
	가구 구성별 소득 및 지출					
한부모가족	가구 구성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실태조사	가구 구성별 경제활동					
	가구 구성별 건강 및 주거실태					
	가구 구성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가구 구성별 정책욕구					

주: 1) 국가통계포털에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성별 분리의 결과만 제시하는 경우 주요 결과만 제시함.

<sup>2) &#</sup>x27;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와 '청년패널조사'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되어 있어, 보고서 기준으로 통계 결과를 제시함.

### 나) 젠더와의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

행정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보험통계'는 주요 통계 결과에서 성별과 다른 요인들을 함께 제시해 교차성을 반영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성별과 함께 연령, 교육 정도, 종사상 지위, 취업시간도 제공한다. '고용보험통계'에서도 성별/산업별과 함께 사업장 규모, 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성별과 함께 산업, 사업장 규모, 지역까지 세분화한 집단별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국민생활조사실태', '요보호 아동실태조사'는 성별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한 결과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요보호 아동실태조사'는 행정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조사인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성별과 다른 특성들 간의 교차성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분화하여 제시된 결과가 가구 비율에 국한된다.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는 '졸업자 분포'와 '평균 근로시간', '정규직 비율', '월평균 근로소득' 등 주요 결과에서 교차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성별 및 산업, 성별 및 직종으로 정규직 비율 정보가 있어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산업과 직종 간의 차이, 산업과 직종 내에서의 차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산업이나 직종에 따른 월평균 임금은 같은 직종 내에서의 성별 임금 차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여기에 혼인상 태까지 더해져서 정규직 비율, 또는 근로시간 등이 제시된다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더 유용한 기초자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량 조사(평균시간)와 시간대 조사(행위자 비율)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성별/연령별, 성별/학력별, 성별/혼인상태별,

성별/취업 여부별, 성별/중소도시별, 성별/시도별로 평균시간과 행위자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 시간량 조사와 시간대 조사 모두 교차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3개 특성으로 집단을 세분화한 결과까지도 제시하는 것이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분석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성별/지역별, 성별/연령별, 성별/교육수준별, 성별/취업 여부별로 결혼가치관, 본인의 결혼 계획과 정책 욕구,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생 현상 인식과 욕구까지 제시하고 있어 교차성이 반영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보고서가 등록되어 있어서 기초보고서를 토대로 교차성을 검토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도 성별/연령별, 성별/학력별, 성별/산업별, 성별/직종별, 성별/종업원 규모별로 임금근로자 현황, 월평균 임금, 근로시간을 제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표 3-15〉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경제활동 인구조사	성별/연령별 취업자 성별/교육정도별 취업자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성별/취업시간별 취업자 시도별/성별 취업자	성별/직업별 취업자 성별/산업별 취업자 성별 추가취업희망자 성별/연령별 실업자 성별/교육정도별 실업자 시도별/성별 실업자					
고용보험통계		산업별/상실사유별/성별 상실자 산업별/연령별/성별 실업자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험자 연령별/취득종류별/성별 피보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	시도별/연령별/성별 수급자					
국민생활실태조사 (일반 가구)	소득계층별/성별 가구 비율					
기업·공공기관 기족친화 수준 조 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총 근로자수별 전기업 및 공공기관의 총 근로자수별 연육아휴직제도 시행 여부 및 이용률: 육아휴직제도 시행 여부 및 이용률:	부성 근로자 수 남성				
생활시간조사	성별/연령별 평균시간 성별/세대별 평균시간 성별/취업 여부별 평균시간 성별/학력별 평균시간 성별/혼인상태별 평균시간 성별/중소도시별 평균시간 성별/중소도시별 평균시간 성별/시도별 평균시간	성별 인구의 행동별 행위자 비율 성별/연령별 행위자 비율(학생 이외) 성별/학력별 행위자 비율(학생 이외) 성별/혼인상태별 행위자 비율 성별/취업 여부별 행위자 비율 성별/중소도시별 행위자 비율 성별/시도별 행위자 비율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성별/지역별 요보호 아동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sup>1)</sup> (미혼 남녀)	성별/지역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5성별/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5성별/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성별/취업 여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 태도				
한국노동패널 조사 <sup>2)</sup>	성별 산업 분포 성별 직업 분포 성별 구직 방법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희망 임금 성별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성별/학력별 임금근로자 분포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분포 성별/연령별 평균 근로시간 성별/학력별 평균 근로시간	성별/종사상 지위별 평균 근로시간 성별/사업체 특성별 평균 근로시간 성별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 방법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 성별/산업별 월평균 임금 성별/직종별 월평균 임금 성별/종업원 규모별 월평균 임금 성별/기업 형태별 월평균 임금 성별/기업 형태별 월평균 임금				

주: 1) 국가통계포털에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성별 분리의 결과만 제시하는 경우 주요 결과만 제시함.

<sup>2) &#</sup>x27;한국노동패널조사'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되어 있어, 보고서 기준으로 통계 결과를 제시함.

### 다) 성별 분리가 없는 통계

'보육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에서도 성별이 분리된 통계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향후 가구조사 결과는 아동의 성별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특성별로 세분화해서(예: 부와 모의 취업 형태에 따른 돌봄 방법이나 돌봄시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성별 분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서 이용아동의 성별/연령별 세분화한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종사자에 관한 성별 구분이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고서에서는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성별 정보가 있어 추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를추가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성별/연령별 이용 아동에 대한 통계까지도 제시하면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있을 것이다.

〈표 3-16〉 국가통계포털의 성별 분리가 없는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성별 분리 통계 결과 없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성별 분리 통계 결과 없음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성별 분리 통계 결과 없음

## 2) 고령사회 영역

# 가) 단순 성별 비교로 구성된 통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단순 성별 비교를 하여 노후소득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연령, 학력, 취업상태에 따른 결과를 각각 따로 제시하고 있어, 성별/연령, 성별/학력, 성별/취업 상태와의 교차성 추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건강 상태나 건강 행태에서 연령과의 교차성이보완된다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수명(얼마나 건강한가)과 평균수명(얼마나 오래 사는가)이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과의 교차성도 추가한다면 취업 여부에 따라 건강 수준이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가구소득(또는 자산)별 구분이 추가되어서 자녀와의 부양 교환관계를 살펴본다면 가구의 소득이나자산에 따라 어떤 형태로 세대 간 돌봄을 주거나 받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표 3-17〉 국가통계포털의 단순 성별 분리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가구주 성별 월평균 실질가계소득 중고령자의 성별 고용률 성별 경제적 노후 준비 방법 성별 경제적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성별 최소/적정 노후 생활비					
노인실태조사	성별 노인의 일반 특성 성별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성별 부양의 교환 실태 성별 삶의 질, 노후 생활 인식과 태도 성별 건강상태와 건강 행태	성별 경제 상태 성별 경제활동 성별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성별 생활환경과 안전실태 성별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의식				

# 나) 젠더와의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

⟨표 3-18⟩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ENN	711510101 7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sup>1)</sup>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 진단 유병률 성별 규칙적 운동 및 권장수준 운동 성별 체질량 지수(BMI) 성별 신체적 기능상태 성별 정신적 건강상태 성별 공적 의료보장제도 이용 현황 성별 민간 의료보장제도 이용 현황	성별 임금근로자 근로 형태 분포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 성별/학력별 월평균 임금 성별/지역별 월평균 임금 성별/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성별/산업별 월평균 임금 성별/산업별 월평균 임금 성별/직업별 월평균 임금 성별 신규 은퇴자의 은퇴 사유 성별 임금소득 유무·총액, 소득구간 성별 국민연금 유무·규모, 소득구간 성별 기초연금 수급·규모, 소득구간 성별 자가 본인명의 비율, 자가 가격					
국민연금통계	황 급여종류별/연령별/성별/지급액 현황 65세 인구 대비 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연령별/성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연령별/성별/지역별 가입자 현황 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자 현황 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조기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토레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특례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기급액 현황 특례노령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기급액 현황	장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 자 현황 장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 액 현황 장애연금등급별 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장애연금등급별 연령별/성별 지급액 현황 유족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수급 자 현황 유족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반환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반환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사망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나한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나망일시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액 현황					

 통계명	제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ਰ/11ਰ	분할연금 연령별/성별/지역별 지급 액 현황
노인장기요양보 험통계	연도별/성별/지역별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자격별/지역별 성별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성별/시·군·구별/등급별/자격별 판정 현황(계) 성별/시·군·구별 등급별 자격별 판정 현황(65세 미만) 성별/시·군·구별 등급별 자격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성별/시·군·구별 등급별 자격별 판정 현황(65세 이상) 성별/시·도별/성별 65세 미만 신청자 노인성질병 현황 성별/시·도별/연령별/자격별 신청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안정신청 구분별 인정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자격별 주거상대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자격별 주 수발자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자격별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자격별 판정 현황 성별/시·도별/등급별/자격별 판정 현황
노인학대 현황	65세 인구수 대비 학대 피해 노인 성별 분포 사례 개입 중 사망한 학대 피해 노인의 성별 성별/연령별 학대 피해 노인 성별 학대 피해 노인의 학대 유형 성별/연령별 학대 행위자
퇴직연금통계	성별/연령별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성별/근속기간별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성별/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성별/연령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성별/연령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성별/가입기간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성별/가입기간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수 성별/연령별 개인형 IRP 가입자 수, 적립금액 성별/가입기간별 개인형 IRP 가입자 수, 적립금액 성별/연령별 개인형 IRP 이전자 수 및 이전금액 성별/연령별 개인형 IRP 해지자 수 및 해지금액 성별/사유별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 중도인출금액 성별/유형별 퇴직연금 수급자 수, 수급금액 성별/사유별 면령별 중도인출자 수, 중도인출금액

주: 국가통계포털에서 더 많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단순 성별 분리의 결과만 제시하는 경우 주요 결과만 제시함.

'고령화연구패널'도 살펴보겠다. '고령화연구패널'은 월평균 임금에서 는 다양한 교차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통계 결과에서는 성별 로 구분된 통계만 제시하고 있어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몇 가지 특성들로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연령별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액을 반영하거나, 성별/연령별 혹은 성별/배우자 유무에 따른 건강상태 등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로 나누지 않은 결과 중에서 '손자녀·배우자·부모 돌봄 현황',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등에서 성별로 결과를 제시한다면, 성별에 따른 돌봄 현황과 기능상태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

행정통계인 '국민연금통계'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퇴직연금통계' 는 현재도 교차성이 반영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통계'에서는 외국인에 관한 성별 분리 현황이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에 대한 성별 분리 현황이 없어서, 통계별 관련 인구 현황에서 성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현황'은 교차성이 반영된 현황이 잘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성별/연령별 학대 유형까지 포함된다면 노인학대 예방이나 해결 방안 마련에서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

# 다) 성별 분리가 없는 통계

'고령자 고용 현황'은 고령자 수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없다.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의 현황에 성별 정보까 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는 시설 정원만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성별 비율 등의 정보가 없다. 그러 니 성별 정보가 추가된 형태로 이용자 특성 현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표 3-19〉 국가통계포털의 성별 분리가 없는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고령자 고용 현황	성별 분리 통계 결과 없음
노인복지시설 현황	성별 분리 통계 결과 없음

### 나. 조사표

기초 통계자료로 설정한 28개의 통계 중 표본조사에 한하여 조사표가 있는 16개의 통계를 분석했다. 조사표에서 성별, 세대(연령), 계층4), 혼인,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러한 작업을 한이유는 각 통계 결과에서 그동안에는 교차성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변수를 조사했다면 추가적인 분석을 하여 이제라도 교차성을 보완한결과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저출생 영역과 고령사회 각 영역에서 조사표를 분석 대상으로 한 교차성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저출생 영역

저출생 영역에서 조사표가 있는 통계는 총 13개였다. 그중에서 교차성 분석틀인 성별, 연령, 계층, 혼인, 지역의 5가지 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통계는 '가족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보육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 사',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한

<sup>4)</sup> 변수 중 '계층'은 여러 변수로, 대체가 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임금, 직종, 공 공/민간기관, 사업장 규모, 학력을 '계층'을 볼 수 있는 변수에 포함시켰다.

국노동패널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총 11개이다. '전국 출산력 조사'는 계층을 볼 수 있는 변수로 가구소득, 임금, 직종,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규모, 학력까지 6개의 정보가 있어 가장 많았다. 나머지 통계들에서도 최소 2~5개 계층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조사되어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역을 묻는 문항이 따로 있지 않았으나, 조사구 번호로지역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로 표기했다. '기업 및 공공기관가족친화 수준 조사'는 개인 단위의 조사가 아니고 기업 단위의 조사로사업장 내 종사자에 대한 문항을 따로 두고 있어, 성별로 분리된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기업 내 성별/연령별 인원수, 기업 내 성별/혼인여부별인원수를 문항에 포함하여 교차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 단위의 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 표기했다.

조사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는 현재는 교차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추가 분석을 한다면 5가지 특성들 간의 교차성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는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표 3-20⟩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성별	연령 (세대)	계층	혼인	지역
가족실태조사	0	0	가구소득, 학력	0	0
경제활동인구조사	0	0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Δ
국민생활실태조사 (일반 가구)	0	0	가구소득, 임금, 학력	0	0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Δ	Δ		Δ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0	0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0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0	0
생활시간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학력	0	0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미혼 남녀)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공공/민간기관, 사업장 규모, 학력	0	0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귀화자)	0	0	가구소득, 임금, 학력	0	0
청년패널조사	0	0	임금, 직종, 공공/민간, 사업장 규모, 학력	0	0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양육자)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학력,	0	0
한국노동패널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0
한부모 가족실태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2) 고령사회 영역

고령사회 영역에서 조사표가 있는 통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 노후보장패널', '노인실태조사'로 총 3개이다. 저출생 영역과 마찬가지로 조사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성 분석틀인 성별, 연령, 계층, 혼인, 지역의 5가지 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고령화연구 패널조사는 계층과 관련하여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의 5개 변수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도 계층에 대해 '가구소득,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의 5개 변수를 조사했다. '노인실태조사'는 계층에 관해 가구소득, 임금, 직종, 학력의 4개 변수가 있었다.

〈표 3-21〉 국가통계포털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성별	연령(세대)	계층	혼인	지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0	0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사업장 규모, 학력	0	0
노인실태조사	0	0	가구소득, 임금, 직종, 학력	0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다. 보도자료

# 1) 저출생 영역

보도자료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한 보도자료가 있는 통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저출생 영역의 통계는 총 9개인데, 이 중에서 6개만 성별로 분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중에서 '생활시간조사'만이 5가지 영역에서 교차성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공표했다. 먼저 성별/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대상은 10세 이상으로 학생(10대), 성인(20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로 구분해 주요 활동 시간을 제시했다. 성별/계층별 결과와 관련해서는

취업 여부, 맞벌이에 따른 시간 활용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성별/혼인여 부별 결과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유무별, 배우자 분가 여부별, 한부모 및 양부모 가구별, 미취학 자녀 여부별 시간 활용 실태를 제시했다. 성별/지역별 결과에 관해서는 동·읍면리, 16개 시도별 시간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3-22) 보도자료의 교차성이 반영된 저출생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성별	연령 (세대)	계층	혼인	지역
가족실태조사	0	-	-	-	-
경제활동인구조사	0	0	-	-	-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0	-	-	-	-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성빝	별 분리 결과 (	겂음	
생활시간조사	0	0	취업 여부	0	0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 지 실태조사 (미혼 남녀)	0	0	취업 여부	-	-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귀화자)	0	-	-	-	-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성빝	별 분리 결과 (	없음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성빝	를 분리 결과 <b>(</b>	없음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도 대부분의 통계표에서 성별로 분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성별/취업 여부별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결과도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국가통계포털에도 다양한 교차성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도자료도 이러한 수준으로 자세히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결과들은 성별 분리로만 제시하고 있어, 성별/연령별 종사상 지위, 혹은 성별/지역별 취업자 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실태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는 단순 성별 비교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가족실태조사'는 결혼 적정 비용에서만 성별 분리 결과를 제시했고, 다른 주요 결과에서는 연도별 추세 변화만 주로 있었다.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는 주요 결과를 성별, 학교 유형별을 분리했지만, 성별/학교 유형별로 교차된 결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성별로 분리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 2) 고령사회 영역

보도자료를 제시한 고령사회 영역 통계는 총 3개로, 이 중 '퇴직연금통계'에서만 성별과의 교차성이 반영된 결과가 있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성별/연령별로 보거나, 성별/근속기간별, 성별/가입기간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하지만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서는 성별로 분리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 3-23〉 보도자료의 교차성이 반영된 고령사회 영역 기초자료

통계명	성별	연령 (세대)	계층	혼인	지역
노인실태조사		성별	분리 결과 역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성별	분리 결과 역	없음	_
퇴직연금통계	0	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제 4 자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일반 국민 인식조사 기술통계 결과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 순위로짓 분석
제4절 성별, 연령, 계층 교차성에 따른 정책 요구도
제5절 소결

#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 인식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본 절에서는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2019년 7월 말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을 실행했다. 조사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문항은 1차적으로 연구진이 검토를 한다음, 3회에 걸쳐 젠더, 미디어, 국문학, 정치학, 가정학 분야 9명의 학계·현장 외부 전문가들과 초점집단면접을 하여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 측과 일부 용어와 문구를 다듬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약 2주간 진행했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49.7%, 여자가 50.3%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19.1%), 40대(18.4%), 30대(15.9%), 20대(15.1%), 10대(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광역시 24.9%, 서울 19.3%, 군 지역 6.6% 순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인 경우가 64.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미혼이 30.3%, 이혼 또는 사별(무응답 포함)이 5.9%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55.2%, 고졸 이하가 44.3%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65.1%,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34.9%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의 고용 안정성 정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6.9%, 보

통인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4.7%, 불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중도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48.3%,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9.5%,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2.2%이다. 주관적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중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8.6%,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6%,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8%이다.

〈표 4-1〉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211 /- , 0)
구분	비율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000)	학력		
성별			고졸 이하	44.3	(886)
남자	49.7	(995)	대졸 이상	55.2	(1,105)
여자	50.3	(1,005)	모름/무응답	0.5	(10)
연령			경제활동 상태		
15~19세	6.1	(121)	일함	65.1	(1,302)
20~29세	15.1	(303)	일하지 않음	34.9	(698)
30~39세	15.9	(318)	고용안정성		
40~49세	18.4	(368)	불안정	13.4	(269)
50~59세	19.1	(383)	보통	14.7	(294)
60세 이상	25.3	(507)	안정	36.9	(738)
지역			일하지 않음	34.9	(698)
서울	19.3	(385)	이념 성향		
광역시(서울 외)	24.9	(497)	진보	29.5	(589)
시 지역	49.3	(985)	중도	48.3	(966)
군 지역	6.6	(133)	보수	22.2	(445)
혼인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비혼	30.0	(600)	하층	25.6	(513)
기혼	64.1	(1,281)	중층	68.6	(1,372)
이혼/사별	5.7	(114)	상층	5.8	(116)
모름/무응답	0.2	(4)		-	
키크, H 어크레기 기가	1-1 [-1]-1 -1	al > 111		- 11 Ol-1-	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제2절 일반 국민 인식조사 기술통계 결과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기술통계를 분석했다.

## 1.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나 한국의 전반적인 성차별을 국민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다.

# 가.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

'다음 중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남녀 간 성별 갈등, ② 고령층과 젊은이 간 세대 갈등, ③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 갈등, ④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 ⑤ 수도권과 지방 또는 영호남 간 지역 갈등이라는 다섯 개의 보기를 제공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전체의 40.9%로 가장 많았고, 빈부 갈등이 27.6%였으며, 세대 갈등 13.2%, 성별 갈등 10.9%, 지역 갈등 7.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 별 응답을 살펴보면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이념 갈등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2〉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

(단위: %, 명) 이념 빈부 세대 성별 지역 사례 수 계 구분 갈등 갈등 갈등 갈등 갈등 (명) 전체 40.9 10.9 100.0 (2,000)27.6 13.2 7.4 성별 남자 46.9 24.1 12.3 10.5 6.2 100.0 (995)여자 35.1 31.1 14.1 11.2 8.5 100.0 (1.005)연령 15~19세 15.5 21.2 18.9 39.0 5.4 100.0 (121)20~29세 23.9 25.414.8 32.1 3.9 100.0 (303)30~39세 37.5 32.0 10.6 12.0 7.9 100.0 (318)40~49세 43.9 36.2 8.9 4.46.6 100.0 (368)50~59세 50.0 29.0 12.5 1.6 6.9 100.0 (383)60세 이상 50.3 20.4 16.4 2.4 100.0 (507)10.5 지역 서울 45.7 22.9 13.4 11.3 6.8 100.0 (385)27.8 서울 외 광역시 39.6 12.4 11.9 8.4 100.0 (497)도 지역 시부 40.0 29.0 13.2 10.8 7.0 100.0 (985)도 지역 군부 38.5 30.3 16.4 6.6 8.2 100.0 (133)혼인상태 비혼 28.2 26.0 13.6 27.2 5.0 100.0 (600)기혼 46.7 28.5 12.7 3.7 8.4 100.0 (1,281)이혼/사별 42.8 26.5 17.4 5.7 7.6 100.0 (114)학력 고졸 이하 (886)34.6 27.5 17.4 12.7 7.7 100.0 대졸 이상 45.9 27.5 10.0 9.5 7.1 100.0 (1,105)경제활동 상태 일함 43.1 28.4 12.5 8.7 7.3 100.0 (1,302)일하지 않음 36.9 26.0 14.7 14.9 7.5 100.0 (698)고용안정성 불안정 40.6 31.4 15.8 6.9 5.3 100.0 (269)보통 42.3 28.4 (294)12.6 10.1 6.6 100.0 안정 44.3 27.411.2 8.8 8.3 100.0 (738)이념 성향 진보 40.9 28.5 (589)12.3 11.0 7.3 100.0 중도 29.2 13.4 (966)37.2 13.1 7.2 100.0 보수 49.2 23.0 14.8 5.1 7.9 100.0 (445)

35.7

42.2

4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중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14.2

13.2

9.9

10.0

11.4

8.2

100.0

100.0

100.0

7.1

7.6

5.1

(513)

(1,372)

(116)

32.9

25.6

상층 27.6 주: '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구체적으로, 30대에서는 37.5%, 40대에서는 43.9%, 50대에서는 50.0%, 60대 이상에서는 50.3%에 달했다. 그러나 15~19세에서는 15.5%, 20대에서는 23.9%만이 이념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10대와 20대는 오히려 성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0%,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19세와 20~29세는 '성별 갈등' 응답자가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념 갈등' 응답자가 높으며, 40, 50,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심지어 '성별 갈등' 응답자가 5개 응답 중 가장 낮게 나타나서, 이응답 결과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세대 간의 동상이몽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각 세대가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 자체보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책 또는 정치관련자 및 결정자가 중고령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세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성별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보다 중고령세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념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표 4-2〉에서 비혼인 사람은 '이념 갈등', '성별 갈등'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기혼인 사람은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한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통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념 갈등을 제외하고, 성별 갈등에 대해 비혼이 27.2%, 기혼이 3.7%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자체로는 비혼 내에서 남녀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성별 갈등에 대한 비혼의 부정적인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 나.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척도(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④ 아주 심각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9%에 달했으며, '조금 심각하다'는 응답이 25.1%로 뒤를 이었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4.1%,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0%였다. '조금 심각하다'는 응답과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전체의 94.9%로 응답자의 대부분이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은 10대가 43.5%, 20대가 47.9%, 30대가 67.3%였으며, 40대는 75.1%, 50대는 80.9%, 60대 이상은 78.8%여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3》의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고, 비혼보다 기혼이 많았다. 여자나 비혼이 실제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있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나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성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이유는 심층적으로 밝혀져야할 것이다.

〈표 4-3〉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단위: %, 명, 점)

	전혀	별로				(611	/0, O, D/
구분	선어 심각하지 않다	실도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1.0	4.1	25.1	69.9	100.0	(2,000)	3.6
성별							
남자	1.2	3.8	22.9	72.1	100.0	(995)	3.7
여자	0.8	4.3	27.2	67.7	100.0	(1,005)	3.6
연령							
15~19세	1.4	5.4	49.7	43.5	100.0	(121)	3.4
20~29세	1.3	7.8	43.1	47.9	100.0	(303)	3.4
30~39세	1.2	5.4	26.1	67.3	100.0	(318)	3.6
40~49세	1.0	2.6	21.3	75.1	100.0	(368)	3.7
50~59세	0.5	2.9	15.7	80.9	100.0	(383)	3.8
60세 이상	0.9	2.7	17.6	78.8	100.0	(507)	3.7
지역							
서울	1.3	4.8	24.9	69.0	100.0	(385)	3.6
서울 외 광역시	0.2	3.5	25.3	71.0	100.0	(497)	3.7
도 지역 시부	1.3	4.3	25.8	68.6	100.0	(985)	3.6
도 지역 군부	0.7	2.3	19.5	77.4	100.0	(133)	3.7
혼인상태						(-00)	
비혼	1.1	6.6	37.6	54.7	100.0	(600)	3.5
 기혼	1.0	2.7	19.5	76.7	100.0	(1,281)	3.7
 이혼/사별	0.0	5.5	20.3	74.2	100.0	(114)	3.7
 학력				,		()	
고졸 이하	1.2	4.4	27.8	66.6	100.0	(886)	3.6
대졸 이상	0.8	3.8	22.9	72.5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 - ,		(-///	
일함	0.7	4.1	21.9	73.3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1.4	4.1	31.0	63.5	100.0	(698)	3.6
고용안정성			0	-0-2		(-2 -/	
불안정	1.1	2.2	18.7	78.0	100.0	(269)	3.7
보통	1.0	4.4	28.4	66.2	100.0	(294)	3.6
안정	0.5	4.7	20.4	74.4	100.0	(738)	3.7
 이념 성향		,		,	200.0	(, 5 -)	5-7
진보	1.5	4.4	24.9	69.3	100.0	(589)	3.6
중도	0.8	4.2	27.2	67.7	100.0	(966)	3.6
보수	0.7	3.4	20.6	75.3	100.0	(445)	3.7
 주관적 소득계층	/			, ,		(-+/)	J.1
하층	0.8	4.2	21.0	74.0	100.0	(513)	3.7
중층	1.0	4.1	27.0	67.9	100.0	(1,372)	3.6
상층	1.7	3.6	20.1	74.6	100.0	(116)	3.7
	/	٥.٠	_5.1	, 1.0	100.0	(110)	٠٠١

주: 1)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점~'아주 심각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 한국의 전반적 성차별에 대한 심각성

'한국의 전반적인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척도(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④ 아주 심각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조금 심각하다'는 응답이51.3%로 가장 많았고,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은 20.7%,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4.7%,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4%였다. '조금심각하다'는 응답과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전체의71.9%에 달했다.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국의 전반적 성 차별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응답자는 81.7%('아주 심각하다' 26.5%, '조금 심각하다' 55.2%)가 한국의 전반적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 응답자는 62.0% ('아주 심각하다' 14.7%, '조금 심각하다' 47.3%)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연령에 따른 응 답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 심각 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과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을 합쳐서 살펴보면 한국의 성차별이 심각하지 않 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가 21.0%, 20대가 23.1%, 30대가 25.6%, 40 대가 24.9%, 50대가 29.6%, 60대 이상이 35.5%였다. 또한, 기혼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아주 심각하다' 응답자의 차이가 커서, 이 또한 기혼 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차별을 심각하 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사별자는 기혼자와는 다른 맥락 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혼자, 이혼·사별자가 경 험하는 성차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4-4〉 한국의 전반적 성차별에 대한 심각성

(단위: %, 명, 점)

	건드	шп				(411.	/0, o, <del>u</del> /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3.4	24.7	51.3	20.7	100.0	(2,000)	2.9
성별							
남자	5.5	32.5	47.3	14.7	100.0	(995)	2.7
여자	1.3	16.9	55.2	26.5	100.0	(1,005)	3.1
 연령							
15~19세	2.7	18.3	57.1	21.9	100.0	(121)	3.0
20~29세	4.1	19.0	51.4	25.6	100.0	(303)	3.0
30~39세	3.6	22.1	56.8	17.6	100.0	(318)	2.9
40~49세	3.1	21.8	54.6	20.5	100.0	(368)	2.9
50~59세	3.7	25.9	51.6	18.9	100.0	(383)	2.9
60세 이상	3.1	32.4	43.6	20.9	100.0	(507)	2.8
지역							
서울	3.4	24.8	50.1	21.6	100.0	(385)	2.9
서울 외 광역시	2.4	23.6	54.1	19.9	100.0	(497)	2.9
도 지역 시부	4.1	24.9	50.4	20.7	100.0	(985)	2.9
도 지역 군부	2.1	26.6	50.4	20.9	100.0	(133)	2.9
혼인상태						(-00)	
비혼	3.4	19.5	52.7	24.4	100.0	(600)	3.0
기혼	3.4	27.1	51.5	18.0	100.0	(1,281)	2.8
 이혼/사별	3.6	25.1	40.8	30.6	100.0	(114)	3.0
<u>학</u> 력						()	
 고졸 이하	3.1	24.7	49.3	22.9	100.0	(886)	2.9
대졸 이상	3.7	24.6	52.9	18.9	100.0	(1,105)	2.9
경제활동 상태	J.,					(=,==)/	
일함	3.4	25.9	51.1	19.6	100.0	(1,302)	2.9
일하지 않음	3.5	22.4	51.5	22.6	100.0	(698)	2.9
고용안정성						(-2-)	
불안정	4.4	26.0	44.5	25.1	100.0	(269)	2.9
보통	3.0	24.6	53.8	18.6	100.0	(294)	2.9
안정	3.2	26.4	52.4	18.0	100.0	(738)	2.9
이념 성향						(, 0 - )	
진보	2.4	20.6	53.7	23.2	100.0	(589)	3.0
도 <u></u> 중도	3.7	24.2	53.6	18.4	100.0	(966)	2.9
보수	4.0	31.0	42.9	22.1	100.0	(445)	2.8
 주관적 소득계층		52.0				(-+2)	
하층	4.3	23.5	47.5	24.8	100.0	(513)	2.9
중층	3.0	24.6	52.8	19.6	100.0	(1,372)	2.9
상층	4.2	31.1	49.2	15.5	100.0	(116)	2.8
		J	-2	-2.2		()	

주: 1) 평균은 '전혀 심각하지 않다'를 1점~'아주 심각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2.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앞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성별, 세대, 빈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의 전망을 알아보았다. '미래 한국의 \_\_\_\_\_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5점 척도(① 아주 악화될 것이다, ⑤ 아주 개선될 것이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 가. 미래 한국의 성별 갈등에 대한 전망

미래 한국의 성별 갈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앞으로 성별 갈등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5.1%로 그 뒤를 이었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3.8%, '아주 개선될 것이다'는 7.3%, '아주 악화될 것이다'는 6.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59.4%('아주 개선될 것이다' 6.6%, '조금 개선될 것이다' 52.9%)는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고, 15.6%('아주 악화될 것이다' 4.0%, '조금 악화될 것이다' 11.6%)는 성별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남자는 49.9% ('아주 개선될 것이다' 8.0%, '조금 개선될 것이다' 41.9%)가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고, 24.9%('아주 악화될 것이다' 8.9%, '조금 악화될 것이다' 16.0%)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 4-5〉 미래 한국의 성별 갈등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점)

			<u> </u>				(271. /	J, O, E/
구분	아주 악화될 것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현재 수준0 유지될 것이다	지 조금 개선될 것이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6.4	13.8	25.1	47.4	7.3	100.0	(2,000)	3.4
성별								
남자	8.9	16.0	25.2	41.9	8.0	100.0	(995)	3.2
여자	4.0	11.6	25.0	52.9	6.6	100.0	(1,005)	3.5
연령							(-,,-	
15~19세	2.7	14.3	36.7	42.9	3.4	100.0	(121)	3.3
20~29세	7.0	17.3	30.8	42.4	2.5	100.0	(303)	3.2
30~39세	3.9	15.3	29.8	44.4	6.6	100.0	(318)	3.3
40~49세	5.9	11.7	21.1	51.5	9.8	100.0	(368)	3.5
50~59세	6.1	12.4	18.3	53.7	9.5	100.0	(383)	3.5
60세 이상	9.1	13.4	23.9	45.8	7.8	100.0	(507)	3.3
지역	9.1	13.4	43.9	4).0	7.0	100.0	(507)	<u> </u>
서울	6.8	14.4	26.5	46.8	5.6	100.0	(385)	3.3
시물 서울 외 광역시	6.5	15.4	24.8	46.6 46.6	5.0 6.7	100.0	(303) (497)	3.3
도 지역 시부	6.0	12.3	25.0	48.9	7.7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8.0	17.4	22.1	41.6	10.9	100.0	(133)	3.3
혼인상태		160	20.5	/2.0	2.0	1000	((00)	2.2
비혼	6.8	16.8	29.5	42.9	3.9	100.0	(600)	3.2
기혼	6.0	12.7	23.3	49.2	8.7	100.0	(1,281)	3.4
이혼/사별	8.0	10.2	21.7	51.5	8.5	100.0	(114)	3.4
학력								
고졸 이하	7.1	13.9	26.0	46.4	6.7	100.0	(886)	3.3
대졸 이상	5.8	13.7	24.1	48.5	7.8	100.0	(1,105)	3.4
경제활동 상태								
일함	6.3	14.2	23.8	47.8	7.8	100.0	(1,302)	3.4
일하지 않음	6.6	13.0	27.4	46.7	6.3	100.0	(698)	3.3
고용안정성								
불안정	11.5	13.1	23.1	42.8	9.6	100.0	(269)	3.3
보통	6.2	14.6	24.0	48.5	6.7	100.0	(294)	3.3
안정	4.5	14.5	24.0	49.4	7.6	100.0	(738)	3.4
이념 성향					,		(, 0 - /	
0 0 진보	5.3	10.6	24.0	50.3	9.8	100.0	(589)	3.5
중도	5.1	14.1	26.3	47.9	6.6	100.0	(966)	3.4
보수	10.7	17.6	23.8	42.6	5.4	100.0	(445)	3.1
 주관적 소득계층	10.,	1,.0	<b>2</b> 3.0	12.0	<i></i>	100.0	( + + > )	J. 1
하층	9.7	13.4	26.6	41.0	9.2	100.0	(513)	3.3
중층	5.1	14.3	24.5	49.9	6.2	100.0	(1,372)	3.4
상층	6.9	10.3	25.2	46.8	10.8	100.0	(1,3/2) $(116)$	3.4
- 00 - 기 체기이 '이즈 이								

주: 1) 평균은 '아주 악화될 것이다'를 1점~'이주 개선될 것이다'를 5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한국의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합쳐서 살펴보면 한국의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52.4%,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사람의 55.2%,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의 5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미래 한국의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사람의 50.3%이었고,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 층인 응답자는 56.1%, 상층인 응답자는 57.5%가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있었다.

# 나. 미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한 전망

미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표 4-6〉을 살펴보면,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9.0%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4.7%, '아주 악화될 것이다'는 10.9%, '아주 개선될 것이다'는 4.0%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세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주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과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합쳐서 살펴보면 한국의 세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은 10대가 23.8%, 20대가 32.6%, 30대가 42.5%, 40대가 37.2%, 50대가 48.6%, 60대가 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과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성이

낮을수록,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한국의 세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주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과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합쳐서 살펴보면 한국의 세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의 41.3%, 고용안정성이 보통인사람의 45.1%,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사람의 35.5%, 중층인 사람의 40.9%, 하층인 사람의 47.8%가 한국의 세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세대 갈등에 대한 전망 차이도 발견되었다. 세대 갈등이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 비율은 진보가 36.1%, 중도가 43.4%, 보수가 48.3%였다.

〈표 4-6〉 미래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점)

							(단위: '	%, 명, 점)
구분	아주 악화될 것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조금 개선될 것이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10.9	31.4	24.7	29.0	4.0	100.0	(2,000)	2.8
성별								
남자	11.5	30.8	24.6	28.7	4.4	100.0	(995)	2.8
여자	10.4	32.0	24.7	29.4	3.5	100.0	(1,005)	2.8
연령								
15~19세	5.5	18.4	40.7	27.9	7.6	100.0	(121)	3.1
20~29세	6.4	26.3	33.4	29.8	4.2	100.0	(303)	3.0
30~39세	8.4	34.2	27.7	26.5	3.3	100.0	(318)	2.8
40~49세	10.6	26.6	22.9	36.1	3.8	100.0	(368)	3.0
50~59세	13.8	34.7	20.1	28.4	2.9	100.0	(383)	2.7
60세 이상	14.6	36.9	18.5	25.7	4.3	100.0	(507)	2.7
지역								
서울	11.2	32.2	24.7	27.7	4.1	100.0	(385)	2.8
서울 외 광역시	7.2	33.3	27.0	29.2	3.3	100.0	(497)	2.9
도 지역 시부	12.3	29.8	24.3	29.5	4.0	100.0	(985)	2.8
도 지역 군부	13.6	33.9	18.5	28.5	5.6	100.0	(133)	2.8
혼인상태		00,					(-00)	
비혼	8.3	28.1	30.2	28.6	4.9	100.0	(600)	2.9
기혼	11.8	32.5	22.5	29.6	3.7	100.0	(1,281)	2.8
이혼/사별	15.4	38.0	20.0	24.6	2.0	100.0	(114)	2.6
학력	-						, ,	
고졸 이하	12.2	29.7	24.3	28.7	5.1	100.0	(886)	2.8
대졸 이상	9.9	32.5	25.0	29.6	3.0	100.0	(1.105)	2.8
경제활동 상태			-	-				
일함	11.2	31.9	24.0	28.8	4.1	100.0	(1,302)	2.8
일하지 않음	10.5	30.6	25.9	29.4	3.7	100.0	(698)	2.9
고용안정성								
불안정	14.8	30.7	24.5	26.2	3.8	100.0	(269)	2.7
ーー - 보통	10.8	34.3	23.9	27.3	3.7	100.0	(294)	2.8
안정	10.0	31.3	24.0	30.4	4.4	100.0	(738)	2.9
이념 성향							(, ,	
진보	8.8	27.3	26.3	32.7	4.9	100.0	(589)	3.0
중도	10.8	32.6	25.4	27.3	3.8	100.0	(966)	2.8
보수	14.1	34.2	21.0	27.8	3.0	100.0	(445)	2.7
주관적 소득계층							/	·
하층	15.3	32.6	22.9	24.3	5.0	100.0	(513)	2.7
중층	9.6	31.2	25.2	30.6	3.3	100.0	(1,372)	2.9
상층	7.2	28.3	26.2	30.8	7.4	100.0	(116)	3.0
7.1) = 7.0 (= 1.7.0	3 = 3 = 3	1 11 -						

주: 1) 평균은 '아주 악화될 것이다'를 1점 ~ '아주 개선될 것이다'를 5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 미래 한국의 빈부 갈등에 대한 전망

미래 한국의 빈부 갈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인 〈표 4-7〉을 살펴보면,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2.8%,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9.3%였고, '조금 개선될 것이다'가 11.4%, '아주 개선될 것이다'가 1.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여자의 70.3%가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64.6%가 그러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미래 한국의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대가 61.2%, 20대가 62.9%, 30대가 65.7%, 40대가 67.1%, 50대가 73.3%, 60대 이상이 68.7%였으며, 빈부 갈등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대가 25.9%, 20대가 28.2%, 30대가 22.9%, 40대가 17.9%, 50대가 11.1%, 60대 이상이 17.5%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74.1%가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인 사람은 65.8%가, 상층인 사람은 58.7%가 한국의 빈부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4-7〉 미래 한국의 빈부 갈등에 대한 전망

(단위: %, 명, 점)

-							(11) /	), o, <del>u</del> )
구분	아주 악화될 것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조금 개선될 것이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32.8	34.7	19.3	11.4	1.8	100.0	(2,000)	2.1
성별								
 남자	33.5	31.2	19.7	13.3	2.4	100.0	(995)	2.2
여자	32.1	38.2	19.0	9.5	1.2	100.0	(1,005)	2.1
 연령	5=	50.2	-210				(2,00)	
15~19세	15.7	45.5	25.9	10.2	2.7	100.0	(121)	2.4
20~29세	27.2	35.7	28.2	7.3	1.6	100.0	(303)	2.2
30~39세	28.3	37.5	22.9	10.5	0.9	100.0	(318)	2.2
40~49세	35.2	32.0	17.9	13.7	1.3	100.0	(368)	2.1
50~59세								
	40.3	32.9	11.1	13.5	2.1	100.0	(383)	2.0
60세 이상	35.6	33.1	17.5	11.4	2.5	100.0	(507)	2.1
지역	22.5	20 /	10 /	100		1000	(205)	2.1
서울	32.5	38.4	18.4	10.0	0.7	100.0	(385)	2.1
서울 외 광역시	30.1	37.0	19.8	10.5	2.6	100.0	(497)	2.2
도 지역 시부	33.8	32.5	19.8	12.1	1.9	100.0	(985)	2.2
도 지역 군부	36.2	32.0	17.2	13.0	1.7	100.0	(133)	2.1
혼인상태								
비혼	26.9	36.6	25.3	9.7	1.5	100.0	(600)	2.2
기혼	35.0	34.1	16.3	12.5	2.1	100.0	(1,281)	2.1
이혼/사별	38.9	31.3	21.5	8.3	0.0	100.0	(114)	2.0
학력								
고졸 이하	32.2	34.1	21.0	10.4	2.3	100.0	(886)	2.2
다. 대졸 이상	33.3	35.0	18.1	12.2	1.4	100.0	(1.105)	2.1
경제활동 상태	55.5	55.0					(=,==)	
일함	35.0	33.5	18.3	11.5	1.7	100.0	(1,302)	2.1
일하지 않음	28.6	37.0	21.2	11.1	2.0	100.0	(698)	2.2
고용안정성	20.0	37.0	21.2	11.1	2.0	100.0	(0)0)	2.2
불안정	42.9	33.1	11.5	10.6	2.0	100.0	(269)	2.0
보통	32.3	32.1	24.4	9.3	2.0	100.0	(209)	2.2
•							( <i>)</i>	
<u> 안정</u>	33.2	34.2	18.4	12.7	1.5	100.0	(738)	2.1
이념 성향	22.5	25.0	15.0	12.0	2.6	100.0	(500)	2.2
진보	32.7	35.0	15.9	13.9	2.6	100.0	(589)	2.2
중도	31.1	35.4	21.8	10.3	1.4	100.0	(966)	2.2
보수	36.6	33.0	18.4	10.4	1.6	100.0	(445)	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3	30.8	15.2	8.7	2.0	100.0	(513)	2.0
중층	29.6	36.2	20.7	12.0	1.5	100.0	(1,372)	2.2
<u></u> 상층	24.1	34.5	21.7	15.5	4.2	100.0	(116)	2.4
ス・1) 耐フ 0 'ol ス 0	1-1-1-1-				-1:=	7 0 7 2	=1 =1 01	

주: 1) 평균은 '아주 악화될 것이다'를 1점~'아주 개선될 것이다'를 5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라. 미래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전망

미래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인 〈표 4-8〉를 살펴보면,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아주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7.7%에 달했으며, '조금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34.6%였다. 즉, 응답자의 82.3%가 앞으로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9.6%,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6.6%, '아주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85.3%, 남자의 79.3%가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3.3%, 중층인 사람의 82.2%, 상층인 사람의 79.8%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8〉 미래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전망

							(27). /	0, 0, 0/
구분	아주 악화될 것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조금 개선될 것이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47.7	34.6	9.6	6.6	1.5	100.0	(2,000)	1.8
성별								
남자	47.4	31.9	10.5	8.4	1.9	100.0	(995)	1.9
여자	48.0	37.3	8.7	4.9	1.0	100.0	(1,005)	1.7
연령							. , - ,	
15~19세	28.7	42.8	16.9	10.1	1.4	100.0	(121)	2.1
20~29세	39.6	41.2	14.4	3.8	1.0	100.0	(303)	1.9
30~39세	44.9	34.6	12.4	6.6	1.5	100.0	(318)	1.9
40~49세	49.2	33.3	9.3	6.6	1.5	100.0	(368)	1.8
50~59세	55.3	30.8	5.3	7.7	1.0	100.0	(383)	1.7
60세 이상	51.9	32.7	6.7	6.7	2.0	100.0	(507)	1.7
지역	71.7	<i>J</i> 2.7	0.7	0.7	2.0	100.0	()01)	1./
서울	48.0	35.6	7.9	7.5	1.0	100.0	(385)	1.8
서울 외 광역시	48.2	35.6	8.2	6.3	1.8	100.0	(497)	1.8
도 지역 시부	47.8	33.2	10.7	6.8	1.4	100.0	(985)	1.8
도 지역 군부	44.2	38.9	11.4	3.8	1.7	100.0	(133)	1.8
<u>ㅗ 시크 교ㅜ</u> 혼인상태	44.2	30.9	11.4	3.0	1./	100.0	(133)	1.0
비혼	39.6	40.2	13.1	6.1	1.1	100.0	(600)	1.9
미 <del>년</del> 기혼	51.9	31.3	8.2	7.1	1.4	100.0	(1,281)	1.7
기본 이혼/사별	42.8	41.9	6.2 6.9	4.5	3.9	100.0	(1,281) $(114)$	1.7
<u>이존/시크</u> 학력	42.0	41.9	0.9	4.)	5.9	100.0	(114)	1.0
역력 고졸 이하	45.7	25 5	10.1	7.2	1.5	100.0	(886)	1.8
		35.5	10.1			100.0		
대졸 이상 경제활동 상태	49.3	33.7	9.3	6.2	1.4	100.0	(1,105)	1.8
	/O O	22.5	0.0	7.0	1.7	100.0	(1.202)	1.0
일함	48.8	33.5	9.0	7.0	1.7	100.0	(1,302)	1.8
일하지 않음	45.5	36.7	10.8	6.0	1.0	100.0	(698)	1.8
고용안정성	50.7	20.0	0.4		2.4	100.0	(2(0)	1.0
불안정	52.7	29.8	9.4	5.6	2.4	100.0	(269)	1.8
보통	48.2	33.2	11.0	6.6	1.0	100.0	(294)	1.8
<u>안정</u>	47.7	35.0	8.0	7.7	1.7	100.0	(738)	1.8
이념 성향	/ -						(500)	
진보	46.5	35.7	9.1	6.9	1.9	100.0	(589)	1.8
중도	44.5	37.0	10.5	6.8	1.2	100.0	(966)	1.8
<u>보수</u>	56.0	28.2	8.4	5.9	1.4	100.0	(445)	1.7
주관적 소득계층							(= )	
하층 	53.8	29.5	9.9	5.1	1.6	100.0	(513)	1.7
중층	45.7	36.5	9.7	6.9	1.2	100.0	(1,372)	1.8
상층	44.0	35.8	7.0	9.9	3.3	100.0	(116)	1.9
ス·1) 퍼그 0 '이 ス 0	1-1-1-1-	1-11 = 1	7] (0] 7 7]	11-1 -1-	1-11= -	7107 =	-1111	

주: 1) 평균은 '아주 악화될 것이다'를 1점~'아주 개선될 것이다'를 5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3. 젠더에 따른 불평등

#### 가. 직접적인 성차별 피해 경험

'귀하는 남자/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불이익, 불공정한 대우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척도(① 경험한 적 전혀 없음, ④ 경험한 적 아주 많음)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결과는 〈표 4-9〉와 같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가끔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고, 별로 없다는 응답이 33.0%로 뒤를 이었고, 전혀 없다는 응답은 26.5%, 아주 많다는 응답은 6.2%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는 응답은 남자가, 가끔 있거나 아주 많다는 응답은 여자가 더 높게나타났다. 남자의 38.1%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불이익, 불공정한 대우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여자 응답자는 15.0%였다. 여자의 43.7%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끔 차별을 경험하였고 9.8%는 이러한 경험이 아주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24.8%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끔 차별을 경험하였고 2.6%는 이러한 경험이 아주 많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차이도 있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다는 응답은 보수의 4.4%, 중도의 6.1%, 진보의 7.7%였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가끔 있다는 응답은 보수의 29.7%, 중도의 35.0%, 진보의 36.5%였다. 반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보수의 34.6%, 중도의 33.1%, 진보의 31.7%였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보수의 31.3%, 중도의 25.8%, 진보의 24.1%였다.

〈표 4-9〉 직접적인 성차별 피해 경험 정도

	TI-1	ш-	7177	OLT		(271)	/0, O, E/
구분	전혀 없음	별로 없음	가끔 있음	아주 많음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26.5	33.0	34.3	6.2	100.0	(2,000)	2.2
 성별							
남자	38.1	34.5	24.8	2.6	100.0	(995)	1.9
여자	15.0	31.6	43.7	9.8	100.0	(1,005)	2.5
 연령			-0 ,			(-/2/	
15~19세	30.4	30.6	34.2	4.8	100.0	(121)	2.1
20~29세	22.9	24.9	42.5	9.7	100.0	(303)	2.4
30~39세	18.5	30.7	45.1	5.8	100.0	(318)	2.4
40~49세	26.7	31.9	36.0	5.3	100.0	(368)	2.2
50~59세	30.5	33.2	31.5	4.8	100.0	(383)	2.1
60세 이상	29.6	40.7	23.4	6.3	100.0	(507)	2.1
지역						(2 - 1 /	
서울	23.0	34.7	34.6	7.6	100.0	(385)	2.3
서울 외 광역시	25.2	32.2	36.5	6.1	100.0	(497)	2.2
도 지역 시부	28.4	33.0	33.5	5.1	100.0	(985)	2.2
도 지역 군부	27.5	31.7	30.4	10.3	100.0	(133)	2.2
혼인상태						, , , ,	
비혼	23.7	28.1	40.7	7.5	100.0	(600)	2.3
기혼	28.3	35.4	31.4	5.0	100.0	(1,281)	2.1
이혼/사별	20.8	33.1	32.9	13.3	100.0	(114)	2.4
 학력							
고졸 이하	28.8	35.2	29.8	6.1	100.0	(886)	2.1
대졸 이상	24.6	31.4	38.1	6.0	100.0	(1,105)	2.3
경제활동 상태							
일함	26.8	33.3	34.2	5.8	100.0	(1,302)	2.2
일하지 않음	26.0	32.6	34.5	6.9	100.0	(698)	2.2
고용안정성							
불안정	22.2	31.3	37.6	8.8	100.0	(269)	2.3
보통	30.0	33.1	32.8	4.0	100.0	(294)	2.1
안정	27.2	34.0	33.4	5.4	100.0	(738)	2.2
이념 성향							
진보	24.1	31.7	36.5	7.7	100.0	(589)	2.3
중도	25.8	33.1	35.0	6.1	100.0	(966)	2.2
보수	31.3	34.6	29.7	4.4	100.0	(445)	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7	30.5	31.6	8.1	100.0	(513)	2.2
중층	25.0	34.0	35.9	5.1	100.0	(1,372)	2.2
상층	29.6	32.8	27.1	10.5	100.0	(116)	2.2
·							

주: 1) 평균은 '전혀 없음'을 1점~'아주 많음'을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나.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성적 불평등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 ②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의 성적 불평등, ③ 임신·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받는 성적 불평등, ④ 미성년자녀 양육 시 성적 불평등,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이라는 다섯 개의보기를 제공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게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 분야로 임신·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받는 성적 불평등을 선택한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이 23.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이 21.6%,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의 성적 불평등이 17.9%, 미성년자녀양육시 성적 불평등이 6.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차이를 보면, 임신·출산으로 일자리에서 받는 성적 불평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33.0%이고, 남자는 27.7%로 여자가 높았다. 반면,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20.5%, 남자가 26.1%로 남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혼자는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성적 불평등으로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꼽은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꼽은 비율이 23.9%로 가장 높았다.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꼽은 비율은 이혼/사별자가 21.9%로 가장 높았다.

〈표 4-10〉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성적 불평등

(단위: %, 명)

구분	임신·출산 으로 인해 일자리 에서	취업 및 일자리 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	미성년 자녀 양육 시	Ä	<u>. 11</u> . 70, 87 사례 수 (명)
 전체	30.4	23.3	21.6	17.9	6.8	100.0	(2,000)
성별							, , , ,
 남자	27.7	26.1	21.4	17.2	7.5	100.0	(995)
여자	33.0	20.5	21.8	18.5	6.1	100.0	(1,005)
연령							
15~19세	34.2	40.0	10.2	9.5	6.1	100.0	(121)
20~29세	32.5	27.5	20.2	14.7	5.1	100.0	(303)
30~39세	32.1	15.9	26.1	20.8	5.2	100.0	(318)
40~49세	27.6	22.5	21.8	19.8	8.3	100.0	(368)
50~59세	28.8	26.7	20.2	18.6	5.6	100.0	(383)
60세 이상	30.4	19.4	23.3	17.9	8.9	100.0	(507)
지역							
서울	28.4	25.2	20.1	18.7	7.6	100.0	(385)
서울 외 광역시	34.7	23.4	20.2	16.1	5.7	100.0	(497)
도 지역 시부	28.9	23.8	22.8	18.1	6.4	100.0	(985)
도 지역 군부	31.4	13.5	22.9	20.3	11.9	100.0	(133)
혼인상태							
비혼	29.5	30.3	17.8	16.5	5.9	100.0	(600)
기혼	30.7	20.1	23.9	18.1	7.2	100.0	(1,281)
이혼/사별	32.5	22.2	16.8	21.9	6.6	100.0	(114)
학력							
고졸 이하	28.7	26.1	21.7	15.5	8.0	100.0	(886)
대졸 이상	31.9	20.9	21.8	19.7	5.8	100.0	(1,105)
경제활동 상태							
일함	30.5	22.5	22.1	17.9	7.0	100.0	(1,302)
일하지 않음	30.3	24.8	20.7	17.7	6.5	100.0	(698)
고용안정성							
불안정	24.7	25.5	19.6	22.8	7.4	100.0	(269)
보통	32.5	24.3	21.0	15.5	6.7	100.0	(294)
안정	31.7	20.6	23.5	17.1	7.0	100.0	(738)
이념 성향							
진보	28.5	25.1	21.6	18.0	6.8	100.0	(589)
중도	32.7	22.3	20.1	18.1	6.8	100.0	(966)
보수	27.9	23.1	24.9	17.2	6.9	100.0	(4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4	26.4	21.0	17.5	7.6	100.0	(513)
중층	31.8	22.4	21.4	17.4	6.9	100.0	(1,372)
상층	26.6	19.6	26.7	24.7	2.5	100.0	(116)
Z. (건축기/모른)( 0.1	ല പിംബിച്ചിറ						

주: '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성적 불평등으로 꼽은 비율은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25.5%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꼽은 비율은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의 23.5%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성적 불평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성적 불평등으로 꼽은 응답자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사람의 26.4%, 중층인 사람의 22.4%, 상층인 사람의 19.6%였다. 반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성적 불평등으로 꼽은 응답자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사람의 21.0%, 중층인 사람의 21.4%, 상층인 사람의 26.7%로 나타났다.

## 4.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_\_\_\_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4점 척도(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아주 필요하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 가.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개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고, '조금 필요하다'가 34.8%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남자는 16.2%인 데 반해, 여자는 6.6%에 그쳤다. 국민연금 성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아주 필요하다+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자의 경우 91.6%에 달했으며, 남자는 82.0%였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의 경우 89.8%,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응답자의 경우 86.5%,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의 경우 85.6%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가 보수보다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진보의 90.4%, 중도의 86.8%, 보수의 82.2%가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1〉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UH. 7	0, つ, 智)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4.0	7.4	34.8	52.1	1.8	100.0	(2,000)	3.4
성별								
남자	6.5	9.6	38.6	43.4	1.8	100.0	(995)	3.2
여자	1.5	5.2	30.9	60.7	1.8	100.0	(1,005)	3.5
 연령								
15~19세	3.4	4.1	46.8	45.1	0.7	100.0	(121)	3.3
20~29세	6.0	6.3	39.9	46.5	1.3	100.0	(303)	3.3
30~39세	3.9	7.1	33.6	54.2	1.2	100.0	(318)	3.4
40~49세	3.6	9.3	32.0	54.3	0.8	100.0	(368)	3.4
50~59세	3.7	7.4	32.1	55.5	1.3	100.0	(383)	3.4
60세 이상	3.5	7.6	33.5	51.5	3.8	100.0	(507)	3.4
지역	5.7	,	33.7	71.7	5.0	100.0	()01)	J. 1
, , 서울	6.0	7.0	32.8	52.8	1.4	100.0	(385)	3.3
서울 외 광역시	2.8	6.7	36.9	52.5	1.1	100.0	(497)	3.4
도 지역 시부	4.0	7.6	33.8	52.4	2.2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2.3	9.8	39.2	46.2	2.6	100.0	(133)	3.3
혼인상태	2.5	7.0	37.2	10.2	2.0	100.0	(133)	J.J
비혼	4.9	6.9	39.8	47.3	1.1	100.0	(600)	3.3
기혼	3.8	7.6	32.9	54.0	1.6	100.0	(1,281)	3.4
기는 이혼/사별	0.0	7.7	28.2	57.1	7.0	100.0	(1,261) $(114)$	3.5
이 <del>는</del> /시글 학력	0.0	/./	20.2	2/.1	7.0	100.0	(114)	<u>J.J</u>
고졸 이하	3.3	6.6	37.6	50.2	2.3	100.0	(886)	3.4
고들 이어 대졸 이상	4.6	8.0	32.5	53.6	1.3	100.0	(1,105)	3.4
데 <u> 이 이 </u> 경제활동 상태	4.0	6.0	34.)	)).0	1.)	100.0	(1,10))	J.4
일함	4.2	7.6	33.5	53.2	1.6	100.0	(1,302)	3.4
<sup>크림</sup> 일하지 않음					2.2	100.0	(698)	
	3.6	7.1	37.1	50.1	2.2	100.0	(096)	3.4
불안정	3.0	6.8	32.4	57.4	0.4	100.0	(269)	3.4
물인성 보통	3.0 3.0	6.3	35.0	51.4 51.4	4.2	100.0	(209)	3.4 3.4
모공 안정	5.0 5.1				1.0	100.0	(738)	
	5.1	8.3	33.3	52.3	1.0	100.0	(/36)	3.3
이념 성향	2.5	6.1	21.2	5O 1	1.0	100.0	(500)	2 5
진보	2.5	6.1	31.3	59.1	1.0	100.0	(589)	3.5
중도	4.3	6.9	37.2	49.6	2.0	100.0	(966)	3.3
포기저 사도계조	5.2	10.1	34.0	48.2	2.4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 1	<b>7</b> .0	22.0	5 / 5	2.1	100.0	(512)	2 /
하층	4.1	7.3	32.0	54.5	2.1	100.0	(513)	3.4
중층	4.1	6.9	35.8	51.4	1.8	100.0	(1,372)	3.4
상층	2.5	13.9	34.4	49.2	0.0	100.0	(116)	3.3
구. 1) 페그 0 (키크) 페	0 -1 -1 -1.	3177 4 4	1 '017 :	1 0 -1-11	= /710	1 1 1 1 1	7 7 1 0 1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나.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개입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아주 필요하다'가 26.1%,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2.8%,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5.2%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가 69.5%, 남자가 54.5%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대의 경우 23.5%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은 42.7%에 달했다.

또,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용안정성이 낮은 집단,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 이념 성향이 진보적인 집단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의 62.3%,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응답자의 60.3%,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의 59.2%가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하층인 응답자의 62.8%, 중층인 응답자의 62.7%가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응답자는 51.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과 관련해서는, 진보의 67.2%, 중도의 61.3%, 보수의 56.8%가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2〉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단위: %, 명)

	TJ=I	шп				(11	刊・%,切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15.2	22.8	35.9	26.1	100.0	(2,000)	2.7
성별							
남자	20.1	25.4	32.3	22.2	100.0	(995)	2.6
여자	10.4	20.1	39.5	29.9	100.0	(1,005)	2.9
 연령							
15~19세	4.0	19.5	52.5	23.9	100.0	(121)	3.0
20~29세	16.2	22.1	42.5	19.3	100.0	(303)	2.6
30~39세	17.9	19.0	38.0	25.1	100.0	(318)	2.7
40~49세	14.7	20.6	33.8	30.9	100.0	(368)	2.8
50~59세	15.4	24.1	31.3	29.2	100.0	(383)	2.7
60세 이상	15.9	26.8	31.9	25.5	100.0	(507)	2.7
지역							
서울	15.4	21.0	37.7	26.0	100.0	(385)	2.7
서울 외 광역시	11.2	22.7	38.7	27.4	100.0	(497)	2.8
도 지역 시부	16.8	23.8	34.7	24.8	100.0	(985)	2.7
도 지역 군부	17.9	20.6	30.1	31.4	100.0	(133)	2.7
혼인상태				<u> </u>		(-00)	
비혼	14.5	19.0	43.7	22.8	100.0	(600)	2.7
기혼	15.7	24.2	33.3	26.9	100.0	(1,281)	2.7
이혼/사별	13.1	25.9	25.1	35.9	100.0	(114)	2.8
<u>학</u> 력						()	
고졸 이하	14.2	21.7	39.0	25.1	100.0	(886)	2.8
대졸 이상	16.0	23.2	33.8	27.0	100.0	(1.105)	2.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7.7	22.2	34.4	25.7	100.0	(1,302)	2.7
일하지 않음	10.5	23.8	38.8	26.9	100.0	(698)	2.8
고용안정성						, ,	
불안정	16.9	20.8	32.3	30.0	100.0	(269)	2.8
보통	19.6	20.1	38.3	22.0	100.0	(294)	2.6
안정	17.2	23.5	33.6	25.6	100.0	(738)	2.7
이념 성향						(, 0 - )	
진보	12.7	20.1	33.8	33.4	100.0	(589)	2.9
도 <u></u> 중도	15.3	23.4	39.6	21.7	100.0	(966)	2.7
보수	18.2	24.9	30.9	26.0	100.0	(445)	2.6
 주관적 소득계층						( '-/	
하층	14.9	22.3	33.7	29.1	100.0	(513)	2.8
중층	15.0	22.3	37.4	25.3	100.0	(1,372)	2.7
상층	19.1	29.9	28.3	22.7	100.0	(116)	2.5
7. 1\ 20 (2) -1 21	0 =1 =1 01=1		17 70.5			` ′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개입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8.5%로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2%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84.9%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70.7%가 그러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82.6%, 중도 성향 응답자의 77.8%, 보수 성향 응답자의 71.7%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응답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응답자의 79.3%, 중층인 응답자의 78.2%, 상층인 응답자의 67.4%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3〉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TI=1	ш-				(411.	/0, 6, 11/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7.2	14.9	39.3	38.5	100.0	(2,000)	3.1
성별							
남자	11.0	18.3	40.4	30.3	100.0	(995)	2.9
여자	3.4	11.6	38.2	46.7	100.0	(1,005)	3.3
연령							
15~19세	3.3	9.5	54.3	32.9	100.0	(121)	3.2
20~29세	11.7	14.6	40.8	32.9	100.0	(303)	2.9
30~39세	6.8	12.3	37.3	43.6	100.0	(318)	3.2
40~49세	7.7	17.6	28.7	46.0	100.0	(368)	3.1
50~59세	6.4	14.5	41.3	37.8	100.0	(383)	3.1
60세 이상	6.0	16.6	42.2	35.2	100.0	(507)	3.1
지역	0.0	10.0	12.2	37.2	100.0	(501)	
, , 서울	8.8	14.4	39.3	37.5	100.0	(385)	3.1
서울 외 광역시	6.0	12.9	42.2	38.9	100.0	(497)	3.1
도 지역 시부	7.3	16.2	37.9	38.7	100.0	(985)	3.1
도 지역 군부	6.7	14.9	39.1	39.4	100.0	(133)	3.1
<u> </u>	0.7	14.7	37.1	37.1	100.0	(133)	<u>J.1</u>
비혼	9.3	11.8	43.5	35.4	100.0	(600)	3.1
기혼	6.8	16.3	37.4	39.6	100.0	(1,281)	3.1
이혼/사별	1.7	15.5	38.7	44.1	100.0	(1,281) $(114)$	3.3
이는/시글 학력	1./	1).)	30.7	44.1	100.0	(114)	<u> </u>
<sup>작곡</sup> 고졸 이하	6.0	14.9	42.5	36.6	100.0	(886)	3.1
포를 이어 대졸 이상	8.2	15.1	36.3	40.4	100.0	(1,105)	3.1
경제활동 상태	0.2	1).1	50.5	40.4	100.0	(1,10))	J.1
경제설등 경계 일함	8.3	14.9	37.3	39.5	100.0	(1,302)	3.1
<sup>필임</sup> 일하지 않음	5.2	15.0	43.0	36.8	100.0	(698)	3.1
 고용안정성	).2	13.0	45.0	30.6	100.0	(096)	5.1
고용인성성 불안정	7.3	14.6	33.6	44.5	100.0	(269)	3.2
보통	8.0	14.0	42.0	36.0	100.0	(294)	3.1
<u> 안정</u>	8.8	15.4	36.8	39.0	100.0	(738)	3.1
이념 성향	5.0	10 /	25.7	16.0	100.0	(500)	2.0
진보	5.0	12.4	35.7	46.8	100.0	(589)	3.2
중도	7.4	14.8	42.2	35.6	100.0	(966)	3.1
보수	9.6	18.7	37.8	33.9	100.0	(445)	3.0
주관적 소득계층		10.0	20.5	/o =	100.0	(5.1.0)	2.1
하층	6.9	13.8	38.5	40.7	100.0	(513)	3.1
중층	6.9	14.9	40.1	38.1	100.0	(1,372)	3.1
<u> </u>	11.6	21.0	33.7	33.7	100.0	(116)	2.9
ス・1) 퍼 フ 0 ' 지 ᅴ	0 =1 =1 01=1	, = a = 1 (a	17 70 7	1-11 - 1-1	~11	77101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라. 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노인 대상 성폭력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 개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8.0%로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1%,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88.0%가 노인 대상 성폭력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80.4%가 그러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인 대상의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0대의 94.0%, 20대의 90.8%, 30대의 89.5%, 40대의 85.8%, 50대의 80.5%, 60대 이상의 76.3%가 노인 대상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4〉 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단위: '	%,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3.7	12.1	38.0	46.2	100.0	(2,000)	3.3
성별							
남자	5.7	13.9	37.8	42.6	100.0	(995)	3.2
여자	1.7	10.3	38.2	49.7	100.0	(1,005)	3.4
 연령							
15~19세	1.4	4.6	35.3	58.7	100.0	(121)	3.5
20~29세	2.5	6.7	36.9	54.0	100.0	(303)	3.4
30~39세	4.5	6.0	32.5	57.0	100.0	(318)	3.4
40~49세	3.3	10.9	36.8	49.0	100.0	(368)	3.3
50~59세	3.1	16.4	42.3	38.2	100.0	(383)	3.2
60세 이상	5.1	18.6	40.5	35.8	100.0	(507)	3.1
지역				0,		(2-1)	
 서울	3.9	10.7	36.8	48.7	100.0	(385)	3.3
서울 외 광역시	4.6	12.5	38.6	44.3	100.0	(497)	3.2
도 지역 시부	2.9	12.9	38.0	46.3	100.0	(985)	3.3
 도 지역 군부	5.8	9.0	40.1	45.1	100.0	(133)	3.2
혼인상태						(-00)	
비혼	3.1	5.7	35.2	55.9	100.0	(600)	3.4
기호	3.8	14.6	39.8	41.8	100.0	(1,281)	3.2
이혼/사별	4.8	15.5	34.2	45.6	100.0	(114)	3.2
<u>학</u> 력			<u> </u>			()	
고졸 이하	3.7	11.9	38.3	46.1	100.0	(886)	3.3
대졸 이상	3.7	12.4	37.5	46.3	100.0	(1,105)	3.3
경제활동 상태						(-/2/	
일함	4.0	12.2	39.2	44.7	100.0	(1,302)	3.2
일하지 않음	3.2	11.9	35.9	48.9	100.0	(698)	3.3
고용안정성						(-2 -)	
불안정	2.9	14.2	35.6	47.3	100.0	(269)	3.3
보통	3.4	9.0	46.3	41.3	100.0	(294)	3.3
 안정	4.6	12.7	37.6	45.1	100.0	(738)	3.2
이념 성향						(, 0 - )	
진보	3.0	10.6	34.5	51.9	100.0	(589)	3.4
도 중도	3.3	10.5	42.1	44.1	100.0	(966)	3.3
보수	5.3	17.6	34.0	43.1	100.0	(445)	3.1
 주관적 소득계층		-,	J =	-5		(/	
하층	4.7	12.9	33.9	48.5	100.0	(513)	3.3
중층	3.2	11.4	39.6	45.7	100.0	(1,372)	3.3
상층	4.8	16.3	37.5	41.4	100.0	(116)	3.2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표 4-15》는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4%로 가장 높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9.9%로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7%,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0%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3%에 달하였고, 남자는 72.3%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이혼/사별자의 경우 83.9%, 기혼자의 경우 82.5%, 비혼자의 경우 78.2%에 달했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83.3%가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사람은 81.5%가,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은 79.4%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념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의 경우 87.6%, 중도인 응답자의 경우 79.6%, 보수인 응답자의 경우 76.7%에 달했다.

〈표 4-15〉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						(단위:	%, 냉, 섬)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6.0	12.7	41.4	39.9	100.0	(2,000)	3.2
성별							
남자	10.4	17.4	41.1	31.2	100.0	(995)	2.9
여자	1.6	8.1	41.8	48.4	100.0	(1,005)	3.4
연령							
15~19세	4.7	7.4	44.2	43.8	100.0	(121)	3.3
20~29세	12.2	16.8	33.8	37.2	100.0	(303)	3.0
30~39세	7.7	11.3	41.6	39.5	100.0	(318)	3.1
40~49세	4.6	11.8	39.9	43.6	100.0	(368)	3.2
50~59세	4.2	12.7	42.7	40.4	100.0	(383)	3.2
60세 이상	3.8	13.2	45.4	37.6	100.0	(507)	3.2
지역							
서울	6.7	12.9	40.9	39.5	100.0	(385)	3.1
서울 외 광역시	5.3	11.9	45.3	37.5	100.0	(497)	3.2
도 지역 시부	6.3	12.4	39.8	41.5	100.0	(985)	3.2
도 지역 군부	3.9	17.8	40.7	37.6	100.0	(133)	3.1
혼인상태		•				, , , ,	
비혼	9.5	12.3	38.4	39.8	100.0	(600)	3.1
기혼	4.5	13.0	42.5	40.1	100.0	(1,281)	3.2
이혼/사별	4.7	11.4	44.7	39.3	100.0	(114)	3.2
<u></u> 학력			-				
고졸 이하	4.9	12.4	42.3	40.3	100.0	(886)	3.2
대졸 이상	6.9	13.1	40.5	39.5	100.0	(1,105)	3.1
경제활동 상태		-					
일함	6.0	13.3	39.6	41.1	100.0	(1,302)	3.2
일하지 않음	5.9	11.7	44.9	37.5	100.0	(698)	3.1
고용안정성						, , ,	
불안정	6.6	10.1	36.3	47.1	100.0	(269)	3.2
보통	5.5	13.0	43.0	38.5	100.0	(294)	3.1
안정	6.0	14.6	39.4	40.0	100.0	(738)	3.1
이념 성향			0,-			(, 0 - )	
진보	2.6	9.8	37.7	49.9	100.0	(589)	3.3
중도	6.8	13.6	43.3	36.3	100.0	(966)	3.1
보수	8.6	14.6	42.5	34.2	100.0	(445)	3.0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6.9	12.5	39.7	40.9	100.0	(513)	3.1
중층	5.2	12.8	42.6	39.4	100.0	(1,372)	3.2
<u> </u>	11.0	13.2	35.2	40.6	100.0	(116)	3.1
		-5	J			(/	J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2) '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5.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각 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_\_\_\_\_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 4점 척도(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 아주 필요하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 가.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청년 취업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6.1%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 취업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자의 비율은 88.9%, 남자의 비율은 84.4%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0대와 60대 이상은 청년 취업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4%와 8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10대는 97.3%, 50대는 88.1%, 20대는 87.9%, 40대는 87.5%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청년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6〉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

	권리	шп				(27)	/0, O, D/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4.7	8.6	30.6	56.1	100.0	(2,000)	3.4
성별							
남자	6.6	9.0	30.8	53.6	100.0	(995)	3.3
여자	2.9	8.2	30.4	58.6	100.0	(1,005)	3.4
연령							
15~19세	1.4	1.4	38.0	59.3	100.0	(121)	3.6
20~29세	4.4	7.7	35.5	52.4	100.0	(303)	3.4
30~39세	6.6	9.0	35.3	49.1	100.0	(318)	3.3
40~49세	4.4	8.1	32.5	55.1	100.0	(368)	3.4
50~59세	3.7	8.2	27.9	60.2	100.0	(383)	3.4
60세 이상	5.6	11.2	23.6	59.6	100.0	(507)	3.4
지역							
서울	3.8	9.7	33.7	52.8	100.0	(385)	3.4
서울 외 광역시	5.9	7.8	29.3	57.0	100.0	(497)	3.4
도 지역 시부	4.5	8.6	30.1	56.8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4.7	8.0	29.9	57.4	100.0	(133)	3.4
혼인상태						(-00)	
비혼	4.4	5.7	37.0	52.9	100.0	(600)	3.4
기혼	4.9	10.0	28.2	57.0	100.0	(1,281)	3.4
이혼/사별	4.6	6.7	23.9	64.8	100.0	(114)	3.5
 학력						(/	
고졸 이하	4.3	7.8	28.8	59.2	100.0	(886)	3.4
대졸 이상	5.1	9.0	32.1	53.8	100.0	(1,105)	3.3
경제활동 상태			<u> </u>			(-///	
일함	5.2	9.0	29.7	56.1	100.0	(1,302)	3.4
일하지 않음	3.8	7.7	32.3	56.2	100.0	(698)	3.4
고용안정성			0-0			(-, -,	0 -
불안정	6.5	7.2	26.8	59.4	100.0	(269)	3.4
보통	4.2	8.0	32.6	55.3	100.0	(294)	3.4
안정	5.2	10.1	29.5	55.2	100.0	(738)	3.3
이념 성향						(, 0 - )	
진보	1.9	4.8	30.1	63.1	100.0	(589)	3.5
중도	5.3	9.2	32.8	52.6	100.0	(966)	3.3
보수	7.2	12.1	26.3	54.4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			, .·· x		\- ±2/	J.J
하층	6.6	7.0	28.3	58.1	100.0	(513)	3.4
중층	3.7	9.0	31.4	55.9	100.0	(1,372)	3.4
상층	8.8	10.6	30.9	49.7	100.0	(116)	3.2
	5.0	10.0	55.7	-2.1	100.0	(110)	٠.ــ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2) '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나.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

〈표 4-17〉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1.6%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자의 90.8%, 남자의 85.9%를 차지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10대의 96.6%, 20대의 91.1%, 30대의 93.7%, 40대의 89.7%, 50대의 88.1%, 60대의 80.6%가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조금 필요하다+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의 91.6%, 중도의 88.7%가 보수의 83.2%가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응답자의 89.1%, 중층인 응답자의 88.5%, 상층인 응답자의 83.2%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

	건크	шп				(271)	/0, O, D/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2.4	9.3	41.6	46.7	100.0	(2,000)	3.3
성별							
남자	3.4	10.6	39.8	46.1	100.0	(995)	3.3
여자	1.3	7.9	43.5	47.3	100.0	(1,005)	3.4
 연령							
15~19세	0.7	2.7	47.0	49.7	100.0	(121)	3.5
20~29세	1.6	7.3	42.1	49.0	100.0	(303)	3.4
30~39세	1.8	4.5	46.2	47.5	100.0	(318)	3.4
40~49세	2.8	7.5	37.7	52.0	100.0	(368)	3.4
50~59세	2.4	9.5	40.9	47.3	100.0	(383)	3.3
60세 이상	3.3	16.1	40.7	39.9	100.0	(507)	3.2
지역							
서울	2.3	11.5	40.1	46.0	100.0	(385)	3.3
서울 외 광역시	2.2	9.0	44.1	44.6	100.0	(497)	3.3
도 지역 시부	2.1	8.5	40.9	48.5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5.5	9.2	42.0	43.3	100.0	(133)	3.2
혼인상태							
비혼	1.7	5.2	41.5	51.6	100.0	(600)	3.4
기혼	2.7	10.8	42.4	44.1	100.0	(1,281)	3.3
이혼/사별	2.9	11.5	33.5	52.1	100.0	(114)	3.3
학력							
고졸 이하	2.4	9.6	40.2	47.8	100.0	(886)	3.3
대졸 이상	2.4	9.0	42.7	45.9	100.0	(1,105)	3.3
경제활동 상태						, , , ,	
일함	2.1	9.6	40.4	47.9	100.0	(1,302)	3.3
일하지 않음	2.8	8.6	44.0	44.5	100.0	(698)	3.3
고용안정성				-		, , ,	
불안정	0.8	9.7	32.9	56.6	100.0	(269)	3.5
보통	2.4	7.6	42.2	47.8	100.0	(294)	3.4
안정	2.5	10.4	42.3	44.7	100.0	(738)	3.3
이념 성향				<u> </u>		, <del>, , ,</del>	
진보	0.8	7.5	39.4	52.2	100.0	(589)	3.4
도 <u></u> 중도	2.7	8.5	44.0	44.7	100.0	(966)	3.3
보수	3.7	13.1	39.5	43.7	100.0	(445)	3.2
 주관적 소득계층	5.7	-0		-5.7		(/	
하층	2.1	8.8	37.2	51.9	100.0	(513)	3.4
중층	2.1	9.4	43.3	45.2	100.0	(1,372)	3.3
상층	6.9	9.8	42.1	41.2	100.0	(116)	3.2
	/	, · · ·				(/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다.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년퇴직 연령 상향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9.2%로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6%,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과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합쳐서 살펴보았을 때, 여자의 81.9%가 정년퇴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자는 77.9%가 그러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응답의 일관적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응답자 중에 70.2%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퇴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하층의 80.0%, 중층의 8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표 4-18〉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

	전혀	별로				(411.	/0, O, D/
구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6.5	13.6	40.7	39.2	100.0	(2,000)	3.1
성별							
남자	8.6	13.5	38.2	39.7	100.0	(995)	3.1
여자	4.3	13.8	43.1	38.8	100.0	(1,005)	3.2
연령							
15~19세	2.7	15.0	45.1	37.2	100.0	(121)	3.2
20~29세	4.1	18.2	45.0	32.7	100.0	(303)	3.1
30~39세	4.8	14.2	41.6	39.5	100.0	(318)	3.2
40~49세	6.5	11.1	34.9	47.6	100.0	(368)	3.2
50~59세	10.3	15.5	35.5	38.7	100.0	(383)	3.0
60세 이상	6.9	10.7	44.6	37.8	100.0	(507)	3.1
지역							
서울	6.3	14.9	37.6	41.1	100.0	(385)	3.1
서울 외 광역시	5.9	15.0	43.2	35.9	100.0	(497)	3.1
도 지역 시부	6.6	12.7	39.7	41.0	100.0	(985)	3.2
도 지역 군부	7.6	11.6	47.6	33.1	100.0	(133)	3.1
혼인상태							
비혼	4.4	15.7	43.9	36.0	100.0	(600)	3.1
기혼	7.7	12.8	39.4	40.0	100.0	(1,281)	3.1
이혼/사별	2.8	11.3	38.4	47.5	100.0	(114)	3.3
학력							
고졸 이하	6.5	12.2	41.8	39.5	100.0	(886)	3.1
대졸 이상	6.5	14.5	39.8	39.2	100.0	(1,105)	3.1
경제활동 상태							
일함	7.1	13.8	38.6	40.5	100.0	(1,302)	3.1
일하지 않음	5.3	13.4	44.4	36.9	100.0	(698)	3.1
고용안정성							
불안정	7.1	13.5	37.7	41.7	100.0	(269)	3.1
보통	7.5	13.0	40.1	39.4	100.0	(294)	3.1
안정	6.9	14.2	38.4	40.5	100.0	(738)	3.1
이념 성향							
진보	6.2	12.1	41.5	40.2	100.0	(589)	3.2
중도	6.6	13.4	42.5	37.5	100.0	(966)	3.1
보수	6.4	16.3	35.5	41.8	100.0	(445)	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0	12.0	39.6	40.4	100.0	(513)	3.1
중층	5.1	14.2	41.2	39.5	100.0	(1,372)	3.2
상층	15.2	14.6	39.5	30.7	100.0	(116)	2.9
				- '		/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라.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표 4-19〉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5.2%,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9%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의 31.3%, 여자의 39.9%였으며, '아주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의 50.5%, 여자의 38.3%였다. 결혼장려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의 81.9%, 여자의 78.1%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장려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비율이 높았다. 10대의 81.5%, 20대의 73.3%, 30대의 75.4%, 40대의77.7%, 50대의 83.6%, 60대 이상의 85.4%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위해 결혼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84.3%가 결혼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이상은 76.5%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도지역 군부 단위 거주자의 경우 88.6%가 결혼장려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표 4-19〉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UH·	%, 7, 4)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4.9	15.2	35.6	44.4	100.0	(2,000)	3.2
 성별							
남자	4.7	13.4	31.3	50.5	100.0	(995)	3.3
여자	5.0	16.9	39.9	38.3	100.0	(1,005)	3.1
연령							
15~19세	2.1	16.4	46.3	35.2	100.0	(121)	3.1
20~29세	9.1	17.6	37.3	36.0	100.0	(303)	3.0
30~39세	6.0	18.5	38.0	37.5	100.0	(318)	3.1
40~49세	4.9	17.4	33.9	43.8	100.0	(368)	3.2
50~59세	4.2	12.2	34.6	49.0	100.0	(383)	3.3
60세 이상	2.7	11.9	32.7	52.7	100.0	(507)	3.4
지역			<b>U</b> ,			(2 - 1 /	
 서울	5.6	17.3	32.8	44.3	100.0	(385)	3.2
서울 외 광역시	3.4	16.5	34.1	46.0	100.0	(497)	3.2
도 지역 시부	5.6	14.5	36.6	43.3	100.0	(985)	3.2
 도 지역 군부	2.4	9.0	42.6	46.0	100.0	(133)	3.3
혼인상태		7.0			200.0	(-55)	
비혼	6.4	17.5	37.8	38.2	100.0	(600)	3.1
기혼	4.3	14.2	35.3	46.2	100.0	(1,281)	3.2
이혼/사별	2.5	13.1	28.6	55.8	100.0	(114)	3.4
<u>학</u> 력						()	
고졸 이하	2.9	12.8	36.4	47.9	100.0	(886)	3.3
대졸 이상	6.4	17.0	35.2	41.4	100.0	(1.105)	3.1
경제활동 상태							
일함	5.2	15.7	34.3	44.7	100.0	(1,302)	3.2
일하지 않음	4.2	14.1	38.0	43.6	100.0	(698)	3.2
고용안정성							
불안정	5.6	16.8	31.6	46.1	100.0	(269)	3.2
보통	4.3	15.3	36.6	43.8	100.0	(294)	3.2
안정	5.4	15.5	34.5	44.6	100.0	(738)	3.2
이념 성향							
진보	4.0	17.2	33.9	44.8	100.0	(589)	3.2
_ 중도	5.2	14.9	37.8	42.1	100.0	(966)	3.2
보수	5.2	12.9	33.3	48.7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	14.4	29.6	51.5	100.0	(513)	3.3
중층	4.9	15.8	38.1	41.2	100.0	(1,372)	3.2
상층	6.0	10.7	33.4	49.9	100.0	(116)	3.3
7.1\2070(7)=				1-1:= /-1		177101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마.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 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1.7%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은 38.1%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자녀 모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40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의 93.6%, 중도의 89.0%, 보수의 86.6%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0〉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

	<b>-1-1</b>					(UH· 7	0, つ, 省)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2.3	7.9	38.1	51.7	100.0	(2,000)	3.4
성별							
남자	3.1	8.2	34.6	54.1	100.0	(995)	3.4
여자	1.5	7.6	41.6	49.3	100.0	(1,005)	3.4
 연령							
15~19세	2.7	9.5	48.5	39.3	100.0	(121)	3.2
20~29세	0.9	5.8	42.4	50.9	100.0	(303)	3.4
30~39세	2.7	7.2	36.0	54.1	100.0	(318)	3.4
40~49세	3.3	11.7	35.8	49.1	100.0	(368)	3.3
50~59세	1.8	6.3	34.5	57.4	100.0	(383)	3.5
60세 이상	2.2	7.8	38.7	51.2	100.0	(507)	3.4
지역				-			-
서울	2.0	9.4	37.0	51.7	100.0	(385)	3.4
서울 외 광역시	2.6	10.2	36.2	51.0	100.0	(497)	3.4
도 지역 시부	2.1	6.6	40.0	51.3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3.1	5.2	34.2	57.5	100.0	(133)	3.5
혼인상태		-				, , , ,	
비혼	2.1	7.2	40.9	49.7	100.0	(600)	3.4
기혼	2.2	8.2	37.1	52.4	100.0	(1,281)	3.4
이혼/사별	2.6	8.5	33.5	55.5	100.0	(114)	3.4
<u></u> 학력							
고졸 이하	2.4	7.1	36.7	53.7	100.0	(886)	3.4
대졸 이상	2.2	8.6	39.0	50.2	100.0	(1,105)	3.4
경제활동 상태							
일함	2.5	7.7	35.6	54.2	100.0	(1,302)	3.4
일하지 않음	1.9	8.4	42.7	47.0	100.0	(698)	3.3
고용안정성							
불안정	2.9	11.3	27.4	58.4	100.0	(269)	3.4
보통	3.0	6.0	42.4	48.6	100.0	(294)	3.4
안정	2.1	7.1	35.9	54.9	100.0	(738)	3.4
이념 성향							
진보	1.0	5.5	37.1	56.5	100.0	(589)	3.5
중도	2.1	9.0	39.6	49.4	100.0	(966)	3.4
보수	4.4	9.0	36.1	50.4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	7.3	33.2	57.0	100.0	(513)	3.4
중층	2.2	8.0	39.8	50.0	100.0	(1,372)	3.4
상층	1.7	10.3	39.5	48.6	100.0	(116)	3.4
7. 1) 패기 (기의 피	1 1 -1 1				\ <b>_</b> = 1 = 1	77]0]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바.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분권 정책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4.1%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지방분권 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의 76.3%, 남자의 69.6%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였으며, 대졸 이상은 71.2%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응답자가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응답자의 74.3%, 중층인 응답자의 72.8%, 상층인 응답자의 67.9%가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1〉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

	TJ=1	шп				(UH· 7	6, 7, 省)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9.0	14.4	38.9	34.1	100.0	(2,000)	3.0
성별							
남자	13.4	14.3	34.9	34.7	100.0	(995)	2.9
여자	4.7	14.5	42.9	33.4	100.0	(1,005)	3.1
연령							
15~19세	2.7	13.6	56.6	21.8	100.0	(121)	3.0
20~29세	8.5	15.9	52.5	19.8	100.0	(303)	2.9
30~39세	8.4	18.7	39.8	31.0	100.0	(318)	3.0
40~49세	10.3	11.2	33.8	42.4	100.0	(368)	3.1
50~59세	10.0	14.1	33.2	39.2	100.0	(383)	3.1
60세 이상	9.5	13.6	33.8	37.6	100.0	(507)	3.1
지역							
서울	10.1	17.0	34.9	35.2	100.0	(385)	3.0
서울 외 광역시	7.1	13.6	41.5	34.3	100.0	(497)	3.1
도 지역 시부	9.4	14.0	39.0	33.8	100.0	(985)	3.0
도 지역 군부	10.1	13.2	39.8	31.9	100.0	(133)	3.0
혼인상태			<u> </u>			, , , ,	
비혼	6.7	15.6	47.6	26.8	100.0	(600)	3.0
기혼	10.2	14.1	35.6	36.8	100.0	(1,281)	3.0
이혼/사별	8.3	12.4	29.1	41.4	100.0	(114)	3.1
<u>학</u> 력	- 0					()	
고졸 이하	7.9	11.8	41.4	34.0	100.0	(886)	3.1
대졸 이상	10.0	16.6	37.0	34.2	100.0	(1.105)	3.0
경제활동 상태							
일함	9.9	14.4	37.0	35.4	100.0	(1,302)	3.0
일하지 않음	7.4	14.5	42.4	31.6	100.0	(698)	3.0
고용안정성							
불안정	7.5	13.7	35.7	39.2	100.0	(269)	3.1
보통	6.8	11.0	44.1	34.4	100.0	(294)	3.1
안정	12.0	16.0	34.6	34.5	100.0	(738)	2.9
이념 성향			-				
진보	6.0	14.1	39.8	36.6	100.0	(589)	3.1
중도	9.0	15.1	40.5	30.8	100.0	(966)	3.0
보수	13.0	13.4	34.2	37.7	100.0	(445)	3.0
 주관적 소득계층	-0		<u> </u>			()	
하층	9.7	10.0	36.6	37.7	100.0	(513)	3.1
중층	8.5	15.8	40.2	32.6	100.0	(1,372)	3.0
상층	12.1	18.2	33.1	34.8	100.0	(116)	2.9
7.1) = 70 (7) = 7			17 70-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사.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표 4-22〉와 같다. 전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다문화지원정책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0.3%로 그 뒤를 이었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8%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문화지원정책이 필요하다(조금 필요하다+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 대와 30대는 각각 69.3%, 66.3%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도 지역 군부에 거주하는 사람의 83.7%가 다문화지원 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서울이나 광역시 및 시부 거주자의 응답 비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응답자의 80.4%가 저출생·고 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문화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대졸 이상 응답자는 74.9%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하지 않는 응답자의 81.0%, 일하고 있는 응답자의 75.5%가 다문화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 4-22〉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난·	위: %, 명)
구분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5.8	16.8	47.1	30.3	100.0	(2,000)	3.0
성별							
남자	7.1	14.7	44.9	33.3	100.0	(995)	3.0
여자	4.5	18.9	49.3	27.4	100.0	(1,005)	3.0
연령							
15~19세	1.4	14.2	50.3	34.1	100.0	(121)	3.2
20~29세	8.2	22.4	44.0	25.3	100.0	(303)	2.9
30~39세	11.7	22.0	45.0	21.3	100.0	(318)	2.8
40~49세	4.9	13.5	47.5	34.0	100.0	(368)	3.1
50~59세	4.5	13.3	48.4	33.8	100.0	(383)	3.1
60세 이상	3.3	15.7	48.2	32.8	100.0	(507)	3.1
지역				-		<u> </u>	
서울	6.9	16.0	43.9	33.2	100.0	(385)	3.0
서울 외 광역시	4.2	18.0	48.1	29.7	100.0	(497)	3.0
도 지역 시부	6.5	17.0	47.2	29.3	100.0	(985)	3.0
도 지역 군부	3.2	13.1	51.7	32.0	100.0	(133)	3.1
혼인상태		-0		0		(-00)	
비혼	7.3	20.7	43.1	28.9	100.0	(600)	2.9
기혼	5.3	14.8	49.4	30.5	100.0	(1,281)	3.1
이혼/사별	4.3	17.0	43.1	35.7	100.0	(114)	3.1
학력							
고졸 이하	5.1	14.5	47.3	33.1	100.0	(886)	3.1
대졸 이상	6.4	18.7	46.8	28.1	100.0	(1,105)	3.0
경제활동 상태							
일함	7.0	17.5	44.4	31.1	100.0	(1,302)	3.0
일하지 않음	3.6	15.4	52.1	28.9	100.0	(698)	3.1
고용안정성							
불안정	6.3	17.2	41.6	34.9	100.0	(269)	3.1
보통	5.7	18.4	47.6	28.4	100.0	(294)	3.0
안정	7.8	17.3	44.1	30.8	100.0	(738)	3.0
이념 성향							
진보	3.7	14.7	45.2	36.4	100.0	(589)	3.1
중도	6.1	18.3	47.4	28.2	100.0	(966)	3.0
보수	7.9	16.3	48.9	26.9	100.0	(445)	2.9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5.3	19.6	42.5	32.6	100.0	(513)	3.0
중층	5.8	15.4	49.5	29.3	100.0	(1,372)	3.0
상층	8.5	21.2	38.5	31.9	100.0	(116)	2.9
フ. 1) 페그 0 (키크) 페	0 -1 -1 01-11	= 471 (-1	7 -1 - 1	-1,5 /210	그 의	7-71-01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아.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

〈표 4-23〉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6%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대의 93.2%, 20대의 83.9%, 30대의 86.8%, 40대의 90.7%, 50대의 91.0%, 60대 이상의 94.2%가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거주자의 87.3%, 광역시 거주자의 89.8%, 도 지역 시부 거주자의 90.5%, 도 지역 군부 거주자의 96.2%가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3〉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

	권리	шп				(271)	/0, O, D/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2.4	7.4	31.5	58.6	100.0	(2,000)	3.5
성별							
남자	2.7	6.0	30.9	60.5	100.0	(995)	3.5
여자	2.2	8.9	32.2	56.7	100.0	(1,005)	3.4
연령							
15~19세	0.7	6.2	39.5	53.6	100.0	(121)	3.5
20~29세	3.8	12.3	35.9	48.0	100.0	(303)	3.3
30~39세	4.2	9.0	33.2	53.6	100.0	(318)	3.4
40~49세	2.3	7.0	29.0	61.7	100.0	(368)	3.5
50~59세	3.2	5.9	23.6	67.4	100.0	(383)	3.6
60세 이상	0.4	5.4	33.8	60.4	100.0	(507)	3.5
지역							
서울	3.5	9.3	30.6	56.7	100.0	(385)	3.4
서울 외 광역시	2.2	8.0	32.2	57.6	100.0	(497)	3.5
도 지역 시부	2.4	7.1	31.1	59.5	100.0	(985)	3.5
도 지역 군부	0.8	3.0	35.2	61.1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3.7	10.3	35.2	50.8	100.0	(600)	3.3
기혼	2.0	6.2	30.0	61.7	100.0	(1,281)	3.5
이혼/사별	0.9	6.4	29.3	63.4	100.0	(114)	3.6
<u></u> 학력				-			
고졸 이하	1.2	6.9	34.3	57.6	100.0	(886)	3.5
대졸 이상	3.5	7.8	29.4	59.3	100.0	(1,105)	3.4
경제활동 상태							
일함	3.1	7.7	29.8	59.4	100.0	(1,302)	3.5
일하지 않음	1.1	7.0	34.7	57.1	100.0	(698)	3.5
고용안정성						, , ,	
불안정	5.1	4.6	28.4	61.9	100.0	(269)	3.5
보통	2.3	8.4	35.2	54.2	100.0	(294)	3.4
안정	2.8	8.5	28.2	60.5	100.0	(738)	3.5
이념 성향				-		, <del>, , ,</del>	
진보	1.6	7.9	27.9	62.5	100.0	(589)	3.5
중도	2.7	7.3	33.7	56.2	100.0	(966)	3.4
보수	2.9	7.1	31.5	58.5	100.0	(445)	3.5
 주관적 소득계층		, -	<u> </u>			\/	
하층	2.1	6.8	29.8	61.3	100.0	(513)	3.5
중층	2.3	7.8	32.5	57.4	100.0	(1,372)	3.4
상층	5.2	5.9	28.2	60.8	100.0	(116)	3.4
						(/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자.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필요성

아래의 〈표 4-24〉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혼인 외 출생아지 원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7.1%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 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5%,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대의 94.5%, 20대의 91.1%, 30대의 91.0%, 40대의 90.4%, 50대의 91.0%, 60대 이상의 85.2%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인 사람의 92.6%, 중도인 사람의 90.5%가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인 사람은 84.0%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표 4-24〉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의 필요성

	TI=1	ш-				(27)	/0, 6, 11/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2.9	7.5	37.1	52.6	100.0	(2,000)	3.4
성별							
남자	3.9	7.2	36.6	52.3	100.0	(995)	3.4
여자	1.8	7.8	37.6	52.8	100.0	(1,005)	3.4
 연령							
15~19세	0.0	5.5	45.4	49.1	100.0	(121)	3.4
20~29세	1.9	7.0	43.7	47.4	100.0	(303)	3.4
30~39세	2.1	6.9	36.5	54.5	100.0	(318)	3.4
40~49세	3.3	6.2	31.7	58.7	100.0	(368)	3.5
50~59세	2.4	6.6	32.9	58.1	100.0	(383)	3.5
60세 이상	4.7	10.1	38.6	46.6	100.0	(507)	3.3
지역						(2 - 1)	
, . 서울	3.5	8.9	32.1	55.6	100.0	(385)	3.4
 서울 외 광역시	3.7	7.7	37.6	50.9	100.0	(497)	3.4
도 지역 시부	2.3	6.8	38.3	52.6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2.5	7.1	40.5	49.9	100.0	(133)	3.4
	2.,	,	10.5	27.7	100.0	(133)	J. 1
비혼	1.9	6.4	40.1	51.6	100.0	(600)	3.4
기혼	3.2	7.9	36.4	52.4	100.0	(1,281)	3.4
이혼/사별	3.8	7.8	27.2	61.2	100.0	(114)	3.5
<u> </u>	<u> </u>	7.0		01.2	100.0	(111)	
 고졸 이하	2.3	7.4	38.7	51.6	100.0	(886)	3.4
대졸 이상	3.4	7.3	35.8	53.6	100.0	(1,105)	3.4
경제활동 상태		7.5	37.0		100.0	(1,10)	
일함	3.2	7.2	36.1	53.5	100.0	(1,302)	3.4
일하지 않음	2.3	8.0	38.9	50.8	100.0	(698)	3.4
고용안정성		0.0		70.0	100.0	(0)0)	
불안정	5.1	4.3	30.9	59.7	100.0	(269)	3.5
보통	2.6	8.1	43.6	45.7	100.0	(294)	3.3
으로 안정	2.7	7.9	35.1	54.4	100.0	(738)	3.4
이념 성향		1.2	J J . 1	, <u>.</u>	-00.0	(1,50)	
진보	1.7	5.7	35.0	57.6	100.0	(589)	3.5
중도	2.3	7.2	39.2	51.3	100.0	(966)	3.4
으고 보수	5.6	10.3	35.3	48.7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ر	10.5	32.3	10./	100.0	(11)	J.J
하층	3.6	7.5	34.4	54.4	100.0	(513)	3.4
중층	2.5	7.5	38.4	51.6	100.0	(1,372)	3.4
상층	4.5	6.7	33.1	55.7	100.0	(1,3/2) $(116)$	3.4
	1. )	0./	J.J. 1	JJ.1	100.0	(110)	J. T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차. 일·가정양립정책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일·가정양립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2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양립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5.5%를 차지하였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7.7%로 그 뒤를 따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4%,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가정양립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의 95.6%에 달하였고, 남자도 90.6%가 일·가정양립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사람의 93.8%, 중층이 사람의 93.0%, 상층인 사람의 90.8%가 일·가정양립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인 사람의 94.1%, 중도인사람의 93.5%, 보수인 사람의 91.0%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일·가정양립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5〉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저희	нэ				(인귀.	%, つ, 省)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1.5	5.4	37.7	55.5	100.0	(2,000)	3.5
성별							
남자	2.3	7.1	41.4	49.2	100.0	(995)	3.4
여자	0.8	3.6	34.0	61.6	100.0	(1,005)	3.6
연령							
15~19세	0.7	8.1	46.8	44.4	100.0	(121)	3.3
20~29세	1.6	5.7	39.7	53.0	100.0	(303)	3.4
30~39세	1.2	4.2	33.9	60.8	100.0	(318)	3.5
40~49세	2.8	3.3	33.6	60.2	100.0	(368)	3.5
50~59세	1.0	4.0	34.9	60.1	100.0	(383)	3.5
60세 이상	1.3	7.8	41.6	49.3	100.0	(507)	3.4
지역							
서울	3.3	5.1	37.3	54.3	100.0	(385)	3.4
서울 외 광역시	1.2	5.6	38.4	54.8	100.0	(497)	3.5
도 지역 시부	1.0	5.2	37.0	56.8	100.0	(985)	3.5
도 지역 군부	1.6	6.3	40.9	51.2	100.0	(133)	3.4
혼인상태						(-00)	
비혼	2.0	5.5	39.3	53.1	100.0	(600)	3.4
기혼	1.3	5.1	37.1	56.4	100.0	(1,281)	3.5
 이혼/사별	0.9	5.5	35.1	58.4	100.0	(114)	3.5
 학력						()	
고졸 이하	1.3	5.9	40.4	52.4	100.0	(886)	3.4
대졸 이상	1.7	4.8	35.4	58.0	100.0	(1,105)	3.5
경제활동 상태						(-///	
일함	1.9	4.7	36.7	56.7	100.0	(1,302)	3.5
일하지 않음	0.9	6.7	39.4	53.0	100.0	(698)	3.4
고용안정성						(-2 -)	
불안정	1.1	3.9	35.5	59.5	100.0	(269)	3.5
보통	2.3	5.7	40.4	51.6	100.0	(294)	3.4
안정	2.0	4.5	35.7	57.8	100.0	(738)	3.5
이념 성향						(, 0 - )	
진보	0.8	5.1	33.1	61.0	100.0	(589)	3.5
중도	1.1	5.4	38.0	55.5	100.0	(966)	3.5
보수	3.3	5.7	42.9	48.1	100.0	(445)	3.4
 주관적 소득계층	<u> </u>					(/	
하층	1.5	4.7	37.6	56.2	100.0	(513)	3.5
중층	1.4	5.5	38.0	55.1	100.0	(1,372)	3.5
상층	2.5	6.7	34.1	56.7	100.0	(116)	3.4
Z. 1) 페크 0 (코)크 페	0=1=1 01=1				7 - 1 19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카. 아동돌봄정책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돌봄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훨씬 넘는 68.9%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아주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를 합쳐서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아동돌봄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6.7%에 달했다. 반면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과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2.1%와 1.1%에 그쳤다.

아동돌봄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90.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중에 특별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돌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자가 98.0%, 남자가 95.4%로 여자의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적일수록 아동돌봄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진보의 98.2%, 중도의 96.9%, 보수의 94.4%가 아동돌봄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6〉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전체 1.1 2.1 27.8 68.9 10.0 (2,000) 3.6 전체 1.1 2.1 27.8 68.9 100.0 (2,000) 3.6 성별 남자 1.5 3.0 29.1 66.4 100.0 (995) 3.6 여자 0.7 1.3 26.6 71.4 100.0 (1,005) 3.7 연령 15-19세 1.5 1.5 18.9 78.1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0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5 30.8 66.2 100.0 (507)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70-94세 1.3 1.8 23.0 73.9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전체 1.5 1.5 18.9 78.1 100.0 (30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70-70-70-70-70-70-70-70-70-70-70-70-70-7							(단위:	%, 냉, 섬)
성별 남자 1.5 3.0 29.1 66.4 100.0 (995) 3.6 여자 0.7 1.3 26.6 71.4 100.0 (1,005) 3.7 연령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08) 3.7 60~40~40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78 78 1 2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78 78 1 2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78						계		
남자 0.7 1.3 26.6 71.4 100.0 (995) 3.6 여자 0.7 1.3 26.6 71.4 100.0 (1,005) 3.7 연령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전에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전에 이상 0.4 2.5 30.8 66.2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근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33) 3.6 혼인상대 비혼 1.4 2.5 31.7 64.5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교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698) 3.6 교육안정성 불안정 0.7 1.8 25.9 71.1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년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단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년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전체	1.1	2.1	27.8	68.9	100.0	(2,000)	3.6
여자 0.7 1.3 26.6 71.4 100.0 (1.005) 3.7 연령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68)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성별							
연령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서울 1.2 2.9 27.7 68.2 100.0 (385) 3.6 서울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역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년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당도 0.9 2.2 29.6 67.3 100.0 (589) 3.7	남자	1.5	3.0	29.1	66.4	100.0	(995)	3.6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사물 1.2 2.9 27.7 68.2 100.0 (385) 3.6 사물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33) 3.6 후인상대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4)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660) 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660) 3.6 12 29.7 중도 0.9 2.2 29.6 67.3 100.0 (660) 3.6 12 29.7 중도 0.9 2.2 29.6 67.3 100.0 (660) 3.6 12 29.7 중도 0.9 2.2 29.6 67.3 100.0 (645) 3.6	여자	0.7	1.3	26.6	71.4	100.0	(1,005)	3.7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시물 1.2 2.9 27.7 68.2 100.0 (385) 3.6 사물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훈 1.4 2.5 31.7 64.5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훈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출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출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886) 3.6 대출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연령							
20~29세 1.6 2.6 35.2 60.7 100.0 (303) 3.5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15~19세	0.0	2.7	38.7	58.6	100.0	(121)	3.6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서울 1.2 2.9 27.7 68.2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14) 3.7 학력 1.0 1.8 26.5 70.7 100.0 (114) 3.7 학력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1.3 1.8 25.9 71.1 100.0 (886) 3.6 대출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결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698) 3.6 고용안정성 1.4 2.0 23.5 73.0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12.4 2.9 2.7 28.2 66.2 100.0 (589) 3.7 28.2 66.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5.2 100.0 (589) 3.7 28.2 66.2 100.0 (589) 3.6 24.2 65.2 100.0 (589) 3.6 24.2 65.2 100.0 (589) 3.7 28.2 66.2 100.0 (589)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2 100.0 (445) 3.6 24.2 66	20~29세	1.6			60.7	100.0		3.5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시울 1.2 2.9 27.7 68.2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698)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결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나 2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30~39세	1.5	1.5	18.9	78.1	100.0	(318)	3.7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지역 시울 1.2 2.9 27.7 68.2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698)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302) 3.7 결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나 2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40~49세	1.3	1.8	23.0	73.9	100.0	(368)	3.7
지역 서울 1.2 2.9 27.7 68.2 100.0 (385) 3.6 서울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50~59세	1.6	2.1	26.5	69.8	100.0	(383)	3.6
서울 시흥역시 0.6 2.6 29.5 67.3 100.0 (385) 3.6 서울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60세 이상	0.4	2.5	30.8	66.2	100.0	(507)	3.6
서울 외 광역시 0.6 2.6 29.5 67.3 100.0 (497) 3.6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안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지역							
도 지역 시부 1.3 1.7 26.9 70.1 100.0 (985) 3.7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서울	1.2	2.9	27.7	68.2	100.0	(385)	3.6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안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서울 외 광역시	0.6		29.5	67.3	100.0		3.6
도 지역 군부 1.5 1.6 28.7 68.2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1.3	1.7	26.9	70.1	100.0	(985)	3.7
혼인상태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100.0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혼인상태							
기혼 1.0 1.8 26.5 70.7 100.0 (1,281) 3.7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비혼	1.4	2.5	31.7	64.5	100.0	(600)	3.6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기혼	1.0			70.7	100.0		3.7
학력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이혼/사별	1.0	3.9	22.7	72.4	100.0	(114)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학력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고졸 이하	0.7	2.5	32.2	64.6	100.0	(886)	3.6
경제활동 상태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대졸 이상	1.5	1.9	24.2	72.4	100.0	(1,105)	3.7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698) 3.6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일함	1.3	1.8	25.9	71.1	100.0	(1,302)	3.7
고용안정성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일하지 않음	0.9	2.8	31.5	64.9	100.0		3.6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고용안정성							
보통 1.3 1.4 31.8 65.5 100.0 (294)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불안정	0.7	1.8	25.7	71.8	100.0	(269)	3.7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보통	1.3				100.0		
이념 성향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안정	1.4	2.0	23.5	73.0	100.0	(738)	3.7
진보 0.2 1.7 24.6 73.6 100.0 (589) 3.7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이념 성향							
중도 0.9 2.2 29.6 67.3 100.0 (966) 3.6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0.2	1.7	24.6	73.6	100.0	(589)	3.7
보수 2.9 2.7 28.2 66.2 100.0 (445) 3.6		0.9				100.0		
	보수		2.7	28.2		100.0		
	주관적 소득계층							-
하층 1.0 2.4 27.1 69.6 100.0 (513) 3.7		1.0	2.4	27.1	69.6	100.0	(513)	3.7
중층 1.2 2.1 28.1 68.6 100.0 (1,372) 3.6								
상층 0.8 1.7 27.7 69.9 100.0 (116) 3.7		0.8		27.7	69.9	100.0	(116)	3.7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타. 노인돌봄정책 필요성

〈표 4-27〉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노인돌봄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61.7%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1%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돌봄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률 또한 사회·인구학적특성과 관계없이 모두 90.0% 이상이었다. 그중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살펴보면, 실제로 노인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노인돌봄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1.7%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 비율에 비해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4-27〉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전혀	별로				(41)	/0, o, <del>u</del> /
구분	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0.7	4.1	33.5	61.7	100.0	(2,000)	3.6
성별							
남자	1.0	4.4	36.9	57.7	100.0	(995)	3.5
여자	0.4	3.8	30.1	65.7	100.0	(1,005)	3.6
연령							
15~19세	0.0	1.4	38.7	60.0	100.0	(121)	3.6
20~29세	1.3	3.2	38.4	57.2	100.0	(303)	3.5
30~39세	0.3	1.8	27.9	70.0	100.0	(318)	3.7
40~49세	0.5	3.9	26.4	69.2	100.0	(368)	3.6
50~59세	1.1	3.2	32.9	62.8	100.0	(383)	3.6
60세 이상	0.7	7.6	38.4	53.3	100.0	(507)	3.4
지역							
서울	0.7	4.9	33.1	61.3	100.0	(385)	3.5
서울 외 광역시	0.6	4.1	36.0	59.2	100.0	(497)	3.5
도 지역 시부	0.5	3.9	32.9	62.7	100.0	(985)	3.6
도 지역 군부	2.5	3.3	29.4	64.8	100.0	(133)	3.6
혼인상태							
비혼	0.6	2.3	35.2	61.8	100.0	(600)	3.6
기혼	0.8	5.0	33.0	61.2	100.0	(1,281)	3.5
이혼/사별	0.0	3.0	29.5	67.5	100.0	(114)	3.6
<u></u> 학력							
고졸 이하	0.8	4.2	33.4	61.6	100.0	(886)	3.6
대졸 이상	0.6	4.1	33.4	61.9	100.0	(1,105)	3.6
경제활동 상태							
일함	0.8	4.1	32.3	62.9	100.0	(1,302)	3.6
일하지 않음	0.6	4.1	35.7	59.6	100.0	(698)	3.5
고용안정성							
불안정	0.8	2.8	27.1	69.3	100.0	(269)	3.6
보통	0.3	3.5	37.4	58.8	100.0	(294)	3.5
안정	1.0	4.8	32.1	62.2	100.0	(738)	3.6
이념 성향							
진보	0.7	3.2	30.4	65.7	100.0	(589)	3.6
중도	0.4	4.6	34.9	60.1	100.0	(966)	3.5
보수	1.4	4.2	34.5	60.0	100.0	(445)	3.5
주관적 소득계층			-				-
하층	0.4	4.3	30.4	64.9	100.0	(513)	3.6
중층	0.8	4.1	33.8	61.3	100.0	(1,372)	3.6
상층	0.8	3.5	43.0	52.7	100.0	(116)	3.5
-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파.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4-28〉과 같다. 전체적인 응답을 먼저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3.7%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6%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의 93.0%, 남자의 88.3%를 차지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예상과 달리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10대의 96.6%, 20대의 93.1%, 30대의 90.5%, 40대의 92.7%, 50대의 89.7%, 60대 이상의 87.3%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은 노후소 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의 93.0%,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응답자의 94.2%, 고용이안정적인 응답자의 87.5%가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적일수록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인 사람의 93.5%, 중도인 사람의 91.0%, 보수인 사람의 86.4%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8〉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권리	шп				(271)	/0, O, D/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1.7	7.6	43.7	47.0	100.0	(2,000)	3.4
성별							
남자	2.5	9.2	42.6	45.7	100.0	(995)	3.3
여자	1.0	6.0	44.9	48.2	100.0	(1,005)	3.4
 연령							
15~19세	0.0	3.4	49.6	47.0	100.0	(121)	3.4
20~29세	1.3	5.7	54.9	38.2	100.0	(303)	3.3
30~39세	1.8	7.7	41.9	48.6	100.0	(318)	3.4
40~49세	1.3	6.0	42.5	50.2	100.0	(368)	3.4
50~59세	2.6	7.7	39.4	50.3	100.0	(383)	3.4
60세 이상	2.0	10.7	41.0	46.3	100.0	(507)	3.3
지역						,	
서울	2.8	9.1	43.7	44.4	100.0	(385)	3.3
서울 외 광역시	1.7	6.9	48.6	42.8	100.0	(497)	3.3
도 지역 시부	1.3	6.9	41.8	49.9	100.0	(985)	3.4
 도 지역 군부	1.6	10.4	39.6	48.5	100.0	(133)	3.3
혼인상태			37.4	20.5	200.0	(-55)	
비혼	1.1	5.6	49.6	43.7	100.0	(600)	3.4
기혼	2.0	8.6	41.2	48.1	100.0	(1,281)	3.4
이혼/사별	0.9	6.9	40.6	51.6	100.0	(114)	3.4
<u> </u>				,,,,,,		()	
 고졸 이하	1.7	6.1	41.9	50.3	100.0	(886)	3.4
· · · 대졸 이상	1.8	8.7	45.0	44.5	100.0	(1,105)	3.3
경제활동 상태			-2,10			(-,,	
일함	1.6	8.3	44.0	46.2	100.0	(1,302)	3.3
일하지 않음	2.0	6.3	43.3	48.4	100.0	(698)	3.4
고용안정성			-5.5			(0) 0)	
불안정	0.8	6.3	36.2	56.8	100.0	(269)	3.5
보통	1.0	4.8	49.4	44.8	100.0	(294)	3.4
 안정	2.1	10.4	44.6	42.9	100.0	(738)	3.3
 이념 성향					200.0	(150)	
진보	0.7	5.8	40.8	52.7	100.0	(589)	3.5
중도	1.6	7.5	47.9	43.1	100.0	(966)	3.3
보수	3.5	10.2	38.6	47.8	100.0	(445)	3.3
 주관적 소득계층	J.,	10.2	,,,,	1,.0	100.0	( + + ) /	٠.٥
하층	1.7	7.9	36.2	54.3	100.0	(513)	3.4
중층	1.5	7.4	45.8	45.3	100.0	(1,372)	3.3
상층	4.9	8.1	52.3	34.6	100.0	(116)	3.2
	1./	0.1	ر.ير	J 1.0	100.0	(110)	ر. ا

주: 1)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하.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9〉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조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아주 필요하다'는 응답이 39.1%로 그 뒤를 이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5%,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는 89.0%가, 남자는 75.8%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는 여자의 응답 비율이 남자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이불안정한 집단의 84.5%,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집단의 82.7%,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의 80.2%가 성평등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적인 성향이강한 집단일수록 성평등정책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이 진보인 사람의 87.1%, 중도인 사람의 82.2%, 보수인 사람의 76.9%가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4-29〉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TI-1	ш-				(1271- )	%, つ, 省)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계	사례 수 (명)	평균(점)
전체	5.1	12.5	43.3	39.1	100.0	(2,000)	3.2
성별							
남자	7.5	16.7	42.5	33.3	100.0	(995)	3.0
여자	2.7	8.3	44.2	44.8	100.0	(1,005)	3.3
 연령							
15~19세	2.7	9.4	38.2	49.7	100.0	(121)	3.4
20~29세	4.7	13.2	41.4	40.7	100.0	(303)	3.2
30~39세	6.3	13.4	44.6	35.7	100.0	(318)	3.1
40~49세	5.7	9.5	43.1	41.7	100.0	(368)	3.2
50~59세	5.3	10.6	43.0	41.2	100.0	(383)	3.2
60세 이상	4.7	15.6	45.4	34.3	100.0	(507)	3.1
지역			-				
 서울	6.8	13.6	40.9	38.7	100.0	(385)	3.1
서울 외 광역시	2.4	13.1	41.0	43.4	100.0	(497)	3.3
도 지역 시부	5.7	11.6	45.3	37.4	100.0	(985)	3.1
 도 지역 군부	5.4	13.2	44.7	36.6	100.0	(133)	3.1
혼인상태	7	-5		5	200.0	(-55)	J
비혼	5.5	11.1	39.9	43.5	100.0	(600)	3.2
기혼	5.0	13.0	45.4	36.6	100.0	(1,281)	3.1
·_ 이혼/사별	3.7	12.4	39.1	44.7	100.0	(114)	3.2
<u> </u>	J.,		57.2			()	
 고졸 이하	4.0	12.8	42.0	41.2	100.0	(886)	3.2
대졸 이상	5.9	12.3	44.1	37.6	100.0	(1,105)	3.1
경제활동 상태						(-/2/	
일함	6.0	12.3	42.2	39.4	100.0	(1,302)	3.2
일하지 않음	3.4	12.8	45.4	38.5	100.0	(698)	3.2
고용안정성				0 - 2		(-2 -)	
불안정	3.6	11.9	40.1	44.4	100.0	(269)	3.3
보통	5.4	11.9	45.3	37.4	100.0	(294)	3.1
안정	7.1	12.6	41.8	38.5	100.0	(738)	3.1
이념 성향	,			0-2		(, 0 - )	
기급 (3) 진보	2.8	10.1	35.6	51.4	100.0	(589)	3.4
중도	4.9	12.9	47.0	35.1	100.0	(966)	3.1
보수	8.6	14.5	45.5	31.4	100.0	(445)	3.0
 주관적 소득계층		/	-2.2	J =		(/	J
하층	6.5	13.5	40.5	39.5	100.0	(513)	3.1
중층	4.2	11.8	44.8	39.2	100.0	(1,372)	3.2
상층	9.7	15.7	38.6	36.0	100.0	(116)	3.0
7. 1) 페그 0 (기리 회			33.0	1-1:= /71/	7 - 3 - 3		J. V

주: 1)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아주 필요하다'를 4점으로 한 평균값임.

<sup>2) &#</sup>x27;결측값(모름)'은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 순위로짓 분석

제1~2절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의 개요와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했고, 제3절에서는 이 인식조사의 결과를 한 단계 자세히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술통계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학력, 고용안정성,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 각각의 영향력이동시에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전반적인 성차별의 심각성, 미래 한국 사회의 개선 전망,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교차분석한 것이다. 성별, 연령, 계층적 특성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나머지 특성들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종속변수에 미치는독립변수 각각의 영향력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절에서는 이러한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해서 각각의 독립변수가 저출생·고령사회및 젠더 관련 사안마다에 미치는 영향력을 순위로짓(ordered logistic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한다. 순위로짓모형 분석에서 표준오차는 이분산에 강한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로 추정했다.

# 1.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전반적 성차별의 심각성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전반적 성차별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표 4-3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와 고용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와 비교할 때, 40대, 70대, 50대, 60대가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더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높았다. 또, 현재 일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일하는 사람 중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더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전반적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은 성별, 혼인상태,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반적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높았고, 기혼자가 비혼자에 비해 전반적 성차별을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은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전반적 성차별을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낮았다.

〈표 4-30〉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전반적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순위로짓

	저출생·고령	화 현상	전반적 성	성차별	
구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14	0.10	0.92***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15	0.19	0.12	0.20	
30대	0.42	0.25	0.03	0.23	
40대	0.81**	0.26	0.19	0.23	
50대	1.16***	0.27	0.06	0.24	
60대	1.29***	0.28	-0.13	0.24	
70대+	1.00***	0.29	0.08	0.27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15	0.15	0.06	0.13	
도 지역 시부	0.03	0.14	-0.02	0.12	
도 지역 군부	0.34	0.23	0.08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15	0.16	-0.40**	0.14	
이혼/사별	-0.12	0.29	-0.15	0.26	
대졸 이상	0.23	0.12	-0.06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 /				
불안정	0.41*	0.18	0.06	0.16	
보통	-0.10	0.16	0.05	0.14	
안정	0.26	0.13	0.00	0.11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24	0.12	-0.15	0.11	
상층	-0.01	0.25	-0.23	0.19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조드	0.11	0.10	0.20**	0.10	
중도	0.11	0.12	-0.30**	0.10	
<u>보수</u> W 11 C1 · <sup>2</sup>	0.17	0.15	-0.25	0.14	
Wald Chi <sup>2</sup>	175.73		149.67***		
Pseudo R <sup>2</sup>	0.057	/9	0.0334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2. 미래 한국 사회의 개선 전망

앞으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성별/세대/빈부 갈등)과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개선 전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4-31〉과 같다. 성별 갈등의 개선 전망은 성별, 혼인상태, 이념 성향에 따라, 세대 갈등의 개선 전망은 연령대,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에 따라, 빈부 갈등의 개선 전망은 연령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개선 전망은 연령대,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에 따라 달라질 확률이 높았다.

우선, 성별 갈등에 대한 개선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았고, 기혼자나이혼/사별자가 비혼자에 비해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다음으로 세대 갈등에 대한 개선 전망은 다음과 같다. 10대에 비해 30 대, 60대, 50대, 70대는 세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인 경우와 상층인 경우는 하층인 경우에 비해세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이 진보인집단과 비교했을 때, 이념 성향이 중도인 집단과 보수인 집단은 세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빈부 갈등에 대한 개선 전망을 살펴보면, 50대가 10대에 비해 빈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이거나 상층인 사람은 하층인 사람에 비해 빈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확률이 높았다.

〈표 4-31〉 미래 한국 사회의 개선 전망에 대한 순위로짓

	성별 길	<b>살등</b>	세대 김	갈등	빈부 결	갈등	저출생·	고령화
구분	Coef.	Robust	Coef.	Robust	Coef.	Robust	Coef.	Robust
		S.E.		S.E.		S.E.		S.E.
여자(기준: 남자)	0.32***	0.09	-0.03	0.08	-0.16	0.09	-0.19*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15	0.17	-0.13	0.17	-0.16	0.16	-0.40*	0.18
30대	-0.01	0.21	-0.47*	0.21	-0.10	0.21	-0.44*	0.22
40대	0.29	0.22	-0.27	0.22	-0.25	0.21	-0.63**	0.22
50대	0.32	0.23	-0.73**	0.23	-0.47*	0.22	-0.85***	0.23
60대	0.38	0.24	-0.70**	0.23	-0.42	0.22	-0.76**	0.23
70대+	-0.37	0.25	-0.96***	0.25	0.02	0.25	-0.61*	0.25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1	0.13	0.10	0.12	0.17	0.12	-0.03	0.13
도 지역 시부	0.16	0.11	-0.01	0.11	0.09	0.11	0.02	0.12
도 지역 군부	0.07	0.21	-0.03	0.20	0.07	0.20	0.16	0.19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29*	0.14	0.21	0.14	-0.03	0.13	-0.03	0.13
이혼/사별	0.54*	0.24	0.04	0.23	-0.10	0.22	0.34	0.22
대졸 이상	0.00	0.10	-0.13	0.010	-0.11	0.10	-0.16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0	0.16	-0.15	0.15	-0.32	0.15	-0.03	0.15
보통	-0.10	0.14	-0.17	0.13	0.02	0.13	0.07	0.14
안정	-0.02	0.11	0.00	0.11	-0.09	0.11	0.04	0.11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15	0.11	0.21*	0.10	0.48***	0.11	0.29**	0.11
상층	0.37	0.21	0.44*	0.20	0.82***	0.21	0.43*	0.22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16	0.10	-0.30**	0.09	-0.04	0.10	0.02	0.10
보수	-0.59***	0.13	-0.34**	0.13	-0.20	0.13	-0.32*	0.13
Wald Chi <sup>2</sup>	110.88	3***	67.39	)***	72.29	***	69.45***	
Pseudo R <sup>2</sup>	0.020	07	0.01		0.013		0.01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개선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고, 2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는 모두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거나 중간인 경우에는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비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할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할 확률이 낮았다.

#### 3.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현상 해소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와 관련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표 4-32〉,〈표 4-33〉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32》에 제시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 성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사람이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은 진보인 사람에 비해 국민연금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20대는 10대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이념 성향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견과 관련 있는 요인은 성별,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의 경우 진보에 비해 중도나 보수가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표 4-32〉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관련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I

어제(기준: 남자)	구분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동시장에/ 임금 경		여성에게 요 가사와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07 0.18 -0.58** 0.20 -0.32 0.17 30대 0.08 0.21 -0.26 0.23 0.15 0.21 40대 -0.00 0.23 -0.06 0.23 0.09 0.23 50대 0.13 0.23 -0.08 0.24 -0.01 0.23 60대 0.26 0.24 0.10 0.24 0.04 0.24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7 0.13 0.02 0.13 0.14 0.13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b>で</b>	Coef.	Coef.			Coef.	Robust S.E.	
(기준: 10대) 20대	여자(기준: 남자)	0.76***	0.09	0.98***	0.09	0.77***	0.09	
20대	연령대							
30대 0.08 0.21 -0.26 0.23 0.15 0.21 40대 -0.00 0.23 -0.06 0.23 0.09 0.23 50대 0.13 0.26 0.24 -0.08 0.24 -0.01 0.23 60대 0.26 0.24 0.10 0.24 0.04 0.24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7 0.13 0.02 0.13 0.14 0.13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21 0.15 0.43** 0.16 0.17 0.15	(기준: 10대)							
40대	20대	-0.07	0.18	-0.58**	0.20	-0.32	0.17	
50대 0.13 0.23 -0.08 0.24 -0.01 0.23 60대 0.26 0.24 0.10 0.24 0.04 0.24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7 0.13 0.02 0.13 0.14 0.13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21 0.15 0.43*** 0.16 0.17 0.15	30대	0.08	0.21	-0.26	0.23	0.15	0.21	
60대 0.26 0.24 0.10 0.24 0.04 0.24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기주지 (기준: 서울)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3 0.20 후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24 0.24 0.25 -0.18 0.25 -0.18 0.20 대출 이상 0.02 0.13 0.14 0.15 0.26 -0.21 0.23 0.21 0.23 대출 이상 0.02 0.15 0.26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	40대	-0.00	0.23	-0.06	0.23	0.09	0.23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7 0.13 0.02 0.13 0.14 0.13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50대	0.13	0.23	-0.08	0.24	-0.01	0.23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3 0.14 0.13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3 0.20 2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5 0.24 0.21 0.23 0.21 0.23 0.21 0.23 0.21 0.23 0.21 0.23 0.21 0.28 0.28 0.28 0.28 0.29 0.29 0.20 0.20 0.20 0.20 0.20 0.20	60대	0.26	0.24	0.10	0.24	0.04	0.24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3 0.14 0.13 0.12 0.09 0.12 0.01 0.12 0.01 0.12 0.02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3 0.20 0.15 0.24 0.14 0.14 0.14 0.14 0.14 0.15 0.23 0.21 0.23 0.21 0.23 0.21 0.23 0.21 0.23 0.21 0.28 0.28 0.29 0.29 0.2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70대+	0.16	0.27	-0.12	0.25	-0.18	0.24	
서울 외 광역시	거주지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기준: 서울)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서울 외 광역시	0.07	0.13	0.02	0.13	0.14	0.13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도 지역 시부	0.08	0.12	0.09	0.12	0.01	0.12	
(기준: 미혼) 기혼 이혼/사별 0.09 0.15 -0.14 0.14 -0.04 0.15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도 지역 군부	-0.13	0.20	-0.07	0.20	0.13	0.20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출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혼인상태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기준: 미혼)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기혼	0.09	0.15	-0.14	0.14	-0.04	0.15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이혼/사별	0.51	0.26	-0.21	0.23	0.21	0.23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대졸 이상	0.02	0.10	-0.10	0.10	0.00	0.10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보통 0.30* 0.15 0.20 0.14 -0.00 0.14	불안정	0.21	0.15	0.43**	0.16	0.17	0.15	
	보통	0.30*	0.15	0.20	0.14	-0.00	0.14	
안정 0.08 0.11 0.19 0.12 0.02 0.11	안정	0.08	0.11	0.19	0.12	0.02	0.11	
주관적 소득계층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기준: 하층)							
중층 -0.09 0.11 0.00 0.11 -0.09 0.11	중층	-0.09	0.11	0.00	0.11	-0.09	0.11	
상흥 -0.10 0.20 0.12 0.23 -0.26 0.22	상층	-0.10	0.20	0.12	0.23	-0.26	0.22	
이념 성향	이념 성향							
(기준: 진보)	(기준: 진보)							
중도 -0.30** 0.10 -0.55*** 0.10 -0.39*** 0.10	중도	-0.30**	0.10	-0.55***	0.10	-0.39***	0.10	
	보수	-0.41**	0.13		0.13	-0.51***	0.13	
Wald Chi <sup>2</sup> 100.62*** 168.27*** 124.81***	Wald Chi <sup>2</sup>	100.62	2***		7***			
Pseudo R <sup>2</sup> 0.0248 0.0409 0.0274	Pseudo R <sup>2</sup>	0.024	48	0.04	09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표 4-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10대에 비해 20대가, 이념 성향이 진보인 집단에 비해 중도나 보수인집단이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이념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높았다. 1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나 70대 이상은 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은 반면, 60대는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높았다. 또, 기혼자는 비혼자에 비해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의 경우, 중도인집단이 진보인집단에 비해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의 경우, 중도인집단이 진보인집단에 비해노인 대상 성폭력의 해소를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낮았다.

〈표 4-33〉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관련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Ⅱ

구분	장남 경 유산싱		노인 대 성폭력		
<u>↑</u> 군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54***	0.09	0.98***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42**	0.15	-0.58	0.20	
30대	-0.23	0.20	-0.26	0.23	
40대	-0.01	0.21	-0.06	0.23	
50대	-0.11	0.22	-0.08*	0.24	
60대	-0.38	0.22	0.01*	0.24	
70대+	-0.15	0.22	-0.12***	0.25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15	0.12	0.02	0.13	
도 지역 시부	-0.11	0.11	0.09	0.12	
도 지역 군부	0.13	0.21	-0.07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13	0.14	-0.14*	0.14	
이혼/사별	0.09	0.25	-0.21	0.23	
대졸 이상	0.03	0.10	-0.1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05	0.15	0.43	0.16	
보통	-0.22	0.13	0.20	0.14	
안정	-0.14	0.11	0.19	0.12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10	0.10	0.00	0.11	
상층	-0.30	0.19	0.12	0.23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39***	0.10	-0.55**	0.10	
보수	-0.37**	0.13	-0.71	0.13	
Wald Chi <sup>2</sup>	94.35	***	120.72***		
Pseudo R <sup>2</sup>	0.018	30	0.0285		
Z·***-/ 001 **-/ 01 *-/ 05		_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 4.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각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4-34〉,〈표 4-35〉,〈표 4-36〉,〈표 4-37〉과 같다.

《표 4-34》에 제시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자에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30대는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들 또한 진보인 사람들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학력, 주관적 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학력이 대졸 이상인 사람도고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중층인 사람이 하층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반면에, 50대와 60대는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표 4-34〉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구분	청년 취업기	지원정책	결혼장리	격정책 -	청년·신환 주택지원		
<b>十</b> 世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24**	0.09	-0.43***	0.09	-0.09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28	0.19	-0.05	0.18	0.55**	0.19	
30대	-0.48*	0.22	0.20	0.22	0.62**	0.23	
40대	-0.23	0.24	0.40	0.22	0.36	0.24	
50대	-0.05	0.24	0.56*	0.23	0.74**	0.25	
60대	-0.15	0.26	0.65**	0.24	0.61*	0.25	
70대+	-0.00	0.27	0.42	0.25	0.38	0.26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12	0.13	0.11	0.13	-0.05	0.14	
도 지역 시부	0.13	0.12	0.03	0.12	0.05	0.12	
도 지역 군부	0.09	0.20	0.11	0.18	0.15	0.21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1	0.14	0.02	0.14	-0.05	0.15	
이혼/사별	0.23	0.26	0.27	0.25	0.01	0.26	
대졸 이상	-0.13	0.11	-0.32**	0.10	-0.26*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13	0.16	-0.21	0.15	0.17	0.16	
보통	0.07	0.15	-0.11	0.14	-0.03	0.14	
안정	0.04	0.12	-0.08	0.11	0.21	0.12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01	0.11	-0.23*	0.11	-0.18	0.11	
상층	-0.26	0.22	0.03	0.21	-0.34	0.21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48***	0.10	-0.03	0.10	-0.31**	0.10	
보수	-0.59***	0.14	-0.01	0.13	-0.34*	0.13	
Wald Chi <sup>2</sup>	52.87	7***	85.10		50.81***		
Pseudo R <sup>2</sup>	0.01		0.01		0.0123		
ス・*** - / 001 ** - / 0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대, 학력, 이념 성향이었다. 10대와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은 고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집단 또한 진보인 집단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다음으로 〈표 4-35〉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과 고용안정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20대와 30대가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보수인 사람도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표 4-35〉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Ⅱ

78	출산장려정책		다문화지	원정책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구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20*	0.09	-0.24**	0.09	0.01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37	0.19	-0.51*	0.20	-0.04	0.19		
30대	-0.32	0.24	-0.69**	0.24	0.28	0.22		
40대	0.00	0.25	0.03	0.24	0.42	0.23		
50대	0.19	0.26	0.03	0.25	0.42	0.24		
60대	0.01	0.25	-0.07	0.25	-0.12	0.24		
70대+	-0.04	0.26	0.01	0.26	-0.03	0.26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6	0.14	-0.12	0.13	-0.16	0.14		
도 지역 시부	0.14	0.12	-0.17	0.12	-0.06	0.12		
도 지역 군부	0.20	0.20	-0.00	0.19	-0.15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28	0.16	0.07	0.15	-0.13	0.14		
이혼/사별	0.33	0.26	0.15	0.25	0.29	0.26		
대졸 이상	0.06	0.11	-0.19	0.10	-0.10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04	0.16	-0.02	0.15	0.18	0.16		
보통	-0.29*	0.14	-0.21	0.13	-0.29*	0.14		
안정	-0.05	0.12	-0.11	0.11	-0.04	0.12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15	0.11	0.06	0.11	-0.05	0.11		
상층	-0.14	0.23	-0.09	0.22	0.11	0.22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17	0.11	-0.35***	0.10	-0.22*	0.10		
보수	-0.25	0.14	-0.58***	0.13	-0.36**	0.13		
Wald Chi <sup>2</sup>	53.1	7***	89.07	7***	46.02**			
Pseudo R <sup>2</sup>	0.0		0.01			0.0119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고용안정성과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도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 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표 4-36》을 살펴보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30대는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의 경우, 중도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 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30대와 40대는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은 중도인 사람은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돌봄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표 4-36〉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Ⅲ

	아동돌	봄정책	노인돌	봄정책	일·가정임	· 信정책	성평등	 정책
구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28**	0.10	0.31**	0.10	0.53***	0.09	0.61***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07	0.21	-0.05	0.20	0.32	0.20	-0.28	0.21
30대	0.57*	0.26	0.61*	0.25	0.59*	0.23	-0.31	0.24
40대	0.32	0.27	0.51*	0.25	0.55*	0.25	-0.06	0.25
50대	0.13	0.28	0.24	0.26	0.61*	0.25	0.02	0.26
60대	0.26	0.28	-0.33	0.26	0.49	0.26	-0.15	0.26
70대+	-0.12	0.29	-0.28	0.28	-0.18	0.27	-0.25	0.27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2	0.15	-0.07	0.14	0.05	0.14	0.26	0.13
도 지역 시부	0.08	0.13	0.05	0.13	0.13	0.13	0.02	0.12
도 지역 군부	0.01	0.23	0.19	0.23	-0.07	0.20	0.04	0.19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14	0.18	-0.14	0.16	0.03	0.15	-0.30*	0.14
이혼/사별	0.31	0.29	0.29	0.27	0.27	0.26	0.00	0.25
대졸 이상	0.17	0.11	-0.17	0.11	0.05	0.11	-0.14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15	0.17	0.31	0.17	0.10	0.15	0.30*	0.15
보통	-0.10	0.16	-0.11	0.15	-0.25	0.15	0.02	0.14
안정	0.18	0.13	-0.00	0.13	0.00	0.12	0.03	0.12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10	0.12	-0.15	0.12	-0.11	0.11	0.13	0.11
상층	0.04	0.23	-0.32	0.21	0.05	0.22	-0.05	0.22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25*	0.12	-0.23*	0.11	-0.16	0.11	-0.61***	0.10
보수	-0.28	0.15	-0.04	0.14	-0.40**	0.14	-0.82***	0.14
Wald Chi <sup>2</sup>	65.3		74.50	0***	90.11	***	135.7	5***
Pseudo R <sup>2</sup>	0.02	210	0.02	238	0.02	63	0.03	09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가 10대에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념 성향은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용이불안정한 사람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기혼자는 비혼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고,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은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표 4-37〉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혼인상태, 고용안정성,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기혼자는 비혼자보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인 사람은 하층인 사람에 비해, 이념 성향이중도인 사람은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순위로짓 №

7.11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정책		지방분권정책	
구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여자(기준: 남자)	0.12	0.09	0.04	0.09	0.11	0.09	0.28**	0.09
연령대								
(기준: 10대)								
20대	-0.00	0.19	-0.15	0.18	-0.11	0.18	-0.23	0.16
30대	0.22	0.22	0.05	0.22	0.29	0.22	0.06	0.20
40대	0.30	0.23	0.29	0.23	0.37	0.23	0.44*	0.21
50대	0.15	0.24	-0.18	0.24	0.27	0.24	0.39	0.22
60대	-0.14	0.25	-0.14	0.24	-0.07	0.24	0.35	0.23
70대+	-0.50	0.27	0.05	0.24	-0.02	0.27	0.53*	0.24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03	0.13	-0.14	0.13	0.03	0.13	0.15	0.13
도 지역 시부	0.11	0.12	0.01	0.12	0.23*	0.12	0.10	0.12
도 지역 군부	-0.08	0.20	-0.24	0.18	0.15	0.21	0.05	0.2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37*	0.15	0.04	0.14	-0.06	0.15	-0.19	0.14
이혼/사별	-0.05	0.26	0.41	0.23	0.03	0.25	0.06	0.26
대졸 이상	-0.15	0.10	-0.10	0.10	-0.26*	0.10	-0.18	0.1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31*	0.16	0.06	0.15	0.19	0.16	0.16	0.14
보통	0.06	0.14	-0.01	0.14	-0.14	0.14	0.19	0.13
안정	-0.10	0.12	0.07	0.11	-0.30**	0.12	-0.01	0.11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22*	0.11	0.03	0.10	-0.23*	0.12	-0.25*	0.11
상층	-0.37	0.22	-0.45*	0.22	-0.52*	0.21	-0.27	0.22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32**	0.10	-0.10	0.10	-0.39***	0.10	-0.17	0.10
보수	-0.26	0.13	-0.02	0.13	-0.27*	0.14	-0.32*	0.13
Wald Chi <sup>2</sup>	69.62***		34.93*		74.62***		61.01***	
Pseudo R <sup>2</sup>	0.0185		0.0074		0.0191		0.0124	

주: \*\*\*p 〈 .001, \*\*p 〈 .01, \*p 〈 .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주관적 소득계층이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상층인 사람은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주 지역, 학력, 고용안정성,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도지역 시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학력이 대졸 이상인 사람은 고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일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층이거나 상층인 사람이 하층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은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이념 성향은 중도이거나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연령대, 주관적 소득계층, 이념 성향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고, 40대나 70대 이상이 10대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층인 사람이 하층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으며, 이념 성향은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에 비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 5.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 순위로짓 분석 결과 요약

여러 순위로짓 분석의 핵심 결과는 성별, 연령, 지역, 혼인, 학력, 경제활동,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현상 전망, 정책 선호에서 복잡한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현상에서 특성별 인식 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 필요성에 반대하는 구성원 특성도 파악해 이들을 배려한 보완적 제도도 설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성별에 따라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 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부분의 정책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국에서 여성이라는 젠더가 저출생과 고령사회 현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에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하므로 이들을 위한 수용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은 연령층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었으며 30대 미만의 젊은 층은 성별 갈등이, 30대 이상부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는 성별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중요했다.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으로 이념 갈등이 41%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세대 갈등(13%)과 성별 갈등(11%)은 빈부 갈등(28%)에 이은 3~4순위였다. 즉, 모든 정책에서 젠더를 중심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젠더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어 성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정책마다 고용안정성, 혼인 여부, 소득, 교육수준, 연령대 등 각기 다른 특성이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모든 정책에 일관적인 특성은 이념적 성향이었다. 진보적일수록 대부분 정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이들의 정책적 필요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도와 보수적이념 성향인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이유를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제4절 성별, 연령, 계층 교차성에 따른 정책 요구도

#### 1. 분석 필요성 및 방법

제4절에서는 19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가진 찬성과 반대 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 태도 유형이 성, 연령대, 나아가 계층적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분석을 추가로 하는 이유는 제3절의 순위로짓모형으로 독립변수들이 개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추정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인 19개 정책 이슈들 간의 관련성과 독립변수인성, 연령, 계층이 교차되어 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석하기가 어려웠기때문이다.

제3절가지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4절에서는 우선, 19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들을 기준변수로 투입하는 잠재프로파 일 분석을 하여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장년 여자, 장년 남자, 중고령 여자, 중고령 남자 집단별로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유형화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하면 저출생·고 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일관되게 찬성하거나 반대를 하는지, 특정 정책에는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 정책에는 중립적이거나 반대를 하는지, 정책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유형별 비율은 얼마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의 유형화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계층적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서는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들에 가지는 태도가 성, 연령, 계층의 결합으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할 수 있다.

#### 2. 분석 결과

#### 가. 전체 국민의 정책 필요성 태도 유형과 성·연령·계층의 영향력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19개에 대해 전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필요성을 투입변수로 활용해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하여 유형(집단)화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개, 3개, 4개, 5개, 6개로 하나씩 늘려가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하고 각결과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5개가 최적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9개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정책에 대한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가지는 찬반 태도는 크게 5개 유형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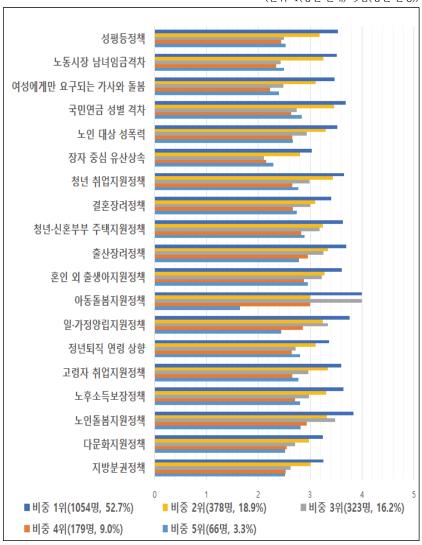
[그림 4-1]에서 가장 윗줄인 짙은 파란색 비중 1위 집단은 19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전체국민의 약 52.7%가 이에 해당한다. 비중 1위 집단은 대부분의 젠더·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찬성하지만 그중에서도 아동과 노인돌봄지원정책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위 집단은 비중 1위 집단보다는 찬성도가 낮지만 비중 3위~비중 5위 집단에 비해서는 찬

성도가 높고 대략 3점대 초반의 평균점수를 기록했으며, 18.9% 정도 비율을 차지했다. 셋째 줄 회색의 비중 3위 집단은 성평등정책,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인 대상 성폭력, 장자 중심 유산상속의 젠더 관련 정책과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는 반대하지만, 주택지원,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아동돌봄지원, 노인돌봄지원정책에는 찬성을 하는 찬반이 명확한 집단으로약 16.2%가이에 속한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거의 대부분의정책에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약 9.0%가이에 해당된다.이들은 특히 저출생과 고령사회 영역의 정책들보다 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특징도 보인다. 3.3%로 비율이 적은 가장 아래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도 모든 정책에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며 그중에서도 아동돌봄지원정책과 젠더 관련 정책 전반에 강한 반대를 했다.

이를 정리하면, 52.7%의 국민은 대부분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을 한다. 18.9%는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16.2%는 젠더 관련 정책,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 반대하지만 저출생관련 정책과 아동·노인돌봄정책에는 찬성하는 엇갈린 입장이다. 9.0%는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거의 반대하지만 특히 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가 크다. 약 3.3%가 모든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비해 특히 아동돌봄지원과 제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비해 특히 아동돌봄지원과 제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하다.

[그림 4-1]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전체 국민(2,000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32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1] 참조.

〈표 4-38〉계층, 성·연령대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전체 국민 대상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1.26	0.23	1.01	0.20	0.85	0.21	0.81	0.30		
도 지역 시부	1.05	0.18	1.09	0.19	0.84	0.18	0.74	0.24		
도 지역 군부	1.02	0.29	1.10	0.33	1.12	0.39	0.79	0.47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77	0.15	0.96	0.19	1.09	0.29	0.68	0.27		
이혼/사별	0.65	0.22	1.09	0.37	0.78	0.36	1.33	0.79		
대졸 이상	0.68**	0.09	1.19	0.18	1.05	0.19	1.15	0.33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73	0.16	0.98	0.22	1.16	0.30	0.60	0.28		
보통	1.34	0.25	1.27	0.27	0.92	0.26	0.71	0.32		
안정	0.79	0.12	1.27	0.22	0.92	0.20	0.84	0.28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1.18	0.17	1.21	0.19	1.16	0.23	1.09	0.32		
상층	1.26	0.37	1.25	0.37	1.17	0.44	0.65	0.43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1.41*	0.20	1.61**	0.26	1.27	0.25	1.88	0.68		
보수	1.60*	0.29	2.44***	0.46	1.30	0.32	4.41***	1.70		
성별 및 연령대										
(기준: 청년 여자)		0.05	/ O d strategy	1 22		0.50	2 / Csteste	/		
청년 남자	1.32	0.27	4.91***	1.33	7.16***	2.56	3.46**	1.64		
장년 여자 장년 남자	0.84	0.19	1.65 3.26***	0.49	1.53	0.63	0.67	0.43 1.78		
	0.92	0.22	2.14*	0.93 0.71	3.93*** 4.17**	1.53	3.41*	0.71		
중고령 여자 중고령 남자	0.90 1.21	0.24	2.14	0.71	2.80*	1.76 1.19	1.09 2.31	1.34		
상수	0.34***	0.09	0.05***	0.93	0.05***	0.02	0.03***	0.02		
Wald Chi <sup>2</sup> (DF)/N	0.54	224.57(72)*** / 2,000								
7 delate / 001 dela	/ 01 * / 0.05									

주: \*\*\*\*p < .001, \*\*p < .01, \*p < 0.0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1]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필요성 태도 유형화 결과가 계층, 성별, 연령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정책 필요성 태도 5개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고, 계층, 성별, 연령을 독립변수로 한 다항로짓 분석을 했고, 그 결과는 〈표 4-38〉과 같다. 다항로짓 분석 결과표는 대부분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는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비중 2~5위 집단의 차이를 의미한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의 비중 2위 집단은 학력은 대졸 이상일 확률이 32%포인트 낮았다(RRR=.68, p<.01).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이면 진보에 비해 비중 2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41%포인트(RRR=1.41, p<.05), 60%포인트(RRR=1.60, p<.05) 높았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는 비중 1위 집단과 비중 2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중 1위 집단보다 젠더·다문화·지방분권에 반대하고 저출생,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에 찬성하는 비중 3위 집단은 이념 성향이 중도 또는 보수일 확률이 61%포인트(RRR=1.61, p<.01), 144%포인트(RRR=2.44, p<.001) 높았다. 15~35세 청년 여자와 비교해서 비중 3위 집단 소속 확률이 청년 남자 391%포인트(RRR=4.91, p<.001), 장년 남자 226%포인트(RRR=3.26, p<.001), 중고령 남자 198%포인트(RRR=2.98, p<.01), 중고령 여자 114%포인트(RRR=2.14, p<.05)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젠더·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반대하는 비중 4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계층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과 연령별 차이만 있었다. 청년 여자와 비교했을 때 비중 4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청년 남자 616%포인트(RRR=7.16, p〈.001), 중고령 여자317%포인트(RRR=4.17, p〈.01), 장년 남자 293%포인트(RRR=3.93, p〈.001), 중고령 남자 180%포인트(RRR=2.80, p〈.05)씩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아동돌봄지원과 젠더 관련 정책에 특히 강한 반대를 하고 나머지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도 반대하는 비중 5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념 성향이 보수일 확률이 341%포인트 (RRR=4.41, p<.001) 높았다. 청년 여자와 비교해서 비중 5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청년 남자 246%포인트(RRR=3.46, p<.01), 장년 남자 241% 포인트(RRR=3.41, p<.05)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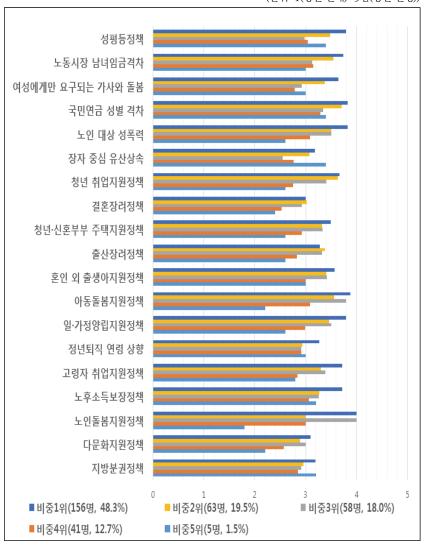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념적으로 중도이거나 보수일 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청년 여자나 중고령자와 비교했을 때도 청년 남자가 젠더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 나. 성·연령대별 정책 필요성 태도 유형과 계층적 특성의 영향력

[그림 4-1]에서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고, 나머지 20%도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국민은 주로 반대를 하는데 반대의 정도가 저출생, 젠더, 다문화, 지방분권 영역에서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교차성을 분석틀로 활용하므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림 4-1] 결과가 성별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도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15~35세 청년 여자[그림 4-2], 15~35세 청년 남자[그림 4-3], 36~55세 장년 여자[그림 4-4], 36~55세 장년 남자[그림 4-5], 56세 이상 여자[그림 4-6], 56세 이상 남자[그림 4-7]의 6개 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6개 개별 집단 내에서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 유형 구분 결과를 본 다음, 그 결과가 성별과 연령대의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종합적인 논의를 하겠다.

[그림 4-2]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여자(323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07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2] 참조.

〈표 4-39〉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15~35세 청년 여자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5위
	RRR	Robust S.E.	RRR	Robust S.E.	RRR	Robust S.E.	RRR	Robust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79	0.38	1.73	0.95	1.32	0.63	0.42	0.58
도 지역 시부	1.20	0.47	2.14	1.04	0.60	0.28	0.16	0.21
도 지역 군부	0.32	0.36	3.16	2.58	0.49	0.57	0.00	0.0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68	0.30	2.93**	1.13	1.89	0.86	0.00	0.00
이혼/사별	4.84	5.24	0.00	0.00	0.00	0.00	0.00	0.00
대졸 이상	1.74	0.65	0.72	0.28	0.64	0.27	0.00	0.0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21*	0.15	1.30	0.80	0.97	0.65	0.00	0.00
보통	0.67	0.38	1.95	1.10	2.62+	1.43	3.35	4.80
안정	0.58	0.23	1.74	0.69	0.79	0.38	4.29	5.49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88	0.35	1.05	0.44	1.26	0.59	0.44	0.51
상층	1.79	1.82	4.59	4.40	2.32	2.94	0.00	0.00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2.23*	0.78	2.64*	1.00	1.62	0.65	3.71	5.17
보수	2.84	2.02	4.38*	2.96	2.71	1.96	4.52	7.32
상수	0.27**	0.15	0.06***	* 0.04	0.19*	0.12	0.09	0.14
LR Chi <sup>2</sup> (DF)/N			7	75.51(52	)* / 323	1		

주: \*\*\*p < .001, \*\*p < .01, \*p < .05,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15~35세 청년 여자 응답자 323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그림 4-2]의 결과부터 살펴보겠다. 청년 여자 323명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 3, 4, 5, 6개로 늘려 가며 반복적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엔트로피지수가 0.907로 상대적으로도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도 높은 5개의 유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했다.

[그림 4-2]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은 48.3%를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대부분의 정책에서 3점대 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결혼장려정책, 다문화지원정책, 지방 분권정책에 대해서만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 중 2위 집단에는 19.5% 정도가 포함되었다. 비중 2위 집단은 젠더와 저 출생 관련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노동시장 의 남녀 임금 격차, 국민연금 성별 격차, 청년취업지원정책, 아동돌봄지 원정책에서의 찬성 태도가 강했다. 반면, 장자 중심 유산상속, 결혼장려 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정책, 노인돌봄지원정책, 다문화 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서는 중립적이거나 약한 반대 성향을 드러냈 다. 세 번째 줄 회색 비중 3위 집단은 18.0%가 해당됐다. 비중 3위 집단 은 젠더,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서의 정부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중 립 또는 약한 반대의 태도를 보이지만,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 저출생 관련 정책 전반, 노인 대상 성폭력에는 찬성을 하는 명확한 선호를 가지 고 있었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12.7%가 해당되는데,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부분 중립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결혼장려정 책과 다문화지원정책에 반대하는 정도가 강했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 중 5위 집단은 제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면서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 정 책에는 거의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청년 여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표 4-39〉와 같다. 사례 수가 작을수록 표준오차가 커져서로짓 분석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수준 90%까지 표시했다. 비중 5위 집단의 결과도 사례 수가 늘어나면 유의할 개연성이 있지만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사례 수가 적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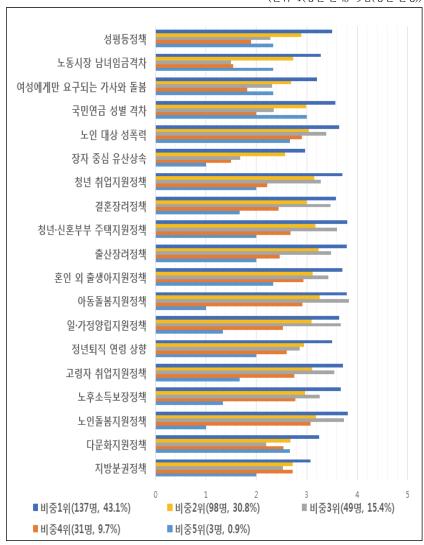
결혼장려, 다문화지원, 지방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에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는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노동시장의 남녀 임금 격차, 국민연금 성별 격차, 청년취업지원정책, 아동돌봄지원정책에 찬성 태도만 강한 비중 2위 집단에 속한 청년 여자들의 계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고용과 비교해서 고용안정성이 불안정하면 비중 2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79%포인트 낮았다(RRR=.21, p〈.05).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 중도이면 비중 2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23%포인트 높았다(RRR=2.23, p〈.05).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 저출생 관련 정책 전반, 노인 대상 성폭력에는 찬성하지만 젠더,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찬반이 명확한 비중 3위 집단에 속하는 청년 여성들의 특성도 살펴보겠다. 비중 3위 집단의 청년 여자들은 비혼보다 기혼일 확률이 193% 포인트(RRR=2.93, p<.01)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비중 3위 집단 청년 여자들은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일 확률이 164%포인트(RRR=2.64, p<.05), 338%포인트(RRR=4.38, p<.05)씩 높았다.

한편, 결혼장려정책과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비중 4위 집단인 청년 여자들은 비고용인 경우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경우가 162%포인트(RRR=2.62, p<.10) 높았다.

[그림 4-3]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남자(318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889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3] 참조.

〈표 4-40〉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15~35세 청년 남자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1.28	0.54	1.29	0.65	0.40	0.25	0.00	0.00
도 지역 시부	1.03	0.40	0.73	0.34	0.39+	0.20	0.74	1.04
도 지역 군부	1.02	0.76	0.79	0.73	0.64	0.63	0.00	0.0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37*	0.18	0.78	0.40	1.90	0.99	17.42	39.03
이혼/사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졸 이상	1.77+	0.57	1.89+	0.73	1.79	0.87	1.05	1.64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80	0.39	1.30	0.82	1.25	0.99	0.00	0.00
보통	0.39	0.19	1.75	0.94	1.97	1.33	0.40	0.87
안정	0.61	0.22	1.57	0.72	1.70	0.99	0.00	0.00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2.36*	0.89	0.42*	0.17	1.16	0.62	0.31	0.50
상층	1.17	0.76	1.12	0.67	1.42	1.21	2.54	4.70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1.09	0.36	1.95	0.94	3.16+	2.14	0.00	0.00
보수	0.74	0.37	4.44*	2.60	10.03**	7.63	0.00	0.00
상수	0.39+	0.21	0.19*	0.12	0.05**	0.05	0.00	0.00
LR Chi <sup>2</sup> (DF)/N			8	34.12(52)	)** / 318			

주: \*\*p < .01, \*p < .05,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15~35세 청년 남자 응답자 318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그림 4-3]의 결과도 살펴보겠다. 청년 남자 318명을 대상으로 유형수를 2, 3, 4, 5, 6개로 늘려 가며 반복적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엔트로피지수가 0.889로 상대적으로도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 높은 5개가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됐다.

[그림 4-3]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은 43.1%를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대부분의 정책에서 3점대 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자 중심 유산상속,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서만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 위 집단에도 30.1% 정도의 높은 비중의 응답자들이 포함되었다. 비중 2 위 집단은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 중립적이거나 약한 반대를 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나마 청년 취업지원정책,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아동돌봄지원정 책, 노인돌봄지원에서 아주 약한 찬성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 줄 회색 비 중 3위 집단에는 15.4%가 속했다. 비중 3위 집단은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젠더 관련 정책 전 반에는 강한 반대,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는 약한 반대의 태도 를 가지고 있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9.7%가 해당되는데, 정 부의 개입 필요성에 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성평등정책, 노동시 장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국민연금 성별 격 차, 장자 중심 유산상속과 같은 젠더 관련 정책 전반에 반대가 강했고, 그 보다는 약하지만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도 주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은 저출생, 고령사회, 젠더 관 련 정책에 모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청년 남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0〉과 같다. 사례 수가 318명으로 작으므로 통계적 유의수

준을 90%까지 표시했다. 특히 비중 5위 집단의 사례 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의 비중 5위 집단 분석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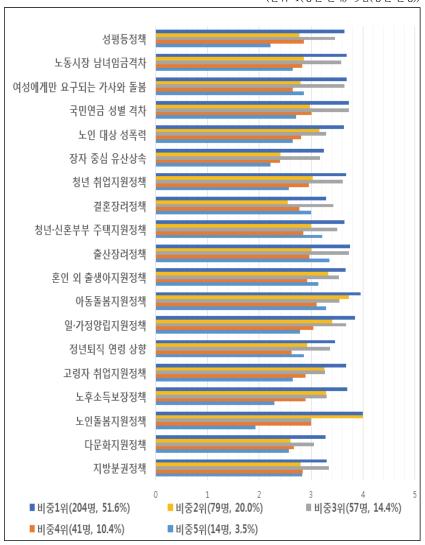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에 높은 찬성(단, 장자 중심 유산상속,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 대해서는 중립)을 하는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비중 2~4위 집단의 계층적 차이를 알아보겠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 중립적이거나 약한 반대를 하고, 청년 취업지원정책,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아동돌봄지원정책, 노인돌봄지원에서는 약한 찬성 태도를 가진 비중 2위 집단의 청년 남자는 비혼보다는 기혼일 확률이 63%포인트(RRR=0.37, p〈.05) 낮았다. 비중 1위집단에 비해 비중 2위 집단의 청년 남자는 학력이 대졸 이상일 확률이 77%포인트(RRR=1.77, p〈.10) 높고,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보다 중층일 확률이 136%포인트(RRR=2.36, p〈.05)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가지되 젠더 관련 정책 전반에는 강한 반대를 하는 비중 3위 청년 남자 집단 학력은 대졸 이상일 확률이 89%포인트(RRR=1.89, p<.10) 높지만,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보다는 중층일 확률이 58%포인 트(RRR=0.42, p<.05) 낮았다. 거기에 이념 성향이 진보가 아닌 보수인 경우 비중 3위 집단에 속하는 청년 남자일 확률이 344%포인트 (RRR=4.44, p<.05) 높았다.

비중 4위 청년 남자 집단은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 반대하지만 특히 젠더 관련 정책에 강한 반대를 하는데, 이들은 서울보다는 중소도시인 도 지역 시부에 거주할 확률이 61%포인트(RRR=0.39, p<.10) 낮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비중 4위 청년 남자 집단은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이거나 보수일 확률이 각각 216%포인트(RRR=3.16, p<.10), 903%포인트(RRR=10.03, p<.01)씩 높았다.

[그림 4-4]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여자(395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5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4] 참조.

〈표 4-41〉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36~55세 장년 여자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2		비중 (		비중		비중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1.03	0.46	2.06	1.05	2.18	1.40	0.87	0.72
도 지역 시부	1.05	0.41	1.30	0.62	2.47	1.43	0.70	0.49
도 지역 군부	0.89	0.58	1.45	1.05	0.00	0.00	1.35	1.64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1.99	0.87	2.63+	1.49	1.39	0.74	0.00	0.00
이혼/사별	0.96	0.75	1.33	1.26	0.59	0.69	2.56	4.74
대졸 이상	1.12	0.35	0.74	0.25	1.49	0.63	4.63	5.05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1.10	0.49	1.71	0.82	0.48	0.33	1.52	1.84
보통	0.87	0.40	2.49*	1.14	1.31	0.66	2.69	2.38
안정	1.17	0.38	1.10	0.43	0.73	0.30	2.29	1.66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0.79	0.28	1.21	0.49	1.27	0.65	0.00	0.00
상층	0.00	0.00	3.08	2.35	0.94	1.12	0.00	0.00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2.31*	0.76	1.41	0.48	1.05	0.40	0.93	0.63
보수	4.70***	1.96	1.36	0.70	1.73	0.93	3.58	2.76
상수	0.12**	0.08	0.05**	0.05	0.05**	0.05	0.00	0.00
LR Chi <sup>2</sup> (DF)/N			7	1.39(52)	)* / 395			

주: \*\*\*p < .001, \*\*p < .01, \*p < .05,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4]에서 36~55세 장년 여자 응답자 395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도 이어서 살펴보겠다. 장년 여자 395명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 3, 4, 5, 6개로 하나씩 늘려 가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형 수 5개의 엔트로피지수가 0.950으로 그중에서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도 높아서 5개 유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됐다.

[그림 4-4]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거의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 회 관련 정책에 3점대 중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위 집단에는 20.0%가 포함되었다. 비중 2위 집단은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에는 강하게 찬성하고, 노인 대상 성폭력,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노후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는 약한 찬성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젠더 관련 정책들과 결혼장려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다문화지원정책, 지방 분권정책에는 약한 반대를 하거나 중립적이었다. 세 번째 줄 회색 비중 3 위 집단에는 14.4%가 속했다. 비중 3위 집단은 대부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찬성하지만, 노인돌봄지원정책과 다문화지원정책 에는 중립적이었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10.4%가 해당되는 데, 거의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중립적이거나 약한 반 대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은 저출생 관련 정책에만 중립적이고, 젠더와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는 강한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그 비율은 3.5%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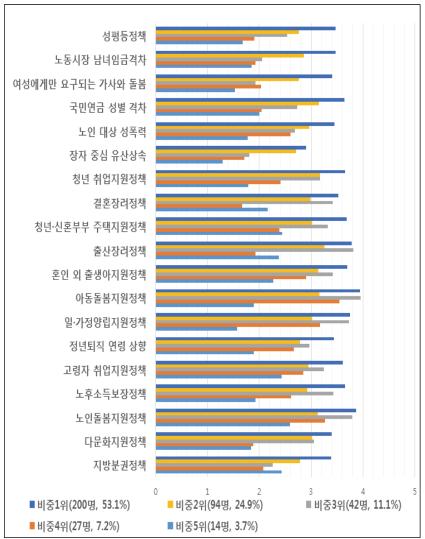
《표 4-41》은 장년 여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례 수가 작을수록 표준오차가 커져서 로짓 분 석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수준 90%까 지 표시했다. 비중 4위 집단도 그렇지만 특히 비중 5위 집단은 사례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진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비중 2위 장년 여자 집단은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노인 대상 성폭력,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일·가정양립지원정책,고령자 취업지원정책,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만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나머지 젠더 관련 정책들과 결혼장려정책,정년퇴직 연령 상향,다문화지원정책,지방분권정책에는 약한 반대를 하거나중립적이었다.비중 1위 집단에 비해서비중 2위 장년 여자 집단은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이거나 보수일 확률이 131%포인트(RRR=2.31, p<.05), 370%포인트(RRR=4.70, p<.001)씩 높았다.

대부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찬성하지만, 노인돌봄지 원정책과 다문화지원정책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비중 3위 장년 여자 집단은 비혼이 아닌 기혼일 확률이 163%포인트(RRR=2.63, p〈.10)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비중 3위 장년 여자 집단은 비고용인 경우보다는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일자리에 근로할 확률이 149%포인트(RRR=2.49, p〈.05) 높았다.

[그림 4-5]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남자(377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2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5] 참조.

〈표 4-42〉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36~55세 장년 남자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2		비중		비중		비중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1.16	0.47	0.37	0.23	1.02	0.83	1.45	1.12
도 지역 시부	1.10	0.40	1.09	0.48	2.24	1.50	0.46	0.37
도 지역 군부	2.49	1.53	0.52	0.59	3.17	3.28	0.00	0.0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82	0.28	0.71	0.32	0.68	0.38	0.31	0.22
이혼/사별	1.14	0.82	0.47	0.55	1.52	1.51	0.77	1.09
대졸 이상	1.36	0.48	1.13	0.52	0.94	0.50	0.00	0.0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1.70	1.26	0.92	0.85	1.84	2.21	0.92	0.85
보통	2.22	1.62	0.62	0.59	1.16	1.42	0.00	0.00
안정	1.73	1.22	1.31	1.13	1.94	2.24	0.00	0.00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1.50	0.50	1.01	0.45	1.68	0.95	0.45	0.32
상층	2.26	1.16	1.60	1.07	1.54	1.45	0.72	0.75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2.12*	0.62	2.43*	1.02	2.89+	1.60	1.31	1.06
보수	1.75	0.71	3.00*	1.56	4.91*	3.07	9.48**	7.36
상수	0.09**	0.07	0.14*	0.13	0.02**	0.02	0.00	0.00
LR Chi <sup>2</sup> (DF)/N			7	0.11(52)	)* / 377			
Z. ** / 01 * / (	5 . / 1							

주: \*\*p < .01, \*p < .05,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5]에서 36~55세 장년 남자 응답자 377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도 이어서 살펴보겠다. 장년 남자 377명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 3, 4, 5, 6개로 하나씩 늘려 가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형 수 5개의 엔트로피지수가 0.920으로 그중에서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도 높아서 5개 유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됐다.

[그림 4-5]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대부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 회 관련 정책에서 3점대 중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장자 중심 유산상속에는 중립적이었고,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 책에 대해서는 찬성 정도가 약했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위 집단에 는 24.9%가 포함되었다. 비중 2위 집단은 국민연금 성별 격차, 청년 취업 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아동·노인돌봄지원정 책에는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는 주로 약한 반대에 가까운 중립 성 향이었다. 세 번째 줄 회색 비중 3위 집단에는 11.1%가 속했다. 비중 3위 집단은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는 찬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젠더 관련 정책과 지방분권정책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이 슈에 따라 찬반이 명확했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7.2%가 해 당되는데,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부분 강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비중 4위 집단도 아동돌봄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노인 돌봄지원정책에는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은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 에 강한 반대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비율은 3.7%로 적었다.

《표 4-42》은 장년 남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례 수가 작을수록 표준오차가 커져서 로짓 분 석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수준 90%까 지 표시했다. 분석 결과, 장년 남자들의 정책 필요성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은 이념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정책에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진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성별 격차, 청년 취업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혼인 외 출생 아지원정책,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에는 약한 찬성 태도를 보이면서 나머지 젠더,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서는 약한 반대 또는 중립적인 비중 2위 장년 남자 집단은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일 확률이 112%포인트 (RRR=2.12, p<.05)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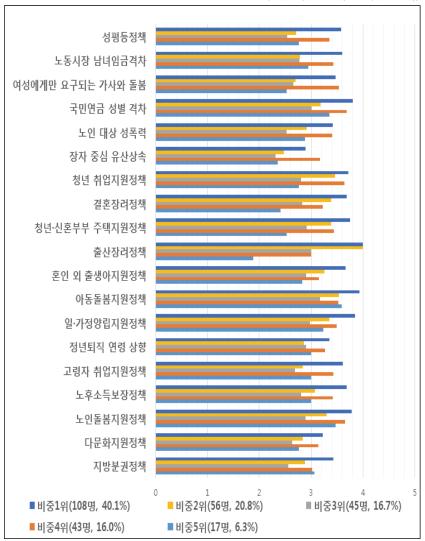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 정책 전반에는 찬성하고 젠더 관련 정책과 지방분권정책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비중 3위 장년 남자 집단도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이거나 보수일 확률이각각 143%포인트(RRR=2.43, p<.05), 200%포인트(RRR=3.00, p<.05)씩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부분 강한 반대를 하지만 아동돌봄지원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노인돌봄지원정책에서는 약한 찬성 또는 중립적인 입장인 비중 4위 장년 남자 집단도 이념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 또는 보수일 확률이 각각 189%포인트(RRR=2.89, p<.10), 391%포인트(RRR=4.91, p<05)씩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강한 반대 태도를 가진 비중 5위 집단은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 보수일확률이 848%포인트(RRR=9.48, p<.01) 높았다.

[그림 4-6]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여자(269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38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6] 참조.

〈표 4-43〉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56세 이상 중고령 여자

			7	l준 집단:	비중 1위	-		
구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70	0.35	0.82	0.44	0.69	0.37	0.30	0.25
도 지역 시부	0.71	0.32	0.88	0.42	0.67	0.32	0.68	0.44
도 지역 군부	0.74	0.51	0.89	0.66	0.48	0.38	0.00	0.00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50	0.74	0.00	0.00	0.55	0.83	0.00	0.00
이혼/사별	0.72	1.08	0.00	0.00	0.51	0.79	0.00	0.00
대졸 이상	0.83	0.34	0.00	0.40	0.49	0.24	0.90	0.00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1.25	0.65	0.38	0.26	0.32	0.26	3.15	2.33
보통	2.51+	1.36	0.62	0.45	0.93	0.61	3.56	2.89
안정	1.39	0.66	0.53	0.29	0.83	0.42	1.08	0.94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1.10	0.42	0.76	0.31	1.41	0.61	2.18	1.56
상층	0.33	0.39	0.57	0.54	0.00	0.00	4.49	5.13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1.53	0.75	2.82+	1.59	1.36	0.67	1.26	1.01
보수	1.78	0.85	1.92	1.10	0.72	0.38	1.85	1.38
상수	0.70	1.07	0.00	0.00	1.12	1.72	0.00	0.00
LR Chi <sup>2</sup> (DF)/N			4	44.60(52	) / 267			

주: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6세 이상 중고령 여자 응답자 269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 [그림 4-6]에서 살펴보겠다. 중고령 여자 269명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 3, 4, 5, 6개로 늘려 가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을 때 엔트로피지수가 0.938로 상대적으로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 높은 5개가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됐다.

[그림 4-6]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은 40.1%를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대부분의 정책에서 3점대 중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위 집단에는 20.8% 정 도의 응답자들이 포함되었다. 비중 2위 집단은 저출생 관련 정책에서는 뚜렷한 찬성 태도를 가지고,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인돌봄지원정책에서 는 약한 찬성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젠더,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서는 약한 반대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줄 회색 비 중 3위 집단에는 16.7%가 속했다. 비중 3위 집단은 거의 모든 젠더, 저출 생, 고령사회 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약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 고 있었다. 넷째 줄 주황색 비중 4위 집단은 16.0%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서 국가의 개입을 약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중에서 성평등정책,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국민연금 성별 격차, 청년 취업지원정 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아동·노인돌보지원정책 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찬성 태도를 보였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은 젠더 관련 정책, 결혼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에는 강한 반대를 하 고. 고령사회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6.3%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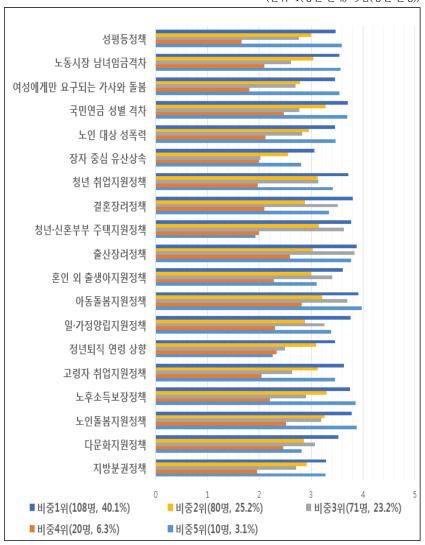
《표 4-43》은 중고령 여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 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례 수가 작을수록 표준오차가 커져서 로짓 분석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수준 90% 까지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비중 4~5위 집단은 사례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 해석 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

거의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강한 찬성 태도를 가진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저출생 관련 정책,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인돌봄지원정책에 찬성하고 나머지 젠더,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서는 약한 반대 또는 중립적인 비중 2위 중고령 여자 집단은 비고용인 경우보다고용안정성이 보통인 일자리에 근로할 확률이 151%포인트(RRR=2.51, p<.10)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거의 모든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약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비중 3위 중고령 여자 집단은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일 확률이 182%포인트 (RRR=2.82, p<.10) 높았다.

[그림 4-7]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남자(318명)

(단위: 1(강한 반대)~5점(강한 찬성))



주: 1)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88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해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2) 집단별 각 정책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부그림 4-7] 참조.

〈표 4-44〉계층별 정책 필요성 유형 다항로짓 분석 결과: 56세 이상 중고령 남자

	기준 집단: 비중 1위							
구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RRR	S.E.	RRR	S.E.	RRR	S.E.	RRR	S.E.
거주지								
(기준: 서울)								
서울 외 광역시	0.79	0.36	0.59	0.28	3.27	2.93	0.30	0.38
도 지역 시부	0.61	0.25	0.56	0.23	1.97	1.73	0.69	0.62
도 지역 군부	0.41	0.24	0.65	0.36	0.96	1.28	1.23	1.37
혼인상태								
(기준: 미혼)								
기혼	0.00	0.00	1.22	0.92	0.85	1.03	0.00	0.00
이혼/사별	0.00	0.00	0.56	0.55	0.00	0.00	0.00	0.00
대졸 이상	0.85	0.26	1.22	0.40	2.06	1.10	1.69	1.24
고용안정성								
(기준: 비고용)								
불안정	0.74	0.34	1.18	0.57	0.55	0.41	10.26	11.81
보통	1.88	0.78	1.36	0.66	0.20	0.22	2.54	3.69
안정	0.65	0.24	1.13	0.44	0.51	0.31	1.95	2.39
주관적 소득계층								
(기준: 하층)								
중층	1.13	0.37	1.88+	0.70	0.52	0.29	1.09	0.88
상층	1.80	1.37	3.70+	2.53	0.64	0.80	3.92	5.72
이념 성향								
(기준: 진보)								
중도	0.96	0.36	2.00+	0.81	4.53*	3.30	0.79	0.65
보수	1.02	0.37	1.47	0.59	1.64	1.25	0.53	0.44
상수	0.00	0.00	0.23	0.21	0.07+	0.10	0.00	0.00
LR Chi <sup>2</sup> (DF)/N			(	54.71(52	2) / 318			

주: \*p < .05, +p < .1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4-7]에서 56세 이상 중고령 남자 응답자 318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도 이어서 살펴보겠다. 중고령 남자 318명을 대상으로 유형 수를 2, 3, 4, 5, 6개로 하나씩 늘려 가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형 수 5개의 엔트로피지수가 0.880으로 그중에서 가장 크고 절대적인 기준인 0.80보다도 높아서 5개 유형이 최적의 모형으로 선정됐다.

[그림 4-7]에서 가장 윗줄 짙은 파란색의 비중 1위 집단이 절반은 안 되지만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중 1위 집단은 거의 모든 젠 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서 3점대 중후반의 높은 찬성 태도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자 중심 유산상속에는 중립적이었고, 지방분권정 책에도 찬성 정도가 약했다. 두 번째 줄 노란색의 비중 2위 집단에는 25.2%가 포함되었다. 비중 2위 집단은 국민연금 성별 격차, 정년퇴직 연 령 상향,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 아동·노인돌봄지원정 책에는 약한 찬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젠더, 저출생 관련 정책,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는 중립적이거나 약한 반대 를 하는 성향이었다. 세 번째 줄 회색 비중 3위 집단에는 23.2%가 속했 다. 비중 3위 집단은 저출생 관련 정책 전반, 노인돌봄지원정책에는 강한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달리 젠더 관련 정책과 지방분권정책 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이슈별 찬반이 명확했다. 넷째 줄 주황색 비 중 4위 집단은 6.3%가 해당되는데, 모든 정책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강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가장 아래 줄 하늘색 비중 5위 집단은 대부 분의 젠더, 저출생, 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강한 찬성 태도를 가지고 있되,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과 정년퇴직 연령 상향에 강한 반대, 장자 중 심 유산상속과 다문화지원정책에 약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으며 그 비 율은 3.1%로 적었다.

《표 4-44》는 중고령 남자들 내부에서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다항로 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례 수가 작을수록 표준오차가 커져서 로짓 분석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수준 90%까지 표시했다. 분석 결과, 중고령 남자들의 정책 필요성 태도 차이를 만드는 계층적 특성은 주관적 소득계층과 이념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정책에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진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저출생 관련 정책 전반, 노인돌봄지원정책에는 강하게 찬성하되 젠더 관련 정책과 지방분권정책에는 반대하는 비중 3위 중고령 남자 집단은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보다는 중층이거나 상층일 확률이 각각 88%포인 트(RRR=1.88, p<.10), 270%포인트(RRR=3.70, p<.10)씩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비중 3위 중고령 남자 집단은 이념 성향도 진보보다는 중도일 확률이 100%포인트(RRR=2.00, p<.10) 높았다.

비중 1위 집단과 비교해서 모든 정책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강한 반대를 하는 비중 4위 중고령 남자 집단도 이념 성향이 진보보다는 중도 일 확률이 각각 353%포인트(RRR=4.53, p<.05) 높았다.

## 제5절 소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전반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52.7%로 절반을 조금 상회한다.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유형의 비율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보면 장년 남자 53.1%, 장년 여자 51.6%, 청년 여자 48.3%, 청년 남자 43.1%, 중고령 여자 40.1%, 중고령 남자 40.1%이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약 13%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저

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18.9%의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도 대부분의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을 약하게 지지하거나 중도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16.2%의 세 번째 비율을 차지한 유형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과 아동·노인돌봄정책에는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련 정책,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나타났고, 네 번째 비율인 약 9%도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거의반대하지만 유독 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강도가 강했다. 저출생, 고령사회, 젠더 관련 정책에서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특정 영역마다 찬반 태도가 엇갈리는 이러한 유형들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세분화해도 발견되는 패턴이다. 다만, 청·장년 여자 집단이 다른 성별과 연령대집단에 비해 젠더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고, 그보다 장년 남자, 중고령 여자, 중고령 남자 집단에 젠더 관련 정책에만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독 청년 남자 집단에서 젠더 관련 정책에 더 강한 반대를 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장년 남자도 그렇지만 청년남자 집단이 오히려 중고령 남자나 중고령 여자 집단보다도 젠더 관련 정책에 반감이 큰 것이다.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 태도를 성별과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유형화한 결과의 비교에서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 여자 집단은 젠더 관련 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출생보다는 고령사회 정책에 찬성하는 정도가 낮으며, 저출생 관련 정책 중에서는 결혼과 출산장려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진 경우도 비율이 꽤 되어 찬반이 엇갈린다. 청년 남자 집단은 같은 연령대 여자에 비해 결혼과 출산장려에 반대하는 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젠더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보 수 성향이 두드러졌다. 장년 여자 집단은 대체로 저출생, 고령사회, 젠더 관련 정책에 일관되게 찬성하거나 일관되게 반대하는 성향이고, 아동과 노인돌복지원정책에 높은 찬성 태도를 가지며, 특정 정책에만 강하게 반 대하는 경우는 적었다. 오히려 장년 남자가 대부분의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가진 경우가 53.1%로 나 머지 성별 및 연령대 집단들보다 높았다. 장년 남자의 약 25%도 개별적 인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마다 찬반은 있지만 그 강도가 약해 중립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장년 남자 집단에서 다른 저출생·고령 사회 관련 정책보다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과 함께 젠더 관련 정 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22.0%로 높았다. 중고령 여자도 대다수가 저출생· 고령사회 전더 관련 정책에 찬성을 하는데, 비중 2위와 비중 4위 유형에 서도 저출생과 젠더 관련 정책에 선명한 찬성 태도를 가진 것이 다른 성 별 및 연령대별 집단과 다른 경향이었다. 중고령 남자 집단도 저출생·고 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주로 찬성하지만, 정년퇴직 연령 상향, 고령자 취업지원, 노후소득보장, 아동·노인돌봄지원정책에 찬성하는 태도가 강 했다. 중고령 남자 집단에서 다른 저출생·고령사회 정책들과 달리 젠더 관련 정책, 다문화지원정책, 지방분권정책에 유독 반대하는 입장이 비중 2~4위 집단으로 나타난 것도 특징적이다.

계층적 특성 중에서는 이념 성향이 저출생·고령사회·젠더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 찬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념 성향이 중도이거나 보수일수록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성이 뚜렷했다. 거주지, 혼인상태, 학력, 고용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이 성별 및 연령대 집단의정책 필요성 태도를 좌우하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일부에 국한되었다. 혼인상태는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장년 여자의 정책 태도

에만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졸 이상의 학력은 청년 남자의 정책 태도에만 제한적인 차이를 가져왔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정책 필요성 태도는 청년 여자, 장년 여자, 중고령 여자에게만 차이가 있어서 연령대보다 성별과 교차되어 영향을 미치는 특성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정책 필요성 태도는 중고령 남자에도 일부분연관되어 있었지만, 청년 남자에 특히 더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다항로짓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념 성향은 성별 및 연령대와 무관하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 태도를 결정하는계층적 특성이지만, 그 외에 혼인상태, 학력, 고용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은 긴밀하게 결합되는 성별 및 연령대가 있는 것이다.

> 제1절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대책의 젠더 이슈

# 5

#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 심층 논의

# 제1절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

1. 인구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

#### 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과 출산장려 패러다임

현재 한국 인구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2002년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5)이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오면서 대두된 저출산 위기론의 효과였다. 인구정책 하면 가족계획사업으로 대표되는 인구억제정책정도만 떠올리던 한국 사회였지만, 저출산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인구감소로 이어져 자칫 민족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빠르게 퍼져 나갔다. 국가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현재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형성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출산이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빠르게진행시킬 것이라는 예측하에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

<sup>5)</sup> 합계출산율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 인구학적 지수로, 보통은 한 여성이 평생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합계출산율은 실제 계산은 가입여성(15세~49세 여성 전체)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가임여성은 그 연령대에 있는 여성 인구 수를 의미하지 혼인 여부나 난임여부 등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예컨대 지난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되는 것이다.

다. 이 법의 목적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한국의 인구정책은 이 기본법을 근거로 추진·시행되고 있으며, 크게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 인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출산장려'로 바뀌었다고 지적된다. 인구의 전체 수에서 고령인구의비율이 늘어나는 '인구고령화'는 기본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과 관련되지만 신규 출생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상쇄될 수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추세는 의학 발달과 건강 수준 향상의 당연한 결과이기에 국가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신규 출생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출산장려를 통해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초기 정책 방향이 출산율을 증가시켜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쪽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오랜 가족계획사업의 여파로 가임여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는추세였던 데다가 소자녀 지향이 일반인의 출산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사회였다. 이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난만(難望)한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구정책을 인구의 규모에 대한 국가관리, 더 좁게는 개별 여성의 출산 횟수에 대한 국가 통제로 간주했던 한국 인구정책의 오랜 관행은 강했다. 정치적 민주화에 더하여 IMF 위기 이후 경제구조 재편, 일상생활의 신자유주의화와 개인화를 급격히 겪어낸 한국의 사회변화는 앞서 언급한바 가임여성 감소와 소자녀 출산 규범이라는 기저적 조건에 더하여출산율 반등을 통한 위기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급박하게 휘몰아친 저출산 위기론 앞에서 이 같은 조건과 사회변화를 고려

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어려웠고, 국가에 의한 인구 통제 (population control)라는 정책 관행은 너무 쉽게 관성적으로 되살아났다.

한국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처음 인구정책이 시작되었던 1962년 이 래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지적되는데(정성호, 2018, p. 43), 즉 가족계획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1962년부터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었던 1996년까지의 출산억제 패러다임, 1996년 이후 저출산 위기론과 정책적 대응이 대두된 2004년까지의 인구의 자질 및 복지증진 패러다임, 그리고 2004년 이후의 출산장려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1996년 이후 '인구의 질'에 방점을 둔 시기가겨우 수년밖에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인구의 수'를 관리·통제하는 쪽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방향이 바뀌었을뿐, 국가가 개별 여성들의 출산 행위와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출생아 규모를 관리 혹은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 나. 인구학적 접근과 출산율 목표치 설정의 한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뒤 이 법을 근거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총괄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5년 간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제3차 기본계획(2016~2020)'까지 나왔으며, 2019년 2월에 기존의 3차 기본계획을 수정한 '제3차 기본계획(수정)'이 발표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각 시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방향, 문제인식, 핵심적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정책의 관점뿐 아니라 정책실행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이접하는 인구정책의 전체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3차 기본계획이 수정되기 전까지,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은 모두 합계출산율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출산율 제고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며, 정책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기본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인구학적 추세의 변동을 추구하는 인구 통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영문 명칭은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으로, 정책의 내용과 틀이 인구학적 접근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출생·고령화정책이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틀이 인구 통제 관점을 답습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합계출산율 수치가 정책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 1)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성격 약화

첫째,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 제고로 명시됨으로써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은 국가가 여성 개개인의 출산 관련 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출산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단기적 전망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본령은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용하는" 것에 있는데도,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사실에만 집중하여 인구 변동의 추세 반등을 목표로 삼게됨으로써 정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구학적 추세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변화가 무엇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는 아주 부족했다. 일부 이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가령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린다는 식으로 '인구의 질'이나 사회구조적 변화보다는 '인구의 수'에 집착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뤄졌다.

#### 2) 인구 위기의 '해결'이라는 환상

둘째,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출산율 제고 위주로 이해됨으로써, 출산율 반등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이 유포되었다.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생애 사건인 부모 되기와 연관된 것으로 단기적으로 그 추세를 변화시키기는 힘들며, 특히 지난 가족계획사업의 여파로 가임여성의 수가 급감하고 소자녀 출산 규범이 확립된 한국 사회의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인구학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등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모든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그동안 실시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선불리 '실패'로 선언되는 이유를 만든다. 통계청이 출산율 관련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인구절벽, 인구소멸, 인구재난, 인구재앙 등 인구 위기에 대

한 불안과 공포 담론이 꾸준하게 횡행하고(김영미, 2018, p. 105),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감소 추세이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그 자체가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것은6) 이러한 잘못된 기대 때문이다. 이러한 환상과 기대 때문에 인구학적 추세 완화와 사회적 적응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의의가 있다는 관점이 자리 잡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위기감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3)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 훼손

셋째, 인구학적 접근과 출산율 제고에 집중한 정책 추진은 저출생·고령 사회 정책의 근거와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논리는 "저출생 현상의 지속은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대한민국 정부, 2006, pp. 13-6)",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대한민국 정부, 2006, p. 8)"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출산율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잠재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일까? 사회보장 부담이나 재정수지 악화를 해결할 방안이 출산율 제고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 설정의 근거는 부실하였고, 이에대해 합의된 실증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증적

<sup>6)</sup> 대표적으로 2017년 합계출산율 발표 이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은 "지난 10년간 80조 원이나 썼는데 헛돈만 썼다"라는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80조 원이나 썼는데, 헛돈만 쓴 저출산대책"(머니투데이, 2018년 2월 28일)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채 위기 담론을 증폭시키는 정책적 접근으로는 정책의 정당성을 얻어내기도 어렵다. 십여 년 이상 지속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력 출산 연령대인 청년층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실<sup>7)</sup>은 이것을 방증한다.

#### 4)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불만과 반감

넷째,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틀과 그것을 구성하는 용어들이 인구 통제의 정책적 관성과 인구학적 접근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 장려라는 인구 통제적 정책 패러다임과 '가족 가치', '생명존중'을 위한캠페인 위주의 접근법은 주력 출산 연령대인 20~30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권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국가가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이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에 분개했다(배은경, 2010; 신경아, 2010). 국가와 기성세대가 저출산의 원인을 개인의 이기심이나 국가위기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보면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출산이 애국'임을 깨달아 아이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인다는 것이 여성들의 주된 불만이었다. 임신·출산이 여성들에게 모성 페널티로 작용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여성들에게 그저 아기를 낳아 달라는 요구만 하는 식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특히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자신과 (자신이 낳을 것으로 가정되는) 자녀를 기본적으로 '숫자'로 세어지는 존재로 여긴다는 점을 불

<sup>7)</sup> 예컨대 "저출산이 왜 문제냐, 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시사저널, 2018년 3월 8일)

편하게 여겼다. 국가가 자신들을 평등한 국민,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구수 증가라는 목적을 위해 동원하려 한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는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두드러진바, 여성 혐오와 성차별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적 집합행동과 여성 연대성의 증가와 맞물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과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2016년 연말 벌어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출산지도' 해프닝은 이 같은 여성들의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김영미, 2018, p. 125). 행자부가 밝힌 지도 제작 취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를 위해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 관련 통계를 한눈에 제공하는 것이었지만,8) 출산지도는 다음 [그림 5-1]과 같이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의 숫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시각화했고 이는 여성들의 즉각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아기 낳는 몸으로 환원되어 마치 가축처럼 머릿수가 세어지는 것 같은 모욕적인 느낌을 토로했고, 이에 대한 항의가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빗발쳤다.9)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지도'로 불리며 국가가 여성을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받았으며, 결국 행자부가 사과하고 지도를 홈페이지에서 내렸지만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10)

<sup>8)</sup>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작성 관행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임기 여성지도 이렇게 탄생했다" (한겨레신문, 2017년 1월 11일) 참조.

<sup>9) &</sup>quot;여성들 뿔났다, 거세지는 출산지도 반발 시위", (중앙선데이, 2017년 1월 8일, 513호 2면) 10) 공식 홈페이지는 사라졌지만 여성들은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박제'했고,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현재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터져 나온 여성들의 불만은 급기야 '가임여성'이라든지 '출산 력'과 같은 인구학적 용어의 사용 자체에 거부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어 졌다. 2018년 가을에 벌어진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대한 항의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 실태 파악과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통계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1968년부터 3년 단위로 시행되어 왔는데, 시작된 지 반세기만인 2018년 조사 대상인 여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것이다.11) 여

<sup>11)</sup> 당시 여성들의 분노는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출산력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임 신과 출산은 여성 자신이 선택할 문제로,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출 산력 조사 자체가 여성 비하와 출산에 대한 자율권 부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사 주체인 본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불과 나흘 만에 600건이 넘게 항

성들은 출산력 조사 조사원이 부재중인 집 앞에 "당신은 출산력 조사 대상입니다"라는 쪽지를 붙여 놓고 갔다며, 마치 이 집에 가임여성이 살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 같았다고 항의했다. 자신이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에 국가의 '조사 대상'이 되어 그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다뤄졌다는 것이 여성들이 느낀 불쾌감의 정체였다. 또한 혼자 혹은 여성들끼리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가가 '이 집에 가임여성이 산다'라는 표식을 대문에 붙여 놓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분노의 원인이었다. 여성들은 국가의 이러한 태도가 국가가 자신들을 주 권자인 국민으로 평등하게 대하기보다는 출산 도구인 몸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출산력 조사'는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거시 지표인 출생관련 통계를 생산할 뿐 아니라 피임실천, 모유수유, 난임 관련 통계, 영아사망률 등 모아(母兒)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조사 그 자체가 여성들을 출산도구화하거나 여성비하적인 면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출산력 조사'라는 말 역시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으며, 조사 방식도 달라진 바 없다. 그런데도 2018년 조사에서 '출산력'이라는 말이 이토록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동안의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추진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출산력'이라는 말이 개별 여성의 임신가능성 혹은 출산할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자신들이 그간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왔다는 불만이 중첩되면서, 국가가 '출산력 조사'를 한다는 사실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의 글이 올라왔으며,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현관에 떡 붙인 '당신은 출산력 조사대상'"(한국일보 2018. 9.4)

#### 다. 정책 용어와 학술 용어의 구분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페미니스트 학자 들은 이 정책이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관점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은, 2008; 배은경, 2010; 신 경아, 2010).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변화 속에서 최근에야 노골화되었지만, 사실 당연히 예견 되는 것이었다. 그간의 민주화와 성평등의 진전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국 가는 여성들을 평등한 국민으로 대우해야 하며 여성들이 섹슈얼리티나 임신 출산의 담보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여기에 더하여,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공간 중 심으로 심화된 여성 혐오와 성적 대상화. 여성 대상 범죄와 성 착취 등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을 성적인 몸, 출산하는 몸으로 보는 가부장적 시선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형성하였다. 이런 여성들에게 여성을 '아이를 낳을 몸'의 '숫자'로 다루는 방식의 정책 접근이 설득력을 갖기란 어쩌면 처음 부터 무망한 일이었을 것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임신·출산을 개 별 여성, 국민 개인의 행복이나 선택권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경제나 전 체 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출산 당사자들을 설득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십여 년 동안 시행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출산 관련 사업들로 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정책의 이름하에 보육정책, 가족정책, 보건의료정책, 사회보장정책, 조세정책, 고용정책, 주택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영역은 아동·가족 관련 복지정책이었다. 일·가정양립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여성 노동시장의 노동 조건을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 틀과 목표가 인구 위기 해결과 출산율 제고로 제시되어 왔고, 다양화되는 생애과정과 관련 규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책 관행을 답습하였으며, 출산과부모 되기라는 개인에게 매우 중차대한 생애 사건을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영역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거의 없었기에 여성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건과 출산력 조사 사건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자 신을 '가임여성' 혹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인구학적 용어 자체에 명시적으로 거부감을 표하게 되었고. '저출산'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 들어 인구 고령화 문제 를 다룰 때 사용되는 정책 용어 자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고 바 꾸자는 여성계의 제안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안은 저출산이라 는 용어가 정책의 초점을 출산하는 몸에 맞추게 함으로써 인구문제의 해. 결을 개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출산 대신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는 의미의 '저출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담론의 문제 인식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바 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여자'가 아이 를 안 낳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가 덜 태어나기 때 문에 생기는 문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개별 여성 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다루는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고육지책이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제안은 출산 당 사자인 젊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점차 언론의 표제어나 토 론회 제목 등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SNS 채널에도 '저출생 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동영 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등 수용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그림 5-2] 유튜브 대한민국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 예시

주: #저출생캠페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을 '가임(기) 여성'으로 호명하거나 '출산력' 조사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문제 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다. '출산력 조사'의 출산력 (fertility)이 인구 전체의 집단적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인구학 용어이며 여성 개개인의 임신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제적 인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프레임으로 인해 누적된 압박감과 불신이 젊 은 여성들 사이에 워낙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설득이 간단치 않은 상황 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으로 실시된 역사가 이제 역설적으로, 중립적인 인구학 용어의 사용조차 정책 담론의 수준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술용어로서의 인구학적 전문용어를 국민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 용어로 사용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의미를 혼동시키지 않는 선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가령,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이나 출 산력(fertility) 개념이 아니라 조출생률(birth rate)이 낮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조출생률의 경우 인구구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국제 비교 등이 불가능하므로 정책 용어로 부적당하다는 시각에 부딪히고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학술용어와 정책용어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출생'이라는 말은 인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에 아이가 덜 태어난다', '출생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저출생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고, 이 통계치의 의미에 대해 언론 보도나 정책 관련 담론장에서 충분히 설명한다면 국민의 인식에 혼동을 초래할 위험은 별로 없다. 즉,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낮은 합계출산율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름이나 정책 그 자체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저출생·고령사회'라는 말 역시 인구학적인 학술용어 그대로는 아니다. 인구학적으로 엄밀히 말해야 한다면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가 문제이니 저출생·고령화 위원회라든가 저출생·고령화정책이라는 식의 명명이 정확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담론이 인구학적 학술용어를 그대로 써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라는 명명은 이 정책의 영역이 과거 가족계획사업 당시의 인구정책과 동일한 좁은 영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영역 전체를 아우른다는 취지를 담아내기에도 적절하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저출산이라는 정책 용어를 전면적으로 저출생으로 바꾸고, 아이가 덜 태어나고 노인이 많아지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책으로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라. 저출생 영역의 성차별적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언어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의 의 미는 결국 인구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더욱 젠더 의식을 가지고 용어 사용부터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 1) 저출산 대 저출생: 다양한 입장과 각자의 논거

저출산 사회에서 젠더의 관점에서 민감한 용어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용어이다. 앞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저출생·고령사회 관련용어에서 가장 큰 논쟁은 '저출산'대 '저출생'이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이라는 생애의 사건(event)을 여성만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 만드는 젠더 관점이 결여된 용어라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만드는 용어이므로,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로대체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에서 최근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성차별적인 용어를 찾아 대안을제시할 때도 선정되었다(매일경제, 2018, 7, 2).

한편 저출산과 저출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이라는 용어를 지금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출산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도 존재했는데, 이는 출산력을 생물학적인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임력으로 이해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한국인구학회에서 편찬한 '인구대사전'에 따르면, 출산력은 생물학적인 임신 능력인 가임력과는 다르며,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출산한 자녀가 몇 명인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출산력은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대체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력을 산출하고 있지만 출산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산출가능하다. 다만 국제 비교 등을 위해 한국도 여성의 출산력을 산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출산'이라는 용어를 여성하고만 연관 지어 생각하게만드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출생률은 한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몇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출산율은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인구)이 실제로 몇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하지만 출생아의 수만살펴보는 출생률은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의 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출산이 가능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출생률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우리 사회의 수준을 평가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로는 단순한 해당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출생률보다는 출산율이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할 때 출산율의 효용성은 남아 있다.

결국 핵심은 영어 Fertility라는 인구학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통계용어와 정책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여자들이 애를 적게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가 적어지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면 조사 자체는 임신·출산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과 정에서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합계출산율 제고를 더 이상 목표로 삼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저출산보다 는 저출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사, 통계, 학문적으로는 출산율, 출산력을 사용하되 일상생활이나 정책으로는 국민의 인식에서 거부감이 적은 저출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성차별적인 용어 현상과 쟁점

저출산 대 저출생의 논쟁은 서로 타당한 논거가 있는 입장 차이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 의식이 결여된 성차별적인 용어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서울시가 최근에 실시한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참여 캠페인'에서 제기된 성차별적인 용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매일경제, 2018. 7. 2). 첫째, 성차별적인 용어의 대표적인 예는 직업인 표현 앞에 여(女)를 붙인 것이다. 608건의 전체 시민 제안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100건으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용어의 대표적인 예는 여군, 여경, 여교사, 여직원등이다. 유사한 경우로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에는 '남'이라는 접두어가붙지 않는데, 여중, 여고 등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라는 접두어가 붙기 때문에 '여'자를 삭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둘째,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처음 한다는 의미의 '처녀'라는 용어도 성 차별적이라고 지적되었다. '처녀'라는 단어 대신 '첫'이라는 접두어를 대 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처녀작' 대신 '첫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편이 죽을 때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미망인'이라는 용어는 가장 성차별적이라고 지적되었다. 즉, '미망인'이라는 용어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유교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용어라는 것이다.

넷째,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유모차'를 '유아차'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어미 모(母)'자가 들어가는 유모차(乳母車)는 '아비 부(父)'자는 배제하여 '아빠'는 사용하지 말고 '엄마'만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여 남녀가 평등한 육아의 개념에 어긋나므로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차(乳兒車)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저출산 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성차별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사전에 실린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정복, 2017). 우선, '부모', '아들딸'과 같은 용어는 낱말을 구성하는 단어의 순서가 남성형이 먼저 나오고 여성형이 나중에 나오는 유형으로 남성을 우선하는 차별적인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부형'이라는 용어의 경우에는 의미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언어 자체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정복, 2017). 누리꾼들이 만들어 낸 차별적 표현으로서 저출산 사회와 관련 있는 용어로는 '맘충'이 대표적이다. '맘충'이란 용어는 엄마를 뜻하는 '맘 (mom)'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아이 엄마를 무시하면서 지칭하는 용어이다. '맘충'은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대표적인단어로 평가된다(이정복, 2017).

한 선행연구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사용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관해 조사하여 정리했다(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2007). 해당 조사 결과 성차별적 언어 및 성별 언어 사례는 총 511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별적 표현을 유형화한 결과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로 구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 해당하는 예는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샐러리맨, 바지사장, 얼굴마담, 모교 등)와 호명 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부모, 자녀, 남녀 등)로 구분된다. 불필요한 성별 강조에 해당하는 예는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하는 경우(여배우, 홍일점, 청 일점 등)와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 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는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경우 (여장부, 꽃미남 등)이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해당하는 예는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여우, 미녀, 청순, 마초, 영 웅 등), 한 성과 관련된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경우(아내, 집 사람, 황제 등)로 구분된다. 선정적 표현에 해당하는 예는 특정 성을 자극 적으로 표현한 경우(흑진주, 레이싱걸, 꽃미남 등)와 성적 또는 신체적 측 면을 이용하여 표현한 경우(글래머, S라인 등)들이 대표적이다. 특정 성 비하에 해당하는 예는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 우 또는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 는 경우(매춘부, 아줌마, 마마보이 등)이다. 해당 연구의 조사 결과는 앞 에서 제시한 최근의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성차별적 표현 사례 조 사 결과 세부 유형에 있어서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 어'들이 16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 사회에서 사 용되고 있는 '부모', '부모님', '학부모', '조부모'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 듯 출산과 양육의 짐은 더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도 아버지(부)가 어머니(모)보다 먼저 호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명의 호명 순서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 없이 성별 기준만 적용되어 남성이 먼저 호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호칭 언어는 하나의 성을 다른 성 보다 먼저 호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한 방법은 없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여성을 남성에 앞서 호명하는 방 식을 혼용함으로써 호칭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김혜숙,

2007; 안상수 외, 2007, p. 40 재인용).

단지 관성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라면 그다지 문제가 안될 수 있다. 언어에는 그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는데 생명력이 잃어 더 이상은 쓰지 않는 말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얼굴마담', '바지사장' 등의 표현은 50~6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산업화 시절에 주로 쓰던 표현이고 현재 10대, 20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이런 표현들까지 본 과제에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보다 최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다. '맘충' 정도는 오래된 단어가 되었고 요즘에는 남성을 지칭할 때도 '한남', 여성을 지칭할 때도 '한녀', 노인들은 '틀딱'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지칭하기도 한다. 혐오란 그 밑바탕에 혐오정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저변의 맥락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친척 용어가 지적되는 것도 용어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불평등한 가족관계가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에서 바른 용어 사용을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부터 지적된 성차별 언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차별적 용어와 표현들은 그 영향이 암묵적이고 은밀하여 이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사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 주어 편견과 차별을지속시킬 수 있다(김혜숙, 2007, p. 111). 따라서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대체적인 표현을 찾아, 성차별적인 용어의 사용을줄이도록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해야 한다.

## 2. 성인지적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향하여

#### 가. '사람 중심' 정책과 성평등이라는 관점

1)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 중시하기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의 장기적 비전을 로드맵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국가경쟁력과 '인구 위기'를 앞세우던 과거의국가중심적 태도를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사회적 배제나 차별 없이 다양한 차이를 품어 안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추진에도 반영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하여 2019년 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으로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수정)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을 인구 통제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특히 '저출산' 영역에서는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 확립에 역량 집중필요'를 강조함으로써 '사람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사람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의 중심에 남녀 개인, 즉 국가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기간노동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늙어 간다. 아이를 낳는 선택도 낳지 않는 선택도, 늙어 가는 일도 그 개인에게는 모두 자신의 생애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실 모든 '인구학적 사실'은 모든 국민의 생애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적 선택과 생애 사건들의 누적된 집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구정책이 국가발전, 경제성장, 부양인구비 악화나 생산인구 감소 같은 국가중심적·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겠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합성 높은 방향 전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향 전환이 단순히 선 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정책사업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구학적 사실'을 구성하는 국민의 생애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행위적 선택은 사회구조와 환경속에서, 그 개인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 동원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들의영향을 받으며 일어난다. 그러므로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숫자로 다루거나 고립된 개별자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모두 한국 사회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 삶을 꾸려가는 개인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각일 것이다. 즉,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정책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본령이다.

#### 2) 성평등의 강조: 인구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하기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당사자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국가중심적인 발전주의에 빠진 정책 패러다임 때문에 정작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자신들이 도구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이는 정책이 추진되는 십여 년 동안 여성 학자들이꾸준히 지적해 온 바인데(황정미, 2005; 배은경, 2010; 신경아, 2010; 김영미, 2018), 국가와 정책 담당자들은 2010년대 말이 될 때까지도 이를 방치하다가 노골적인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문제의식을 갖기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여성가족부는 2018년 3월, 그간의 저출산대책이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보기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 다루어 왔다고 지적하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12)

그런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기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994년 이집 트 카이로에서 열린 유엔국제인구회의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가족 계획, 출산 조절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해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조명한 중요한 계기였다(양현아, 2005, p. 230). 이 회의의 결과 발표된 카이로 행동강령은 "인구·개발정책이 특정한 인구학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개별 여성과 남성의 욕구, 열망,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재생산적 권리(reproductive right)를 포함해 인권,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UN, 1994). 또한 행동강령은 임신·출산 등과 같은 인간 재

<sup>12) &</sup>quot;저출산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3.9.)

생산(human reproduction)과 관련한 인간의 권리를 '재생산적 권리'로 부르면서, 이것의 보장을 위해 특히 성평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상호 존중하고 공평한 젠더 관계의 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 제공에서 남성과 남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재생산권 실험 과정에서 남성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책임 분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인 남성에게는 가족계획과 가사노동 및 양육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성병 예방과 자발적이고 적절한 피임 방법 장려등을 가르쳐야 하며, 남자 청소년에게는 젠더 관계의 평등, 책임감 있는 성행위, 책임감 있는 가족계획 실천, 그 외 성병 예방 등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1994년 유엔이 발표한 인구정책 행동강령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김영미, 2018, pp. 116-117).

즉, 인구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년 이상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어 온 인구정책 추진의 방향성인 것이지, 201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의 특별히 페미니즘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인구정책이 가족계획사업 당시의 정책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여 그만큼 지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추진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의 강조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에서핵심적인 내용이며, 국가와 모든 정책 관련자들이 시급히 이해하고 체화해야 할 기본 소양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유엔 행동강령이 남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주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젠더 평등과 남성의 양육 책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수준, 즉 성관계와 재생산적 건강에 대한 남성의 책임과 역량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교육이 성인 남성

과 남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인구정책 규범이다. 젠더 관점 반영이나 성평등 강조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수혜자로 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틀을 짤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 3) 포괄적 사회정책 성격 강화

최근에는 그동안의 출산장려 패러다임 속에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온 20~30대 여성들뿐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회피나결혼 지연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면서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는 듯한 정책이 이어지자, 젊은 남성들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근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남녀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헬조선' 속에서 제한 몸 살아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젊은이들의가치관 변화에서 찾지 말고, 불평등 심화와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악화,이로 인해 심해진 청년층의 경쟁과 압박에서 찾으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수정되기 전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 '인구 위기'를 강조하고 출산율 제고 목표치를 제시하면서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자체를 위기로 보기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할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노후소득 불안정,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부족, 농촌 공동화 등의 다양한 위험을 인구 위기의 내용으로 지적하였고(대한민국 정

부, 2015, pp. 10-17),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적 위험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이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문제시하면서 기혼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치중했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내용 역시 제도와 비용 지원 위주에서 실천과 사회 인식 중심으로 바꾸어 좀 더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환 역시 한계가 있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주권자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기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쟁 심화와 경제적 압박은 가족 구성의 욕구를 가로막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내 아이를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때에, 아이를 낳지 않은 남녀들은 부모 되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펼치지 못한다. 무한경쟁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여지는 커녕 추락의 공포만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자식들을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교육경쟁에 몰두하는 많은 부모들의 행태에 공감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자녀 갖기를 망설이게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젊은 남녀 사이에 점차 퍼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를 내세워 개인을 도구화하는 관점을 벗어나 결혼이나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생계

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과정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 시각을 갖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대책의 젠더 이슈

제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의 젠더 이슈를 논의한다.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과 그 의의

주권자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중시하면서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에 대한 고려이다. 주력 출산 연령 집단 인 청년 여성들의 생애전망 변화는 물론, 청년 남성들의 생애전망 역시 저출산 추세의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개입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젊은 여성의 생애전망은 저출산 추세의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삶의 맥락'이다. 모든 여성의 출산 결정은 앞으로 어머니로서 살아갈 결심과 더불어 이루어지기에, 여성의 생애전망상의 결정은 출산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편 결혼 규범이 약화되고 출산 연령 규범 역시 다양화된 최근 한국 사회의 조건은 모든 여성의 출산 결정을 여성 자신의 생애전망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주력 출산 연령 집단이 20대후반에서 30대 여성이라고 할 때, 개별 여성이 성인기에 진입하여 20대후반까지 발전시킨 생애전망은 첫 출산, 나아가 추가적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창 출산·육아 연령대를 지나고 있는 30대 여성의 생애전망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출산율뿐아니라 경력유지/단절의 갈림길을 지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행위적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년층 생애전망을 고려할 때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생애전망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비 록 여성이 출산 당사자이긴 하지만, 여성의 출산 결정은 오롯이 여성 혼 자만의 고립된 결정이 아니다.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의사결정은 생애전 망을 공유하는 친밀한 남성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기대 가능한 양육 조건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성애적 결합 없이 임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는 함 께 아이를 양육할 아이 아빠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 경우 아이 아 빠의 생애전망은 여성의 생애전망과 공유되면서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둘째, 같은 연령대 남성들의 생애전망은 여성들의 생애전망 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개별 여성들은 젠더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의 맥락을 만들어 가며, 그 속에서 이성애적 결합과 파 트너십에 대해 추구하고 전체적인 자신의 생애전망을 발전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생애전망은 동시대 동연령대 남성들과의 관계 맺음과 경쟁의 구조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파트너 여성 의 출산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은 남성의 생애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 이다. 남성들 역시 아버지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전망 속에서

자녀 출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 아이의 탄생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뿐 아니라 그녀와 부모로서의 생애를 공유할 남성의 공동의사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될 남성의생애전망 혹은 가족생활에 대한 전망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넷째 그런 이유로, 청년 여성들과 청년 남성들의 생애전망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날 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출산력 수준과 안정적인 부모 되기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청년층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청년층에 대한 접근에 젠더 관점은 부재한 형편이다. 청년층에 대한 연구도 담론은 많지만, 청년층에 대한 젠더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 여성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그저 '여성'의 목소리로 다뤄지고, '청년층' 그 자체는 남성의 표준 생애모델을 기반으로 재현되고 관성적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배은경, 2019). 이 같은 담론구도는 주력 출산 연령대인 청년 여성들의 상황과 특성, 욕구에 대한 집중을 어렵게 하여, 청년에 대한 주목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을 낮추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은 청년층을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르고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청년 세대'로 묶는 세대론적 관점을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N포세대' 담론이 있는데, 불안정한 일자리와 기약 없는취업 준비, 학자금 대출 등에 시달리면서 무한 경쟁에 뛰어든 청년들이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담론은 교육-취업-결혼과 부모 되기(=가족 구성)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근대적인 표준적남성 생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쟁에 시달려 생존 그 자체가 목표가 된세대라거나(김홍중, 2014), '헬조선', '수저론', '남성 역차별' 등의 담론을 생산하며 '공정'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세대라는 시

각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청년층의 세대적 경험 역시 계층이나 지역성, 젠더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빈곤계층 청년들은 더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 긴 '취준생' 기간을 보내며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선택을 하기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 유예 중에도 생존주의적 절박 감을 그만큼 덜 느낄 수 있다. 지방대생의 경우 경쟁 그 자체에 몰두하는 생존주의적 주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과의 좋은 관계를 느슨 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조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최종렬, 2017). 그러나 청년층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요인은 무엇보다 (다른 요인들과 교차적으로 작동하는) 젠더일 것이다.

최근 청년들의 삶이 전형적인 근대적 표준 생애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은 생애전망의 재구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젠더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근대적인 표준 생애모델의 젠더화된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표준 생애 양식은 즉 노동 중심의 남성 생애와 가족 중심의 여성 생애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젠더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과 불평등의 심화, 개인화 등의 추세 속에서 젊은 여성들은 점점 더 가족 중심 생애를 꿈꾸지 않고 있다. 세대별 생애 과정의 변화를 연구한 이순미(2014)는 197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들에서 '생애과정의 탈근대화' 13)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는데, 즉 남성들은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노동중심적으로 조직되고 순서 규범을 따르는 근 대적 표준적 생애과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젊은 세대 여성들의 생애과정은 눈에 띄게 노동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특히 생애전망에 있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sup>13)</sup> 여기서 생애과정의 탈근대화란 근대적 생애과정의 당연성과 보편성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남성의 노동 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 중심 생애과정의 성별 이원적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순미, 2014, p. 74)

통한 독립 추구를 두드러지게 나타냈다(이순미, 2014).

이런 상황은 청년 남성 생애전망과 청년 여성 생애전망의 미스매치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최근 20여 년간의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개척하도록 요구받아 왔다면, 젊은 남성들은 새로운 남성성이나 남성 생애모델을 제공받을 기회가 없는 채로 계층적 경쟁구도에 그대로 내몰려 온 결과이다(배은경, 2015). 새로운 남성성의 부상과 젠더 관계의 재편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 2.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젠더 분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은 수정 이전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었다. 수정 전의 '제3차 기본계획'도 작성당시에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웠다. 이전 시기 기본계획이 ① 제도 도입과 비용 지원으로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②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제도 등 노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시했다면, 수정 전의 '제3차 기본계획'은 ① 일자리·주거 등과 관련한 정책으로 만혼·비혼 대책을 강화하고 ② 국민연금·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를 강화하며, 실버산업이나 생산인구 확충 등 구조적 대응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 패러다임전환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기보다는 정책 영역과 정책 수단의 선정에서 중점이 이동하는 정도의 변화라고볼 수 있다. 저출산 대책에서 인구 통제적인 출산장려 패러다임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고령사회대책 영역 역시 기본적인 노인복지제도의 강화에더하여 인구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력 감소 우려에 대비하는 인력 확보 정책과 신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버산업 육성 등 국가중심적인 경제

성장·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전 시기 기본계획들과 달라진 점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었다. 보육제도를 개선해서 육아의 탈가족화를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전의 기본계획의 내용이었다면, 수정 전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 대책은 결혼 회피와 결혼 지연을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일자리나 주거를 제공하여 결혼을 유도하는 청년정책과 문화개선정책의 내용이었고, 고령사회대책은 노인 생활보장 수준을 향상하고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정책과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고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는 산업·인력정책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2018년 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수정 전 기본계획의 얼개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은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행 방식에 대한 점검보다는 시행계획의 문제 정의와 해결 방식이 가진 젠더적 함의(gender implication)를 따져 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대책,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분야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분류하고, 각각의 정책 아래하위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다시 이 하위 정책목표 아래 세부 정책목표별로 각 정책사업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구조를 따라 시행계획의 젠더 함의를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저출산 대책의 목표

'2018년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책의 하위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한다.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2.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그것이다.

##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첫 번째 하위 목표인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는 청년들의 비혼화와 만혼 현상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서 결혼을 하도록 지원하는 쪽 으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전환한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이 가장 잘 드 러난 목표이다. 보육제도 개선과 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저출산 대책 이 주로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들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것이었다 면, 청년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결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기혼 가구 지원에서 비혼 청년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근거가 된 것은 한국 여성들은 결혼을 하 면 평균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며. 그러므로 저출산 추세는 기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 출산을 못 하고 있는 여성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가속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인구 학적 분석이었다. 기혼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 함으로써 추가 출산을 기대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결혼하 게 하여 첫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더 효 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저출산정책의 표적집단을 비혼 청년층으로 바 꾸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 이 정책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 책이 주로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수혜자도 주로 여성이었다는 전 제하에. 남성도 저출산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는 점 에서 환영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모든 청년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단지 소득이나 주거의 조건이 확보되지 않아 못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

상되었다는 것이다. 보편혼 규범이나 혼인 연령 규범이 변화하고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 수립에 고려되지 않았다. 청년 남성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주면 여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출산을할 것이니 저출산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가 정책 추진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여성의 비혼이나 혼인 지연이 물적 조건만을 이유로하지 않으며, 가족생활을 위해 여성의 개인생활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결혼이 많은 상태에서 독립성과 개인성의 유지를 위해 생애전략으로 택해진 결정일 수도 있다는 점은 완전히 도외시되었다.

또 하나 고려되지 않은 점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으며,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임신의 수 역시 상당하다는 것이다. 출산과결혼이 단단히 묶여 있는 한국 사회의 출산 규범 때문에 그러한 임신들이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비가시화될 뿐이다. 한국 사회에는 '미혼모'에 대한 강력한 낙인이 존재하며,14)이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한 많은 여성이 불법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해외입양을 보내는 등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조차 주변인에게는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 이러한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고 탄생한 아이가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될수 있도록 하여 출생아 수 증가를 꾀할 수는 없을까 생각한다.

사실 20여 년간 만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성 규범이 많이 달라졌다. 성인이 되고도 10년 정도를 미혼 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성-사랑-결혼이 하나로 묶여 있고 그 안에서만 출산이 용납되던 근대적 결혼 규범이 와해된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결합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성과 결혼, 사랑과 결혼의

<sup>14)</sup> 이러한 낙인의 이면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증기준이 작동한다. 즉 결혼 전의 임신은 혼전 성관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곧 해당 여성의 흠결로 여겨진다.

결합은 매우 약해져 있다. 사랑-결혼-성-임신·출산이 시간적으로 병렬되면서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사랑과 성이 하나로 묶이고 결혼과 출산이 하나로 묶이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의 리스크가 증대하고 비혼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의 결합을 풀고, 미혼 출산에 대한 낙인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의 세부 사업은 크게 청년일자리 사업과 젊 은 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나눠진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크게 볼 때 해외 취업 확대사업. 중소기업 취업 유도사업. 창업 지원사업. 신규 취업자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젠더 관점은 거의 없다.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 여성 노동시장의 개선 등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 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층 노동시장의 개선이나 생활안정보다는 기업 과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나열되어 있는 사업 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청년들의 교육자산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 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교육이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역시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 업의 인력난이 공존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 며, 해외 취업 확대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으나 이것이 국내의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 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이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자녀돌봄지원 혹은 일·가 족 양립지원 사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저출산 대책'의 이름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책목표를 위한 사업 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추세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청년층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을 안정화하여 친밀성과 돌봄을 위한 협력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청년 노동시장의 젠더화된 실태와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학생부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거나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 역시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겠다는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그 자체로서 청년층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신혼부부'만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정책은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남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그 이외의 청년들에게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청년 주거정책 역시 청년층의 삶을 안정화함으로써 관계 맺음에 대한 여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두 번째 하위 목표인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경우이질적인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지원체계 구축 등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책이 가

장 많고, 여기에 아동 대상 예방접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여성 건강 증진 등 여타의 의료보건정책들과 저소득층 영아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 급식 위생 영양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안 전관리 등 비의료적 보건정책들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비 이 가장 높다. 그 외에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복지급여사업, 다자녀교원 전보 우대제나 세제개선 등 인센티브정책, 한부모가족·비혼가족·다문화 가족·입양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가족생활교육 내실화와 같은 가족정책 이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아동 대상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환경 개 선, 아동전용도서관 확충 등이 아동정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모성보호 및 가족생활 지원이 출산대책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산부인과적 의료사업의 비중, 저출산 대책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로서 실시되어야 할 기초 보건사업과 위생·영양 관련 정책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이 정상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서 벗어난 가족 형태를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된 것, 보건의료적 정책 영역과 사회복지적 정책 영역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것이 모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전망을 고려한 정책 구상이 없으며, 여성 청소년의 재생산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나 교육 등의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또한, 남성을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 실제로 남성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면 난임부부 남편 정도가 이 정책 영역의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이는 카이로 행동강령에서 강조한바 남성을 표적집단으로 하는인구정책 관련 내용을 완전히 제외한 것이다. 성인 남성이 양육과 돌봄책임을 나눠 지고, 피임과 재생산적 건강 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남

성 청소년에게 성평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책임 있는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서 '사회적 책임' 영역의 내용을 채우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출산하는 몸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질병이나 사고·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책사업을 실시하며, '가족'에 대한 협소한 상상력을 고수하는 가족정책만 가지고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 없다. 현실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젠더 관계의 변화와 인구정책의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정책영역이라 하겠다.

####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세 번째 하위 목표인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은 보육, 유아교육,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아이돌 봄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정책 영역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 내 어머니에게 전담되어 있던 자녀 돌봄을 탈가족화하여 기관이나 지역사회, 아이돌보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아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가 훨씬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며,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선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 역시 높게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시행계획'의 맞춤형 돌봄 확대정책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돌봄의 경우 방과후학교 등일부 프로그램밖에 없어 대단히 제한적이다. 아동·청소년기 자녀 양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주로 교육개혁에 치중되어 있는데, 사교육비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부담 경감 사업 비중이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공교육 역량 강화나 적성과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과 같은 교육개혁 정책 그 자체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됨으로써 한계가 명확하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사회가 나눠 지는 방식의 정책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생애를 두고 지속되는 자녀 돌봄의 필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네 번째 하위 목표인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등 시간 지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기업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가정 양립'이 여성 노동자만의 과제인 것처럼 여겨지던 과거에 비해 남성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지원사업이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기업문화개선 등의 사업과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개선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되고 있지 않다. 아버지의 돌봄 참여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돌봄의 탈젠더화와 아버지 역할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유급돌봄 노동이 여성의 저임금 일자리로 남아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을 행하는 남성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며, 다양한 남성성의 모델을 제시할수 있는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나.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 1) 돌봄의 주체로 여성 전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돌봄의 주체는 여성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추진과제에서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2)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p. 416)이다. 첫 번째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형, 지자체협업형 등 다양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2)이고, 두 번째 사업의 목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16)으로 매우 비슷하다. 이 두 사업의근거가 되는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고, 추진 경위를보면 "여성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직장어립이집 대책 수립 및 지원 확대"(p. 42, p. 416)라고 밝히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추진 경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사업이 여성의 고용 확대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취업 중이라도 여성이 아이 돌봄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근거는 처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었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

자의 수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의 수가 설치 조건이었다는 것은 여성이 육아의 주체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 3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가 확대되었다(p. 42, p. 416). 기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단독으로 남아 있어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사업명에서도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전제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p. 293, p. 299, p. 309)은 사업명에 '엄마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임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를 특정함으로써 가족 내 성역할을 구분하고, 돌봄에 있어 엄마의 역할과 책임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는 또한 전통 가족을 상정한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가족 내에 엄마가 있고, 그 엄마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과거 전통 가족, 또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상정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명으로도 보일 수 있다.

### 2) 남성의 역할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

돌봄에서 여성과 남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추진계획 중 하나는 단연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p. 424)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남성과 여성의 육아 참여가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지

만. 그 사업의 목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p. 424)이다. 과연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의 목표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명시되어야 하는지는 주의 깊게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돌봄에 있어서의 성별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 이고, 그 목표를 실현하려는 과정 또는 결과가 여성이 경력을 이어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사업은 그 추진 경위도 목표와 마찬가지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여 성은 육아휴직 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인센티브 제공 으로 남성의 육아 분담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도모"(p. 424)를 위 한 사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마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남성에 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실현될 수 있는 매우 의존적인 구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하나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음 에도 이 사업의 목표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앞서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고려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평등한 육아 문화 측면에서, 또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는 경우 아동이 두 양육자와의 균형 있는 상 호작용 기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부분 이다.

## 3) 불필요한 여성 특정

임신·출산은 여성이 하는 것임은 불변의 진리이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는 '여성'을 구분 지어 특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에는 사업명이나 그 내용에서 여성을 특정하는 표현이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p. 131)의 내용에서 '여성 장애인'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여성 파트너가 임신 및 출산한 것에 대한 지원과 구분하기 위함일 수 있으나 직접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사업명에는 여성 장애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여성 특정 내용은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제도'(p. 301) 내용에서도 발견된다. 과제 내용에서 "부모 학생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 시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p. 301)하고 있다. 이는 휴학의조건이 양육 시 부모가 휴학할 수 있고, 임신이나 출산에는 여학생만 휴학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분하기 위함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여학생을 특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용 전달이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임신 또는 출산하는 대학(원)생,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시 부모 학생' 등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p. 385) 사업 내용 중에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기간 동안 고용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근로 자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등 사업장의 위법행위 적발 강화"(p. 385) 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는 '여성 근로자'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 뒤에 '임신근로자'라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음에도 여성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그 대상에서 여성을 특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의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p. 412) 사업의 대상은 "대체인력 구인기업 및 구직자(특히, 사회 초년생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p. 412)이다. 이는 임신과 출산 경험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을 설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구직자'로 표현되어도 무방하다.

물론 이렇게 여러 정책들에서 여성을 특정한 이유는 정책 지원을 받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놓는 것이 정책 대상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명이나 내용에서 여성을 특정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에서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4)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영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pp. 385-388, p. 400, pp. 407-408, p. 420, p. 422, pp. 433-434, pp. 436-437, p. 439). 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근무시간 등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모성보호 시간 확대' 등에도 쓰이고 있는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육아에 있어서 책임 및 제도 사용이 더 이상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부성보호'에 대한 시각은 결여된 것이다. 육아휴직 등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성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의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등 부성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적절히 사용해야할 것이다.

지 3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제1절 고령사회 주요 이슈 젠더 관점에서의 논의 제2절 노년기 젠더 이슈 제기 제3절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논의

#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

그동안 저출생 영역에서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도 점차 개선되어 왔지만, 고령사회 정책과 현상을 젠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적었다. 하지만 고령사회현상의 핵심적인 이슈였던 수명, 빈곤, 건강, 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등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동안의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젠더에서 확장하여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노년기를 바라봄으로써기존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고령사회 현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젠더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정책의제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제1절 고령사회 주요 이슈 젠더 관점에서의 논의

## 1. 수명

고령화 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젠더 이슈는 수명의 성별 격차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보다 긴 것은 한국을 비롯한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수명에서의 성별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가 및 연도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성별차이로 인해 불가피한 수명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 및연도별 차이는 생물학적인 요인을 넘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6-1〉 국가 및 성별 2017년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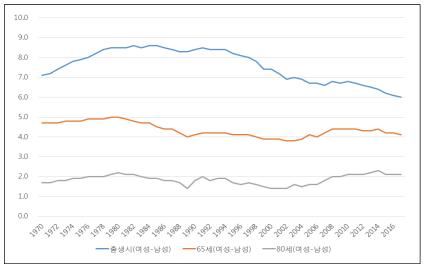
(단위: 년)

			2017년	기대여명		(211. 2)
국가		남자			여자	
		65세	80세	출생시	65세	80세
그리스	78.8	18.6	8.3	83.9	21.4	9.4
네덜란드	80.2	18.7	6.9	83.4	21.2	9.6
노르웨이	81	19.3	5.9	84.3	21.6	10
덴마크	79.2	18.2	7.4	83.1	20.8	9.6
독일	78.7	18.1	9.3	83.4	21.2	9.6
러시아	67.5	13.7	7	77.6	18	7.9
룩셈부르크	79.9	18.6	7	84.4	21.7	10.6
멕시코	72.9	16.8	8.7	77.9	18.7	9.6
미국	76.1	18.1	-	81.1	20.6	-
벨기에	79.2	18.5	8.5	83.9	21.9	10.3
스위스	81.6	20	8.4	85.6	22.8	10.7
스페인	80.6	19.3	7.9	86.1	23.4	11
슬로바키아	73.8	15.3	6.5	80.7	19.1	8.3
슬로베니아	78.2	17.6	7.1	84	21.7	10
아이슬란드	81.1	19.8	6.9	84.3	21.4	9.8
아일랜드	80.4	19	9	84	21.4	9.9
에스토니아	73.8	15.6	8.1	82.6	20.8	9.6
영국	79.5	18.8	7.4	83.1	21.1	9.8
오스트레일리아	80.5	19.7	8.9	84.6	22.3	10.4
오스트리아	79.4	18.5	6.8	84	21.5	9.7
이스라엘	80.6	19.3	8.8	84.6	21.9	10.1
이탈리아	80.8	19.2	8.6	85.2	22.4	10.4
일본	81.1	19.6	9	87.3	24.4	11.8
중국	74.9	-	-	78	-	-
체코	76.1	16.2	7.8	82	19.8	8.8
캐나다	79.9	19.3	9	84	22.1	10.7
터키	75.3	16	7.1	80.8	19.2	8.6
포르투갈	78.4	18.3	7.8	84.6	22.1	10.1
폴란드	73.9	15.9	8.5	81.8	20.2	9.5
프랑스	79.6	19.6	8.4	85.6	23.6	11.5
핀란드	78.9	18.4	7.7	84.5	22.1	10.3
한국	79.7	18.6	8.1	85.7	22.7	10.2
헝가리	72.5	14.5	8.8	79.3	18.4	8.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기대여명'. 2019. 10. 7. 인출.

[그림 6-1] 1970~2017년 기대여명 성별 격차 추세

(단위: 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기대여명'. 2019. 10. 7. 인출.

우선 〈표 6-1〉을 통해 수명에 대한 기대여명부터 살펴보겠다. 2017년 출생 시, 65세, 80세 기대여명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 여자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3위(85.7년), 65세 기대여명은 5위(22.7년), 80세 기대여명은 11위(10.2년)로 나이가 어릴수록 다른 국가들보다 기대여명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남자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13위(79.7년), 65세 기대여명은 15위(18.6년), 80세 기대여명은 15위(8.1년)로 10위권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 6-1〕을 보면, 그나마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기대여명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출생 시 1980년 8.5년 → 2017년 6.0년, 65세 1980년 5.0년 → 2017년 4.1년, 80세 1980년 2.2년 → 2017년 2.1년). 한편,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의존수명(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 여성 10.4년, 남성 8.3년)이 2.1년 더 길다(송다영, 2019). 기대여명, 건강수명을 젠더로 구분했을

때 복잡한 수명 불평등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대여명과 건강 수명에서의 성별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령화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부부의 연령 차이

〈표 6-2〉 1990~2018년 초혼 부부의 연령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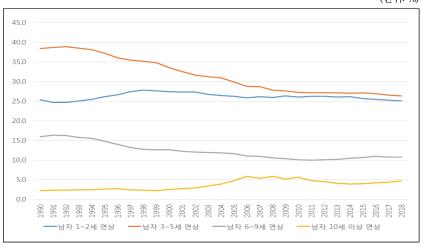
(단위: 명)

초혼 부부 연령				연도			
차이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계	356,649	341,634	271,843	232,048	254,630	238,275	199,997
남자 연상(소계)	293,158	276,608	207,934	168,890	175,920	161,131	134,028
1 ~ 2세	90,459	89,383	74,829	60,955	66,420	61,285	50,151
3 ~ 5세	137,249	127,540	91,474	69,435	69,438	64,710	52,722
6 ~ 9세	57,239	50,464	34,478	27,041	25,672	25,439	21,592
10세 이상	8,211	9,221	7,153	11,459	14,390	9,697	9,563
동갑	32,269	35,274	34,794	34,970	40,809	38,222	31,527
여자 연상(소계)	31,222	29,696	29,109	28,188	37,901	38,922	34,442
1 ~ 2세	24,200	23,550	22,451	21,209	27,828	27,230	23,548
3 ~ 5세	5,733	4,971	5,361	5,571	8,048	9,178	8,519
6 ~ 9세	1,091	987	1,074	1,161	1,746	2,143	1,998
10세 이상	198	188	223	247	279	371	377
미상	0	56	6	0	0	0	0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1990~2018. 2019. 10. 9. 인출.

수명의 성별 격차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수명의 성별 격차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연상인 부부가 다수라는 점 때문에 이 차이가 노년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표 6-2〉에서 혼인통계를 보면, 2018년 초혼 부부 약 20만 쌍 중에서 남자가 연상인부부가 67.0%로 높고, 여자가 연상인부부는 17.2%로 적으며, 동갑인부부는 15.8%이다. 통계가 집계된 1990년 남자가 연상인 초혼 부부 비율 82.2%, 여자가 연상인 부부 8.8%, 동갑인 부부 9.0% 이후 남자가 연상인 초혼 부부 비율은 감소하고, 여자가 연상인 부부 비율은 증가하며, 동갑인 부부는 15% 수준에서 정체 상태이다. 이는 부부 간 성별 연령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림 6-2] 1990~2018년 전체 초혼 부부에서 남자가 연상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1990~2018. 2019. 10. 9. 인출.

〈표 6-3〉 1990~2018년 초혼 부부 연령 차이 비율

(단위: %)

	남자 연상							(	짜 얜	<u>}</u>	
연도	소계	1~2 세	3~5 세	6~9 세	10세 이상	동갑	소계	1~2 세	3~5 세	6~9 세	10세 0상
1990	82.2	25.4	38.5	16.0	2.3	9.0	8.8	6.8	1.6	0.3	0.1
1991	82.4	24.7	38.8	16.4	2.4	9.0	8.6	6.7	1.5	0.3	0.1
1992	82.4	24.7	39.0	16.3	2.4	9.1	8.5	6.7	1.5	0.3	0.1
1993	82.1	25.1	38.6	15.8	2.5	9.4	8.5	6.7	1.4	0.3	0.1
1994	81.8	25.5	38.2	15.6	2.5	9.8	8.4	6.7	1.4	0.3	0.1
1995	81.0	26.2	37.3	14.8	2.7	10.3	8.7	6.9	1.5	0.3	0.1
1996	79.6	26.7	36.1	14.1	2.8	11.0	9.3	7.3	1.6	0.3	0.1
1997	78.8	27.5	35.5	13.3	2.5	11.7	9.4	7.6	1.5	0.3	0.1
1998	78.2	27.9	35.2	12.8	2.4	12.1	9.6	7.6	1.6	0.3	0.1
1999	77.5	27.7	34.8	12.7	2.3	12.4	10.1	7.9	1.7	0.4	0.1
2000	76.5	27.5	33.6	12.7	2.6	12.8	10.7	8.3	2.0	0.4	0.1
2001	75.0	27.4	32.6	12.3	2.8	13.7	11.3	8.7	2.1	0.4	0.1
2002	74.1	27.4	31.7	12.1	3.0	14.3	11.6	8.9	2.2	0.5	0.1
2003	73.6	26.8	31.3	12.0	3.5	14.7	11.7	9.0	2.2	0.5	0.1
2004	73.4	26.5	31.0	11.9	4.0	14.7	11.9	9.0	2.3	0.5	0.1
2005	72.8	26.3	29.9	11.7	4.9	15.1	12.1	9.1	2.4	0.5	0.1
2006	71.8	25.9	28.9	11.1	5.9	15.4	12.8	9.6	2.5	0.5	0.1
2007	71.4	26.2	28.8	11.0	5.4	15.6	13.0	9.7	2.6	0.6	0.1
2008	70.4	26.0	27.9	10.6	5.9	15.9	13.7	10.2	2.8	0.6	0.1
2009	69.6	26.4	27.7	10.4	5.2	16.1	14.3	10.6	3.0	0.6	0.1
2010	69.1	26.1	27.3	10.1	5.7	16.0	14.9	10.9	3.2	0.7	0.1
2011	68.4	26.3	27.2	10.0	4.9	16.4	15.3	11.1	3.3	0.7	0.1
2012	68.2	26.3	27.2	10.1	4.6	16.2	15.6	11.3	3.4	0.7	0.1
2013	67.6	26.1	27.2	10.2	4.2	16.2	16.2	11.6	3.7	0.8	0.1
2014	67.7	26.2	27.1	10.5	4.0	16.1	16.2	11.5	3.7	0.8	0.1
2015	67.6	25.7	27.2	10.7	4.1	16.0	16.3	11.4	3.9	0.9	0.2
2016	67.7	25.5	27.0	11.0	4.3	15.9	16.3	11.4	3.9	0.9	0.2
2017	67.2	25.3	26.6	10.8	4.5	15.9	16.9	11.7	4.0	1.0	0.2
2018	67.0	25.1	26.4	10.8	4.8	15.8	17.2	11.8	4.3	1.0	0.2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1990~2018. 2019. 10. 9. 인출.

그러나 1990~2018년 남자가 연상인 초혼 부부의 구성비를 연령 차이 로 구분해서 보면,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표 6-3〉 참조). 남자가 여자보 다 3~5세 연상인 부부 비율만 1990년 38.5%에서 2018년 26.4%로 감 소 추세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1~2세 연상인 부부 비율은 1990년 25.4%에서 2018년 25.1%로 유지되고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6~9세 연 상으로 연령 차이가 큰 부부도 1990년 16.0%에서 2005년까지는 11.7% 로 감소 추세였으나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10~11% 수준으로 변동 이 없다. 남자가 여자보다 10세 이상 연상인 초혼 부부는 오히려 1990년 2.3%에서 2018년 4.8%로 상승했다. 1990년 초혼한 부부가 30년이 흐 른 2020년 점차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부 간 연 령 차이가 생물학적인 수명과 결합되어 노년기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노 인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1990~2018년 남자가 연상인 초혼 부부 비율은 3~5세인 경우만 약 15%포인트 감소했 을 뿐이다. 그러니 미래에 젊은 코호트의 부부 간 연령 차이 패턴에 변화 가 생기더라도 향후 30년 동안 이미 혼인을 한 부부들은 점진적으로 노년 기에 접어들 것이므로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 3. 빈곤

그래서 〈표 6-4〉와 같이 노년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성 노인의 65.8%가 소득 영역에서 기준빈곤선이하에 놓여 있는데 이는 남성 노인보다 9.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생애과정 전반에서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이 남성만큼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6-5〉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과정 전반에서 최장기 직종에 종사한 기간

을 성별로 구분하면,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반대로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낮다. 즉, 부부 간의 연령 차이와 더불어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시장에 속한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누적 작용하여 여성들이 노년기에 빈곤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할 수 있다.

〈표 6-4〉 노인의 성별 차원 빈곤율

(단위: %)

구분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사회 참여	사회관계망
112	エ¬	서만	T/I	10	시된 급역	시작년세6
남자(A)	56.5	9.1	19.1	29.8	6.0	9.1
여자(B)	65.8	15.7	23.3	35.2	7.3	10.2
1 1(D)	0).0	1).7	23.3	37.2	7.5	10.2
차이(A-B)	-9.3	-6.6	-4.2	-5.4	-1.3	-1.1

자료: 최현수 외(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 212.

〈표 6-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 기간

(단위: %)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전체	4.7	7.0	20.3	23.1	22.8	22.1	100.0
남자	0.2	2.1	14.3	27.1	31.6	24.8	100.0
여자	8.6	11.4	25.7	19.6	15.0	19.6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91.

#### 〈표 6-6〉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및 소득 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단위: %)

					공적이전소득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타 공적 급여	계	사적 연금 소득 <sup>2)</sup>	기타 소득
전체 <sup>1)</sup>	40.7	25.4	34.7	94.7	49.4	70.4	7.0	24.6	93.9	2.0	6.6
남자	41.6	29.7	39.0	93.9	57.8	63.5	5.2	26.7	93.5	2.1	6.1
여자	40.0	22.3	31.5	95.3	43.2	75.4	8.4	23.0	94.3	1.9	7.0

주: 1) 소득은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가 기준으로 가구 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18.

#### 〈표 6-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소득 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단위: %)

				사적	-	공적이전소목	Ę	- 사적 연금 소득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이전 공 소득 소득 연		기초 연금			기타 소득
전체	17.1	14.8	23.5	93.4	34.6	68.6	16.9	1.3	4.2
남자	19.9	24.1	35.2	92.0	54.1	62.0	24.3	1.5	4.2
여자	15.0	7.9	14.8	94.4	20.1	73.5	11.4	1.1	4.1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8.

#### 〈표 6-8〉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
전체	6.4	1.6	92.0	100.0
남자	4.8	2.2	93.0	100.0
여자	7.5	1.1	91.4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5.

<sup>2)</sup>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표 6-6〉과 같이 노인 가구의 소득 원천을 성별로 구분해도 여자 가구는 재산소득과 공적연금을 보유한 비율이 남자 가구보다 7.5%포인트, 13.6%포인트씩 낮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아야 수급자격이 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비율은 여자 가구가 남자 가구보다 11.9%포인트, 3.2%포인트씩 높다. 이를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봤을때, 성별 차이는 더욱 커진다(〈표 6-7〉참조). 남자는 여자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공적급여를 보유한 비율이 4.9%포인트, 16.2%포인트, 20.4%포인트, 12.9포인트씩 높았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을 보유한 비율만 2.4%포인트, 11.5%포인트씩 높았다. 또한, 그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여자(7.5%)가 남자 (4.8%)보다 2.7%포인트 높았다(〈표 6-8〉참조).

## 4. 경제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일을 하는 비율은 여전히 남자가 여자보다 12.8%포인트 높다(〈표 6-9〉참조). 월평균 근로소득도 없음, 1~29만원 소득구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22.7%포인트, 19.5%포인트 높지만, 반대로 30만~49만원, 50만~99만원, 100만~149만원, 150만원이상 소득구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0.7%포인트, 1.7%포인트, 12.0%포인트, 28.0%포인트씩 높았다(〈표 6-10〉참조). 여성 노인의 빈곤이 심각하지만, 생계비 마련을 위해일을 한다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8.2%포인트 높고, 이와 반대로용도 마련을위해일을 한다는 비율은여자가 남자보다 8.2%포인트 높다(〈표 6-11〉참조). 일을하는 대다수의노인들은 직종상 농림어업의 숙련종사자(남자 34.7%, 여자 30.9%)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남자 30.5%, 여자 50.8%)인데,특히 단순노무종사자비율에서여자가 남자보다 20.3%포인트나 높았다(〈표 6-12〉참조).

〈표 6-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구분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전체	30.9	59.3	9.8	100.0
남자	38.3	61.6	0.1	100.0
여자	25.5	57.5	17.0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1.

#### 〈표 6-10〉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구분	없음	1~29만 원	30만~49만 원	50만~99만 원	100만~149만 원	150만 원 이상	계
전체	11.9	32.5	7.3	14.9	15.6	17.8	100.0
남자	1.2	23.3	7.6	15.7	21.3	31.1	100.0
여자	23.9	42.8	6.9	14.0	9.3	3.1	100.0

주: 본인응답자 10,073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1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75.

#### 〈표 6-11〉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
전체	73.0	11.5	6.0	0.7	5.8	1.3	1.6	0.2	100.0
남자	76.9	7.6	6.2	0.3	5.5	1.7	1.7	0.2	100.0
여자	68.7	15.8	5.8	1.0	6.2	0.7	1.4	0.3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1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78.

내용상으로 운송·건설 관련 일을 하는 비율은 남자(24.0%)가 여자 (5.5%)보다 높았고, 경비·수위·청소(여자 22.6%, 남자 17.9%), 가사·조리·음식(여자 22.2%, 남자 2.9%) 관련 일을 하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

다 각각 4.8%포인트, 19.3%포인트씩 높았다(〈표 7-13〉 참조).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남자 8.6%, 여자 2.4%), 자영업자(남자 53.7%, 여자 20.4%)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2%포인트, 32.3%포인트씩 높았다. 반면, 임시근로자(여자 44.0%, 남자 23.7%), 무급가족종사자(여자 23.7%, 남자 1.0%)는 여자가 남자보다 20.3%포인트, 22.7%포인트씩 높았다(〈표 6-14〉 참조). 이처럼 예전부터 성별로 이분화된 직종,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가 노년기에도 일정 정도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6-12〉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종사 직종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계
전체	1.8	2.2	0.9	5.2	5.6	32.9	3.8	7.5	40.1	100.0
남자	2.9	3.1	1.1	2.8	5.1	34.7	6.5	13.3	30.5	100.0
여자	0.6	1.2	0.7	7.9	6.1	30.9	0.8	0.9	50.8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1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3.

〈표 6-13〉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일의 내용

(단위: %)

구분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운송,건설 관련 <sup>2)</sup>	공공,환경 관련 <sup>3)</sup>	기타 <sup>4)</sup>	계
전체 <sup>1)</sup>	34.7	20.1	12.0	15.3	6.3	11.6	100.0
남자	35.3	17.9	2.9	24.0	6.1	13.8	100.0
여자	34.0	22.6	22.2	5.5	6.5	9.2	100.0

주: 1) 본인 응답자 10,073명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117명을 대상으로 함.

<sup>2)</sup> 운전·운송(5.5), 택배·배달(0.6), 건설·기계(4.9), 생산작업(4.2), 현장관리(0.1)가 해당됨.

<sup>3)</sup> 환경조경(1.4), 공공질서유지(1.9), 폐휴지 줍기(2.9)가 포함됨.

<sup>4)</sup> 전문직(1.9), 행정사무직(0.8), 문화예술(0.1), 기타(8.8)가 해당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5.

〈표 6-14〉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기타	계
전체	5.6	33.3	9.2	1.3	38.0	11.7	0.9	-	100.0
남자	8.6	23.7	9.9	2.1	53.7	1.0	1.0	-	100.0
여자	2.4	44.0	8.4	0.3	20.4	23.7	0.8	-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 중 일하고 있는 3,117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7.

정부지원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자(56.1%)가 남자(27.2%)보다 29.9%포인트 높았다(〈표 6-15〉 참조). 〈표 6-16〉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에서 시장형(여자 74.4%, 남자 25.6%)과 공익활동(여자 71.9%, 남자 28.1%)에서 여자 참여자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시니어인턴십(남자 66.6%, 여자 34.0%), 재능나눔(남자 57.1%, 여자 42.9%), 인력파견형(남자 52.1%, 여자 47.9%)에는 남자 참여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향후 노일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에서 여자(17.4%)가 남자(14.7%)보다 2.7%포인트 근소하게 높았다(〈표 6-17〉 참조).

〈표 6-15〉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계
전체	42.8	57.2	100.0
남자	27.2	72.8	100.0
여자	56.1	43.9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 중 임금근로자 1,498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8.

〈표 6-16〉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별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つのおに	449,359	126,419	322,940
공익활동	(100.0)	(28.1)	(71.9)
재능나눔	52,153	29,762	22,391
세당나눔	(100.0)	(57.1)	(42.9)
시장형	54,585	13,966	40,619
7178 8	(100.0)	(25.6)	(74.4)
-제조판매형	19,397	5,757	13,640
-세끄번배성	(100.0)	(29.7)	(70.3)
-공동작업형	15,445	3,964	11,481
<u>-004</u> # 8	(100.0)	(25.7)	(74.3)
-서비스제공형	19,743	4,245	15,498
-/101-/11-71	(100.0)	(21.5)	(78.5)
인력파격형	20,067	10,445	9,622
진덕백선병	(100.0)	(52.1)	(47.9)
시니어인턴십	5,686	3,754	1,932
기의의한민점	(100.0)	(66.0)	(34.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pp. 232-240.

〈표 6-17〉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단위: %)

			(11.70)
구분	예	아니요	계
전체	16.2	83.8	100.0
남자	14.7	85.3	100.0
여자	17.4	82.6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5.

〈표 6-18〉을 보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에서 남자는 57.2%가 연금수급자이지만, 여자는 29.9%만 연금수급자였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에서의 성별 구성은 남자가 58.9%로 여자 41.1%보다 많다. 이를 연금 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성별 격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자가 67.1%로 여자 32.9%보다 많다. 장애연금 수급자도 남자가 78.4%로, 여자 21.6%보다 많다. 반대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여자가 91.7%로 남자 8.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표 6-18〉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성별 연금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65세 이상 인구(명)	연금수급자(B) (명)	노령연금 수급자(명)	장애연금 수급자(명)	유족연금 수급자(명)	비율 (B)/(A) (%)
계(A)	7,650,408	3,180,045 (100.0%)	2,716,440 (100.0)	17,004 (100.0)	446,601 (100.0%)	41.6
남자	3,272,648	1,872,665 (58.9%)	1,822,412 (67.1%)	13,326 (78.4%)	36,927 (8.3%)	57.2
여자	4,377,760	1,307,380 (41.1%)	894,028 (32.9%)	3,678 (21.6%)	409,674 (91.7%)	29.9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통계-2018년 65세 이상 인구대비 성별 수급자 현황(2019. 10, 9, 인출).

### 5. 상속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상속 행태가 출생 순위와 젠더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장남 중심의 상속은 젠더에 출생 순위가 중첩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고 가부장제, 젠더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표 6-1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 특성별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식

(단위: %, 명)

구분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 게 더 많이	장남 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사회환원 /가족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 (배우자) 을 위해	기타	계
전체	59.5	9.0	2.0	3.5	6.1	2.6	17.3	0.1	100.0
남자	60.0	7.7	1.7	3.0	5.0	3.5	19.1	0.1	100.0
여자	59.1	9.9	2.3	3.9	7.0	1.9	15.9	0.1	100.0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8.

〈표 6-20〉 사망자의 상속 비율, 상속 금액, 상속받은 경우 형제자매 비율

(단위: 만 원, %)

상속 금액	자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비율 평균(%)	상속 배분율 평균(%)
평균(0원 포함): 1271만 원		
평균(1만 원 이상 포함): 2억 700만 원	28.8	36.7
중위값(1만 원 이상 포함: 1억 4000만 원		

주: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2~6차 중에 사망한 1,587명의 조사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한 결과임

〈표 6-19〉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59.5%는 바람직한 재산 처리 방식이 '자녀 균등 배분'이라고 응답하였고, '자신(배우자)을 위해서'가 17.3%로 그다음이었다. '장남에 게 더 많이'는 9.0%, '장남에게만'은 2.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더는 가부장적인 상속이 문제가 안 된다고 받아들여도 될 정 도로 재산상속에 대한 인식은 성평등해 보인다. 제4장의 〈표 6-12〉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다른 이슈에 비해 낮은 수준인 62%만 상속에 대한 정책 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재산 상속 방식이 해체되고 상속 대상이 다양하고 평등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상속 결과가 아니라 바 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상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의 실제 상속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본 고령화연구패 널의 사망자 자료를 직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망 시 남긴 유산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8.8%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유산 총액이 0원이었던 경우 까지 모두 포함하면 상속받은 금액 평균값은 1271만 원에 불과하다. 하 지만 상속받은 유산총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면 상속받은 금 액 평균값은 약 2억 700만 원(중위값 1억 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즉, 사망한 부모에게 상속받는 유산이 없는 자녀가 다수이고. 상속을 받는 자 녀는 소수지만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상황이다.

〈표 6-21〉 사망자와 자녀 특성에 따른 상속 배분율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구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자녀 출생 순위 및 성별(기준: 장녀)				
장남	10.17***	2.15	10.52***	2.10
차남 이하	-3.57	1.83	-3.08	1.79
차녀 이하	-8.68***	1.83	-8.74***	1.80
사망자 성별(기준: 여성)	-	-	-2.54	1.84
사망자의 배우자 있음(기준: 없음)	-	-	-12.24***	1.88
상수	13.18***	1.60	24.99***	1.97
Wald Chi <sup>2</sup>	127.42(3	3)***	232.99(5	5)***
사망자 자녀 관측사례 수(사망자 수)		1,721	(462)	

주: \*\*\*p < .001.

출생 순위와 젠더의 교차성이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에서 얼마나 불평 등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를 한국의 중고령자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고 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다층토빗모형 분석 결과, 장녀에 비해 장남의 상속 배분율이 약 10%포인트 높았다. 즉, 출생 순위가 첫째 여도 여성이라는 젠더가 남성보다 상속 배분을 그만큼 덜 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둘째 이하 딸들은 상속 배분율이 장녀와 비교했을 때도 9%포인트 낮았고, 이는 장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9%포인트나 낮았다. 젠더라는 일차적인 억압 기제에, 출생 순위라는 이차적인 억압 기제가 중첩되어둘째 이하 딸들은 부모 사망 시 거의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제2절 노년기 젠더 이슈 제기

## 1. 성생활

성생활이 노년기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연령차별주의와 아울러 남성 중심의 성적 레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Laumann et al., 2006)에서 노인들의 성생활은 억압되고 은폐되는 실정이다.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던 노인의 성생활도 공론화하고 성적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성생활 인식

〈표 6-22〉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진 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7	20.2	12.2	48.8	17.1	100.0 (10,073)
성						
남자	3.4	34.3	15.6	38.6	8.2	100.0 (4,286)
여자	0.5	9.7	9.8	56.3	23.7	100.0 (5,788)
연령						
65~69세	1.9	25.1	14.6	46.8	11.5	100.0 ( 3,314)
70~74세	1.8	23.8	11.8	47.0	15.6	100.0 ( 2,536)
75~79세	1.6	17.1	12.5	50.3	18.5	100.0 ( 2,137)
80~84세	1.5	12.2	9.1	52.2	24.9	100.0 ( 1,314)
85세 이상	1.5	9.2	7.8	52.8	28.7	100.0 ( 77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2	25.3	14.9	46.1	11.5	100.0 ( 6,416)
배우자 없음	0.8	11.3	7.5	53.5	27.0	100.0 (3,6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	23.4	13.5	46.5	14.5	100.0 (7,689)
제한 있음	0.7	9.9	8.1	56.0	25.4	100.0 ( 2,385)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성욕을 가져서도 안 되고 성생활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금기가 자리하고 있다. 〈표 6-22〉에서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남자 노인의 37.7%, 여자 노인의 10.2%가 성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65~69세 27.0%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85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10.7%가 되었다.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은 배우자가 없거나(12.1%)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어도 (10.6%) 10% 이상이었다.

〈표 6-23〉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대상 성교육, 성상담 인식

(단위: %, 명)

특성		[교육, 성상담  험		[교육, 성상담 여부	계 (명)	
	있음	없음	필요	불필요		,
전체	1.2	98.8	10.0	90.0	100.0	(10,073)
성						
남자	1.9	98.1	15.6	84.4	100.0	(4,286)
여자	0.6	99.4	5.8	94.2	100.0	(5,788)
연령						
65~69세	1.3	98.7	12.8	87.2	100.0	( 3,314)
70~74세	1.3	98.7	11.0	89.0	100.0	( 2,536)
75~79세	0.8	99.2	7.8	92.2	100.0	(2,137)
80~84세	0.9	99.1	6.8	93.2	100.0	(1,314)
85세 이상	1.3	98.7	6.0	94.0	100.0	( 774)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4	98.6	11.7	88.3	100.0	( 6,416)
배우자 없음	0.7	99.3	6.9	93.1	100.0	( 3,6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	98.7	11.4	88.6	100.0	(7,689)
제한 있음	0.5	99.5	5.3	94.7	100.0	(2,385)

주: 본인 응답자 10,073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68.

〈표 6-23〉을 통해 고령자의 성교육, 성상담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도 10%가 되는데 (남자 15.6%, 여자 5.8%), 정작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을 경험한 비율 은 1.2%로 매우 낮았다.

## 나. 성매개감염병

〈표 6-24〉 성매개감염병 연도별 신고 현황

(단위: 신고 건수)

					(1	111. 02. 01/
연도	계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2001	19,661	18,392	354	5	629	281
2002	24,583	21,479	2,060	1	717	326
2003	20,397	15,290	4,048	1	670	388
2004	17,855	10,845	5,970	0	658	382
2005	11,770	6,135	4,245	0	893	497
2006	9,387	4,219	2,978	0	1,494	696
2007	8,983	3,115	3,196	0	1,726	946
2008	8,780	2,553	3,501	1	1,825	901
2009	7,782	1,711	3,416	0	1,594	1,061
2010	7,422	1,816	2,984	0	1,572	1,050
2011	8,372	1,821	3,172	2	1,988	1,389
2012	9,213	1,612	3,488	0	2,618	1,495
2013	9,864	1,612	3,691	3	2,870	1,688
2014	11,401	1,699	3,955	0	3,550	2,197
2015	17,438	2,311	6,602	2	5,019	3,484
2016	22,957	3,615	8,438	0	6,702	4,202
2017	25,139	2,462	9,88	2	7,752	5,041
2018	28,737	2,362	10,609	5	10,359	5,402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8 감염병 감시연보」. p. 367.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성병과 성범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우선 성감염병 실태부터 보겠다. 한국에서의 성 매개감염병(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 룸)은 2002년 2만 4583건이 신고된 이후 2010년 7422건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8372건부터 2018년 2만 8737건까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2014년 이후에는 클라미디아 감염증(2014년 3955건 → 2018년 1만 609건)과 성기단순포진(2014년 3550건 → 2018년 1만 359건)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표 6-25〉 2001~2018년 성매개감염병 성별 신고 현황

(단위: 신고 건수)

								/
연도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기 포진	첨규콘딜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1	14,254	4,138	31	323	396	233	187	94
2002	15,529	5,950	32	2,028	458	259	233	93
2003	10,162	5,128	37	4,011	492	178	279	109
2004	7,066	3,779	86	5,884	520	138	310	72
2005	4,403	1,732	43	4,202	749	144	383	114
2006	3,468	751	57	2,921	1,225	269	558	138
2007	2,578	537	128	3,068	1,327	399	701	245
2008	2,156	396	97	3,404	1,435	390	685	216
2009	1,471	240	154	3,262	1,244	350	803	258
2010	1,503	313	281	2,703	1,214	358	819	231
2011	1,490	331	698	2,474	1,472	516	1,008	381
2012	1,335	277	974	2,514	1,652	966	1,184	311
2013	1,326	286	1,040	2,651	1,633	1,237	1,242	446
2014	1,319	380	1,259	2,696	1,609	1,941	1,396	801
2015	1,797	534	2,350	4,252	1,660	3,359	2,042	1,442
2016	1,995	1,620	3,195	5,243	2,039	4,663	2,761	1,441
2017	1,747	715	3,879	6,003	2,524	5,228	3,249	1,792
2018	1,679	683	4,232	6,377	2,936	7,423	3,517	1,885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8 감염병 감시연보」. p. 370.

연도별 성매개감염병 신고 건수를 성별로 구분하면,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룸을 더한 성매개감염병 수치 로는 2000년대 초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가(예: 2001년 남자 2 만 2993건, 여자 4922건) 그 격차가 줄어들고(2010년 남자 3817건, 여 자 3605건) 2015년(여자 9587건, 남자 7851건)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 보다 많아지고 격차도 커지고 있는 추세(2018년 여자 1만 6372건, 남자 1만 2365건)이다. 성매개감염병을 구분해서 보면, 2010년대에 남자와 여자 모두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이 증가하고 있 는데,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성기단순포진에서의 증가 폭이 여자가 남자 보다 크다. 2011~2018년 신고 건수가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여자 3903. 건(2018년 6377건, 2011년 2474건), 남자 3534건(2018년 4232건, 2011년 698건), 성기단순포진은 여자 6907건(2018년 7423건, 2011년 516건), 남자 1464건(2018년 2936건, 2011년 1472건) 증가했다. 한 편, 2011~2018년 첨규콘딜롬 신고 건수 증가는 반대로 남자가 2509건 (2018년 3517건, 2011년 1008건)으로 여자 1504건(2018년 1885건, 2011년 381건)보다 많았지만 같은 기간 클라미디아 감염증과 성기단순 포진 신고 건수 증가보다 적었다. 2018년 기준 전체 성매개감염병 신고 건수를 성별과 함께 연령별로도 구분해서 보면, 50대 이상 여자가 전체의 11.1%를 차지하여 같은 연령대 남자 4.8%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 여자의 성기단순포진 신고 건수가 14.9%로 같은 연령대 남자 4.2%보다 높았다.

〈표 6-26〉 2018년 성매개감염병 성별 및 연령별 신고 현황

(단위: 신고 건수)

연령대	임질		클라미디	클라미디아감염증		순포진	첨규	첨규콘딜롬	
인당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계	1,679	683	4,232	6,377	2,936	7,423	3,517	1,885	
0~9	0	0	0	1	0	3	1	5	
10~19	121	108	185	587	28	144	60	129	
20~29	670	284	1,902	3,310	536	1,253	1,344	764	
30~39	484	121	1,143	1,381	763	1,347	1,146	462	
40~49	281	94	631	610	661	1,298	604	273	
50~59	88	61	300	402	544	1,881	221	156	
60+	35	15	71	86	404	1,497	141	96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8 감염병 감시연보」. p. 370.

## 다. 성범죄

[그림 6-3]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단위: 건)



자료: 경찰청(2018). 「2018년 범죄통계」. p. 34.

고령사회에서 성범죄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2014~2018년 강간, 유사강간, 기타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발생 건수는 2만 1286~2만 3478 건이다. 2018년 유사강간을 포함하여 검거된 강간 범죄자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자가 6685명(98.4%)으로 여자 110명(1.6%)보다 압도적으

로 많다. 남자를 다시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 19~30세(2365명, 35.4%), 31~40세(1259명, 18.8%), 41~50세(1027명, 15.4%)가 많긴 하지만, 50세 이상(51~60세 767명(11.5%), 61세 이상 411명(6.1%)) 비율도 1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6-27〉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단위: 건)

		7171 11171		_	7나기구의 비기다	1
연령대		강간 범죄자			강제추행 범죄자	\f
L041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14~18세	880	849	31	972	923	49
	(13.0)	(12.7)	(28.2)	(5.5)	(5.4)	(8.7)
19~30세	2,395	2,365	30	4,233	4,061	172
	(35.2)	(35.4)	(27.3)	(24.0)	(23.8)	(30.6)
31~40세	1,276	1,259	17	3,213	3,122	91
	(18.8)	(18.8)	(15.5)	(18.2)	(18.3)	(16.2)
41~50세	1,043	1,027	16	3,643	3,518	125
	(15.3)	(15.4)	(14.5)	(20.7)	(20.6)	(22.2)
51~60세	777	767	10	3,405	3,313	92
	(11.4)	(11.5)	(9.1)	(19.3)	(19.4)	(16.3)
61세 이상	417	411	6	2,149	2,116	33
	(6.1)	(6.1)	(5.5)	(12.2)	(12.4)	(5.9)
생미	7 (0.1)	7 (0.1)	0 (0.0)	16 (0.1)	15 (0.1)	1 (0.2)
계	6,795	6,685	110	17,631	17,068	5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찰청(2018). 「2018년 범죄통계」. pp. 69-77.

2018년 강간범죄 여성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21~30세(1981건, 33.7%), 16~20세(1281건, 21.8%), 31~40세(806건, 13.7%), 41~50세(638건, 10.9%)가 다수이지만, 51세 이상도 10.0%를 차지한다(51~60세 401건(6.8%), 61세 이상 186건(3.2%)). 여성 피해자에 비해수는 적지만 여성 피해자의 연령대 비율과 비교했을 때 남성 피해자는 연령대가 30세 이하(103건, 78.0%)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14~2018년 발생 건수 변화가 크지 않은 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이다.

〈표 6-28〉 2014~2018년 강간·강제추행 피해 건수

(단위: 명)

연령대	7	당간범죄 피해?	다	7	상제추행 피해	다
한당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6세 이하	5	1	4	116	22	94
	(0.1)	(0.,8)	(0.1)	(0.7)	(1.6)	(0.6)
7~12세	206	18	188	822	120	702
	(3.4)	(13.6)	(3.2)	(4.8)	(8.5)	(4.6)
13~15세	366	12	354	725	83	642
	(6.0)	(9.1)	(6.0)	(4.3)	(5.9)	(4.2)
16~20세	1,309	28	1,281	3,154	250	2,904
	(21.6)	(21.2)	(21.8)	(18.5)	(17.8)	(19.1)
21~30세	2,025	44	1,981	6,343	459	5,884
	(33.4)	(33.3)	(33.7)	(37.2)	(32.6)	(38.7)
31~40세	814	8	806	2,074	188	1,886
	(13.4)	(6.1)	(13.7)	(12.2)	(13.4)	(12.4)
41~50세	649	11	638	1,595	130	1,465
	(10.7)	(8.3)	(10.9)	(9.4)	(9.2)	(9.6)
51~60세	407	6	401	1,194	127	1,067
	(6.7)	(4.5)	(6.8)	(7.0)	(9.0)	(7.0)
61세 이상	190	4	186	488	26	462
	(3.1)	(3.0)	(3.2)	(2.9)	(1.8)	(3.0)
마상	98 (1.6)	(0.0)	36 (0.6)	542 (3.2)	1 (0.1)	99 (0.7)
계	6,069	132	5,875	17,053	1,406	15,2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pp. 71-79.

2018년 검거된 강제추행 범죄도 성, 연령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만 7068건(96.8%)으로 여자 563건(3.2%)보다 훨씬 많다. 남자 강제추행 범죄자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19~30세(4061명, 23.8%)에 이어서 41~50세(3518건, 20.6%), 51~60세(3313건, 19.4%), 31~40세(3122건, 18.3%), 61세 이상 (2116건, 12.4%) 순이어서 51세 이상 연령대의 비율도 31.8%나 되었다.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는 16~40세 여자가 1만 674건으로 다수였지만(전체 여성 강제추행 범죄 건수의 70.2%), 51세 이상도 1529건으로 10.0%를 차지했다. 이처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범죄자이거나 피해자인 강간, 강제추행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 라. 돌봄에서의 성추행

이처럼 노인의 성생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인 노인 간 성추행의 문제도 발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성추행 발생은 권나경, 양난주 (2017), 강혜규 외(2019)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관련 통계는 없고, 성추행 예방과 발생 시 처벌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다음의 요양보호사 심층인터뷰 사례처럼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된 까닭,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추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귀도 잘 안 들려. 사실 잘 안 들려요. 그렇지 만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해.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거리를 좁혀오기 위한 어떤 그런 유인. 그래 제가 이제 주방에서... 독거에요. 독거면 가서 이제 주방도 해야 되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목욕 안 하기로 하고 갔어요. 저는 벌써 이제 보니까 100%야. 어. 성추행이 100% 들어와...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간단한 요리를 해 드리는데 싱크대 이렇게 하는데 백허그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를 소속된 재가장기요양서비스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해고를 당했고, 성추행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반복됐다.

"나는 그냥 내 일 하니까. 너 나 아니라도 누군가 돌보러 들어올 텐데 응? 여기 사람 들어와서 눈물 빼느니 내가 그냥 하자 해서 했는데 자기 하는 대로 안 되니 까 쫓아내요. 부당해고. 부당해고 또 걸렸어요. 법률 마련하는 데 부당 해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들어가야 돼요. 부당해고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데 그것 이 센터하고 보호자하고 이렇게 좀 조인, 협의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수단 으로 악용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웃됐어요. 그런 데 전화가 막 와요. 그만두고서는 한 3일인가 4일인가 됐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번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직업이 그러니까. 받았는데 선생님 막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막 울먹울먹하면 서 보니까 후임 요양사예요."

재가서비스기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인 이용자를 잃고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성추행을 당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 관에는 처벌을 하는 등 장기요양보험공단 차원의 신고 및 고충처리 창구 와 성추행 발생 시 처리 지침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센터에서는 대상자한 사람, 한 사람이 수입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유치하지만 바쁘지 자기. 뭐 성추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교육하는 데 게으릅니다. 놓칠까 봐. 나 타 센터로 이동할 거야. 서운하면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애써 유치한 대상자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추행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성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의무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분만 따로 이렇게 좀 성교육? 성추행 교육 이런 거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와서 일러요, 저한테 와서. 그게 뭐 성추행이야?...이 할아버지가 성추행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하는 거를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할머니들이 어른이. 아니요, 뭐라 그러냐면 어른이 좋아서 그러는 걸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거."

#### 2. <del>돌봄</del>

#### 가. 돌봄 수혜

〈표 6-29〉의 노인돌봄 수혜 실태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여성 21.9%, 남성 12.9%)도 9%포인트 높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율 또한 여성(10.0%)이 남성(3.5%)보다 6.5%포인트 높다.

〈표 6-29〉 2017년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돌봄 수혜 실태

(단위: 명, %)

구분	돌봄 받음		제한 있지만 돌봄 안 받음		제한 없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863	18.1	745	7.2	7,690	74.7	10,299	100.0
남자	566	12.9	153	3.5	3,656	83.6	4,375	100.0
여자	1,297	21.9	592	10.0	4,035	68.1	5,924	100.0

주: 10.299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 나. 사회적 돌봄 제공

임정미 외(2019)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노인돌봄 종 사자의 성별 편차가 크고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2008년 87%에서 2018년 94.8%까지 증가했다. 시 설에 근무하는 여성 사회복지사의 비율도 2008년 70.9%에서 2018년 75.8%까지 증가했다.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의 비율은 2008~ 2018년까지 99.0% 이상이고,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의 비율 은 2008년 96.3%에서 2018년 98.0%까지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집계 자료만 있어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작업치료사도 2017년 82%에서 2018년 84%로 증가했고, 시설에 근무하는 여성 물리치료사 역시 2017년 81.0%에서 2018년 81.2%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3~94%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사회복지사 비율도 2008년 70.2%에서 2018년 80.6%로 증가했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간호사 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비율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96~97%대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최근 집계 자료만 있는 재가서비스 제공 여성 작업치료사비율은 2017년 80%, 2018년 81%였고, 재가서비스 제공 여성 물리치료사비율은 2017년 82.1%, 2018년 78.3%였다.

〈표 6-30〉 2008~2018년 노인장기요양인력 성별 비율

(단위: %)

Ξ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71	시설											
작 어	남자	-	-	-	-	-	-	-	-	-	18.0	82.0
업 치 료	여자_	-	-	-	-	-	_	-	_	-	16.0	84.0
큪	재가											
사	남자	-	-	-	-	-	-	-	-	-	20.0	19.0
	여자	-	-	-	_	_	_	-	_	-	80.0	81.0
물	시설											
리	남자	-	-	-	-	-	-	-	-	-	19.0	18.8
치	역자	-	-	-		-	-	-	-	-	81.0	81.2
료	재가										17.0	21.7
사	남자	-	-	-	_	-	_	-	_	-	17.9	21.7
	역자 시설		_								82.1	78.3
ይ	사결 남자	13.0	11.6	9.9	8.6	8.0	7.4	6.6	6.2	6.0	5.5	5.2
양	역자	87.0	88.4	90.1	91.4	92.0	92.6	93.4	93.8	94.0	94.5	94.8
보	 - 재가	0/.0	00.4	50.1	71.4	92.0	92.0	73.4	93.6	24.0	74.7	74.0
호	남자	6.3	6.6	6.7	6.5	6.3	6	5.7	5.4	5.2	5.1	5.1
사	여자	93.7	93.4	93.3	93.5	93.7	94	94.3	94.6	94.8	94.9	94.9
	<u>' '</u> 시설	75.1	75.1	75.5		75.1		72.5	7.1.0	71.0		
사	남자	29.1	30.4	29.5	30.4	29.5	27.4	26.4	25	24.9	24.3	24.2
회	여자	70.9	69.6	70.5	69.6	70.5	72.6	73.6	75	75.1	75.7	75.8
회 복 지 사	재가											
기 11.	남자	6.3	6.6	6.7	6.5	6.3	6.0	5.7	5.4	5.2	5.1	5.1
	여자	93.7	93.4	93.3	93.5	93.7	94.0	94.3	94.6	94.8	94.9	94.9
	시설											
フレ	남자	0.5	0.7	0.8	1.0	0.9	1.1	0.9	1.3	1.2	1.1	1.0
간 호	여자	99.5	99.3	99.2	99.0	99.1	98.9	99.1	98.7	98.8	98.9	99.0
사	재가											
'	남자	0.6	0.5	0.4	0.2	0.3	0.7	0.7	1.0	0.9	0.9	1.3
	여자	99.4	99.5	99.6	99.8	99.7	99.3	99.3	99.0	99.1	99.1	98.7
간	시설				ā /		• •					
호	남자	3.7	3.7	3.5	3.4	3.0	2.8	2.5	2.2	2.1	2.0	2.0
호 조	역자	96.3	96.3	96.5	96.6	97.0	97.2	97.5	97.8	97.9	98.0	98.0
무 사	재가	2.5	2.0	2.7	2.1	2.4	2.4	2.5	2.2	2.1	2.5	26
사	남자 cdz]	3.5	3.9	3.7	3.1	3.4	2.4	2.5	2.2	2.1	2.5	2.6
	여자	96.5	96.1	96.3	96.9	96.6	97.6	97.5	97.8	97.9	97.5	97.4

주: 시설은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말함. 재가는 주야간보호를 말함 자료: 임정미 외(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싶은 65세 이상 여성 비율은 7.8%로 남성 비율 3.3%에 비해 약 2.4배 높았고, 응답자 빈도로도 약 2.3배가 높다. 하지만 2017년 노노케어 참여자 성비를 보면, 여성이 남성의 4.0배 정도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성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노케어에서 대다수의 수혜자는 여성인데 참여자와 수혜자를 이성으로 매칭했을 때 성추행, 안전, 배우자 눈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유재언 외, 2018).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별을 과도하게 고려하는 매칭이 노년기 소수자인 남성이 돌봄활동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유형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배정하게 만드는 일종의 펜스 룰(pence rule)로 작동한다(유재언 외, 2018).

〈표 6-31〉 노인의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명, %)

구분	참여의형	향 없음	노노	케어	공공시	설봉사	기	타	전기	ᅨ
十正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8,663	84.1	604	5.9	664	6.5	368	3.6	10,299	100.0
남자	3,745	85.6	144	3.3	263	6.0	223	5.1	4,375	100.0
여자	4,918	83.0	460	7.8	401	6.8	145	2.4	5,924	100.0

주: 1)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 기업연계 합계임.

<sup>2) &#</sup>x27;2017년 노인실태조사'에는 전체 10,299명이 응답했지만, 결측값이 있는 경우 문항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분석.

〈표 6-32〉 2015~2017년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연령	75.3	74.8	75.4
전체	91,203 (100.0)	92,443 (100.0)	92,309 (100.0)
남자	20,282 ( 22.2)	19,496 ( 21.1)	18,567 ( 20.1)
여자	70,921 ( 77.8)	72,947 ( 78.9)	73,742 ( 79.9)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원자료. 각 연도.

성별로 자격을 규정하는 사례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개요는 〈표 6-33〉과 같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목적과 내용만 봤을 때는 자격 조건을 여성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남성을 지원자 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돌봄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유아들에게 고착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돌봄 역할에서 남성은 배제되고 여성이 전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 6-33〉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ul> <li>2019년</li> <li>무릎교육의 전통을 되살려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선현들의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미래세대의 중추인 유아들의 인성 함양 도모</li> <li>유아들이 우리 정서가 담긴 이야기를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 기반 조성</li> <li>2018년</li> <li>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보급하여 민족문화 전승 기반 조성 및 여성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li> </ul>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어르신을 선발·교육하여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대상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예산/사업주관) 93억 942만 원(국비 77억 5800만 원, 지방비 15억 5142만 원) - (사업 주관): 17개 시도 지자체 / 한국국학진흥원 - (지원 대상) 만 56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 기본적 인성을 갖추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학력, 경력 무관) - (선발 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 선발 인원은 지역별 수요, 기관 등 감안배정 *2017 신규 선발 239명 - (추진 방식) 1차 연도 선발·양성 후 차년도 파견·활동						
	- (사회·문화적 효과) 어르신 삶의 자긍심 회복과 세대 간 소통 강화 - (경제적 효과) 여성 고령 인력의 일자리 창출 - 연도별 사업 성과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요 성과	신규 선발 (명)	600	720	750	700	346	239
04	활동 인원 (명)	386	917	1,504	1,988	2,406	2,462
	참여 기관 (개소)	1,128	2,690	4,439	5,708	6,629	7,132
	수혜 유아 (명)	12만	19만	29만	37만	42만	46만
구체적 활동 내용	<ul> <li>이야기 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li> <li>한국국학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재 속 이야기를 한 주에 한 편씩 외워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들려주는 활동을 함</li> <li>동화구연과는 달리 과장된 목소리 연기를 하지 않고, 옛날 할머니가 손주에게 했 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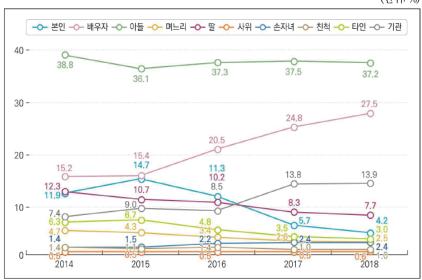
자료: 한국국학진흥원(2019). 2019년 제11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 공고. 한국국학진흥원(2018). 2018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 3. 학대

돌봄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익숙하지 않은 남자가 이를 맡게 되었을 때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4]를 보면, 2014~2018년 노인학대 행위자 중에서 37~38%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들이었다.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아니라 숫자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도 2014년 15.2%에서 2018년 27.5%로 급증하고 있는데 학대를 받은 노인의 76.0%가 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에는 남편에 의한 학대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4] 2014~2018년 학대 행위자와 학대 노인과의 관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p. 30.

〈표 6-34〉 2017년 학대 피해 노인의 성별 학대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전체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0)
남자	557	672	19	113	222	128	39	1,750
	(31.8)	(38.4)	(1.1)	(6.5)	(12.7)	(7.3)	(2.2)	(100.0)
여자	2,094	2,392	131	298	427	163	32	5,537
	(37.8)	(43.2)	(2.4)	(5.4)	(7.7)	(2.9)	(0.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전문기관(2017).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69.

노인학대 유형을 성별로 보면, 신체적(여자 34.8%, 남자 31.8%), 정서적(여자 43.2%, 남자 38.4%) 학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7.0%포인트, 4.8%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와 반대로 방임(남자 12.7%, 여자 7.7%), 자기방임(남자 7.3%, 여자 2.9%)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5.0%포인트, 4.3%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35〉 2017년 노인학대 행위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학대 행위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전체	46	115	325	1,150	1,275	827	1,363	5,101
	(0.9)	(2.3)	(6.4)	(22.5)	(25.0)	(16.2)	(26.7)	(100.0)
남자	24	93	250	807	823	496	1,092	3,585
	(0.7)	(2.6)	(7.0)	(22.5)	(23.0)	(13.8)	(30.5)	(100.0)
여자	22	22	75	343	452	331	271	1,516
	(1.5)	(1.5)	(4.9)	(22.6)	(29.8)	(21.8)	(17.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전문기관.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71.

학대 행위자의 연령대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70대 이상 (30.5%), 50대(23.0%), 40대(22.5%), 60대(13.8%), 30대(7.0%) 순으로, 여자는 50대(29.8%), 40대(22.6%), 60대(21.8%), 70대 이상 (17.9%), 30대(4.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6-36〉 2017년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노인학대 행위자의 연령 현황

(단위: 명)

학대 행위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배우자	0	0	0	3	20	233	1,007	1,263
아들	0	18	222	777	719	155	20	1,911
며느리	0	2	18	40	52	16	3	131
딸	1	9	45	162	152	49	6	424
사위	0	0	2	8	15	2	0	27
손자녀	44	58	17	5	0	0	0	124
친척	1	0	2	7	11	12	16	49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노인전문기관(2017).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75.

학대 행위자의 연령과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교차 분석해 보면, 40~50 대 아들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1496건)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1007건)가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성 정체성. 인종. 그리고 생애과정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연령과 계층을 젠더와 교차되는 특성으로 한 논의를 주로 했지만, 일부 이슈에서는 성 정체성과 인종(민족 또는 국적)도 강조해야 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성정체성에 관해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도 않아서 결혼식을 하

기도 어렵고, 동성 간 사실혼 관계나 동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가진 법적 권리를 누리기도 힘들며, 사별 등으로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상속이나 재산분할의 권리를 인정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연예계에 종사하는 특정 유명인을 중심으로 한 성 정체성 공개에서 촉발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화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잠잠해졌고, 그 당시 20대였던 성소수자가 이제 40대 중년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제도·의료적 권리 보장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 법적·윤리적 억압이 존재해서 개인의 생애과정 관점으로 보더라도 성인이 되고 나서 초반까지는 성 정체성에 대한 공개, 논의, 활동을 활발히 하더라도 30대 중후반 이후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고사하고 실태, 어려움, 개선 요구 등에 관한 대표성 있는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결혼, 노동이주, 이민이 빈번해지는 지구화시대에 젠더와 결부된 인종도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성 정체성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명 다문화, 결혼이주 등으로 불리는 국제결혼이 많아졌고 이제는 일상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한국 정착, 결혼 초기, 자녀가 어렸을 때 한국에 적응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동안은 중고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별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중년기 다문화가정에서 이중 돌봄 부담이 클 수 있다. 학문적으로 정립된 체계적인 시기구분은 아니지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결혼한 결혼이주 1세대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40대 중후반~50대 중후반에 자녀는 이제 중학교 이상에서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남편은

50대 후반 이상의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력과 건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부모가 살아있다면 80대 중반 이상이라 초고령 시부모와 중고령 남편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에 결혼한 결혼이주 2세대의 경우도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의 연령이면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더라도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라 어린 아동을 돌봐야 하는 한편, 40대 중후반~50대 중후반인 남편의 가정 내 일상생활까지 거의 전담하면서 70대에 접어든 시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고령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예로 들었지만, 노동이주와 이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다른 인종, 민족, 국적시민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자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다.

성 정체성과 결혼이주가정의 사례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생애주기별 접근에서 생애과정별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 정체성과 결혼이주가정뿐만 아니라 비혼자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젠더 이슈가 저출생 영역에서 주로 제기된 것도 고령화와 고령사회에 대한 단절적인 시기 구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그 관점의 한계로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의 젠더 이슈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젠더 관점도 생애주기를 생애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고령사회에서의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며 정책으로 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젠더 관점에서의 생애과정 관점 접목이 본 절에서의 마지막 주장이다.

## 제3절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논의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고령사회대책,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 1. 고령사회대책

고령사회대책의 하위 목표는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3.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4.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으로 제시되어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의 경우 노인을 위한 의료보건사업, 운동이나 여가 및 평생학습과 자원봉사 등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를 위한 주거안정 사업, 식생활이나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생활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하위 목표 아래 이뤄지는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령사회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이 다양한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이며 '인구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이외의 많은 정책사업들을 포함시켜 덩치만 커졌다는 비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기된다.

젠더 관점 역시 부재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모두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상이한 욕구와 경험을 반영한 정책 설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을 젠더가 없는 고립된 개인으로 상정하고 소득, 주거, 보건,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나열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사회대책에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전혀 부재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노인돌봄 역시 돌봄이니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가 작동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비혼 자녀가 노인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등에서 작동하는 젠더 관계나,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일자리가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 간주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노인 정책이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늘고 생 산인구가 줄어서 노동력 부족이 예측된다는 전제하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여성과 중고령자 및 외국인력을 더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이나 이공계 여성인력 활성화 계속고용 을 위한 개선 방안 등 여성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평 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 정책들의 실효성이나 개선 방안 등은 차치하고, '2018년도 시행계획'의 가장 큰 문 제점은 '여성 노동'을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한 덩어리로 묶어 서 기간노동력이 아닌 노동력 부족을 메꾸는 예비노동력 풀로 취급한다 는 점이다. 기간노동력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책임이 없는 남성으로 상정 하고 여성 노동자는 이중부담을 지는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불평 등한 젠더 의식이 정책의 구조 안에 배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여성이나 청년 여성, 중고 령 여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매우 부족하고, 주력 생산 연령대에 있 는 여성들만을 예비노동력 풀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접근은 남녀 모두가 노동 중심 생애전망을 발전시키고 여성들의 독립성 추구가 두드러지는 청년층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저출생 추세의 완화에도 도움 이 되지 않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수정)'의 목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 영역을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시행계획에서는 남녀의 가족 돌봄 공유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도입되어 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 취·창업 지원과 은퇴자의 직무경험 활용 활성화 등 외에, 고 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 환경 개선이나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 등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력 활용 확대 관련 정책사업의 경우, 넓은 의미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 책과 이민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으로서 좀 더 초점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의 경우 다양한 실버산업 관련 정책들에 더하여, 교원 수급 계획 재조정이나 병역자원 확보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기존 제도와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사업들과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 그리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및 재정관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2.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2018 시행계획'은 저출생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라는 제목 아래 홍보·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들과 인구통계 생산 관리체계 구축이나 저출생·고령사회 영향평가 도입 추진과 같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도구를 마련하는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인식개선과 교육사업의 경우, 저출생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의 각 분야에 녹여 넣어야 될 내용들이기에 구체적 검토 이후 각 분야로

옮겨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에 더하여 포괄적인 사회정책 성격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18 시행계획'에서 젠더 관점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의 하위 사업으로 '2-다.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 이 포함된 것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에서 필요 한 젠더 관점은 정책의 외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적 교육사업 이나 다른 사업들로부터 고립된 하나의 항목사업으로만 충족될 수 없다. 정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정책의 구조. 각 요소들의 관계에 유기적 으로 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수정)'이 담은 한 발 진전된 성평등의 지향이 젠더 관점의 정책 설계로 시행계획 안에 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개별 사업에 대한 젠더 분석과 젠더 관 점을 반영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 전체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부장적 고 정관념이나 근대적 젠더 관계의 정상성에 매몰되기보다는 변화하는 젠더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가의 목적에 개 인을 동원하려 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을 자율권과 인권을 가진 평등한 주체로 대우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야말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의 본령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제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한계점과 연구 의의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의 제1절에서는 제2~6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적 결론을 내린다. 제2절에서는 종합적인 결과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제3절에서는 의의와 한계를 밝히며 이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제1절 요약

### 1.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법, 제도의 주요 내용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법, 제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제정·도입 배경, 연혁, 현황,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그에 기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법과 그에 법적 기반을 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제도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까지 권고하도록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장기 정책과제도 제시한다. 이 보고서도 이러한 목표와 방법의 측면을 동일하게 따르면서,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018년 12월에 재구조화된 로드맵에서도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내걸고 있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수 있다.

기존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세부사업, 통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까지 도출한 연구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간헐적이고 파편적인 몇 개의 사례를 제외하면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과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젠더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젠더와 결합된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거나 저출생 영역에 국한시킨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령화 현상의 전반으로 확장하고 관점에서도 젠더와 결합된 세대, 계층을 함께 분석·평가에 고려하여 기존에 심화되지 않았던 이슈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긴밀하지 않게 추진되어 온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가 서로 연계·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저출생·고령사회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이어 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에도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의 연동을 명시하는 방안을검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관련 정책·현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하는 추진 과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주요 내용

## 가.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을 젠더 관점에서 더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기존 통계를 활용하여 실태 분석을 했다. 우선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를 성별로 살펴보고, 국제성평등지표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성평등 수준을 비교했다. 그리고 국내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의 연도별 추세에서 특징적인 성별 차이도 알아봤다.

결혼, 출산, 일(고용), 수명, 성평등 관련 국제 통계 실태 분석에서 나타 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1〉참조). 첫째, 결혼에서 초혼 연령의 성별 차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로 특별히 문제라고 볼 수 없 지만, 1990~2017년에 한국의 초혼 연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은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7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셋째, 일은 연령대별 고용률, 소득, 근로 형태로 세분화해서 봤는데, 연령대별 고용률은 성별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5~29세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출산 및 육아기인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낮아지고, 40대 후반에다시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M자 곡선이 뚜렷했다. 한편, 한국 남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에서는 주로 군 복무를 하는 20대 초반에 같은 연령대의 여성보다 고용률이 낮은 점은 일관되지만, 2017년 이후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도 낮아진 모습이 새롭다. 소득은 고학력의 중위소득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성별 격차가 심각했다. 근로 형태는 전일제 근무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은 반면, 시간제 근무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은 매우 낮았다.

넷째, 수명 중에서도 기대여명이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여자는 높고, 남자는 낮아 성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 다섯째, 성평등은 성불평등 지수, 성 격차 지수, 유리천장 지수를 비교했는데 지수에 따라 순위 평가 결과가 매우 상반됐다. 성불평등 지수에서는 한국의 성불평등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2017년 기준으로는 189개국 중에서 상위권인 10위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세부 지표 중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낮기 때문인데,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성불평등 수준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성 격차 지수는 2018년 종합순위가 149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5위로 나타나 성 격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역별 순위를 봐도 건강 87위, 정치 권한 92위, 교육 성취 100위, 경제 참여와 기회 124위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고등교육 비율, 노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관리직 내 여성 비율, 간부직 내 여성 비율, 여성 경영대학원 시험 응시자 수, 의회 내 여성 비율, 양육비용,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0ECD 29개국 중 최하위여서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결혼, 출산, 일·가정 양립, 이혼, 고령자 인구 및 가족의 국내 통계를 활용해 특징적인 성별 차이와 추세 변화를 살펴봤을 때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2〉 참조).

첫째, 인구에서 인구피라미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아지고 비율의 차이까지 커지는 구조였고, 8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성별 인구 규모 격차(여자 〉 남자)는 미래에도 클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여자 1인 가구의 비율이 남자 1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았는데 연도와 연령대별로 패턴이 달랐다. 여자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대 이후 변동 폭이 작았지만, 남자 1인 가구의 증가 폭은 컸다. 또한, 20~40대 연령대에서는 남자 1인 가구가 여자 1인 가구보다 많았지만, 50~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반대로 여자 1인 가구가 남자 1인 가구보다 많았다.

〈표 7-1〉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제 통계)

	구분	내용
결혼	초혼 연령	-성별 차이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로 문제되지 않음 -1990~2017년 한국의 초혼 연령 급격한 상승
출산	출산	-2017년 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기록
일	연령대별 고용률	-한국 여성 M자 곡선: 25~29세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출산 및 육아기인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낮아지고, 40대 후반에 다시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한국 남성: 20대 초반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줄곧 낮음, 2017년 이후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도 낮아짐
(고용)	소득	-고학력에서의 중위소득 성별 격차(남자)여자) 심함
	근로 형태	-전일제 근무 여성 비율 낮고, 시간제 근무 여성 비율 높음 -고위·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매우 낮음
수명	기대여명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여자는 높고, 남자는 낮음
	성불평등 지수	-전반적으로 성불평등 낮게 평가됨 -2017년 189개국 중에서 10위로 상위권 -세부 지표 중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낮기 때문임 -하지만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성불평등 수준은 중위권
성평등	성 격차 지수	-성 격차 심함 -종합순위: 2018년 149개국 중에서 115위로 하위권 -영역별 순위: 건강 87위, 정치 권한 92위, 교육 성취 100위, 경제 참여와 기회 124위
	유리천장 지수	-종합점수 OECD 29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성차별 심각 -영역 구분: 고등교육 비율, 노동 참여율, 성별 간 임금 차이, 관리직 내 여성 비율, 간부직 내 여성 비율, 여성 경영대학원 시험 응시자 수, 의회 내 여성 비율, 양육비용, 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표 7-2〉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결과(국내 통계)

	 구분	내용
	인구피라미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 비율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 -80세 이상 성별 인구 규모 격차(여자)남자) 클 전망
인구	1인 가구	-여자 1인 가구 비율 〉 남자 1인 가구 비율 -여자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대 이후 변동 폭 작음 -남자 1인 가구 증가 폭 큼 -20~40대: 남자 〉 여자 -50~70대 이상: 여자 〉 남자
결혼	연령대별 혼인율	-2008년보다 2018년 남자: 20대 후반만 혼인율 감소 폭 큼 -2008년보다 2018년 여자: 20대 혼인율 감소, 30대 초중반 에는 증가
출산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2010년대 이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자연성비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수급자	-육아휴직 수급자의 여자 비율 87% 이상 -남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와 비율 증가 폭 상승 긍정적 -여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 감소로 전환
	가정관리· 돌봄시간	-성별 격차 큼(아내)남편): 맞벌이, 외벌이 모두 가정관리, 가 족 돌봄 행위 비율과 하루 평균 시간
	총 이혼 건수	-감소 추세이며, 변화율 작음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변화율 차이 큼 -한국 여자+외국 남자 이혼 건수 변화폭 큼
고령자 인구 및 가구	가구 형태	-여성 노인은 1인 가구 비율 높음
	사망	-70대에 남자 사망자 수 많음 -80대 이후 여자 사망자 수가 많음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조사망률 성별 차이 감소 추세

둘째, 결혼에서 연령대별 혼인율은 성별로 다른 추세를 보였다. 2008 년과 비교해서 2018년의 남자는 20대 후반만 혼인율 감소 폭이 컸다. 하지만 2018년의 여자는 20대에 혼인율이 감소하고, 30대 초중반에는 증가하는 복잡한 양상이었다.

셋째, 출산에서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는 2010년대 이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자연성비가 유지되고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수급자와 가정관리·돌봄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 수급자의 여자 비율은 200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87%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도 남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와 비율의 증가 폭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 현상은 그 맥락을 더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가정관리·돌봄시간에서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모두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에 대한 행위 비율과 하루 평균시간을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할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이혼에서 총 이혼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변화율도 작았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변화율 차이가 컸으며 특히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의 이혼 건수에서 변화폭이 컸다. 고령자 인구 및 가구에서는 여성 노인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성별 가구 형태 차이가 특징적이었다. 사망에서는 70대 연령대에서는 남자 사망자 수가 많았다가 8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여자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수명, 65세 기대여명, 조사망률 성별 차이는 감소 추세였다.

# 나.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통계 보완 방안

〈표 7-3〉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가승인통계: 젠더와의 교차성 분석 결과

구분	분석 결과
국가통계포털(KOSIS)	
성별 비교로만 구성된 통계(9개)	-가족실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국 다문화실태조사(귀화자) -청년패널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젠더와의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 (14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생활실태조사(일반 가구)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 조사 -생활시간조사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한국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연금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학대 현황 -퇴직연금통계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통계(5개)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고령자 고용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본조사 조사표(16개): 성별, 세대,	계층, 혼인, 지역
5개 영역 변수 모두 포함한 통계 (14개)	-가족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보육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구분	분석 결과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노인실태조사
성별, 세대, 계층, 혼인, 지역과 관 련 대체 변수(1개)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업) 단위의 조사: 성별, 연령, 혼인 내용 파악 가능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보도자료(12개)	
성별 분리된 결과 제시(7개)	-가족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퇴직연금통계
성별 결과 제시 안 함(5개)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의 교차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통계포털(KOSIS), 각 통계의 조사표, 보도자료를 분석했다(〈표 7-3〉 참조). 먼저 국가통계포털에서 통계 결과를 확인했을 때 단순히 성별 비교만 한 통계는 가족실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국 다문화실태조사(귀화자), 청년패널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로 총 9 개이다. 단순 성별 비교로 구성된 통계표는 각 통계의 목적에 따라 통계결과를 제시한 것이지만, 젠더와의 교차성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른 관리자급 여성 근로자를 단순한 성별이 아닌 성별/연 령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제시하면 일·가정 양립 실태에 관해 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통계포털에서 젠더와의 교차성을 반영한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험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국민생활실태조사(일반 가구),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 조사, 생활시간조사,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한국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연금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학대 현황, 퇴직연금통계까지 총 14개이다. 각 통계의 본래목적이 성별 분리가 아닌데도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 중 절반 정도가교차성을 반영하여 통계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교차성을 반영해야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성별 분리가 되지 않은 통계로는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고령자 고용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의 총 5개 통계로 성별 정보를 추가한 현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사용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통계를 표본조사인 경우에 한해, 조사표의 교차성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 성별, 세대(연령), 계층, 혼인,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확인했다. 총 28개의 통계 중 조사표가 있는 통계는 16개이다. 5개 영역의 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통계는 가족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보육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 노인실태조사까지 총 14개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지역

과 관련된 대체 변수가 있어, 조사표가 있는 대부분의 통계에서 5가지 영역의 교차성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는 사업체(기업) 단위의 조사로 개인 단위의 분석은 불가능하나 종사자 관련 문항이 있어, 성별, 연령, 혼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와 관련된 28개의 통계 중 보도자료가 있는 통계는 총 12개이다. 이 중 가족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졸자직업 이동경로 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미혼 남녀),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퇴직연금통계 등 7개 통계의 보도자료에서 성별 분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의 보도자료에서는 성별 분리된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 3.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주요 내용

〈표 7-4〉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순위로짓 분석 주요 결과

구분	분석 결과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의 심각성	-40대 > 10대 -고용 불안정한 사람 > 일하지 않는 사람
미래 한국 사회 개선 전망	
성차별의 심각성	-여자 〉 남자 -비혼자 〉 기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향후 성별 갈등의 개선 전망	-여자 〉 남자 -기혼자 〉 비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세대 갈등 개선 전망	-10대 〉 30대, 50대 이상 -소득 중상층 〉 하층 -진보적 성향 〉 중도
빈부 갈등 개선 전망	-소득 중상층 〉하층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개선 전망	-남자 〉 여자

구분	분석 결과
	-10대 -소득 중상층 〉 하층 -보수적 성향 〉 중도
정책적 개입 필요성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	-여자 〉 남자 -고용 안정성 보통 〉 비고용 -진보적 성향 〉 중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 소	-여자 〉 남자 -10대 〉 20대 -불안정한 고용 〉 비고용 -진보적 성향 〉 중도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u>돌</u> 봄 해소	-여자 〉 남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	-여자 〉 남자 -10대 〉 2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노인 대상 성폭력 해소	-여자 〉 남자 -60대 〉 10대 〉 50대, 70대 -기혼자 〉 비혼자 -진보적 성향 〉 중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필요성
청년 취업지원정책	-여자 〉 남자 -10대 〉 3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결혼장려정책	-남자 〉 여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 대학교 졸업 이상 -소득 하층 -50대, 60대 〉 10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20~60대 〉 10대 -고등학교 졸업 이하 〉 대학교 졸업 이상 -진보적 성향 〉 중도
출산장려정책	-여자 〉 남자 -비고용 -진보적 성향 〉 중도
아 <u>동돌</u> 봄지원정책	-여자 〉 남자 -30대 〉 1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노인돌봄지원정책	-여자 〉 남자 -30대, 40대 〉 10대 -진보적 성향 〉 중도

구분	분석 결과
일·가정양립정책	-여자 〉남자 -30~50대 〉 10대 -진보적 성향 〉중도
성평등정책	-여자 〉남자 -불안정한 고용 〉비고용 -비혼자 〉기혼자 -진보적 성향 〉중도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불안정한 고용 〉비고용 -비혼자 〉기혼자 -소득 하층 〉중층 -진보적 성향 〉중도
정년퇴직 연령 상향	-소득 상층 〉하층
노후소득보장정책	-시 지역 〉 서울 -대학교 졸업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이하 -소득 하층 〉 중층 -진보적 성향 〉 중도
지방분권정책	-여자 〉남자 -40대, 70대 이상 〉 10대 -소득 하층 〉중층 -진보적 성향 〉중도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은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식,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젠더에 따른 불평등,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별 인식 차이를 기술통계, 순위로짓모형, 잠재프로파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의 심각성은 10대보다 40대 이상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이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이 심각하다

고 봤다. 성차별의 심각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그리고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 때 전반적인 성차별을 심각하게 여길 확률이 높았다.

미래 한국 사회의 개선 전망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그리고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이 향후 성별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세대 갈등 개선 전망은 30대, 50대, 60대, 70대보다 10대가, 그리고 소득계층이 중상층인 경우와 진보적 이념을 가진경우 세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빈부 갈등 개선 전망은 소득계층이 중·상층인 경우 빈부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개선 전망은 남성인 경우, 10대인 경우, 소득계층이 중상층인 경우,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경우, 저출생·고령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관련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고용안정성이 보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20대보다 10대가,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진보적 성향인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진보적 성향인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장남 중심 유산상속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20대보다 10대가, 진보적 성향인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노인 대상 성폭력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은 여성 인 경우, 50대, 70대보다 10대가, 10대보다는 60대가,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진보적 성향인 경우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별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30대보다 10대가, 진보적 성향인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은 남성인 경우,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인 사람이,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 우, 10대보다 50, 60대가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청년과 신혼 부부 주택지원정책의 필요성은 10대보다 20대~60대가, 고졸 이하인 집 단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출산장 려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다문화지원정책의 필요성은 남성인 경우, 10대보다 20, 30대인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의 필요성 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 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아동돌봄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10대보다 3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노인 돌봄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10대보다 30, 4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10대보다 30~50대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 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고용이 불 안정한 사람인 경우, 비혼자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 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고령자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은 고용이 불안정 한 사람인 경우, 비혼자인 경우,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정년퇴직 연령 상향의 필요성 은 소득계층이 상층보다 하층인 경우 상향이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 았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은 서울보다 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대 졸 이상인 경우,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 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은 여성인 경우, 10대

보다 40, 70대 이상인 경우 소득계층인 하층인 경우,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우 필요하다고 여길 확률이 높았다.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잠재프로파일 분석으로 유형화하고, 다항로짓모형으로 성·연령·계층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형화의 주요 결과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약한 지지 또는 중도가 2순위 비율을 차지했다. 제3~4순위 유형에서는 세부 정책별로 엇갈린 찬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필요성 태도의 유형은 성별 및 연령 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젠더 관련 정책의 경우 청·장년 여자는 찬성하는 유형의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청년 남자는 반대하는 유형의 비율이 더 높았다. 장년기에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유사하지만, 특히 여자가 돌봄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남자는 일부 젠더, 다문화, 지방분권정책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고령 여자가 저출생과 젠더 관련 정책에 뚜렷한 찬성 태도를 가졌다면, 중고령 남자는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필요로 하고 보수적인 태도도 엿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와 아울러 계층적 특성 차이도 있었다. 이념 성향은 성별 및 연령대와 무관하게 저출생·고령사회·젠더 관련 정책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혼인상태, 학력, 고용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은 특정 성·연령대에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의 주요 내용

저출생 현상과 대응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적 논의를 했다. 첫째, 인구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바뀌었지만 국가에 의한 인구 통제라는 정책 관행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 둘째, 수치화된 합계출산율이 부적절한 정책목표였다. 그로 인해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성격이 약했고, 인구 위기의 해결이라는 환상을 심어 줬으며,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이 훼손되었고,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불만과 반감을 가져왔다. 저출산 대 저출생의 용어가 논쟁이 되는 것도 출산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데서 비롯된 반발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성인지적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과 함께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인구정책에도 성평등을 강조하는 젠더 관점 반영, 포괄적 사회정책 성격의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젠더화되고 이질적인 생애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의 보완사항도 논의했다. 또한, 저출생대책인 1.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네 가지 목표하에 추진되는 과제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첫째, 비혼, 한부모 등 비전통적 혼인 가족생활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둘째, 저출생대책으로서 목표 정합성이 낮은 추진 과제는 재검토한다. 셋째, 정책 대상자에 청소년과 남성을 포함하고 보건·위생·생식건강 차원으로의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남성의 돌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다섯째, 영유아기에서 전 생애로 돌봄의 대상과 시기를 확장한다.

〈표 7-5〉 젠더 관점에서의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용어 논의

구분	내용	
돌봄의 주체로 여성 전제	-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2)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직장보육설 설치 지원)'(p. 416) · 여성의 고용 확대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것 ·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취업 중이라도 여성이 아이 돌봄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 -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 수가 설치 조건임 - 개선안: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수로 조건 변경 - 사업명: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p. 293, p. 299, p. 309) · '엄마'를 특정함으로써 가족 내 성역할을 구분하고, 돌봄에 있어 엄마의역할과 책임을 상징화 · 가족 내에 엄마가 있고, 그 엄마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전통 가족, 또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상정 - 개선안: 사회적 돌봄 교실(가칭) 등 가정과 엄마가 일차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사업명 변경	
남성의 역할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	-돌봄에서 여성과 남성이 더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p. 424)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목표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으로 명시되지 않아야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남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움을 받아야 실현될 수 있는 의존적인 구조의 목표로 설정됨 -개선안: 남성의 육아 참여,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양육자와의 균형 있는 상 호작용 기회 확보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	
불필요한 여성 특정	-정책명, 내용에 여성을 특정해 임신·출산·양육에서 여성의 책임이 강조됨 -임신·출산은 여성이 하는 것임은 불변의 진리이므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는 '여성'을 구분지어 특정할 필요가 없음 -임신·출산의료비 대폭 경감'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범위 확대'(p. 131)의 내용에서 '여성 장애인'을 특정 -개선안: 직접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임을 규정에 명시하고 사업명에는 여성 장애인을 특정하지 않음이 적절 -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제도'(p. 301) - "부모 학생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과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 시휴학할 수 있도록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p. 301) -개선안: '임신 또는 출산하는 대학(원)생,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시부모학생' 등으로 표현 변경 -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p. 385) 사업 내용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기간 동안 고용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근로자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 등 사업장의 위법행위 적발 강화"(p. 385) -개선안: '임신근로자'라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수 있음에도 여성을 특정	

구분	내용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의 '대체인력 지원서비스 강화'(p. 412) 사업의 대상 - "대체인력 구인기업 및 구직자(특히, 사회 초년생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p. 412) -개선안: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구직자'로 표현되어도 무방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영역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pp. 385-388, p. 400, pp. 407-408, p. 420, p. 422, pp. 433-434, pp. 436-437, p. 439) -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전제 -출산과 육아 책임 및 제도 사용이 더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야 함에 도 '모성보호'라고 언급함으로써 '부성보호'에 대한 시각을 결여 -개선안: 육아휴직 등의 분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책임 강조를 위해 '부성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등 부성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
성차별적 용어	-출산력 대 출생 ·영어 Fertility라는 인구학 용어 해석의 문제 ·통계용어와 정책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안: 조사, 통계, 학문적으로 는 출산력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인식에서 거부감이 적은 출생 사용 -직업인 표현 앞에 여(女)를 붙임 → 불필요한 '여'라는 접두어 삭제 - '처녀' → '첫'이라는 접두어로 대체 - '미망인' → 사용 안 함 - '유모차' → '유아차' - 성차별적 용어와 표현들은 그 영향이 암묵적이고 은밀하여 이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부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단지 관성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들까지 본 과제에서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 -최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임. 혐오란 그 밑바탕에 혐오정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저변의 맥락들과 같이 논의되어야 함 -표면화된 용어를 넘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 대책임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제기한 젠더 이슈는 1) 돌봄의 주체로 여성을 전제, 2) 남성의 역할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 3) 불명확한 여성 특정, 4) 모성보호였다. 1) 돌봄을 주체로 여성을 전제하는 사례로는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p. 42),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확충(직장보육

설 설치 지원)'(p. 416)이 있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여성의 고용학대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과여성이 동일하게 취업 중이라도 여성이 아이 돌봄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을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만조건을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p. 293, p. 299, p. 309)도 '엄마'를 특정함으로써 가족 내 성역할을구분하고, 돌봄에 있어 엄마의 역할과 책임을 상징화하고 있다. 그래서사회적 돌봄 교실(가칭) 등 가정과 엄마가 일차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닌주체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사업명을 변경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돌봄에서 여성과 남성이 지금보다 균형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2) 남성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을 전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p. 424)에서는 목표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남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실현될 수 있거나 혹은 남성의 행동에 따라 실현여부가 결정되는 남성 의존적인 정책 목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육아참여 활성화는 노동자인 부모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아동 입장에서는 여러 양육자와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당위성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정책명이나 내용에서 3) 여성을 특정함으로써 임신·출산·양육에서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다.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p. 131)의 내용에서 '여성 장애인'을 특정하고,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육아휴학제도'(p. 301)에서 '여학생'이라 지칭하며, '스마트 근로감독시스템 구축'(p. 385) 사업 내용에서 '임신근로자'에 '여성 근로자'라고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대체인력 구인기업 및 구

직자(특히, 사회 초년생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등)(p. 412)'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사업명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삭제하고, '임신 또는 출산하는 대학(원)생,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시 부모 학생'으로 표현을 변경하며, 의미 전달이 충분한 '임신근로자'로만 서술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구직자'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영역에서 4) '모성보호'에 대한 언급 (pp. 385-388, p. 400, pp. 407-408, p. 420, p. 422, pp. 433-434, pp. 436-437, p. 439)은 일·가정 양립을 여성 근로자에 국한한 것으로 서 이는 '부성보호'에 대한 시각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육아휴직 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책임과 '부성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부모권'으로 대체하는 등 부성권의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저출생 영역에서의 성차별적인 용어도 논의했다. 우선, 영어 Fertility 라는 인구학 용어인 출산력 대 출생의 논쟁에 관해서는 조사, 통계,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인구학의 용어인 출산력을 유지하되 정책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기에 거부감이 적은 출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직업인 표현 앞에 여(女)를 붙이는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여'라는 접두어를 삭제하고, '처녀'는 '첫'이라는 접두어로 대체하며, '미망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모차'는 '유아차'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했다. 표면화된 성차별적 용어와 표현 이면에는 혐오정치가 작동하고 있어 관성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들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저변의 맥락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젠더 감수성을 키워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성차별적 언어가 사용되지 않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5.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의 주요 내용

고령사회 젠더 이슈를 심층 논의했다. 앞서 성별 실태 분석을 한 바와 같이, 저출생 영역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성별 통계와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개선도 되어 왔지만, 고령사회 정책과 현상에서는 성별 통계자료가 적었고 이슈에 대한 논의도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생 영역과는 논의의 차원이 다르지만, 고령사회 현상의 핵심적인 이슈였던 수명, 빈곤, 건강, 연금, 연령, 대인관계, 돌봄 등도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젠더를 확장하여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본론에서 논의한 고령사회 젠더 이슈 내용은 〈표 7-6〉과 같다. 첫째, 수명과 관련하여 한국 여자와 남자 간의 기대여명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기대여명 순위는 상승 추세이지만남자의 기대여명 순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로 계산되는 의존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어 생을 마감하기까지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긴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둘째, 부부 연령 차이는 성인 전반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인 부부가 맺어질 결과가 노년기에 부각되는 점을 이슈로 제기했다. 1990~2018년 남자가 여자보다 3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율이 정체 상태라 앞으로도 이 러한 추세는 한동안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었다.

셋째, 빈곤과 관련해서는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산소득과 공적연금을 보유한 비율은 남자 가구가 여자 가구보다 높았다. 반대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은 여자 가구가 남자 가구보다 높았다. 노인의 성별 소득 원천 차이는 가구 단위보다개인 단위로 분석했을 때 더 커졌다.

〈표 7-6〉 고령사회 젠더 이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명	-한국 여자와 남자 간 기대여명 차이는 줄어듦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기대여명 순위는 상승 추세이지만 남자 의 기대여명 순위는 개선되지 않음 -의존수명(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차이): 여자 〉 남자
부부 연령 차이	-남자가 여자보다 연상인 부부가 다수인 결과가 노년기에 부각됨 -1990~2018년 남자가 여자보다 3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율이 정체 상태. 앞 으로도 이 추세는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빈곤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이 짧은 여성 노인 빈곤율 높음 -재산소득과 공적연금을 보유한 비율: 남자 가구 〉여자 가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 여자 가구 〉남자 가구 -가구 단위보다 개인 단위에서의 성별 소득 원천 차이 큼
경제활동	-노년기 일을 하는 비율: 남자 〉 여자 -일을 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남자〉여자), 용돈 마련(여자〉남자) 성별로 이분화된 직종,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가 노년기에도 지속 -단순노무자 비율: 여자 〉 남자 -일 내용: 운송·건설(남자〉여자), 경비·수위·청소, 가사·조리·음식(여자〉남자) -종사지위: 상용근로자(남자〉여자), 임시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여자〉남자)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시장형·공익형(여자〉남자), 시니어인턴십·재능나눔·인 력파견형(남자〉여자) -노령연급수급자 수(남자〉여자), 장애연금수급자 수(남자〉여자), 가족연금수급 자 수(여자〉남자)
상속	-상속에 대한 인식 성평등해짐 -상속 행태는 여전히 장남 중심. 차녀 이하는 상속 배분율 특히 낮음
성생활	-인식: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85세이상 연령대, 무배우자, 기능상태 제한 있어도 10%이상임-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10%-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을 경험한 비율 1.2%로 낮음-성매개감염병: 2010년대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증가-클라미디아감염증과 성기단순포진 증가 폭: 여자〉남자-2011~2018년 첨규콘딜롬 신고 건수 증가: 남자〉여자-성범죄자: 남자〉여자-강간과 달리 강제추행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50대이상 강간,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 적지 않게 발생공식적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인 노인 간 성추행 발생(예: 요양보호사)-정확한 통계는 없고, 성추행 예방과 발생 시 처벌 노력 미흡
돌봄	-돌봄 수혜, 미수혜 비율: 여자 〉 남자 -사회적 돌봄 종사자의 성별 편차(여자〉남자) 크고 심화되는 추세 -사회적 돌봄 남성 노인 배제 없어야 여성 노인이 전담하는 문제 감소 -아들, 남편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 다수
성정체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생애과정 관점 적용
인종 생애과정	-다문화가정의 이중 돌봄과 나이 듦 -생애주기에서 생애과정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넷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노년기에 일을 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일을 하는 이유도 성별 차이가 있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반면,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성별로 이분화된 직종,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가 노년기에도 계속됐다. 단순노무자 비율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일의 내용 측면에서 운송·건설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한편, 경비·수위·청소, 가사·조리·음식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종사상 지위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종사상 지위 중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지만, 임시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정부지원일자리 참여 비율에서 시장형·공익형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연금 중에서 노령연급수급자 수와 장애연금수급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지만, 가족연금수급자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다섯째, 상속에 대한 인식은 성평등해졌다. 하지만 상속 행태는 여전히 장남 중심이었고, 젠더와 출생 순위가 결합되어 둘째 이하 말들이 특히 적은 상속 배분율을 보였다.

여섯째, 성생활과 관련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지만, 85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무배우자이어도, 그리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어도 10% 이상의 노인들이 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대상 성교육, 성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10%였지만,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을 경험한 비율은 1.2%로 낮았다. 성매개감염병과 관련하여 2010년대에는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이 증가했다. 클라미디아감염증과 성기단순포진의 증가 폭은 여자가 남자보다 컸고, 이와 반대로 2011~2018년 첨규콘딜롬 신고 건수 증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컸다. 성범죄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강간과 달리 강

제추행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강간, 강 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공식적 돌 봄 제공자와 수혜자인 노인 간 성추행도 발생(예: 요양보호사)하지만 정 확한 통계는 없고, 성추행 예방과 발생 시 처벌 노력도 미흡했다.

일곱째, 노년기 돌봄 수혜와 미수혜 비율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여자가 대다수인 사회적 돌봄 종사자의 성별 편차가 심했는데 이러한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였다. 사회적 돌봄에서 남성 노인을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여성 노인이 전담하는 문제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들이나 남편에 의한 노인학대 발생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중 돌봄과 나이 듦을 주목해야 하며, 생애주기에서 생애과정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했다.

고령사회 젠더 이슈 논의 내용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명과 관련해서는 의존수명이 여성이 남성보다 길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돌봄 기간의 문제가 지적된다. 현재까지 여성 노인의 돌봄 문제를 수명 성별 격차로 기인한 '소외된 여성 노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미흡하였다. 복잡한 수명 성별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명 불평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노인 돌봄 문제를 고령사회의 젠더 이슈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여성보다 남성이 연상인 부부가 다수이며 미래 노년기 부부의 연 령 차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의 성별 격차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사별한 배우자를 둔 여성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 같 은 사회적 이슈는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셋째, 빈곤, 경제활동에서 여성의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으로 경제활동 기간의 축소와 경력단절로 협소해진 재취업 전망 등 공적 영역에서

의 여성의 무력감은 생애과정에서 여성 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지며 경제활동도 제한시키는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사로 공적 영역활동의 지속과 확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라는 동시다발적 사회적 현상을 긴밀하게 연결 짓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따라서 노인 여성의 빈곤과 제약적인 경제활동은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에서 심층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속에 대한 인식은 다소 성평등해지고 있지만, 상속 행태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잔재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젠더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문화적 무의식 상태 (Eagleton, 2014)'로 사회 구성원들의 체험을 통해 일상의 문화적 관습으로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적 행태이며, 기존의 여성과 남성의 성별 특성이라고 보던 관점을 탈피하여 거시 사회적 관점으로서 젠더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했고, 바람직한 성생활 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면 성병과 성범죄가 심각해질 수 있다. 노인 대상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가 은폐되고 억압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권리 보장과 보호 와 예방 차원에서 노인의 섹슈얼리티가 공론화되게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성범죄에 대처하는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젠더에 따른 돌봄 수혜 및 미수혜 비율이 모두 여성에게 높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적 돌봄 제공은 여성 노인에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에 따른 학대는 여성에게 더 빈번히 일어남에 문제가 지적된다. 여성이 돌봄 노동의 전담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방조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돌봄 제공을 남성 노인에게 할당하는 만큼 여성 노인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

된다. 사회적 돌봄 종사자의 성별 격차에서 보았듯이, 여성과 남성 노인의 제더 평등적 고용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친족관계의 돌봄 학대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노인인 점에 주목하여 친족관계로부터 여성 돌봄 가구를 위한 돌봄 인식 개선, 학대 신고 접수 및 처리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거시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여성이라는 젠더로 인해 생애과정에서 짧은 경제활동, 그로 인한 재산소득과 공적연금 박탈, 인식과는 다르게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상속 행태, 성범죄 피해, 호혜적이지 않은 돌봄과돌봄 제공자로 전담된 이미지 등을 성차 특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젠더로서 접근하는 거시적 관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임금의 성별 분업적 돌봄 노동을 여성 노인이 떠안는 현실은 물질적 실천과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규범과 같은 억압들의 결합으로 기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김주현, 2016), 여성 노인의 젠더 불평등을 생애과정 관점으로 살피고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개선 방향에 따라 정책적 제언을 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1. 원칙: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인구·사회정책을 향해

성인지적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이란 주권자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선택도 낳지 않는 선택도 하면서 늙어가는 제각기 다른 자신의생애를 살아간다. 모든 '인구학적 사실'은 개인들의 생애과정 안에서의행위적 선택과 생애 사건들의 누적된 집합으로 구성된다. 국가발전, 경제성장, 부양인구비 악화나 생산인구 감소 같은 국가중심적·경제적 관점을 벗어나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주권자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정책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본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단지 최근의 페미니즘적인 주장이 아니라 20년 이상 국제사회의 규범적인 인구정책 추진의 방향이기도 하다.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을 도구화하는 접근 방식은 절대 안 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젠더 관점 반영이나 성평등 강조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에게 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수혜자로 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틀을 짜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적인 젠더 평등과 남성의 양육 책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수준, 즉 성관계와 재생산적 건강에 대한 남성의 책임과 역량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교육이 성인 남성과 남자 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포괄적 사회정책으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헬조선' 속에서 제 한 몸 살아가 기도 힘든데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냐고 항변한다. 저출생의 원인을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찾지 말고, 불평등심화와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악화, 이로 인해 심해진 청년층의 경쟁과

압박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구조 때 문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와 경제적 압박은 가족 형성의 욕구를 가로막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서 내 아이를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때에, 아이를 낳지 않은 남녀들은 부모 되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다. 무한 경쟁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여지는커녕 추락의 공 포만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자식들을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교육경쟁에 몰두하는 많은 부모의 행태에 공감하면서도 다시 한 번 자녀 갖기를 망설이게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 의 현재, 나의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젊은 남녀 사이에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내세워 개인을 도구화하는 관점을 벗 어나 결혼이나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 생계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법률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분절적이었던 저출생·고령사회, 성평등 두 영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고 상승효과가 나타나려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성평등정책의 법적기반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앞서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모

(母)인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고 부(父)인 남성도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임신 전 단계의 난임부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의 모자보건이라는 표현은 생식보건으로 변경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에서는여성 노인이라는 단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함으로써 여성 노인은 곧 취약계층이라는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저출생대책에서는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자로서 과도한 책임을지도록 한쪽 젠더에 편중된 관점이 투영된 것과 달리, 고령사회대책에서는여성 노인을 취약계층의예로 제시한 것외에 젠더에 대한인식이부재하여추진체계와 보칙을 통한 보완을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인 여성가족부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다.아울러보칙에서 시행령이라도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영향분석평가와긴밀한관계를 갖도록하는내용을신설할수있겠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개정도 제안한다. 일단, 제24조(경제활동 참여)에서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데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임신·출산·육아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의 육아 책임은 적고 부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생·고령사회와의 연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시행령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의 시행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가하거나 양성평등위원회(제11조)와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제12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에서도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에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저출 생·고령사회 관련 내용·방법을 개정 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제24조 제4항(경제활동 참여)에서는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바로 이 어지는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에서는 부성권을 모성권과 동 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모순이 있어 아버지인 남성의 육아권도 동 등하게 보장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의 연령대가 영유아 또는 아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부모인 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은 명시되지 않아 육아를 돌봄으로 범 위를 확장하는 개정도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제26조 제2항(일·가정 양 립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개정검토 필요 사항이다. 제33 조 복지증진에서는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복지증진과 건강 증진의 대상에서 남성과 성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 제34조(건강 증진) 제1항에 서도 대상을 여성만으로 한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다고 했을 때 모성건 강이라는 부가적인 서술이 불필요한데 이를 덧붙여 여성의 임신·출산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다른 생애주기가 잘 드 러나지 않으므로 삭제가 논의될 수 있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1항에 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여성친화도시는 돌봄의 책 임 측면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성평등친화도시와 같은 목표로 변경될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사박물관도 그 설치 및 운영 취지는 마 땅하지만 여성이라는 한정된 대상으로 명명함으로써 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범위를 제한시키는 역기능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성평등이라는 가치 를 담은 명칭으로의 변경 검토를 제안한다.

#### 3. 방향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성평등정책 간 연계와 협력

앞으로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과 성평등정책은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로드맵에도 성평등 구현이 목표로 설정되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성 평등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과제를 실 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 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저출생·고령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통 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정기적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추진 과제 에 포함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향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에서 교차성이 가미된 성평등정책으로 대상·관점·목표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정책과 통계를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 왔지만, 고령사회, 남성, 세대, 계층에 대한 논의가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거나, 한 성별이나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한 맥락으로 관점의 측면에서는 젠더와 결합된 세대, 연령, 시대, 계층 등의 특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게 교차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대상 중심에서 성평등이라는 목표 중심으로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현재의 정책·제도가 조장하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기를 넘

어서야 한다. 정책·제도에 성불평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책 시행의 결과가 젠더에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하면 발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선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4. 목표: 성평등을 포함 모든 구성원의 포용과 평등 구현으로 확대

성불평등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 간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 고 성별과 연동된 여러 억압기제까지 개선해서 모든 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평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성평등 구현이라는 지향점에 전적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구현'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3대 목표로 적절한지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현상과 정책과 관련된 젠더 차이 및 성차별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제기 를 하며, 성평등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 갈등과 성 차별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본 연구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에 관해 서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여성들에 초점을 맞춰 개선되어 야 한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에서 성별 갈등(11%)은 이념 갈등(41%), 빈부 갈등(28%), 세대 갈등(13%)에 이은 4순위였다. 저출생· 고령사회 현상의 심각성과 전망, 세대 갈등과 빈부 갈등의 개선 전망에서 도 성별 차이가 없었고, 연령, 소득,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컸다. 성 별 갈등은 그래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와 반대로 세대 갈등과 빈부 갈등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 정책에서는 성별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성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10~20대에 집중되어 있어 성별

갈등 완화 대응은 젊은 세대에게 집중해야 하고, 모든 정책에서 젠더를 중심에 두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3대 목표로서 성평등 구현은 범위가 제한적이라 구성원들의 공감도가 낮을 수 있어 젠더에 이념, 계층, 세대까지 포용하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젠더와 결합된 세대, 계층 등의 다른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교차성에도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 5. 대응 방안 마련의 전제조건: 성별 격차 실태 면밀한 진단

저출생·고령사회에서 포용적 성평등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 면 전제조건으로 성평등, 성차별, 성폭력, 젠더 갈등, 성별 인식 차이 등 실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장의 제1~3절 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에서의 성평등은 낮은 수준이어서 성별 격차를 완 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 제 여기에 더해 성별 격차의 추세, 젠더와 다양한 세부 특성 간의 교차성, 교차성에 의한 추세의 다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성별 격차가 이미 잘 알려진 이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 격차가 완화되는지 유지되는 지 확대되는지는 물론 그 변화폭까지 모니터링하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 성, 시점, 수단,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혼인, 출산, 자녀 양육, 일·가 정 양립, 부모부양, 은퇴, 노년기 사회·경제·돌봄생활, 수명 등에서 성별 격차와 시계열 변화 양상이 연령, 코호트, 시점, 계층, 지역 등 어떤 다른 특성과 결부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모든 대상자 를 포용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젠더와 교차된 세부 특성별 시계열 변화를 간과하면 특정 하위 집단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적합성 낮은 정책 대안이 되고 말 것이다.

## 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사례로 하여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대상, 용어, 내용에 대해서 젠더적인 측면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부재 중인 가구에 대한 재방문 안내장 부착, 출산력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개선안도 마련했지만,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이기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이 재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오해는 바로잡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조사 내용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중장기적인 개편 방안으로 국제적인 GGS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정부지정통계, 제331001호)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1960년대 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당시 인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수행되었으며 196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내용과 목적이 조금씩 변화하였는데, 1970년대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출산 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는 모자보건 내용이 추가되었고, 1990년대는 인구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기혼

여성과 20~44세 미혼 남녀로 구분된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조사구 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출산력'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산력이라는 명칭이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같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극단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응답 분포 차이를 극대화하여 통계적인 분석에 활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측정하던 문항이라 가치 및 태도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유용성도 있어 유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문항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여러 조사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평등 지향적 태도에 관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태도와 성평등적 태도의 양극단에서부터 다양한 층위의 응답을 보기로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Generations & Gender Survey<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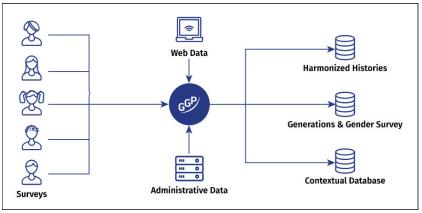
앞에서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문항을 단기적으

<sup>15)</sup> GGP(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중앙조정팀(Central coordination Team) 의 디렉터(Dr, Anne Gauthier)와 부디렉터(deputy director: Dr. Thomas Emery)와 의 면담(2019. 7. 30.) 결과를 요약함.

로 보완했을 때를 가정한 제안을 했지만, 중장기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어, 이때를 대비해 국제적인 조사인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를 참고 사례로 살펴보겠다.

최근 유럽에서도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에서의 저출생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저출생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국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GGS가 실시되고 있다.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다른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 30년간 3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GGS는 2020년, 2021년에 새로운 라운드 (round)가 시작될 예정이다.

GGS는 과거 1990년대에는 명칭이 출산력과 가족 조사(Families and Fertility Survey)였지만, 이후 명칭을 세대와 젠더 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로 변경했다. 명칭 변경은 조사 내용과 대상의 확대에 따른 결과이다. 조사 내용은 출산력 자체보다는 젠더, 생애주기, 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양화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상한도 49세에서 79세로 확대했다. GGS의 조사 대상은 국가별 약 1만 명의 19~79세남녀 또는 약 5000명의 19~49세 남녀 개인이다. 조사의 목적은 인구와 가족 변동(dynamics)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여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조사 방식은 횡단조사(cross-sectional)와 차별적인 종단(longitudinal)조사이다. 종단조사도함으로써 개인의 출산 의향과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었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GGS의 데이터 관리 구조는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Generations & Gender Survey의 데이터 관리 구조

자료: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enerations & Gender Survey, https://www.ggp-i.org/, 2019. 10. 27. 인출.

성역할(gender role)을 이해하는 것은 출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가치관 등에 관한 문항이 GGS에도 있다. 그러나 GGS에서는 성역할 및 가치관 문항에 대한 젠더 이슈가 불거진 적은 없었다. 이는 성역할과 가치관에 대한 문항이라도 남자와 여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라 거부감이 적고, 조사 대상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잘 모름' 또는 '무응답 (생략)'을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GGS에서는 동성에, 과거의 동거 경험에 관한 문항이 이슈가 되었다. 특히 과거의 파트너에 관한 문항이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다. GGS를 진행하는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GGP) 중앙본부에서는 성에 중립적인(gender-neutral) 조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GGS가 한국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 혼인지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내용을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젠더, 생애과정, 가족 등으로 다양화한다. 셋째, 종단조사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태도와 함께 이행 행태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성 정체성, 파트너 등 젠더와 관련된 민감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하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GGS처럼 한국도 다른 국가와 국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문항과 대상자를 설계한다.

### 6. 사회현상·정책태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

정책 대상자의 성별과 결합된 특성까지 세분화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4장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인식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번 보고서에서 15세 이상 국민 2000명에게 실시한 전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혼 인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 고용안정성, 이념 성향,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사회현상 전망과 정책 선호에서 복잡한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사회현상과 정책 태도에서 국민의 특성별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부터 파악하고, 심층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한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성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반감을 완화하고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정책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인식 차이가 큰 저출생·고령사회 현상, 이슈,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겠다. 우선,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의 심각성과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개선 전망에서는 연령과 계층에 따른 인식 차이 있었고, 젠더는 저출생·고령사회 개선 전망에서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세대 갈등 및 빈부 갈등 개선 전망에 관해서도 연령, 소득, 이념적 성향별 차이가 있고, 젠더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오

히려 남성이 저출생·고령사회의 개선 전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식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도출된 새로운 조사 결과라고 할 수있다.

비록 저출생·고령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 전망에서는 젠더 차이와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성차별의 심각성, 성별 갈등의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했다. 성차별과 성별 갈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여성들이 더 심각하게인식하고 있어 여성들에 초점을 맞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차별과 성별 갈등은 혼인 여부, 이념 성향과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성차별과 성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젠더와 함께 혼인 여부, 이념적 성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

국민연금 성별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 장남 중심 유산상속, 노인 대상 성폭력과 같이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서의 정책적 개입에 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 취업지원정책, 출산장려정책, 아동돌봄지원정책, 노인돌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 성평등정책, 지방분권정책에서도 여성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들이 이러한이슈와 억압을 받고 있고,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결혼장려정책에서는 남성들이 인식하는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높아 이역시 개선하려는 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합계출산율로 측정되는 목표 수치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남녀 불 문 다수의 시민이 출산장려정책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어 출산 에 대한 지원정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장장려정책에 대한 저항과 반감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모든 정책에서 젠더를 중심에 두는 것도 옳 은 것만은 아니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정년퇴직 연령 상향, 노후소득보장 정책에서는 성별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 갈등으로 이념 갈등이 41%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세대 갈등(13%)과 성별 갈등(11%)은 빈부 갈등 (28%)에 이은 3~4순위였다. 정책마다 고용안정성, 혼인 여부, 소득, 교 육수준, 연령대 등 각기 다른 특성이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모 든 정책에서 드러나는 일관적인 특성은 이념적 성향이었다. 진보적일수 록 대부분의 정책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반대로 중도 또는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회 구성원은 정책적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 펴야 한다. 아울러 중도 또는 보수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국민도 포용 할 수 있게 이들이 정책적 필요성을 덜 인식하게 된 이유도 파악하여 정 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과 이슈에 따라 젠더뿐만 아니라 연령, 계층, 이념 성향별로 겪는 주된 갈등의 원인 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 7.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시행

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특히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의 생애전망 변화는 물론이고 청년 남성들의 생애전망도 저출생 추

세의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개입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청년층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지만, 청년층에 대한 접근에 젠더 관점은 부재하다. 청년층에 대한 연구도 담론에 그치고, 청년층에 대한 젠더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년 여성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그저 '여성'의 목소리로 다뤄지고, '청년층' 그 자체는 남성의 표준 생애모델을 기반으로 재현되고 관성적으로 이해된다(배은경, 2019). 최근 청년들의 삶은 전형적인 근대적 표준 생애로부터 이탈하고 생애전망의 재구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젠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청년 남성 생애전망과 청년 여성 생애전망의 미스매치가 앞으로도 심화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남성성의 부상과 젠더 관계의 재편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대한 젠더 관점도 부재하다.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의 상이한 욕구와 경험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인을 젠더가 없는 고립된 개인으로 상정하고 소득, 주거, 보건,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사회대책 중에서 특히 돌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가 작동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 비혼 자녀가 노인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등에서 작동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관계, 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 일자리가 저임금 여성일자리로 간주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행계획에서는 남녀의 가족 돌봄 공유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도입되어야 한다.

#### 8. 청년, 젠더,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제4장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은 전 연령대에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슈들이다. 그런데 특히 15~19세와 20대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성별 갈등을 꼽아 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은 30대 이상 세대와 차이를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차별, 불평등한 성역할 구조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출산을 원하는 경우 걸림돌을 제거하고 출산을 이행할 수있게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접근이다.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의 성적 불평등'은 결혼 과정 자체로도 남자와 여자가 각각 처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느낄 수 있으며(예를 들어, 남성은 집 마련에 대한부담, 여성은 예비 시댁과의 관계 등), 결혼 이후의 삶에서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맞벌이의 경우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분담, 홀벌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전담, 배우자와의 소득 격차 등 배우자와의관계에서만도 다양한 성적 불평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여성의 출산 결정은 앞으로 어머니로서 살아갈 결심과 더불어 이루어지기에, 여성의 생애전망상의 결정은 출산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정책에서도 저출생 추세의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삶의 맥락'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기혼 가구 지원에서 비혼 청년 지원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근거가 된 것은 한국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평균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며, 저출생 추세는 기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 출산을 못 하고 있는 여성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인구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다. 청년 남성들에게 일

자리와 집을 주면 여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출산을 할 것이니 저출생 추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가 정책 추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여성의 비혼이나 혼인 지연이 물적 조건만을 이유로 하지 않으며, 가족생활을 위해 여성의 개인 생활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결혼이 많은 상태에서 독립성과 개인성의 유지를 위해생애전략으로 택해진 결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으며,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임신의 수 역시 상당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대책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봤을 때, 여전히 돌봄의 주체로 여성을 전제하거나, 남성의 역할에 의존적인 여성의 생활을 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여성을 특정하거나, 모성보호만을 부각시키는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용어, 대상, 규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적 접근은 여성의 어려움 해소와 함께 남성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 이 보고서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청년 남성이 다수이지만, 반감을 가진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가부장제의 혜택을 보거나 여성을 억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역시 약자이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이태윤, 2019. 4.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남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에서 그비율이 가장 높으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 여성 혐오, 여성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2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8).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 지연은

20대 남성에게 주요한 불안 요소로 여겨질 수 있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 상대로 여겨지는 안정적인 고수입 정규직 자가 보유 남성이 되는 것이점점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성 청년들은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역할 기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에 반대하는 비율이 20대 남녀 모두 70% 정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이소영 외, 2018a), 여전히 남성들은 결혼 및 신혼 주택 비용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이로 인해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박세준, 2018. 4. 2.). 성미애, 최연실, 이 재림(2015)의 연구에서도 무자녀 기혼 30대 남성의 출산 연기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요구로 외벌이의 어려움과 맞벌이 육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남성 청년들이 가진결혼과 주택 비용 마련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러한 성별 분업과 성역할관은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민가영(2016)의 연구에서 계층과 젠더에 따른 20대의 성별 분업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은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또는 양육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남성이 상당한 고소득자이며, 계층적으로 예외인 일로 해석하고 있다. 20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를 둔 전업주부, 돌봄 노동을 구매하는 여유로운 맞벌이 등의 성별 분업 방식은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으로 이해되며, 생계형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맞벌이에 비해 여성들이 선호하는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성별 분업의 형태가 계층적 조건 속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열악한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남성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녀 양육이나 가족에

시간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여성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면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성과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부담을 남성생계부양자에 대한 기대로 봉합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 난다(민가영, 2016).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젠더 문제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이 적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남성은 가정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역할을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은 그러한 조건의 남성과 결혼하기를 기피하거나 출산을 회피할 개연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정책 대상자의 단위를 부부로 확장하여 계층과 같은 상대방의 특성까지 함께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가족원 누가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든 부부 단위에서는 결국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며, 부부 단위의 안정적소득이 선행되어야 가사와 육아도 수행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성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성차별적 요인이 될 것이고, 부부의 집값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결혼하는 부부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높은 집값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는 저소득부부의 맞벌이 혹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게 된다. 육아를 위해 부부 중한 사람이 쉬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낮은 쪽으로 육아의 부담이 부과될 것이고 이는 성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당장 안정적이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와 육아의 공공성이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일(노동) 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가산점을 부과하기보다는 성별과 무관하게 직무능력으로 직원을 선발하고 승진하는 평가제도로 개선하는 방향을 앞으로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아직은 남성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에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문화가 형성될 때까지 소

득대체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휴직 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강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9. 노년,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이 보고서 제6장의 고령사회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 내용을 통해서 도출한 중고령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여성의 '홀로 늙어감': 사망, 노동

남성 연상 결혼이 보편적이며, 세월이 흘러도 그 기조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남편 사망 후 여성 혼자 늙어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여성 노인이 연금을 수령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계속 남아 노동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여성의 빈곤화 또한 기정사실로 예측이 된다. 이처럼 여성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삶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흔히 젠더 패러독스(gender paradox)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령, 남성은 여성보다 사망률(mortality)이 높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 즉 이환율(morbidity)이 높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늙어 간다는 것이 여성에게 더 유리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근거로 늙어 간다는 것은 여성 노인에게 좀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현재의 여성 노인들에게 있어 노동생애는 거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일을 한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생애 자산을 축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금수령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거나, 용돈 마련을 위해 이른바 '소소한' 일자리에라도 고용된 여성 노인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등을 통해 입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 노인이 홀로 살아남아 겪을 수 있는 질병, 외로움, 빈곤등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이라는 젠더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노인들의 건강, 노동, 연금 지원체계를 통합 관할하는 부서 및 기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나. 여성의 돌봄 기여와 전문성 인정

노노케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남성 노인들을 폭넓게 수용해야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여성 노인들만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 여성 노인들의 돌봄 역할에 대한 높은 기여는 인정해야 한다. 현재 여성 노인들이 살아온 사회는 가족 내 돌봄을 비롯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점지'된 영역이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호트별로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과 비교하여 친밀한 관계 및 조화를 추구하는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남성 노인들이 충분한 돌봄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서 여성 노인에게 돌봄 관련 일이 쏠린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은 남성과 여성 각자가 살아온

세월에서 습득되고, 길러진 능력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노년기에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을 제공하여 고루 일자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또한, 40~50대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 남성 노인에 의한 배우자 학대 등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적지 않아 그 상황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사전에 경감시켜 줄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돌봄을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익숙하지 않은 남자가 이를 맡게 되었을 때 학대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지만,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소진을 장기간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유와 상황이 어떻든 학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국가와 사회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지원은 필요하다.

# 라. 돌봄 제공자로서 남성의 역할 확대

중고령 남성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남성의 돌봄 기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표 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2년 정도 기대여명은 길어도 남성보다 의존수명이 2년이 긴 것을 고려할 때, 동년

배의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 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돌봐 줘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나라 의 남성은 생애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돌봄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되면서 돌봄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부부 간 노노케어를 해야 하는 시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인 돌 봄의 주체가 주로 딸이나 며느리인 이유 중 하나도 남편이 그만큼 돌봄의 기능을 능숙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대와 관련하여 제 6장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이 돌봄에 익숙하지 않을 때 학대 까지 발생할 수 있고 남성의 배우자 학대 비율이 급증한다는 데이터를 감 안하면 남성의 돌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매우 시급하 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가 2008년 3일 무급 휴가로 시작한 이후 2019년 10월부터는 10일 유급 휴가로 증가해 왔고. 실제 육아휴직 남성 비율도 2009년 1.4%에서 2016 년 8.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남성이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부모 돌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정책적인 지 원을 확대하여 남성이 노년기에 돌봄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 와야 한다.

남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일자리에서의 성적 역차별로 고용 기회를 잃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6-31〉 과 〈표 6-32〉에서 제시한 대로 65세 이상 남성이 노노케어 활동에 실제참여하는 경우는 노노케어 참여를 희망하는 남녀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펜스 룰, 즉 남성 지원자 스스로 성희롱 및 성범죄 위험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여성 수혜자와의 매칭을 거부하는 행위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노케어의사업 담당자 측에서 남성 제공자와 여성 수혜자 간의 매칭을 하지 않아

남성 노인이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남성 노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기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편에서는 남성에게 돌봄의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범죄의우려로 이러한 돌봄의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이다. 남성 노인이 근력 등 신체적인 기능 면에서 여성 노인보다 나을 수 있고, 이는 근력이 필요한 돌봄에서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노케어 등 돌봄의 현장에서 남성성을 범죄 위험요인으로 보며 업무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성적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시스템적인 접근을하고 사회적 돌봄 일자리의 남성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 마. 가부장적인 상속 행태 개선

둘째, 〈표 6-19〉~〈표 6-21〉에서 나타난 장남 위주의 상속 실태가 여성 노인의 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딸의 시부모에게서 남편으로 전해지는 상속도 있기는 하지만, 장남 위주의 상속은 딸의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 사후에 이뤄지는 상속은 배우자에게 50%를 분배하게 되어 있지만, 상속이 생전에 이뤄지거나 증여를 하면 사후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으로는 아내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 노년기 여성의 빈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은 임시근로나 일용근로 등 저임금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표 6-12〉~〈표 6-14〉의 결과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아내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자산 형성이 되지 않으면 빈곤층이 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의 상속이 생전에 얼마나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 노인에게 배분되는 몫은 얼마이며 얼마나 소외되는

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상속으로 인한 빈곤화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실제로 상속 과정에서 빈곤에 처하는 여성 노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바.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의 생애과정에 관심 촉구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 남성의 고령화와 그와 관련된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관심도 확대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서적인 발달과 안녕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큰데, 제6장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 관계망이 좁아지고 정서적, 도구적 도움까지 감소하게 되면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외로움은 우울증 등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는 이들이 노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 등 삶의 경험을 사회복지학·심리학·가족학·인구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일반적 노화 과정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의 가능성을 살펴 이를 예방하려는 사회·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제3절 한계점과 연구 의의

이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했거나 제한점으로 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정책이라는 제목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이라는 부제를 달아 연구 범위를 한정했지만, 인구정책의 범위는 인구의 국내외 이동, 지역의 인구구조 다양성과 변화 등 더 넓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 특성이나 지역을 넘나드는 이동도 젠더와 결 합될 수 있는 특성들인데 이 보고서는 세대와 계층에 초점을 맞춰 이를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지역마다 다르고 그 에 따른 젠더 이슈도 복잡할 수 있어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지역 내 젠더 이슈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방향성은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보고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하고,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정책의 연계를 위한 큰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개별적인 과제, 제도, 사업 단위에서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9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는 총 163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부 과제들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차성이라는 분석틀을 강조하고자 했으나 모든 분석 내용과 정책 대안이 이 관점에 근거해 도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저출생·고령사회현상이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될 수 없기에 교차성만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그로 인해 일부 분석 결과와 정책 대안에서는 교차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차성도 결국 여성학 이론 중 하나이므로세대, 계층과의 중첩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별 차이를 밝힌 분석 결과이거나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면 젠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젠더 관점이 사람마다 다양해서 몇 가지 쟁점에서는 연구진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평등주의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각자의 견해가 있

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거나 때로는 반박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소 상반되더라도 보고서에 이를 모두 담고자 했다. 그러므로 보고서의 내용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이 합의한 의견도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정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성에 기반한 젠더 관점에서 정책과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향성도 제시했다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소설과 영화로 유행한 '82년생 김지영'은 그녀가 34살까지의 생애 과정에서 경험해 온 성차별을 담아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김지영 씨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정대현 씨, 고령의 엄마 미숙과 아빠 영수, 어린 딸 아영까지모두가 성평등한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어 갈 수 있게 이 보고서가 작은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강혜규·김회성·박세경·김동진·오욱찬·유재언·김지연·김진희·이주민(2019).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 Description.do?id=009213&pageFlag=A. 2019. 9. 26. 인출함.
- 권나경·양난주(2017).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3). 141-165.
- 김영미(2010).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26, 3, pp.65~89.
-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pp.103-152.
- 김유선(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8.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제 101호.
- 김재민(2015). 성평등, 젠더 분석을 넘어 교차성으로. 여성가족리포트 제1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주현(2016), 한국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49-70.
- 김혜숙(200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집. 여성가족 부,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
- 김홍중(2014).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 서. 한국사회학. 49(1), pp.179-212
- 대한민국 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가영(2016). 젠더·계층의 교차를 통해 본 20대 대학생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 여성학, 32(2), pp.133-147.
- 박세준(2018. 4. 2.). "결혼 해봐야 돈만 들지… 독신이 낫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401/89399594/1 에서 2019.12. 1.인출.
- 배은경(2009). '경제위기'와 한국여성-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페미니즘연구. 9(2). pp.39-82.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문화, 3(2), pp.37-75.
- 배은경(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시믕로. 젠더와 문화, 8(1), pp.7-41.
- 배은경(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젠더갈등: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강원택 외 (2019).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아시아, pp.285-316.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8 감염병 감시연보.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산 정책 요구도. 가족과 문화, 27(4), pp.1-33.
- 송다영(2019). 젠더와 격차, 사회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56-69.
- 신경아(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연구, 10(1), pp.89-122.
- 안상수·백영주·양애경·강혜란·윤정주(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양현아(2005),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 편,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사람생각.
- 여성부(2002). 여성정책용어사전.
-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a).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b). 201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pp.67-106.
- 이정복(2017)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pp.9-31.
- 이재림(2015). 성인자녀의 상속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 문화. 29(1), pp.225-264.
- 이태윤(2019. 4. 8.). 20대 남성도 약자…성차별 덕 본건 페미니즘 찾는 405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810에서 2019.12. 1. 이출.
- 임정미·강은나·이윤경·김혜수·양찬미·김주행·...·임지영(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
- 정성호(2018).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41(3), pp.41-63.
- 주재선·전기택·송치선·장영식(2016). 2016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김영란·송치선·길혜지(2017). 2017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윤덕경·정성미·송치선(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오미애·강은나·김경래·...·홍송이(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워.
- 정재훈·김수완·김영미·최혜진·정은수·김승혜(20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 여성학, 24(2), pp.5-37.
- 최종렬(2017), 복학왕의 사회화: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1(1), pp.243-293.
- 최현수·여유진·김태완·임완섭·오미애·황남희·...·김솔휘(2016). 한국의 노인빈 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함).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19. 10. 18. 인출함).
- 통계청(2015). 2014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 통계청(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pp. 326-328.
- 통계청(2019). 2018년 혼인·이혼 통계.
-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한국국학진흥원(2018). 2018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 한국국학진흥원(2019). 2019년 제11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 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각 년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 동향.
-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21(3), pp.99-132 Eagleton, T. (2014). Ideology, New York, NY: Routledge.
- Laumann, E. O., Paik, A., Glasser, D. B., Kang, J. H., Wang, T., Levinson, B., ... & Gingell, C. (2006). A cross-national study of subjective

- sexual well-being among older women and men: Findings from the Global Study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2), 143-159.
- UN, 1994/2004, Key Action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th Anniversary Edition.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2018.

####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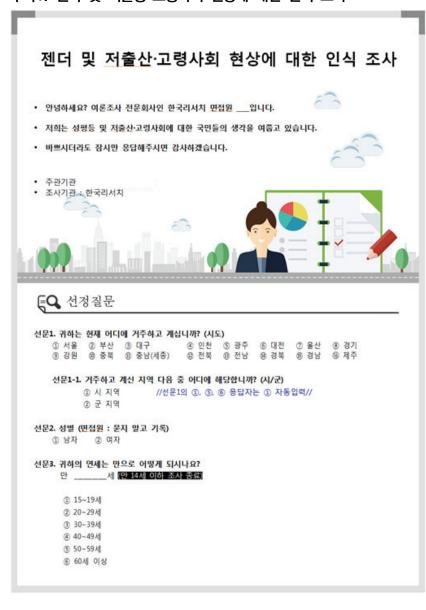
- 권혜련. (2017.10.31.). 대한민국 남녀평등의 진짜 성적표는?. 조선일보. 2019. 10. 18. 인출함
- 윤경호. (2018.07.02.). (필동정담) 성(性)차별 용어. 매일경제.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7/416388/.2019. 10. 18. 인출함.
- 임기창. (2014.5.2.). '여성발전기본법' 19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연합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40502196700005.2019. 10. 18. 인출함.

#### 〈홈페이지 검색〉

- 국가통계포털(KOSIS). 기대여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 2BN01&conn path=I3 2019.10.7.인출.
-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 초혼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1990~2018.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8&conn\_path=I3 2019.10.9.인출.
-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322&tblId=DT\_32202\_B006&conn\_path=I3) 2019.10.9.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유리천장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 ling-index. 2019.2.8.인출.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2019.9.23.인출.
- 법제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www.moleg.go.kr 2019.6.10.인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UNDP「2018년 성불평등 지수(GII)발표', 정책뉴스 2019.2.7.인출.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https://www.kwdi.re.kr/center/gia/rule.do. 2019.2.7.인출.
- http://hdr.undp.org/en/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2019.2.7.인출.
-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 ling-index. 2019.2.8.인출.
-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enerations & Gender Survey, https://www.ggp-i.org/2019.10.27. 인출함.
- OECD Family database, Employment profiles over the life-course p.2(www.oecd.org/els/family/database 2019.10.18.인출)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7/416388/
-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s p.2(www.oecd.org/els/family/database 2019.10.18.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www.oecd.org/els/family/database 2019.10.18.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Gender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p.6(www.oecd.org/els/family/database 2019.10.18.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Marriage and divorce rate p.3(www.oecd.org/els/family/database 2019.10.18. 인출)
- OECD health Data 2017(stats.oecd.org 2019.1.4.인출)
- UN Entity for Gender Eau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https://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efinitions.htm 2019.10.8.인출.

## 부록1. 젠더 및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 **[Q** 젠더 및 <u>저출산</u>·고령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 1. 다음 중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 ① 남녀 간 성별갈등
- ② 고령증과 젊은이 간 세대갈등
- ③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갈등
- ④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
- ③ 수도권과 지방 또는 영호남 간 지역갈등
-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조금 심각하다
- ④ 아주 심각하다
- 3. 한국의 전반적인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③ 조금 심각하다
- ④ 아주 심각하다
- 4. 귀하는 <u>남자/이자(선문2 응답값 제시)</u>라는 이유로 차별, 불이익, 불공정한 대우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경험한 적 전혀 없음
- ② 경험한 적 별로 없음
- ③ 경험한 적 가끔 있음
- ④ 경험한 적 아주 많음
- 5. 미래 한국의 성별갈등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아주 악화될 것이다
- ② 조금 악화될 것이다
- ③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 ④ 조금 개선될 것이다
- ③ 아주 개선될 것이다
- 6. 미래 한국의 세대갈등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아주 악화될 것이다
- ② 조금 악화될 것이다
- ③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 ④ 조금 개선될 것이다
- ⑤ 아주 개선될 것이다

### 7. 미래 한국의 <u>빈부갈등</u>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아주 악화될 것이다
- ② 조금 악화될 것이다
- ③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 ④ 조금 개선될 것이다
- ⑤ 아주 개선될 것이다

#### 8. 미래 한국의 <u>저출산·고령화</u>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① 아주 악화될 것이다
- ② 조금 악화될 것이다
- ③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 ④ 조금 개선될 것이다
- ③ 아주 개선될 것이다

#### 9.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및 일자리에서의 성적 불평등
- ② 결혼 및 결혼 이후 삶에서의 성적 불평등
- ③ 임신-출산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받는 성적 불평등
- ④ 미성년자녀 양육 시 성적 불평등
- 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의 성적 불평등

### 10.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낮고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가압률이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남녀 차이가 큽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과 연금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⑨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 11. 장남 중심의 유산상속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12.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와 돌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게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13. <u>노인 대상의 성폭력</u> 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u>청년 취업지원정책</u>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 <u>령자 취업지원정책</u>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퇴직 연령을 상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결혼장검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u>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u>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20. 저출산고경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갖는 <u>지방분권 정책</u> 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⑤ 잘 오르겠다 (위지 마시오)	

- 2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지원하는 <u>다문화지원정책</u>이 얼마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u>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u>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일·가정양립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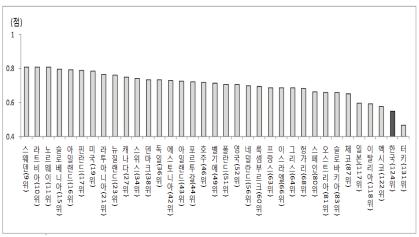
#### ※ 면접원 지침 (응답자 문의 시 읽어줄 것)

일·가정양립정책이란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u>아동돌봄정책이</u>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돌봄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 2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조금 필요하다
- ④ 아주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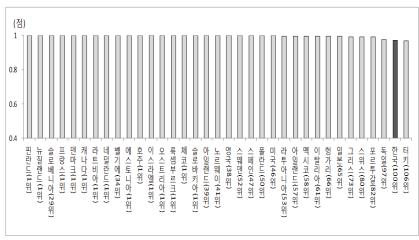
28. 저출산·고력사회 대응을 위해 성평등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 아주 필요하다	
<b>€Q.</b> 일반적 특성	
6-6-22110	
배문1.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비혼 ② 기혼	
• 1-	
③ 이혼 또는 사별	
③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배문2. 귀하의 최종 학력 무엇입니까? 졸업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③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③ 모름/무용답(임지 마시오)	
③ <del>프립/구</del> 등답 (취시 멕시포)	
배문3. 귀하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배문3-1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배문4	
배문3-1. 귀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근속기간은 안정적입니까?	
① 매우 불안정하다	
② 비교적 불안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비교적 안정적이다	
⑤ 매우 안정적이다	
배문4. 귀하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진보적이다	
② 중도적이다	
③ 보수적이다	
배문5. 우리사회의 소득계증을 세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정은 다음 중 어느 계증에 속한다고	U 생각하십니까?
① 하 ② 중 ③ 상	

[부그림 2-1]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경제 참여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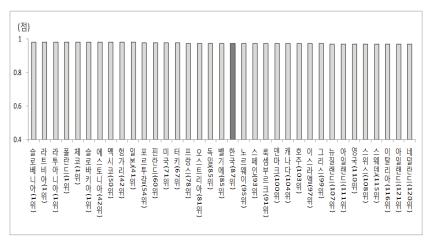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부그림 2-2]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교육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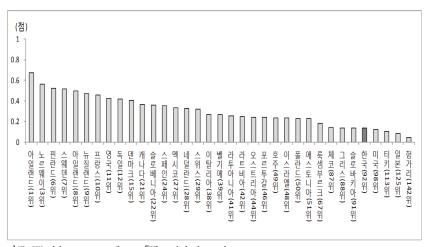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부그림 2-3]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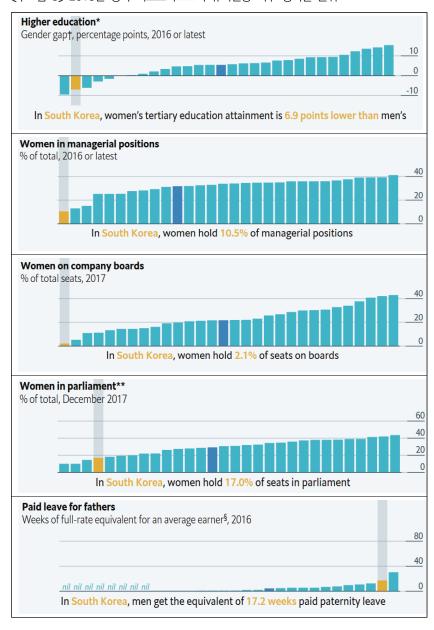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부그림 2-4] OECD 국가의 성 격차 지수 중 정치 권한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부그림 3] 201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 영역별 순위





자료: The Economist,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8/02/15/the-glass-ceiling-index. 2019.2.8. 인출.

〈부록표 4-1〉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전체 국민(2000명)

	집단별 평균점수					설문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설문 번호
성평등정책	3.54	3.19	2.50	2.45	2.53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52	3.26	2.43	2.34	2.50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47	3.11	2.48	2.23	2.39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69	3.46	2.74	2.63	2.84	10
노인 대상 성폭력	3.53	3.30	2.94	2.65	2.67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3.03	2.81	2.10	2.15	2.29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65	3.44	2.99	2.65	2.77	15
결혼장려정책	3.40	3.10	3.00	2.66	2.74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64	3.25	3.19	2.83	2.89	19
출산장려정책	3.70	3.34	3.26	2.96	2.79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61	3.27	3.23	2.88	2.96	23
아동돌봄지원정책	4.00	3.00	4.00	3.00	1.65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76	3.25	3.35	2.86	2.44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37	3.11	2.72	2.64	2.80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60	3.34	2.97	2.66	2.77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65	3.31	2.98	2.71	2.80	27
노인돌봄지원정책	3.84	3.32	3.49	2.93	2.82	26
다문화지원정책	3.24	2.98	2.71	2.55	2.52	21
지방분권정책	3.25	3.01	2.62	2.53	2.52	20
집단별 사례 수	1,054	378	323	179	66	-
집단별 비율	52.7	18.9	16.2	9.0	3.3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32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2〉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여자(323명)

		설문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번호
성평등정책	3.79	3.48	2.98	3.05	3.40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74	3.54	3.13	3.15	3.00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64	3.38	2.93	2.78	3.00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83	3.71	3.34	3.29	3.40	10
노인 대상 성폭력	3.83	3.51	3.51	3.08	2.60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3.18	3.07	2.55	2.76	3.40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67	3.64	3.40	2.75	2.60	15
결혼장려정책	3.00	3.02	2.93	2.52	2.40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49	3.33	3.34	2.92	2.60	19
출산장려정책	3.28	3.37	3.32	2.83	2.60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57	3.40	3.42	3.00	3.00	23
아동돌봄지원정책	3.89	3.56	3.79	3.08	2.20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80	3.46	3.50	2.99	2.60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27	2.93	2.92	2.91	3.00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72	3.30	3.38	2.84	2.80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72	3.27	3.26	3.07	3.20	27
노인돌봄지원정책	4.00	3.00	4.00	3.00	1.80	26
다문화지원정책	3.09	2.90	3.00	2.58	2.20	21
지방분권정책	3.19	2.95	2.92	2.85	3.20	20
집단별 사례 수	156	63	58	41	5	-
집단별 비율	48.3	19.5	18.0	12.7	1.5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07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3〉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청년(15~35세) 남자(318명)

		설문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번호
성평등정책	3.50	2.90	2.28	1.90	2.33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27	2.73	1.49	1.54	2.33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20	2.69	2.31	1.82	2.33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57	2.99	2.35	2.01	3.00	10
노인 대상 성폭력	3.65	3.04	3.39	2.90	2.67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2.97	2.57	1.68	1.49	1.00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71	3.15	3.27	2.21	2.00	15
결혼장려정책	3.58	3.00	3.47	2.44	1.67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81	3.18	3.60	2.68	2.00	19
출산장려정책	3.79	3.23	3.48	2.46	2.00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71	3.12	3.43	2.93	2.33	23
아동돌봄지원정책	3.79	3.25	3.84	2.92	1.00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64	3.10	3.68	2.53	1.33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50	2.95	2.86	2.61	2.00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72	3.11	3.55	2.75	1.67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68	2.97	3.26	2.77	1.33	27
노인돌봄지원정책	3.82	3.19	3.74	3.08	1.00	26
다문화지원정책	3.25	2.67	2.19	2.54	2.67	21
지방분권정책	3.08	2.72	2.53	2.72	2.00	20
집단별 사례 수	137	98	49	31	3	-
집단별 비율	43.1	30.8	15.4	9.7	0.9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889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4〉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여자(395명)

	집단별 평균점수					1 7 8, 707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설문 번호
성평등정책	3.64	2.77	3.46	2.86	2.21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69	2.86	3.58	2.83	2.64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u>돌</u> 봄	3.68	2.80	3.64	2.64	2.86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73	2.97	3.73	3.01	2.71	10
노인 대상 성폭력	3.63	3.16	3.29	2.81	2.64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3.25	2.41	3.18	2.40	2.21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68	3.03	3.62	2.96	2.57	15
결혼장려정책	3.29	2.55	3.43	2.77	3.00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64	3.00	3.50	2.85	3.21	19
출산장려정책	3.75	3.01	3.73	2.97	3.36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66	3.33	3.54	2.93	3.14	23
아동돌봄지원정책	3.96	3.73	3.55	3.11	3.29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85	3.40	3.68	3.04	2.79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47	2.93	3.36	2.63	2.86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68	3.26	3.27	2.89	2.64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70	3.29	3.30	2.89	2.29	27
노인돌봄지원정책	4.00	4.00	3.00	3.00	1.93	26
다문화지원정책	3.28	2.61	3.06	2.67	2.57	21
지방분권정책	3.30	2.79	3.34	2.84	2.83	20
집단별 사례 수	204	79	57	41	14	-
집단별 비율	51.6	20.0	14.4	10.4	3.5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5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5〉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장년(36~55세) 남자(377명)

	집단별 평균					설문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번호
성평등정책	3.47	2.76	2.54	1.91	1.67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47	2.86	2.06	1.93	1.85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40	2.76	1.93	2.04	1.53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65	3.15	2.73	2.05	2.00	10
노인 대상 성폭력	3.45	2.97	2.69	2.60	1.77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2.91	2.71	1.81	1.71	1.30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66	3.17	3.17	2.41	1.79	15
결혼장려정책	3.52	2.99	3.41	1.67	2.16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68	3.02	3.32	2.39	2.45	19
출산장려정책	3.78	3.26	3.82	1.93	2.37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70	3.14	3.42	2.91	2.27	23
아동돌봄지원정책	3.95	3.16	3.95	3.55	1.90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75	3.02	3.73	3.17	1.57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44	2.78	2.97	2.67	1.90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62	2.95	3.24	2.85	2.43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66	2.93	3.43	2.61	1.93	27
노인돌봄지원정책	3.87	3.13	3.79	3.27	2.59	26
다문화지원정책	3.39	3.02	3.05	1.88	1.84	21
지방분권정책	3.39	2.78	2.26	2.08	2.43	20
집단별 사례 수	200	94	42	27	14	-
집단별 비율	53.1	24.9	11.1	7.2	3.7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2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6〉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여자(269명)

(EI)· I						1 7 11, 79
<b>7171</b>		집단별 평균점수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설문 번호
성평등정책	3.58	2.72	2.54	3.35	2.77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60	2.79	2.77	3.43	2.94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47	2.70	2.65	3.54	2.53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81	3.18	3.01	3.69	3.35	10
노인 대상 성폭력	3.42	2.92	2.53	3.41	2.88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2.90	2.48	2.31	3.17	2.35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72	3.46	2.81	3.65	2.77	15
결혼장려정책	3.69	3.39	2.83	3.23	2.41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75	3.39	2.92	3.44	2.53	19
출산장려정책	4.00	4.00	3.00	3.00	1.88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67	3.25	2.90	3.15	2.82	23
아 <u>동돌</u> 봄지원정책	3.93	3.54	3.17	3.53	3.59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85	3.36	2.98	3.49	3.24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36	2.86	2.90	3.27	3.00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61	2.84	2.69	3.43	3.00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69	3.07	2.81	3.42	3.00	27
노인돌봄지원정책	3.78	3.30	2.89	3.66	3.47	26
다문화지원정책	3.22	2.84	2.63	3.14	2.77	21
지방분권정책	3.43	2.88	2.56	3.03	3.07	20
집단별 사례 수	108	56	45	43	17	-
집단별 비율	40.1	20.8	16.7	16.0	6.3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938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부록표 4-7〉 정책 필요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중고령(56세 이상) 남자(318명)

		설문				
정책	비중 1위	비중 2위	비중 3위	비중 4위	비중 5위	번호
성평등정책	3.48	3.00	2.77	1.66	3.60	28
노동시장 남녀 임금 격차	3.55	3.04	2.62	2.10	3.57	14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가사 와 돌봄	3.46	2.79	2.70	1.81	3.54	12
국민연금 성별 격차	3.70	3.28	2.78	2.47	3.70	10
노인 대상 성폭력	3.46	2.95	2.82	2.12	3.47	13
장자 중심 유산상속	3.06	2.56	2.03	1.99	2.81	11
청년 취업지원정책	3.72	3.13	3.14	1.97	3.42	15
결혼장려정책	3.81	2.88	3.51	2.10	3.34	18
청년·신혼부부주택지원정책	3.77	3.15	3.64	1.99	1.93	19
출산장려정책	3.88	3.04	3.83	2.59	3.77	22
혼인 외 출생아지원정책	3.61	3.00	3.41	2.28	3.11	23
<u>아동돌봄</u> 지원정책	3.92	3.21	3.70	2.82	3.98	25
일·가정양립지원정책	3.77	2.89	3.26	2.31	3.38	24
정년퇴직 연령 상향	3.46	3.10	2.49	2.34	2.26	17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3.64	3.13	2.64	2.05	3.46	16
노후소득보장정책	3.75	3.31	2.90	2.20	3.86	27
노인돌봄지원정책	3.79	3.26	3.20	2.52	3.88	26
다문화지원정책	3.53	2.86	3.08	2.47	2.82	21
지방분권정책	3.29	2.91	2.71	1.96	3.28	20
집단별 사례 수	108	80	71	20	10	-
집단별 비율	40.1	25.2	23.2	6.3	3.1	-

주: 0(최저)~1.00점(최고)으로 집단 구분 결과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는 0.880점으로 매우 높고, 집단 수를 2~6개로 늘려 가며 모형적합도를 비교했을 때도 5개가 최적으로 나옴.

# 간행물 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발간자료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